

‘충민공’은,  
‘충무공’이라는 시호 외에 이순신 장군을 칭하는 또 다른 높임이름이다.  
『충민공계초』에는,  
국보 76호 『임진장초』에 수록되지 않은 12편의 장계가 수록되어 있다.

# 이순신 장계와 충민공계초 연구

국립해양박물관 370111

이순신 장계와 충민공계초 연구

국립해양박물관 370111

현충사관리소  
문화재청  
국립해양박물관

- 忠愍公啓草
- 조선 후기 『장계』의 운용과 실제
- 이순신의 장계를 통해 본 임진왜란
- 『충민공계초』의 교감 작업과 그 특징
- 『충민공계초』의 서지학적 조명
- 『충민공계초』의 문체적 특징에 관한 일고찰
- <임진왜란1592> 대본집필기
- 충민공계초 탈초 원문



# 이순신 장계와 충민공계초 연구

單節度使 李舜臣謹 壬辰年

成時到付同月十四日帥行慶尚右道水軍節度使...  
 向在該三海堡第戶黃艇亦被掠為唇峯烽燧坐...  
 十三日申討倭船不知其幾十隻豈敢大驚所見...  
 以所向以遠暗已仍千隻其詳殆看望示以為...  
 未用良食使醫官佐方畧釜山多大浦右邀將所...  
 必是事道知是幸亦准只於休養云如身生米...  
 亦為多未以...  
 浦京中為多日稱申勅為白平孫...  
 申到付...  
 使...  
 必...  
 大...

## 일러두기

※ 이 책은 2017년 5월 국립해양박물관이 해군사관학교, 문화재청 현충사관리소와 함께 개최한 2017년 공동학술대회 '이순신, 『충민공계초』로 말하다'의 발표자료를 수정·보완한 논문집입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국립해양박물관의 공식입장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b>발간사</b>	7
	<b>추천사</b>	8
<b>I.</b>		
<b>조선 후기 『狀啓』의 운용과 실제</b>	머리말	12
	계문과 등록의 전개	13
	장계의 운용 사례	17
김현구	통제영의 장계와 계본의 실제	23
	맺음말	29
	<b>토론문 윤정</b>	31
<b>II.</b>		
<b>이순신의 狀啓를 통해 본 임진왜란</b>	머리말	36
	초기 해전의 양상과 朝·日 수군 전력	37
	수군의 구성과 의병의 역할	40
신윤희	일본의 전략 변화와 왜성	43
	맺음말	52
	<b>토론문 김강식</b>	54
<b>III.</b>		
<b>『忠愍公啓草』의 교감 작업과 그 특징</b>	머리말	58
	공문서로서 『충민공계초』의 가치와 의의	60
	『충민공계초』의 교감상의 특징	62
안승준	맺음말	78
	<b>토론문 김주식</b>	79

<b>IV.</b>		
<b>『忠愍公啓草』의 書誌學的 조명</b>	머리말	82
	李舜臣 狀啓의 謄抄와 문서양식	83
	『忠愍公啓草』의 書誌的 고찰	87
정진솔	기타 李舜臣 狀啓 抄本	98
	맺음말	102
	부록. 현존하는 이순신 장계 총 목록	105
	<b>토론문 옥영정</b>	113

<b>V.</b>		
<b>『忠公啓愍草』의 문체적 특징에 관한 일고찰</b>	머리말	118
	『忠愍公啓草』 수록 문서의 내용 구성	120
	『忠愍公啓草』의 문체적 특징	126
박선이	맺음말	135
	<b>토론문 김성갑</b>	136

<b>VI.</b>		
<b>&lt;임진왜란 1592&gt; 대본집필기</b>	<임진왜란1592> 대본집필기	144
김한솔	<b>토론문 김병륜</b>	148

<b>VII.</b>		
<b>忠公啓愍草</b>	忠公啓愍草	155
	李統制碑銘	227
- 壬辰年兵事 -	忠愍祠記	229
	故統制使李公遺書	230

# 발간사

올해 2017년은 정유재란에서 승리한지 7주갑(420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나라의 해양사를 연구하고 전시하여 해양문화를 확산시켜 온 국립해양박물관은 해군사관학교, 문화재청 현충사관리소와 뜻을 합하여 2017년 5월 10일 이순신 장군께서 옥포해전의 승전 장계를 올린 날을 기념하여 학술대회 '이순신, 『충민공계초』로 말하다'를 개최했습니다. 그 성과를 한 데 모아 논문집 『이순신 장계와 충민공계초 연구』를 발간하게 되어 기쁨이 한층 더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장군의 사후인 인조 21년(1643)에 받으신 '충무공(忠武公)'이라는 시호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충민공(忠愍公)'은 이순신 장군을 칭하는 또 다른 높임이름입니다. 『충민공계초』는 생전에 이순신 장군께서 직접 올리신 장계의 필사본을 1662년에 다시 필사하여 책으로 엮은 것으로, 이순신 장군의 장계 68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장계와 관련된 사료로는 『충무공임진장계』, 『충무공이순신전서』, 『충무공계초』 등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논문집의 주제인 『충민공계초』에는 국보로 지정된 『임진장초』에도 없는 12편의 장계가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이전의 사료들에서 해독되지 않던 글자들을 해독할 수 있게 하는 단서들이 포함되어 있어 이순신 장군과 조선 장계 연구에 매우 중요한 사료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논문집 발간이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장계 필사본인 『충민공계초』의 사료적 가치 제고와 연구 저변 확대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2월  
국립해양박물관장 손재학

## 추천사

충무공의 후예를 양성하는 저희 해군사관학교는 국립해양박물관·문화재청 현충사관리소와 함께 공동 학술대회 ‘이순신, 『충민공계초』로 말하다’와 논문집 발간에 참여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충민공계초』는 임진왜란 당시 충무공께서 왕에게 올린 장계를 모아놓은 고서로서, 당시 조선 수군의 활동상을 상세히 기록해 놓은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번 논문집 발간을 통해 당시 수군의 활동상을 정확히 이해하고 충무공의 호국정신을 올바르게 계승하는 데 큰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학술대회와 논문집 발간 준비에 많은 노력을 해주신 국립해양박물관 및 문화재청 현충사관리소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리며, 좋은 논문으로 참여해주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2월  
해군사관학교장 소장 정안호

## 추천사

올해 2017년은 1597년 정유재란이 발발한지 420년, 즉 7주갑이 되는 해입니다. 또한 음력 5월 10일은 충무공께서 옥포에서의 승전 장계를 조정에 올린 날입니다. 이러한 의미가 있는 올해 5월 10일에 충무공의 『충민공계초』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논문집을 발간하게 되어 더욱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충무공 관련 장계로는 현재 문화재청 현충사관리소에서 소장하고 있는 국보 76호 『임진장초』, 해군사관학교 박물관의 『충무공계초』, 1795년에 간행된 『이충무공전서』, 마지막으로 우리 논문집에서 살펴볼 『충민공계초』 등이 있습니다. 이 장계들은 치열했던 일본군과의 전투를 기록한 전사 사료로서의 가치는 물론 국문학적인 측면에서 조선시대 이두 표기의 모습을 살펴볼 수도 있으며 현재 미디어 산업에서 콘텐츠로 활용될 가능성 또한 무궁무진한 유물입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논문집은 『충민공계초』를 비롯한 이충무공의 장계를 단순히 보존해야 할 역사 유물로서의 가치만이 아닌,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역사콘텐츠로서의 가치도 돌아볼 수 있는, 이충무공 장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어우러진 풍성한 향연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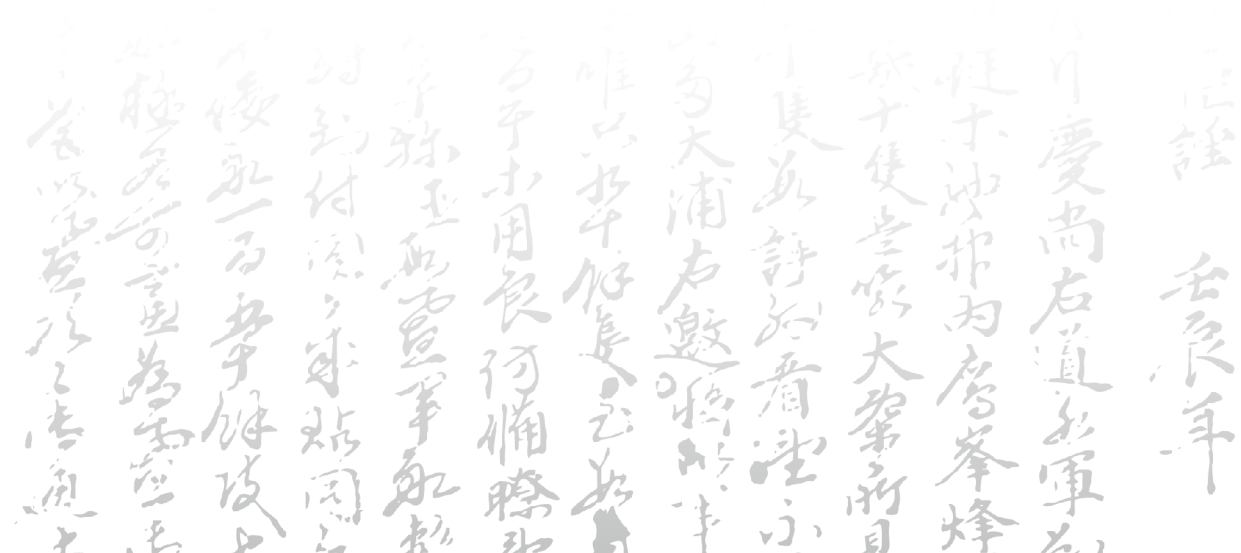
논문집 발간에 참여하여 귀한 시간 내어주신 모든 분들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2017년 12월  
문화재청 현충사관리소장 원성규

# I. 조선 후기 『狀啓』의 운용과 실제

김현구

토론문 윤정



# 조선 후기 『狀啓』의 운용과 실제

김현구  
부경역사연구소

- I. 머리말
- II. 계문과 등록의 전개
- III. 장계의 운용 사례
- IV. 통제영의 장계와 계본의 실제
- V. 맺음말

## I. 머리말

한국 고문서학의 역사는 반세기 남짓에 지나지 않지만 장족의 발전을 해왔고, 그 성과도 상당히 쌓여가고 있다.<sup>1)</sup> 근래에는 서구의 기록학이 학계에 자리를 잡게 되면서 보다 체계적인 상호보완을 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일찍이 한국고문서학회의 「한국고문서 정리표준화 연구」에 따르면 고문서 분류 체계상 중앙기관과 지방기관의 일괄문서로 대표적인 것이 계문류이다. 계문(啓文)의 범주에는 계본(啓本), 계목(啓目), 장계(狀啓), 서계(書啓), 정사(呈辭), 녹계(錄啓), 회계(回啓), 계초(啓草)가 들어간다.<sup>2)</sup> 이 가운데 장계와 계본을 오늘 논의의 주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관(부)문서(官(府)文書)인 계문류의 서식 틀은 조선 초기부터 마련되었지만, 현재 원본이 남아있는 경우는 희소하다. 미증유(未曾有)의 전란을 겪으면서 소실 내지 일실된 바가 많으며 그나마 그 원형을 담고 있는 대표적 예가 『忠愍公啓草』와 『壬辰狀草』이다.

여기에서는 조선 후기의 장계와 계본의 골격을 살펴보고, 이들을 성책한 등록에 대해 검토한 다음, 장계 원본의 현황과 그 운용 사례를 개괄한다. 끝으로 통제영의 계록을 중심으로 논의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 II. 계문과 등록의 전개

조선 후기 고문서의 운영체제인 행이체제(行移體制)는 일찍이 조선 초기의 「洪武禮制」를 골격으로 삼은 경국대전(經國大典)의 체제가 계승된 것으로, 부분적인 변화가 있기는 하였지만 큰 틀의 변개(變改)는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sup>3)</sup> 그중에서도 관부문서는 중앙정부나 지방 관청 또는 그에 속한 관리들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작성한 문서를 일컫는다. 논자에 따라서 분류 방식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교지·교령류(教旨·敎令類) / 상소·청원류(上疏·請願類) / 이문류(移文類) / 증빙류(證憑類)로 4대분하기도 한다. 국왕에게 제출되었던 보고서나 청원서를 포함한 장계와 정사 및 계본과 계목 그리고 상소 등이 상소·청원류에 해당된다.<sup>4)</sup> 장계는 조선시대 관찰사·병사·수사 등 왕명을 받고 외방에 나가 있는 신하가 자기 관하(管下)의 중요한 일을 왕에게 보고하거나 청하는 문서이다. 장계는 주첩(周帖, 두루마리)으로 하고, 합금(合襟)된 오른편에 ‘승정원개탁(承政院開帙)’이라 쓰고, 합금된 아래쪽에 ‘臣(押)·署名(謹)謹封’이라 쓴다. 즉 장계는 승정원에서 뜯어보고 담당 승지가 이를 왕에게 올려서 왕의 재가를 받은 다음, ‘계하인(啓下印)’을 찍고 그 장계의 내용과 관계있는 관청에 하달하게 된다. 이와 유사한 경우로 계본을 들 수 있다. 이 역시 국왕에게 올리던 문서 양식으로 외방의 경우에는 각 지방의 관찰사·병사·수사 등이 왕에게 보고하는 데 쓰는 문서로서 이두를 섞어 썼다. 양자는 모두 그 시대·지방의 중요한 사건을 보고 또는 청원하는 것이므로 사료로 중요한 가치가 있다.<sup>5)</sup>

본디 계(문)(啓(文))는 신하가 정무에 관하여 국왕에게 상계(上奏)하는 문서로 통상 대사(大事)는 계본, 소사(小事)는 계목을 사용하였다. 국왕에게 올리는 문서는 모두 승정원을 통하는바, 승정원에서는 대개 그 내용을 요약하여 계목(啓目)으로 아뢰는데, 그 계문의 원본을 계본(啓本)이라 한다. 계본과 계목은 조선 초기에 이름을 붙인 문서였는데, 1412년(태종 12) 12월에 의정부의 요청으로 상저(上書)를 상언(上言), 장신(狀申)을 계본, 소식(消息)을 계목으로 고치면서 생겨난 문서였다.<sup>6)</sup>

3) 박준호, 『禮의 패턴: 조선시대 문서 행정의 역사』, 소와당, 2009

4) 전경목, 「16세기 관문서의 서식 연구」, 『16세기 한국 고문서 연구』, 아가넷, 2004  
최승희는 관부문서 중 대국왕 문서의 범주로 보았고, 윤병태는 疏節啟狀類로 묶기도 하였는데 이는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6]의 고문서류-관부문서-소차장계류로 반영되기도 하였다.

5)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研究』, 지식산업사, 1989, pp.160-165;  
한국기록학회 엮음, 『기록학 용어사전』, 역사비평사, 2008;  
김현영, 『官府文書 연구의 현황과 과제』, 『영남학』 10, 영남문화연구원, 2006  
전경목은 위와 같은 일반적인 장계의 용례 외에 ‘有旨祗受狀’과 같은 경우도 첨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김현영은 呈辭狀啓는 수급자가 국왕이 아닌 上官이라는 점에서 所志로 보고 있다.

6) 『古文書集成』 十,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1992, pp.8-9;  
『고문서에게 물은 조선 시대 사람들의 삶』 국사편찬위원회 편, 두산동아, 2009, p.394



7) 『典律通補』別編 本朝文字式

8) 『攷事新書』五, 用文字式; 『한국고전종합DB』,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01  
銜은 脚으로도 쓰며 구함은 벼슬의 품계, 본직과 겸직을 다 갖추어 쓰고, 단함은 본관과 성명만을 쓴다. 전자는 長銜으로 불리기도 한다.

9) 계하는 임금에게 올려진 啓聞에 대한 임금의 답이나 의견으로 내려진 것으로 임금은 계문을 보고 敎字印을 찍어 친림과 결재를 마쳤음을 표시하였다.

10) 국립중앙박물관, 『古文書』, 국왕·왕실문서, 관청문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역사자료총서 1), 2004, p.114  
전라도관찰사 韓翼翬가 진휼 문제와 관련하여 1749년 9월 10일 사도세자에게 올린 장달이다. 같은 해 9월 18일 장달의 내용은 賑恤廳으로 하달되었다.

11) 조미은, 『朝鮮時代 王世子 代理聽政期 文書 研究』, 『古文書研究』 36, 2010

12) 김건우, 『慶尙右兵營의 문서 행정에 관한 일고찰』, 『奎章閣』 31, 2007, p.227

장계와 계본의 서식을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sup>7)</sup>

〔狀啓式〕

具銜臣姓署名

某事云云爲白臥乎事是良尠(或爲白只爲) 詮次

善啓尙敎是事

年號幾年某月某日

〔外方啟本式〕

單銜臣姓名謹

啓爲某事云云爲白只爲(或爲白遣)謹具啓聞

年號幾年某月某日 單銜臣姓署名

서식상으로 양자는 기두(起頭)의 구함과 단함 및 투식구(套式句)의 차이도 있지만,<sup>8)</sup> 장계는 승정원을 거쳐 계하인 이하에 계하 일자와 계하 관서가 덧붙여지는 데 비하여 계본은 직계권(直啓權)이 행사된 문서이므로 이 부분이 없다.<sup>9)</sup>

이와 더불어 장달(狀達)과 신분(申本)에 대해서도 언급해 두기로 한다. 전자는 세자 대리시에 세자에게 올리는 장계를 말한다. 서식은 장계와 같으나 장계에서 「선계(善啓)라 한 것을 「선달(善達)」로 대체하면 되고, 그 상달과 처리방식은 장계와 같다.<sup>10)</sup> 또한 후자는 세자가 대리청정, 섭정할 때 세자에게 올리는 계본을 말한다. 계본과 서식은 같으나 계본에서 「계문(啓聞)」이라 한 것을 「신문(申聞)」으로 고치고, 「복후교지(伏候敎旨)」는 「복후회지(伏候徽旨)」, 「근계(謹啓)」는 「근달(謹達)」로 칭하게 되는데, 달본(達本)이라고도 부른다.<sup>11)</sup>

경상우병영의 『營總』에서 보이는 장계를 넣는 봉함투식(封緘套式)은 다음과 같다.<sup>12)</sup>

慶尙右道兵馬節度使

來某月當朔番上云云開坐事

啓本壹道

承政院開拆

13) 『經國大典』, 禮典, 用文字式

14) 상고사는 응어로서는 서로 조사하여 알아보는 일, 곧 照會의 뜻이나 여기서는 국왕의 재결 없이 기존의 법규나 전례에 따라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일을 뜻한다.

15) 김인걸, 『各司廳錄 資料의 基礎調査 및 研究』,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연구 지원보고서, 1988; 연갑수, 『朝鮮後期 廳錄에 대한 研究』, 『역사문화연구』 12, 한국의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00; 임정은, 『備邊司廳錄의 書誌學的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6; 이형중, 『조선시대 등록(廳錄)체계의 기록학적 의미와 현대적 변용』,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2  
1981년부터 2006년까지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여 편찬한 101권의 『각사등록』 중 수록 분량의 대종을 이룬 것은 이들 등록류이다.

그런데 장계와 계본의 작성에 있어서 주목할 점이 있다. 앞서의 계문은 국왕에게 상달(上達)하는 입계(入啓)를 한 후, 국왕의 처결(處決)을 받는 판부(判付)를 거쳐 관련 기관에 하달(下達)하는 계하(啓下)의 수순을 밟게 된다. 이 과정에서 승정원을 거치지 않고도 국왕에게 직접 정무를 아뢰 수 있는 관서(官署)를 직계아문(直啓衙門)이라고 하는데, 곧 직계권이 행사됨을 뜻한다.

2품 아문은 직계하고【중앙과 지방의 여러 장수, 승정원, 장예원, 사간원, 종부시도 또한 직계할 수 있다.各司는 긴요한 일이 있으면 提調가 직계한다. 큰 일은 계본으로, 작은 일은 계목으로 작성한다. 지방은 계목이 없다.】직접 공문을 내려 보낸다.【相考事 외에는 모두 啓한다.】그 나머지 아문은 모두 소속된 육조에 보고한다.<sup>13)</sup>

위에 따르면 중앙의 2품 아문과 일부 예외 관서 및 각 도 관찰사에게는 직계권이 주어졌고, 이는 군무를 맡은 지방의 장수 곧 병사와 수사에게도 적용되었다. 이를테면 각 도 병사와 통제사는 중2품관인 반면 수사는 정3품관이지만 이 규정에 따라 시행되었다. 다만 2품 아문일지라도 ‘상고사(相考事)’에 한하여 다른 아문으로 공문을 보낼 수 있게 하고,<sup>14)</sup> 그 외에는 국왕의 재가(裁可)를 받아 감영·병영·수영을 거쳐 하달하게 하였다. 즉 국왕의 통치권 안정을 도모하고 상급 관아의 월권행위를 제한하고 있었다.

‘등록(廳錄)’은 ‘베끼다’ 또는 ‘베껴서 적다’는 뜻이나 조선에서는 기록 정리 체계와 그로 인해 생산된 기록물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연장선에서 국가의 전례(前例)와 전고(典故)를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의 공적 기록을 찬집한 일종의 보존용 기록물을 말하기도 하며, 그 대표적 예로 『비변사등록』과 『각사등록』이 있다.<sup>15)</sup> 경우에 따라서는 조선 초기의

16) 김혁, 『藏書閣 소장 臚錄의 문헌학적 특성』, 『藏書閣』 4, 한국학중앙연구원, 2000

17) 김혁, 위의 글; 김혁, 『조선 후기 중앙관청 기록물에서 등록의 위상』, 『서지학보』 26, 한국서지학회, 2002

김혁은 작성방식과 작성기관 및 주제를 기준으로 3유형으로 나눴는데, 제1유형은 王勅을 수록하는 방식-수교 등록, 제2유형은 구체적인 사안을 정리하는 일기형식-비변사등록, 군영 등록, 제3유형은 관청에서 수취하는 문서를 전제하거나 의례과정의 글을 등사한 방식-공문등록 등을 들고 있다. 주제 기준으로는 왕실, 군영, 관청으로 나누기도 한다. 그의 또 다른 논고에 의하면 조선의 기록 보존방식은 1차 기록물을 ① 원본을 보존하는 방식, ② 원본을 편철, 성책하여 보존하는 방식, ③ 기록을 전사하여 새로운 편집본을 작성하여 수록하는 방식으로 보고, 조선 후기에는 대체로 ③의 방식이 확산된 추세로 보았다.

18) 김건우, 위의 글, p.229  
계본이나 장계를 등록해 둔 책자인 계록 3책을 작성하여 1건은 병사가 보관하고, 1건은 병영에 보관하며, 1건은 비변사에서 국왕에게 아뢰도록 올려 보낸다고 하였다.

19) 이형중, 위의 글, pp.40-43

등록은 ‘미래에 현실적 효력을 갖는 기록’으로서의 책의 형태로 작성되었던 반면, 경국대전 체제가 성립된 이후에는 등서(臚書)의 개념과 ‘책록하여 종합적으로 구비한다’는 일반적인 등록 개념으로 통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sup>16)</sup>

등록류를 논자에 따라서는 삼대분하여 (1) 각 관청별로 제작한 관청일지 형식의 등록; 비변사등록(備邊司臚錄), 포도청등록(捕盜廳臚錄) 등, (2) 단위 과제별 관련 공문서를 찬집한 형식의 등록; 수교등록(受敎臚錄), 장계등록(狀啓臚錄) 등, (3) 단일 사안에 대한 보고서 및 자료집 형식의 등록; 의궤류(儀軌類), 동래부축성등록(東萊府築城臚錄) 등으로 나누기도 한다.<sup>17)</sup> (1)은 각 관서 및 아문의 명칭을 제목으로 삼은 것이 대다수이며, 관서 자체의 업무 전반에 대한 일상의 기록을 생산·수집·편철하여 편찬했고, (2)는 법전 보다는 격이 낮은 법령집으로서의 수교등록류(受敎臚錄類)와 국가 행정업무상에서 발생하는 업무기록체로서의 등록류, (3)은 해당 주관 도감이나 의궤에서 제작되거나 비상시적 특정 업무에 대한 종합자료집의 성격을 띤다. 그러므로 등록은 행정업무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을 비롯한 관서의 주요 문서 중 일정한 기준에 의해 선별된 문서를 그대로 옮겨 적거나 내용 중심으로 재편집하여 편찬한 일련의 준현용(準現用)·비현용(非現用) 기록철군(記錄綴群)으로 보고 있다. 그중에서 우리의 관심사와 관련하여 (2)군의 『장계등록』은 각 지방의 감영·병영·수영 등에서 조정에 올린 장계를 편철하여 제작한 기록물로 원본을 그대로 편철한 것이 아니라 원문을 베껴 일자별로 새롭게 정리한 것이다. 그 생산과 관리는 승정원과 비변사에서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만, 1차적인 생산 주체는 발송처인 각 감영·병영·수영이 됨은 말할 것도 없고 표제도 해당 관서명(혹은 관직명)에다 ‘장계등록(狀啓臚錄)’ 또는 ‘계록(啓錄)’으로 표기된다.<sup>18)</sup> 그런데 여기 수록되는 문서 양식은 앞서 살펴본 장계와 계본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앞서 언급한 ‘승정원개탁’은 장계의 수신처가 승정원임을 밝힌 것인데, 승정원의 사변가주서(事變假注書)는 수신한 장계와 계본을 등사하여 지방 관서에서 올린 『장계등록』과 비교해 하나의 등록책으로 편찬한 것으로 보인다.<sup>19)</sup> 물론 장계나 계본의 본문 외에 필요에 따라서 도식(圖式)을 삽입하거나 끝 행에 『列錄于後』

등을 표기하고 『成冊』 등의 기록을 덧붙이기도 하였다.<sup>20)</sup>

그렇다면 장계등록의 1차 생산처인 각 감영·병영·수영에서 등록 사무를 맡은 이는 누구였을까? 지방 각 영에는 대개 필사를 전담하는 계서영리(啓書營吏)가 있는데 이들이 그 역할을 맡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흔적은 경상우병영의 경우에는 『營總』이나 『營營事例』 등의 영리 서책의 문서식을 통하여 확인된다. 통제영에서는 1609년에 개설된 영리청 아래의 6~7인의 영리 중 계서영리 1인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로 미루어 보아 다른 영에서도 계서영리의 필사 업무가 일상적인 업무 영역에 속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통제사의 집무실이었던 호소각(虎嘯閣) 내에는 상하층 2칸의 지통고(紙筒庫)가 따로 있었는데, 이러한 기록물의 처리와 보존을 위해서는 별도의 문서고를 두었을 것으로 짐작된다.<sup>21)</sup>

### III. 장계의 운용 사례

현재까지 파악되는 장계 원본 수록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古文書』 二 (官府文書), 서울대학교도서관, 1987 / 九. 狀啓 / pp.379-428
- ② 『古文書集成-昌原黃氏篇-』 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0 / 2. 疏筭啟狀類, (2) 啓, 啓4 (狀啓草) / pp.101~
- ③ 『古文書集成-藏書閣篇 1-』 10,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 / 2. 소차장계류, (5) 장계, 장계1~4 / pp.274-280
- ④ 『古文書集成-河回 豊山柳氏篇 1-』 1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 2. 疏筭啟狀類, (4) 狀啓, 장계1 / pp.434-494
- ⑤ 『古文書集成』 15 / 2. 소차계장류, (4) 장계, 장계2 / pp.495-535
- ⑥ 『古文書集成』 15 / 2. 소차계장류, (4) 장계, 장계3 / pp.536-611
- ⑦ 『古文書集成-居昌 草溪鄭氏篇-』 2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 1. 個別古文書, (3) 關, 關1, pp.25-31(『古文書集成(正書本)-居昌 草溪鄭氏篇-』 80,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20) 최승희, 위의 글, p.155

21) 손숙경, 『부록: 『족영사례』, 『족영사례』 해제』, 『경남문화연구보』 22,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소 2000; 『統營誌』(奎: 1895年刊) 영리청조, 『營誌』(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衡舍條; 이한희, 『조선시대 기록물의 생산 및 처리과정과 보존』, 『書誌學研究』 37, 서지학회, 2007

22) 연번 19는 虞候가 見乃梁의 防營에서 6개월간의 留防을 撤還하는 보고이며, 25는 통제사 閔泳玉이 모친상으로 그 직을 사임하게 된 보고를 우후가 대신하고 있다. 28은 東學徒들의 봉기에 대항하여 池錫永이 討捕使가 되어 활동하고 있다는 보고이다. 실제로 민 통사는 재임 기간(1894.3.30.~순 9.26)이 7개월 남짓이었지만 奔喪으로 사임하였으며, 후임 통사가 부임한 것은 10월 27일로 空席 중에는 우후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있었다.

23) 전경목, 앞의 글, pp.140-144; 박선이, 『임진왜란 시기 狀啓에 나타난 朝鮮式 漢文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5; 박선이, 『朝鮮式 漢文의 문체적 특징에 대한 소고 - 임진왜란 시기 狀啓를 중심으로-』, 『태동고전연구』 36,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2016

24) 연번 13은 尙州人 鄭宜默의 동학난 시의 경상도 일원 소모사 활동의 보고이며, 30은 통제사 李顯稷(191대; 1868.4~1870.1)이 충청수영 관할 해역의 이양선 출몰에 대한 조치를 보고한 것이다.

25) 강경호, 『瀋陽狀啓』의 吏讀에 대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1; 남은경, 『병자호란과 그 후의 기록 『瀋陽狀啓』』, 『한국문화연구』 14,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08; 해제는 4종의 역본 가운데 다음을 참조할 것. 소현세자 시강원[역주자 정하영 외], 『심양장계 - 심양에서 온 편지』, 창비, 2008

- ⑧ 『古文書集成-靈光寧越辛氏篇 1-』 2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6 / 2. 소차계장류, (4) 장계, 장계1 / pp.234-235
- ⑨ 『古文書集成-南原·求禮 朔寧崔氏篇 2-』 7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4 / 2. 소차계장류, (1) 장계(초), 장계(초)1 / p.18
- ⑩ 『古文書集成-尙州 晉州鄭氏 愚伏宗宅篇-』 88,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 2. 소차계장류, (3) 장계, 장계1 / p.212~
- ⑪ 『藏書閣所藏 古文書大觀 1- 王命, 上奏』, 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 14. 장계
- ⑫ 『日本所在韓國古文書』(한국사료총서 제46집), 국사편찬위원회, 2002 / 天理大學所藏韓國古文書 / (狀啓 一) 崇政大夫行知三軍府事三道統制使兼慶尙右道水軍節度使 李(顯稷; 191대)
- ⑬ 『瀋陽狀啓』(正本; 奎9918, 副本; 奎魯 1878), 권1~10

주로 규장각과 장서각 및 개별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었던 이 장계들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 <표 1>과 <표 2>이다. <표 1>의 경우에는 연번 1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19세기 말엽의 것이며, 발급자는 각 도 관찰사와 병·수사 및 지방관인 유수, 부윤, 목사이고, 수취자는 시대상을 반영하여 의정부나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 등이 주를 이뤘다. 이 중에서 연번 19, 25, 28은 통제영에서 발급된 예이다.<sup>22)</sup>

<표 2>에서는 연번 7~9의 임란 중 중책을 수행한 서애 류성룡(西厓 柳成龍)이 남긴 다량의 장계를 예외로 하고,<sup>23)</sup> 나머지 27건은 <표 1>과 거의 유사한 양상이 나타난다. 시기적으로는 다수가 19세기 후반의 것들이며, 일부(연번 11, 12, 14, 29)는 18세기와 19세기 초의 것도 있다. 또한 장계 초본의 경우도 3건이 확인된다. 발급자 가운데는 연번 13, 30에서 보듯이 소모사(召募使)나 통제사의 예도 있다.<sup>24)</sup>

외교문서로서 정치외교사적 가치가 있는 13의 『심양장계』는 소현세자를 주축으로 한 시강원 관료들에 의한 대외 장계로서 독특한 위상을 지닌다.<sup>25)</sup>

□ 표 1 『고문서』 2의 사례

연번	발급 시기	발급자	수취자(계하처)	비고
1	1593년 8월 21일	右議政	宣祖	
2	1865년 8월 18일	慶尙道觀察使	吏曹	
3	1883년 3월 27일	西北經略使	通商事務衙門	
4	1883년 3월 27일	德源都護府使	交涉通商事務衙門	
5	1884년 2월 7일	義州府尹	〃	
6	1884년 2월 9일	平安道觀察使	〃	
7	1884년 5월 21일	〃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	
8	1886년 10월 27일	義州府尹	交涉衙門	
9	1886년 10월 30일	平安道兵馬節度使	〃	
10	1886년 11월 2일	平安道觀察使	〃	
11	1887년 9월 28일	咸鏡道觀察使	〃	
12	1884년 4월 7일	咸鏡南道兵馬節度使	?	
13	1894년 정월 6일			前部缺落
14	1894년 정월 16일	慶尙道觀察使	義禁府	
15	4월 24일	全羅道兵馬節度使	〃	
16	5월 2일	忠淸道觀察使	?	
17	6월 13일	〃	義禁府	
18	8월 26일	黃海道觀察使	議政府	

19	9월 2일	三道統制使	〃	
20	9월 5일	全羅道觀察使	宗伯府	
21	9월 6일	東萊都護府使	議政府	
22	9월 7일	江原道觀察使	宗伯府	
23	9월 15일	水原府留守	〃	
24	9월 25일	慶尙左道水軍節度使	議政府	
25	9월 26일	三道統制虞候	〃	
26	9월 29일	慶尙左道水軍節度使	〃	
27	9월 30일	慶尙道觀察使	〃	
28	10월 2일	三道統制虞候	〃	
29	10월 23일	慶尙左道水軍節度使	?	
30	10월 26일	忠淸道觀察使	議政府	
31	10월 29일	全羅道兵馬節度使	?	
32	〃	〃	?	
33	11월 4일	慶尙道觀察使	?	
34	11월 13일	洪州牧使	議政府	
35	11월 16일	忠淸道觀察使	〃	
36	〃	〃	〃	
37	11월 20일	〃	〃	
38	12월 12일	〃	?	

□ 표 2 『고문서집성』의 사례

연번	발급 시기	발급자	비고
1	1865년 9월 ?일	江華留守	고문서집성 9
2	1867년 12월 10일	公忠道觀察使	고문서집성 10
3	1868년 2월 10일	〃	〃
4	1868년 1월 10일	〃	〃
5	1868년 1월 26일	〃	〃
6	1868년 1월 29일	〃	〃
7	1592.6~ 1592.11	柳成龍(60점)	고문서집성 15-1
8	1592.12~ 1593.3.16	柳成龍(68점)	고문서집성 15-2
9	1593.3~순9, 1597.2~순5	柳成龍(93점)	고문서집성 15-3
10	1817년 12월 20일	慶尙道觀察使(草本)	고문서집성 23(80)
11	무자년(?) 9월 4일	全羅道觀察使	고문서집성 27
12	1784년 ?	全羅監司(草)	고문서집성 75
13	1894년 11월 28일	慶尙道召募使	고문서집성 88
14	1753년 9월 26일	洪鳳漢	고문서대관 1
15	1868년 2월 11일	某 道臣	〃
16	1841년 5월	黃海道觀察使	〃
17	1853년 8월	咸鏡道觀察使	〃
18	1867년 12월 8일	公忠道觀察使	〃

26) 노인환, 『조선시대 濟州牧使의 문서 행정 연구』, 『藏書閣』 34, 한국학중앙연구원, 2015

27) 김순석, 『『完營日錄』을 통해 본 전라도관찰사의 공문서 유형과 문서식』, 『지역사회연구』 22-3, 한국지역사학회, 2014

28) 이선희, 『조선 후기 영남지방 지방관의 행정소통 체계와 조정방식』, 『嶺南學』 16,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09; 이선희, 『18세기 경기도관찰사의 업무 실태와 특징 -『畿營狀啓謄錄』을 중심으로-』, 『藏書閣』 23, 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29) 김진우, 『慶尙右兵營의 문서 행정에 관한 일고찰』, 『奎章閣』 31,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7; 한시진, 『문서행정을 통해 본 조선 후기 慶尙左水營의 수군행정』, 부경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4

30) 한성주, 『『江原道暗行兼慰諭御史 權曠狀啓草』에 대하여』, 『江原文化史研究』 14, 강원향토문화연구회, 2016

19	1867년 12월 18일	〃	〃
20	1867년 12월	〃	〃
21	1868년 1월 26일	〃	〃
22	1868년 1월 29일	〃	〃
23	1869년 1월	〃	〃
24	1868년 2월 4일	〃	〃
25	1868년 2월	〃	〃
26	1868년 3월 20일	〃	〃
27	?	江原道觀察使	〃
28	?	全羅道觀察使	〃
29	1732년 ?	慶尙監司(草)	〃
30	1869년 3월 23일	三道統制使	日本所在韓國古文書

개별적 장계의 현황과는 달리 행이체계와 관련하여 거론될 수 있는 등록류 중심의 연구에서는 시기별, 직급상의 편차를 엿볼 수 있다. 이 밖에 사례로서 거론되는 경우에는 제주목사의 예,<sup>26)</sup> 전라도관찰사의 예,<sup>27)</sup> 경상도와 경기도관찰사의 예,<sup>28)</sup> 군영으로서는 경상우병영과 경상좌수영의 경우를 들 수 있다.<sup>29)</sup> 또한 암행어사의 사례도 보인다.<sup>30)</sup>

## IV. 통제영의 장계와 계본의 실제

오늘의 주요 관심사인 통제영의 장계와 계본의 전개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忠愍公啟草』와 『壬辰狀草』를 중심으로 한 구체적 분석과 논의는 후속 논자들에게 넘겨두고, 일단의 문제점을 먼저 제기해 두기로 한다.

현재 이와 관련된 장계류로는 『忠武公壬辰狀啓』(국립해양박물관 소장), 『忠武公啟草』(해군사관학교 박물관 소장), 『忠武公啓本』(규장각 소장), 『忠武公全書』(현충사 소장)의 4종이 더 알려져 있다.<sup>31)</sup> 『충무공전서』의 경우를 제외한 서책의 표제만 하더라도 「계초」, 「장초」, 「장계」, 「계본」 등으로 다양하다. 과연 어느 것이 적의성을 지닐까? 일찍이 최승희는 이에 대한 답변을 제시하고 있다.<sup>32)</sup>

「外方啓本」으로 대표적인 것을 하나 든다면, 비록 轉載된 것이지만, 忠武公全書內의 壬亂中の 七〇여 件의 啓本을 빼어 놓을 수 없다. 그러나 이 啓本은 文集에 轉載됨으로써 文書의 原形을 상실하였을 뿐 아니라 啓本內의 吏讀도 없애버렸다. 이 「啓本」을 同全書에서 「狀啓」라 한 것은 錯誤이며, 「壬辰狀草」라는 표현도 옳지 못하다. 「壬辰啓本(謄錄)」이라 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다.

『충무공전서』에 수록된 장계는 그 가치의 우월성에도 불구하고 원형 상실이라는 한계를 엄연히 지니고 있다.<sup>33)</sup> 그러므로 5종의 장계류와의 엄밀한 교감(校勘) 작업과 함께 서책의 적절한 표제 설정이 요구된다. 실제로 『임진장초』를 중심으로 수록된 계문을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sup>34)</sup>

□ 표 3 『임진장초』의 수록 서식 분류

구분	1592년 (권2)	1593년 (권3)	1594년 (권4)	1594년 (別冊本)	1795년 (全書本)	계
계본	13	18(달본 1)	9(달본 3)	12(달본 1)	-	52(달본 5)
장계	4	15(장달 2)	2(장달 1)	-	5	26(장달 3)
계	17	33	11	12	5	78

31) 정주호, 『『임진장초』를 중심으로 한 전 후기 이두 어휘 대비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2; 정선화 외, 「국보 제76호 임진장초(壬辰狀草)의 지질분석과 보존처리」, 『문화재』 47-4, 국립문화재연구소, 2014; 김순관 외, 「국보 제76호 이순신 난중일기 및 서간첩 임진장초 보존처리」, 국립문화재연구소, 2015; 박선이, 앞의 글; 전경호, 「『忠愍公啟草』, 『忠武壬辰狀啓』에 대한 검토 -국립해양박물관 소장본을 중심으로-」, 『도서문화』 48, 목포대학교 도서관연구회, 2016; 노승석, 「이순신의 『충민공계초(忠愍公啟草)』에 대한 서지적 고찰」, 『문화재』 49-2, 국립문화재연구소, 2016

32) 최승희, 앞의 글, p.155

33) 이민웅, 「『李忠武公全書』의 역사적 가치와 중요성」, 『龜海趙成都教授 華甲紀念 忠武公李舜臣研究論叢』, 해군사관학교, 1991; 윤정, 「肅宗代 『忠武公家乘』 편찬의 경위와 정치적 함의」, 『역사와 실학』 55, 역사실학회, 2014; 윤정, 「17세기 李舜臣 사적 정비와 宣祖대 역사의 재인식」, 『진단학보』 125, 진단학회, 2015; 김대현, 「이충무공전서 이야기」, 한국고전번역원, 2015; 민장원, 「정조의 '忠臣' · '忠家' 현상사업과 이순신에 대한 기억의 재구성」,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7

34) 趙成都譯, 『壬辰狀草』, 연경문화사, 1984 이 무렵의 달본과 장달은 광해군의 分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35) 『계본등록』 원본은 경북 청도군 재령 이씨 문중 소장(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142-1·2호)의 필사본(17.2×24.5 cm, 乾; 선조 38년(1605) 9월 15일~선조 39년(1606) 7월 22일, 坤; 선조 39년(1606) 7월 20일~선조 40년(1607) 6월 1일. 『거명일기』는 散逸本으로 1605년 7월 30일~1606년 7월 1일분까지만 남아 있다. 이재호, 『壬亂 水軍과 李雲龍將軍』, 『軍史』 2, 1981; 신윤호, 『임진왜란 직후 해상방위와 통제영 -『居營日記』를 중심으로-』, 『해양문화연구』 10, 이순신해양문화연구소, 2014

78건 중 장계가 26건으로 1/3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표제에 적기된 것에만 의존하여 장초나 장계로 부르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최승희의 주장이 훨씬 설득력이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이 같은 문제점을 연계하여 풀 수 있는 실마리는 없을까? 다음의 두 사례가 검토의 단서를 제공한다. 제5대 통제사를 지낸 이운룡(李雲龍, 1562~1619)이 남긴 『啓本臚錄』 2책이 그것이다. 그의 재임기(1605.8~1607.8) 중 만들어진 사환일기(仕宦日記)인 『居營日記』 1책도 현전한다.<sup>35)</sup>

□ 표 4 『계본등록』의 수록 서식 분류

구분	1605년(9~12월)	1606년	1607년(1~6월)	계
계본	2	5	2	9
장계	22	85	24	131
계	24	90	26	140

10년 정도의 시차를 지닌 두 책자의 현황을 같은 차원에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전자가 계본 중심인 데 비하여 후자는 장계 위주로 수록되었다는 점이다. 그것은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승정원을 거쳐 유관 관서에 계하되는 장계의 방식을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전시와 같은 긴급 상황에서는 직계권이 행사되는 계본의 방식이 보다 효율적이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장계의 구함과 계하처가 생략되고 있음을 미루어, 경상우병영의 예에서 보듯이 『계본등록』은 통제영이나 통제사에 의해 보관된 사본으로 여겨진다. 전자와 마찬가지로 이두식도 살아있으므로 당시의 현장감이 잘 전해지는 어투를 보여준다.

앞서 살펴본대로 현존 장계 원본은 대부분 19세기 중반 이후의 것들이었고, 또한 지방 행정의 중심축인 관찰사의 것이 대다수였다. 통제영의 경우는 4건에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 이후의 장계가 어떤 변모를 보였는가를 짐작하기 어렵다. 그나마 이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것이 통제사 임률(任律, 1738~1804)의 재임기(149대, 1798.11~1800.5)의 소산인 『統營啟草』이다. 현존 별책의 계본 가운데서 18세기의 것으로는 유일본

(唯一本)이다.<sup>36)</sup> 『충무공전서』의 장계와 같이 각 장계마다 모두 40건의 표제(標題)가 붙어 있다. 하지만 발급일을 포함한 기두어와 말미의 투식구가 거의 생략이 되어있으므로 종결어의 이두문으로 서식을 파악할 수밖에 없다. 「還穀未捧邑請勘事」 제하의 1건의 계본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35건의 장계 외에, 순조 초년의 안핵사(按覈使) 관련 장계와 사음(赦音) 4건이 추록되어 있다.<sup>37)</sup> 첫머리에 실린 「移貿設屯請啓」와 「設屯未限滿前請移貿」, 「各邑都廳倉營監色依前仍置事」, 「固城縣令請罪狀啓」, 「別餉米加分耗依前許劃事」 제하의 장계 등은 연대기류에서 요약된 기사가 드러나기도 한다.<sup>38)</sup> 하지만 일상적인 군정사나 포폄(褒貶) 등의 장계와 계본이 상당수 각종 연대기류에는 보이나 계초에는 실려 있지 않다. 그러므로 『통영계초』는 등서자의 선별적인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거론된 통제영 계문의 실상을 일괄적으로 살필 수 있는 귀중 사료가 『統營啓錄』이다.<sup>39)</sup> 이는 일제강점기 대표적인 식민주의 사학자이자 교육 관료였던 시데하라 다이라(幣原坦, 1870~1953)의 수집 기증본이다. 1책이지만 권내는 「啓臚年條」(4~13쪽)와 「統營啓錄便攷」(14~108쪽) 2篇으로 나뉜다. 주목되는 것은 앞의 「계등년조」는 계본등록의 연조를 의미하는 것이며 실제로 충무공부터 신헌(申櫛)(187대, 1811~1884) 통제사까지의 계본 유무를 밝히고 있다는 사실이다.<sup>40)</sup> 물론 기재양식은 기존의 『통제사선생안』을 따르고 있지만 7인의 재임 중 졸서(卒逝)한 통제사를 기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기(付記)된 것이 4갈래이다. 계무(啓無), 곧 계본이 없는 경우가 26건, 계소(啓蠲), 즉 계본에 쏘이 슨 경우가 9건이다.<sup>41)</sup> 또한 분량이 작아서 묶은 병합부(并合付)가 3건이며 반대로 분량이 많아서 나눈 계이권(啓二卷)이 2건이다.<sup>42)</sup> 이는 1593년 8월 충무공이 통제사에 오른 이후 통제사 신헌의 이임(移任) 때인 1863년 당시까지 대략 270년간 160인 내외의 통제사 재임기의 계본이 남아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sup>43)</sup> 하지만 각종 연대기류나 문집에 일부 옮겨 실은 경우와 <표 1> 19, 25, 28과 <표 2> 30의 4건을 제외하고 별책의 계본으로 현존하는 것은 앞의 3책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19세기 중후반의 것들이다. 2편의 계록 본문은 대부분 통제영에서 중앙 관부

36) 계명대도서관 소장본. 1책 필사본(33.8×22.1cm), 정조 22년(1798) 11월~정조 24년(1800) 5월. 임률의 통사 발령일은 10월 3일이고 교서를 받은 것이 11일이다. 하직일이 11월 11일이며 부임일은 25일이다.

37) 「討邪學教音」은 당시 대제학 李晚秀(1752~1820)가 製進한 글로 그의 문집 『履園遺稿』 卷之五 賜笏集 頒教文)에 도 옮겨 실고 있는데 1801년 5월 辛酉 邪獄 때의 산물이며, 「仁同逆徒按覈跋辭」는 영남 안핵사를 역임했던 李書九(1754~1825)의 장계로 『승정원일기』 30조 즉위년 9월 23일 임인조에 축약 수록되고 있다. 「掛書獄案按覈跋辭」와 「罪人等結案」는 역시 영남 안핵사 韓用鐸(1759~1817)의 장계로 『승정원일기』 30조 1년 12월 26일 무진조에 축약 수록되고 있다. 따라서 필사 시기는 통사 임률의 퇴임 이듬해 말 이후로 보인다. 4건의 별건 장계가 추록된 것은 이 무렵의 보직이 禁軍別將이나 左捕將을 역임한 것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한다.

38) 『정조실록』 51, 정조 23년 2월 20일 무신; 『승정원일기』, 정조 23년 2월 22일 경술; 『승정원일기』, 정조 23년 5월 5일 임술; 『승정원일기』, 정조 24년 윤4월 5일 정사; 『비변사등록』 190, 정조 24년 윤4월5일; 『비변사등록』 190, 정조 24년 2월 27일.

39) 日本 東洋文庫 소장의 1책 필사본(34.3×21.4cm). 2017년 현재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의 해외한국학자료센터의 웹상에서 열람 가능하다.

40) 계본연조에 기재된 기간을 『통제사선생안』의 재임기와 대조해 보면 거의 유사하거나 대체로 길다. 이 점은 부임과 이임 기간을 포함한 계문의 실제 수록에 주안을 둔 것으로 보인다. 35~36대 통사인 金鹿海와 柳廷龢 사이에 통제사를 역임했던 邊士紀(재임 기간: 1648.3~1649.12)가 이임 후 수원부사로 있다가 1651년 金自點의 獄에 연루되어 죽임을 당한 뒤로 선생안에서 아예 삭제되었는데 '先生案無而啓有'을 부기하여 실제로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통제사 신헌의 재임기(1861.2~1862.12)에는 총렬사 소장의 明朝八賜品을 그려 병풍으로 제작하기도 했고, 秋史의 매제자

로 그 문하생들의 교류가 활발했던 정황을 미루어 역대 통제사의 계본을 수습하는 작업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엿보인다. 다만 위 등록에서 보듯이 비록 축약된 것이기는 하나 18세기 초반에서 끝난 점은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41) 전자는 再任의 충무공·李時言·柳玟 통제사 3인(3~5대)을 필두로 17세기 간에 20건, 18세기 초엽과 후반에 각기 3건씩이다. 후자는 元均(2대)을 제외한 나머지 8건 모두가 역시 17세기에 해당된다.

42) 병합부는 成佑吉·李廷彪·李英(11~13대) 3인의 경우이다. 성우길의 1년 4개월 재임, 病死로 인한 뒤 2인의 재임기가 합쳐서 8개월 남짓에 불과하다. 계이권은 만기 교체한 趙徽(107대)과 만기 仍任한 申大猷(154대)의 두 경우이다.

43) 김현구, 『통제영계록(統制營啓錄)』 해제, 『국역 각서등록』 50(경상도편10),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15

44) 국사편찬위원회, 『각사등록』 17, 경상도편7, 1985. 총 8책으로 책의 크기는 41.3×31.3cm이고, 비변사에서 편찬하였다. 『통영계록』의 원본은 2책 필사본(31.3×19.6cm); 1책: 고종 16년(1879) 2월 30일~순 12월 14일] [111장], 2책: 고종 17년(1880) 2월 9일~고종 19년(1882) 8월 18일, 국립중앙도서관에 복사본이 소장되어 있다.

에 올린 장계가 주로 수록되었으나 일부 중앙과 지방관(경상감사나 고성현령 등)의 관문(關文)이나 첩정(牒呈) 등도 실려 있다. 28인의 통제사의 장계 79편이 등재되어 있는데, 정부현(鄭傳賢)(46대, 1664.3~1666.11)과 원상(元相)(61대, 1682.3~1684.2) 두 통제사가 각기 7편으로 최다 수록자이다. 기두어와 끝의 투식구가 생략된 것은 『통영계초』와 같지만, 대체로 발급 연월과 통사명이 기재된 점과 표제가 따로 없는 것이 다른 점이다. 무엇보다 가장 큰 차별성은 이두어가 빠졌고, 대개 비국(備局)의 회계(回啓)나 판하문(判下文)이 함께 실려서 장계 1편의 완결성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단편적이거나 17세기 초엽에서 18세기 초까지의 통제영 현황을 살필 수 있는 데 큰 의미가 있으나, 초반의 연도별 순서가 뒤섞여 있고 아쉽게도 원문 그대로가 아니라 요약본이며 필사자의 의도에 따른 발췌본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그렇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계본이 실재하는 년조(年條)에서 채록(採錄)한 것은 분명하다. 아마도 일정 시점에서 통제영의 계록을 실사하고 점검한 것으로 보이며, 후속 결과 처리까지를 담은 점에서 통제영 자체에서 등사되어 엮인 것이 아닐까 짐작된다.

그런데 이미 언급했듯이 『통영계록편고』에서 밝힌 일부와 하한선인 신현 이후의 『통영계록』이 일부 남아있다. 즉 규장각 소장의 『統制營啓錄』과 일본 천리대 도서관 소장의 『통영계록』이 그것이다.<sup>44)</sup> 총 8책의 『통제영계록』은 제1책은 현종 13년(1847) 1월 28일부터 현종 14년(1848) 1월 27일까지이고, 제2책은 철종 4년(1853) 8월 26일일부터 철종 6년(1855) 3월 22일까지의 기록이다. 제3책에서 8책까지는 모두 고종 시기의 것인데, 제3책은 고종 7년(1870) 3월 18일부터 고종 8년(1871) 11월 29일까지이다. 제4책은 고종 9년(1872) 11월 2일부터 고종 11년(1874) 2월 12일까지이다. 제5책은 고종 18년(1881) 1월 1일부터 고종 19년(1882) 4월 29일까지이다. 제6책은 고종 19년(1882) 12월 1일부터 고종 22년(1885) 2월 25일까지이다. 제7책은 고종 23년(1886) 3월 30일부터 고종 25년(1888) 2월 10일까지이다. 제8책은 고종 25년(1888) 3월 16일부터 고종 27년(1890) 3월 3일까지이다.

『통영계록』은 일제강점기의 대표적인 식민사학자였던 이마니시 류(今西

龍, 1875~1932)의 기증본이다. 통제사 정락용(鄭洛鎔)(199대, 1827~1914)<sup>45)</sup>의 재임기(1879.2~1882.6.18)의 소산으로 수록된 문건의 기간이 그보다 다소 길다. 임란 당시의 충무공을 제외하고는 208인의 통사 가운데 3년 6개월간의 최장수 재임을 하였다. 계록의 분량이 가장 많은 것은 이런 까닭이다. 부임 초년을 담은 제1책(1879.2.30~12.14) 외에 제2책의 겹표지는 '統營日記'라 쓰여 있다. 제2책은 규장각 소장의 『통제영계록』의 제5책과는 겹치는 기간을 뺀 나머지 기간(1882.5.13~순 8.18)과 중복되지 않는 제1책과 함께 재임 기간을 보완하는 셈이다.<sup>46)</sup> 아울러 『통제영계록』이 승정원을 거쳐 비변사에서 정리된 정보(正本)인데 비하여, 『통영계록』은 초본(草本)의 성격을 지니므로 상호 대조를 통한 비교 분석의 근거가 된다.<sup>47)</sup>

□ 표 5 19세기 후반 역대 통제사 一覽<sup>48)</sup>

대수	인명	본관	생몰연대	재임기간	품계	교체사유	비고
176	徐相五	達城	1801~1857	1847.1~1848.1	嘉義	轉任交替	157대 英輔의 孫
180	李圭徽	全州	1801~1884	1853.8~1855.4	嘉義	罷免交替	135대 敬懋의 從孫
192	鄭圭應	東萊	1800~1871	1870.3~1871.10	資憲	卒替	僉使 宅恒의 子
193	蔡東健	平康	1809~1880	1871.12~1874.2	資憲	滿期交替	捕將 學永의 子
194	李周喆	全州	1806~1875	1874.2~1875.3	崇政	彈劾交替	僉使 思謙의 子
195	權容燮	安東	1820~1877	1875.3~1876.3	嘉善	轉任	駿祐의 子
196	李鍾承	全州	1828~?	1876.4~1876.11	嘉善	轉任	180대 圭徽의 子
197	申 桓	平山	1823~1886	1876.12~1877.3	嘉善	奔喪辭任	亞將 命溫의 子
198	李圭爽	德水	1835~1894	1877.5~1879.2	嘉善	滿期交替	172대 升權의 孫
199	鄭洛鎔	延日	1827~1914	1879.1~1882.6	嘉善	滿期轉任	防禦使 寅基의 子
200	鄭岐源	延日	1809~1886	1882.6~1882.10	崇政	轉任交替	台樂의 子
201	李元會	廣州	1827~1895	1882.12~1885.1	嘉善	辭替	南兵使 基錫의 子

45) 조선 후기의 대신·친필. 본관은 연일. 자는 景龜. 호는 之圃이며 방어사 寅基의 아들이다. 1855년 廷試에 무과 급제한 이래 내외의 요직을 거쳐 晩년에는 중추원의장과 공내부특진권을 역임하였으며, 경술국치 후 일제의 남작 작위를 받았다. 그의 통사 재임기인 1880년 1월에는 公貨 및 屯稅 8만 냥 중 58,000여 냥을 거두지 못하여 推考되기도 하였고, 4월에는 扇庫에서 불이나 진상할 부제가 거의 5만 자루가 불타기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迎送의 폐를 들어 그해 말에 임임이 되었다.

46) 규장각본은 정 통제사의 임임이 확정된 1880년 12월 29일 이후의 2기 부분을 담고 있다.

47) 천리대본은 기두의 승정원개탁과 투식어의 종결어미가 생략된 채 기재되고 있다. 아울러 1882년 4월 13일 발급된 舟師都試의 결과 成冊 이후 규장각본은 4월 29일자 장계가 2건 있으나, 천리대본은 5월 13일자 장계로 바로 건너뛰고 있다. 그리고 임기가 끝난 1882년 6월 18일 이후 8월 18일자의 최종 장계를 포함한 9건이 더 수록되고 있다. 이것은 후임 통사 정기원의 재임이 5개월 남짓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합록을 했을 여지가 있고, 천리대본은 통제영 보관용임 가능성이 높다.

48) 표의 배경에 음영 부분으로 처리된 통제사가 『통제영계록』 총 8책의 순서대로 재임한 이들이다. 나머지 부분의 통제사 재임기가 주로 『統制營關牒』이 수록된 시기이기도 하다. 규장각 소장의 2책 필사본(35×28.8cm), 1책: 고종 8년(1871) 12월~고종 16년(1879) 1월, 2책: 고종 20년(1883) 1월~고종 29년(1892) 4월.

49) 외직으로 무반의 최고위직인 大將에 오르는 것을 말함. 통제사와 진무사(鎭撫使)가 그 예임.

202	鄭雲翼	延日	1818~1886	1885.2~1886.1	嘉善	轉任交替	府使 驪源의 子
203	李奎顏	德水	1814~?	1886.3~1887.12	資憲	轉任	167대 恒權의 叔父
204	閔敬鎬	驪興	1822~1895	1888.3~1890.3	嘉善	滿期交替	207대 泳玉의 姪
205	鄭驥澤	延日	1845~1905	1890.3~1891.12	嘉義	轉任	承旨 雲星의 子

『통제영계록』의 각 책의 수록 기간과 당시의 통제사 재임기를 대조해 보면 제5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임 기간과 일치하고 있다. 거의 2년분이 빠져있는 제5책은 앞서 밝혔듯이 다행히 『통영계록』 두 책으로 공백을 메꿀 수가 있다.

특히 총 8책 중에서 주목되는 것은 제3~4책이다. 분량이 많기도 하지만, 이 무렵이 통제사의 지위가 격상되어 외등단(外登壇)에 오른 시기이자, 고성 현이 부(府)로 승격됨과 함께 통제영 성내(城內)로 이설되었다가 옛 읍터로 되돌아간 시기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sup>49)</sup> 그러므로 계록상의 사안들이 전형적인 군문의 모습을 보였던 앞 시기나 빈번한 이양선의 출현과 함께 개항기의 격랑 속으로 옮겨간 뒷 시기와는 다소 차별성을 보인다.

□ 표 6 계록의 재임·등재기간

대수	인명	본관	생몰연대	재임기간	품계	교체사유	계록 등재기간
1	이순신	덕수	1545~1598	1593.8~1597.2	正憲	被逮	1593.12~1594.4
3	〃	〃	〃	1597.8~1598.11	資憲	戰死	啓無
7	이운룡	재령	1562~1610	1605.8~1607.6	嘉善	瓜遞	1605.12~1607.6
149	임 툸	풍천	1738~1804	1798.11~1800.5	〃	辭遞	1798.11~1800.5
176	서상오	달성	1801~1857	1847.1~1848.1	嘉義	轉任	1848.正~1848.正
180	이규철	전주	1801~1884	1853.8~1855.4	〃	罷免	1853.8~1855.4

지금까지 다룬 현존 『통영계록』을 『통영계록편고』의 기사와 대조해 보면

충무공의 계록은 1593년 12월 말경부터 1594년 3~4월분(『충민공계초』와 『충무공전서』에만 등재)까지와 일치한다. 아울러 재임기에는 남은 계록이 아예 없다. 이러한 현황은 『충무공전서』에만 담긴 5건의 장계도 일단 이 범주 안에 있다고 봐야할 것이다.<sup>50)</sup> 그리고 1593년 12월 이전과 재임기의 계록이 없는 것은 전시체제하에서 계록이 제대로 수습되기 어려웠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여겨진다. 『계본등록』에는 이미 1605년 9월 15일자 발병부(發兵符) 발부의 계본을 시작으로 11월 말경까지 15건의 장계(계본 1건 포함)가 있음에도 등재기간에는 12월부터 시작되고 있다. 이에 비하여 『통영계록』의 임물을 비롯한 3인은 재임기와 등재기간이 일치한다.<sup>51)</sup> 이임과 부임 시기의 공백기는 실제 현지 도착과 교귀(交龜) 과정에서 지체될 수 있고, 앞서 보았듯이 때로는 통영 우후(중군)의 대행체제가 가동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 V. 맺음말

지금까지의 논의와 검토를 통하여 몇 가지 문제를 가늠할 수 있을 것 같다. 즉 장계와 계본을 등록 형태로 엮은 경우에는 『-계록』의 표제가 가장 무난한 것이 아닐까 한다. 「장계등록」이나 「계본등록」의 호칭은 합철된 계문의 성격에는 부적합하며 양자를 아우르는 차원에서 『-계록』으로 부르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계초』의 뜻은 초본(草本)의 의미 외에 ‘베끼다’라는 뜻도 지니므로 통용되어도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sup>52)</sup> 다음으로 각종 연대기류와 문집에 전재된 계문은 이두문이 생략되고 축약된 경우가 많으므로 그 대의는 살아있을지 모르나, 해독할 때 지방의 현장성이 강한 특성을 여실하게 보여주지 못하는 경향이 많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른바 ‘이두식 변격한 문’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기도 하다.<sup>53)</sup>

나아가서 사료 발굴에 대한 각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근래 들어 국가 차원의 지원에 힘입어 해외 소장 자료에 이르기까지 주요 연구기관의 고(古) 전적(典籍) 수집과 웹자료화가 활발한 편이지만, 비장된 자료의 발굴과 체계적 정리는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다.<sup>54)</sup> 특히 지방 단

50) 실제로 충무공이 초대 통제사의 보임을 맡은 것은 1593년 8월이고, 敎書를 받은 것이 그해 10월 9일이다. 『충민공계초』에서 단함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遷營狀』, 제하의 윤11월 17일자 계본이다. 『임진장초』와 『朝鮮史料叢刊第六』(조선사편수회, 1935)에서는 윤11월 21일자 계본의 상단 첨기와 앞머리에 ‘癸巳十月初一日兼三道水軍統制使敎書到付故始用’을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78건의 계문 중 통제사 재임기의 것은 41건이다.

51) 서상오의 재임 하한은 1848년 1월 28일인데 마지막 장계 발급일은 27일이다. 이규철의 마지막 장계 발급일은 3월 25일이다.

52) 노승석, 앞의 글, p.5

53) 심경호, 「고문서의 역사문화적 가치와 역주를 통한 의미의 확장」, 『藏書閣』 36, 한국학중앙연구원, 2016



54) 신현의 未整稿 문집에도 무관 고위직을 역임한 관력과 시대상을 반영한 계문이 다수 수록되어 있다. 한국학문헌연구소 편, 『申櫛全集』 상·하, 아세아문화사, 1990; 노영구, 「신현의 國防論과 해안 鐵臺 건설」, 『문헌과 해석』 48, 태학사, 2009; 임슬기, 「『申大將軍集』에 나타난 儒將 申櫛(1811~1884)의 禦洋論」, 충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5;

55) 심경호, 앞의 글, p.99; 김현영, 「고문서 개념의 수용과 전근대 아카이브즈 자료의 정리」, 『史學研究』 95, 한국사학회, 2009, pp.121-128

위의 행정부서 내지 유관기관에 상근전문요원(학예직)을 확보하여 역사문화 자료의 개발과 축적을 통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끝으로 고문서학 내지 기록학 차원에서 말한다면 각종 등록류에 대한 연구의 확장과 함께 ‘출처주의(出處主義)’ 원칙을 살려 고문서의 본질적 가치가 복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sup>55)</sup>

## “조선 후기 『狀啓』의 운용과 실제”에 대한 토론문

윤 정  
진주교육대학교

본 논문은 『충민공계초』의 역사적 성격을 논의하기 위하여, 정부 중앙기관과 지방기관의 문서수발체계에서 생성된 문서 가운데 장계와 계본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장계의 생성과 운용은 물론 장계 원본의 현황을 관련 문서(등록)와 소장과 내용 등 관련 사항을 함께 폭넓게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충민공계초』 등 관련 문화재의 성격을 해명하는 데 주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한다. 토론자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읽는 도중 느끼게 되는 의문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1. “II. 계문과 등록의 전개”에서

논문의 필자는 『충민공계초』의 성격과 관련하여 『충민공계초』를 “각 지방의 감영·병영·수영 등에서 조정에 올린 장계를 편철하여 제작한 기록물로, 원본을 그대로 편철한 것이 아니라 원문을 베껴 일자별로 새롭게 정리한 것”인 『장계등록』으로 전제하여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본 토론자는 『충민공계초』가 과연 ‘각 감영·병영·수영이 생산의 주체로서 승정원과 비변사에서 생산과 관리를 주도’한 『장계등록』인가 의문이 들었다. 필자는 기존의 연구성과를 활용하여 『비변사등록』, 『각사등록』, 『수교등록』, 의궤류 등과 함께 『장계등록』을 등록류로 제시하고 국립해양박물관 소장 『충민공계초』를 『장계등록』의 일종으로 파악하였다. 하지만 토론자의 생각으로는 위의 등록류들은 대체적으로 규장각, 장서각, 아문 등 조선정부의 공식 문서 수발체계에서 생성되어 관리·소장되어 있는 것이다. 『충민공계초』의 원소장처가 종가로 알려져 있는 만큼 이것을 정부의 등록류로 파악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충민공계초』에 실린 후반부의 글은 주목을 요한다. 『충민공계초』는 68건의 장계를 등서한 후 바로 이어서 3편의 글을 등서하고 있다. 즉 69, 70, 71번째의 글은 이순신의 비명(碑銘)과 사기(祠記), 유사(遺事)이다. 이러한 글이 함께 합철되어 있다는 것은 “충민공계초”라는 표제의 본서가 (어떠한 목적이나 계기에 따른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종가에 소장된 문서를 등서하여 성책한 것이라는 심증을 가지게 한다. 이에 『충민공계초』는 국가의 문서수발체계 과정에서 생성된 등록(騰錄)류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지 않은가 한다.

## II. “III. 장계의 운용 사례”에서

필자는 1987년부터 간행된 고문서 자료들 가운데 장계 원본이 수록된 현황을 제시하고 그 성격을 논하고 있다. 이 책들은 규장각, 장서각,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간행된 것으로 해당 기관과 개별 문중에서 소장된 문서를 모아 분류하여 간행한 것이다. 이와 함께 기존의 연구에서 문서수발체계를 보여주는 자료로 분석된 제주목사·전라도관찰사·경기도·경기도 관찰사, 경상우병영과 경상좌수영, 압행어사의 장계류를 제시하였다.

본 토론자는 앞에서 제시한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에서 종가의 문서와 국가기관의 자료는 분류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즉 종가의 문서는 생산자가 장계(狀啓)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문서(초본과 정본, 등사본)와 이후 특정한 목적에서 전사되어 성책된 문서(전사본)로 구성되며, 국가기관에서 소장된 문서(『畿營狀啓騰錄』 등)는 각 기관(책임자 포함)이 문서를 생산, 행이(行移)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공문서로서 그 성격에 차이가 있다.

## III. “IV. 통제영의 장계와 계본의 실제”에서

필자는 『충민공계초』를 통제영에서 생성한 장계와 계본의 등록으로 전제하여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우선 이순신의 장계자료로 알려진 『충무공임진장계』(국립해양박물관 소장), 『충무공계초』(해군사관학교박물관 소장), 『충무공계본』(규장각 소장), 『충무공전서』(현충사 소장)의 관련 자료를 제시하고 5종의 장계류에 대한 교감 작업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이어서 “『충무공전서』에서 70여 건의 ‘계본(啓本)’을 ‘장계(狀啓)’로 분류한 데 대한 오류를 지적하고 ‘壬辰啓本(騰錄)’이라 해야 할 것”이라는 기존의 연구를 차용하여 적절한 표제의 설정을 위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사소한 문제이지만 토론자는 『충무공전서』의 “장계(狀啓)” 분류에 대해 맥락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충무공전서』는 정조(正祖)의 왕명에 의해 편찬된 문집으로 정조대 편찬된 다른 신료들의 문집과 동일하게 그 편찬 목적이 문서의 분류와 보존에 있지 않다. 이에 현대적 의미에서 문서의 정확한 분류형태를 편목으로 삼아야 한다는 전제 아래 “壬辰啓本(騰錄)”이라 함이 함당하다는 필자의 논리는 『충무공전서』를 편찬한 정조대의 역사상(歷史相)을 사상(捨象)시킬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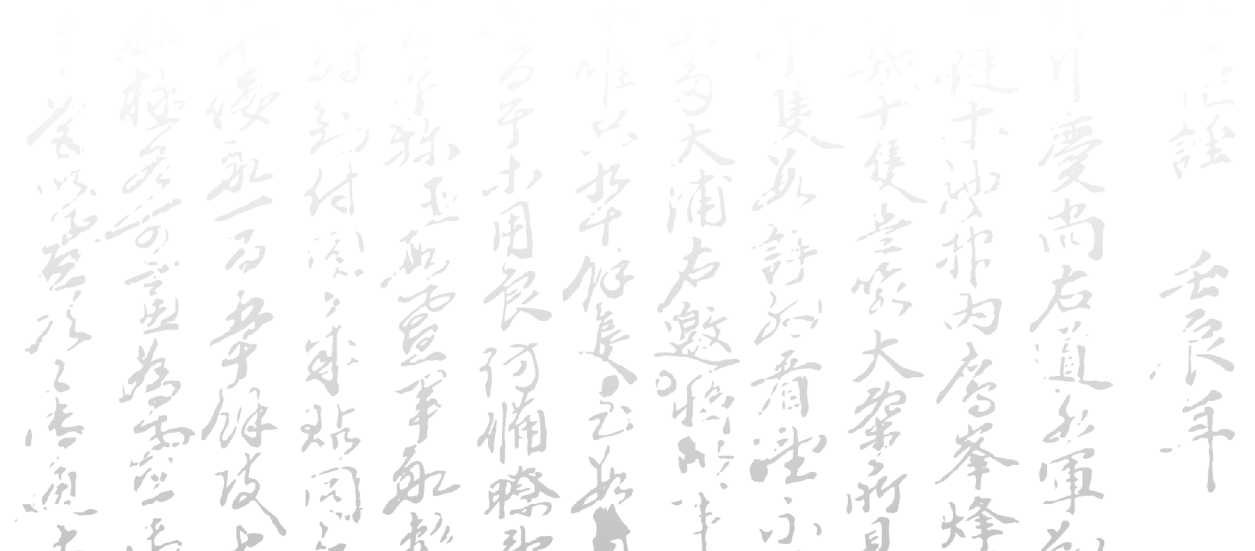
“충민공장계초”의 적절한 표제 설정이라는 일견 타당해 보이는 제안도 현재적 관점에서의 새로운 왜곡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하는 우려가 든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가 논의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제시한 통제사 이운룡(李雲龍)의 『啓本騰錄』(선조 38.09.15~39.07.22, 39.07.20~40.06.01), 임률(任崑)의 『統營啓草』(정조 22.11~24.05)는 종가의 문서이며, 『統營啓錄』(幣原坦, 시데하라 다이아 수집본), 『統制營啓錄』(今西龍, 이마니시 류 수집) 등은 통제영과 비변사 등 국가기관에서 생성·관리된 문건으로 보인다.

이에 본 토론자는 앞에서 누차 지적한 바와 같이, 종가의 전사본과 국가기관에 의해 생성된 문건은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때문에 마무리에서 제시된 것처럼 국립해양박물관 소장 『충민공계초』의 경우 『-계록』으로 규정하자는 논의에 대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은가 한다.

## II. 이순신의 狀啓를 통해 본 임진왜란

신윤호

토론문 김강식



臣謹 壬辰年  
臣慶尚右道水軍使  
臣才沙排丙居峯烽  
臣十隻堂大第所目  
臣隻如討敵看望小  
臣多大浦右邀物所  
臣唯以抄平好長云如  
臣方子亦用良河備勝  
臣年孫玉無右軍水  
臣到付送之求姑同  
臣後永一石抄解攻  
臣勝名可言出為示  
臣當以忠義為志通

# 이순신의 狀啓를 통해 본 임진왜란

신윤희  
해군사관학교

- I. 머리말
- II. 초기 해전의 양상과 朝·日 수군 전력
- III. 수군의 구성과 의병의 역할
- IV. 일본의 전략 변화와 왜성
- V. 맺음말

## I. 머리말

동아시아 삼국전쟁으로서 임진왜란은 당시국인 조선·명·일본의 국운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조선은 전쟁이 벌어진 현장으로 국토가 황폐화 되고, 많은 백성들이 희생되었다. 명은 국력이 소진되고 내정이 불안정해지며 청나라에 중원을 내어주는 파란을 겪게 되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사망 이후 도요토미씨[豊臣氏]가 멸문하고 도쿠가와씨[德川氏]가 정권을 장악함으로써 약 260여 년의 에도막부 시대를 열게 되었다.

임진왜란 7년의 역사는 정치·문화·국제관계 전반에 걸쳐 큰 변화의 계기가 된 만큼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고 앞으로도 끝없는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믿는다. 연구를 위한 임진왜란 관련 사료(史料)는 한·중·일 각국에 산재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사료는 전쟁의 현장에서 보고 들은 것, 또는 직접 경험한 것 등에 대한 기록일 것이다. 따라서 조선에 가장 많은 사료가 남아있음은 물론이거니와 그 가운데 세밀하고 방대한 정보를 내포하고 있는 이순신의 장계(狀啓)에 관해 살펴보려고 한다.

현재 전해지는 이순신의 장계는 작성 시기를 알 수 없는 2본<sup>1)</sup>을 제외하면 1592~94년 사이의 것인데, 전라좌수사로서 또는 삼도수군통제사로서 선조에게 올린 보고서이다. 장계를 통해 보는 임진왜란은 곧 이순신의 관점으로 보는 임진왜란이라고 할 수 있다. 수군 최고지휘관으로서 전장에서의 경험과 고급정보를 토대로 그가 전쟁을 바라보는 관점은 현재의 우리에게 임진왜란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장계의 대체적인 내용은 전투의 경과, 정찰을 통한 적진의 동향, 우리 군사의 내부 실상 등이다.

본고에서는 장계를 통해 우리 군사 내부의 실상과 일본군의 전략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조선과 일본 수군의 실체를 살펴봄으로써 해전의 결과를 이해하고자 한다. 둘째, 조선의 군사제도가 실제 적용되는 사례를 소상히 밝혀, 수군의 구성 성분을 알아 보고자 한다. 셋째, 일본군의 전략 변화와 그 전략이 전투 현장에서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 알아볼 것이다.

## II. 초기 해전의 양상과 朝·日 수군 전력

임진왜란 이전, 일본이 침략해 올 것이라는 징후는 여러 해에 걸쳐 전해졌다. 조정에서는 일본의 침략에 대비하여 하삼도(下三道)를 순찰하여 방비하도록 하였으니 김수를 경상감사로, 이광을 전라감사로, 윤선각을 충청감사로 삼아 병기를 준비하고 성지를 수축하게 하였다. 방비는 특히 일본과 가까운 경상도에서 집중적으로 진행되었는데, 영천·청도·삼가·대구·성주·부산·동래·진주·안동·상주·좌우병영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였다.<sup>2)</sup>

이와 같이 육전(陸戰)에 대한 대비책만 세웠던 이유는 일본의 군사에 대해 무지했기 때문이다. 일본의 침략에 대비한 조선 조정의 논의 과정에서 일본은 섬나라이므로 수전에 강하고 육지에 오르면 불리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오로지 육지의 방어에 중점을 두었던 것이다.<sup>3)</sup> 그러나 임진왜란이 발발했을 때 일본은 육상에서 승승장구하였고 오히려 해전에서는 처음 경상우수군을 와해시킨 것을 제외하면 임진년 내내 연패하였다. 일본은 전국시

1) 『이충무공전서』, 권4, 狀啓3, 「封進鳥銃狀」·「請送醫救痛狀」

2) 『懲愆錄』, 권1, “朝廷憂倭 擇知邊事宰臣 巡察下三道 以備之 金睟爲慶尙監司 李洸爲全羅監司 尹先覺爲忠淸監司 令備器械 修城池 慶尙道築城尤多 如永川 淸道三嘉大丘星州釜山東萊晉州安東尙州左右兵營 或新築 或會築…”

3) 『선조수정실록』, 권25, 선조 24년(1591) 7월 甲子(1일)

4) 조원래, 『임진왜란사 연구의 새로운 관점』, 아세아문화사, 2011, pp.223-235; 이민웅, 『임진왜란 해전사』, 청어람미디어, 2006, pp.73-78

5) 『이충무공전서』, 권2, 狀啓1, 『玉浦破倭兵狀』

6) 위의 책, 권2, 狀啓1, 『請反汗一族勿侵之命狀』

대를 거치면서 수많은 전란을 경험하였으나 국내에서만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해상에서 싸운 경험은 거의 없는 형편이었다. 당시의 일본에서 ‘해상작전’의 개념은 군사 및 군수품을 선박으로 수송하는 병참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었다.<sup>4)</sup>

일본이 조선 수군에 관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해전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조선에서도 이러한 일본 수군에 대해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으니 임진년 해전을 통해서야 비로소 수군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전력 보강에 힘을 기울였다. 이순신이 올린 장계의 관련 내용을 살펴보자.

㉗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적을 막는 방책에 있어서 수군이 작전을 하지 않고 오직 육전에서 성을 지키는 방비에만 전력하였기 때문에 나라의 수백 년 基業이 하루아침에 적의 소굴로 번지게 된 것이니 생각이 이에 미치매 목이 매어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적이 만약 뱃길로 본도를 침범해 온다면 신이 해전으로써 결사적으로 담당하겠으나 육지로 침범해 오면 본도의 장사들은 戰馬가 한 필도 없어서 대응할 도리가 없습니다.<sup>5)</sup>

㉘ 비변사에서 전지를 받고서 보내온 공문 내용에, “근래에 와서 적을 토멸하는 데는 해전만한 것이 없으니 전선의 수를 넉넉하게 더 만들도록 하라” 하였사온바, 전선은 비변사의 공문이 도착하기 전에 신이 이미 본영과 여러 진포에 명령하여 많은 수를 더 만들도록 하였습니다.<sup>6)</sup>

㉗는 1차 출전인 옥포·합포·적진포해전에 대한 승전 보고로 임진왜란 이전에 육전의 방비에만 치중하느라 수전의 방비를 소홀히 한 것을 비판함과 동시에 해전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첫 해전을 통해 일본 수군의 실체를 파악했기 때문일 것이다. ㉘는 조정에서도 수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선의 건조를 명한 것인데, 이후 1593년 8월 수군의 전력을 집중하고 효율적 운용을 위해 삼도수군통제사를 신설한 것 역시 수군 강화 정책의 일환이었다.

임진년 해전은 조선 수군이 일방적으로 승리하였다. 선조가 한성을 버리고 피난까지 가야했던 육전의 경우와는 판이하게 다른 양상이었으니 해전의 전개 과정을 통해 일본 수군의 전략과 화력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로 일본 수군의 전략을 살펴보자.

적선 500여 척이 부산·김해·양산·명지도 등지에 정박하고 함부로 상륙하여 연해변의 각 고을과 포구와 병영 및 수영을 거의 다 점령하였으며, 봉화불이 끊어졌으니 매우 통분합니다. 본도의 수군을 징발하여 적선을 추격하여 10척을 태워 없앴으나 나날이 병사를 끌어들이어 적세는 더욱 치성해져서 적은 많은 데다 우리는 적기 때문에 상적할 수 없어서 본영(경상우수영)도 이미 함락되었는지라 두 도가 합세하여 적선을 공격하면 상륙한 왜적들이 후방을 염려하게 될 것이니 귀도(전라좌도)의 군사와 전선을 남김없이 징발하여 당포 앞바다로 급히 달려와 주시오.<sup>7)</sup>

위는 원군이 이순신에게 구원을 요청한 문서로 4월 29일에 도착한 것이다. 임진왜란 초기 일본 수군은 주로 경상도 해안에 상륙하여 약탈하였을 뿐, 전라도 해역으로 진격하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4월 13일 최초로 부산 지역에 상륙한 일본군은 육로를 통해 북상하여 5월 2일 한성을 점령할 정도로 속전을 전개하였다. 그런데 해로의 경우, 전라좌수군이 첫 출전한 5월 4일까지도 일본군은 20여 일 동안 경상도 해역에 머무르고 있었다. 당초 일본 수군의 목적이 육상으로 진격한 군대의 보급로를 확보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sup>8)</sup> 원군의 군사가 후퇴하여 일본 수군의 동향을 살피며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1차·2차 출전에서는 일본군이 배를 정박해 놓고 약탈하던 중에 조선 수군이 나타나면 당황하여 급히 전투에 임하거나, 해안을 따라 달아나다 배를 버리고 상륙하는 일이 빈번하였다. 이처럼 조선 수군이 일방적 공세를 취하는 형세가 지속되다가 7월에 이르러서야 일본이 적극적인 태세를 갖추었다. 일본이 해전을 준비하게 된 것은 이러한 해상에서의 패전 소식을 접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령에 의해서였다. 이는 한산도해전으로 이어졌고, 이때

7) 위의 책, 권2, 狀啓1, 『赴援慶尙道狀』, 2

8) 曾根勇二, 『壬辰·丁酉倭亂の'海戰'と日本列島の状況について』, 『임란기 이순신장군과 호남민중의 활약상』, 전라남도·순천대학교박물관, 2016

9) 有馬成甫, 『朝鮮役水軍史』, pp.185-186

10) 佐藤和夫, 『水軍の日本史』下, p.310

일본 수군장은 와키자카 야스하루[脇坂安治]였다. 그가 육상전에 투입되어 용인 지역까지 진격해 있던 중 도요토미의 명으로 급히 남하하여 해전에 임할 정도였으니 당초 일본의 전략에는 해전에 대한 계획이 없었음을 말해 주고 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문제는 일본 수군의 화력이다. 이순신이 관찰한 일본선박의 구조는 '사면에 비단휘장을 둘러치고 긴 대를 줄줄이 꽂았으며, 작은 흥백기를 어지럽게 매달았는데 바람에 필력일 때 휘황찬란함이 눈부실 지경'이었다. 안택선으로 추정되는 이 선박은 전함으로서의 기능이 탑재되어 있지 않았다.

일본 측의 연구에 의하면, 도요토미는 한산도해전 이후 해전 대책으로 전선을 준비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운송선 가운데 대선을 전선으로 활용하려는 것이었다.<sup>9)</sup> 일본의 배는 기본적으로 해전용이 아니라 운송수단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속도와 적재능력이 중요시될 뿐, 전투수단으로는 한계가 있었다.<sup>10)</sup> 반면에 조선의 배는 처음부터 전투를 위해 만들었기 때문에 일본의 배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다. 우선 선체가 크고 두껍게 만들어 많은 인원과 화포 및 군수품을 적재할 수 있었다. 특히 화포를 이용하여 원거리 공격이 가능했다는 점이 승전 요인으로 꼽힌다. 이에 비해 일본의 배는 쾌속선으로서 좁고 길게 만들었기 때문에 화포를 구사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 III. 수군의 구성과 의병의 역할

임진왜란시 조선 수군의 활약은 전세의 판을 뒤집을 정도로 큰 영향을 미쳤다. 그 요인은 선박 및 화력의 우수성뿐 아니라 수군 구성원의 자질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수군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서는 배를 다룰 줄 알고 바다에 익숙한 군사가 필수적이었는데, 이에 적합한 대상은 연해 지역 백성들이었다. 이순신이 수군 전력을 보강하기 위해 전란기 내내 일관되게 노력했던 점은 첫째가 군역 대상자를 뽑아내어 관군을 확보하는 것이었고, 둘째는 의

병과 연계하는 것으로서 연해 지역의 백성들의 자발적인 참전을 유도하여 해전 참전 또는 후방 지원을 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관군과 의병을 막론하고 병력을 확보하는 문제로 육군과 수군이 갈등을 빚기도 하였다. 해전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조정의 군사정책은 수군과 육군을 교대로 배치하도록 조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순신은 당시 군사징발의 효율성 문제를 지적하면서 연해 지역 백성은 오직 수군으로만 징발해야 하는 당위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각 진·포에 입번할 수군의 수를 연해안에 있는 육군들과 바꾸어 배치한다면 해안에서 하루길 밖에 안 되는 거리 안에 사는 사람들은 배 부리는 일에 익숙하기 때문에 위급할 때에 쓸 수 있을 것이고, 사변이 있을 때에 징발하면 반드시 뒤떨어질 일도 없을 것이며 ... 산고을의 어리석은 백성들은 배 부리는 것이 능숙하지 못하므로 하루아침에 배 짓는 곳으로 몰고 나간다는 것은 다만 말은 직분이 바뀌게 되므로 일이 낭패될 뿐 아니라 짐을 꾸려 가지고 멀리 수자리를 지키러 가는 노고가 끝절이나 더한 것이다 ...<sup>11)</sup>

산촌 백성과 달리 해안의 백성들은 별도로 훈련하지 않더라도 즉시 수군으로서 운용이 가능했다. 어영담을 수군 조방장으로 임명해야 하는 이유로서 "바닷가에서 자라나 배에 익숙하고 영남과 호남의 물길 사정과 섬들의 형세를 역력하게 상세히 알고 있을 뿐 아니라..."<sup>12)</sup>라고 하였으며, 배경남의 경우는 "연해안인 강진 고을에서 성장한 사람으로 배에 대한 것은 조금 알고 있으므로..."<sup>13)</sup>라는 내용에 주안점을 두어 수군 군관으로 발탁하였던 것이다.

해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선을 비롯한 각종 무기 등의 장비를 필요로 하였기 때문에 연해 지역 의병들의 활동은 대체로 전라좌수군과 연계되어 있었다. 직접 수군에 투속되어 전투에 임하거나 이순신의 지휘·통제를 받으며 후방지원을 하는 양상이었다.

수군 소속으로 직접 전투임무를 수행한 인물들은 임진년 해전의 여러 승첩 장계 가운데 잘 나타나 있다. 수군 지휘부 가운데 전 봉사(前奉事)·전

11) 『이충무공전서』, 권4, 狀啓3, 「請量處水陸換防事狀」

12) 위의 책, 권3, 狀啓2, 「請以魚泳潭爲助防將狀」

13) 위의 책, 권4, 狀啓3, 「請以裴慶男屬舟師狀」

14) 조원래, 앞의 책, pp.264-265

15) 『이충무공전서』, 권2, 狀啓1, 「赴援慶尙道狀」二

16) 위의 책, 권3, 狀啓2, 「分送義僧把守要害狀」

17) 위의 책, 권4, 狀啓3, 「請賞義兵諸將狀」

권관(前權管)·전 만호(前萬戶)·전 현감(前縣監) 등 전직 관료 출신들과 급제(及第)·보인(保人) 등 무관(無官) 출신들이 의병으로 참전한 것인데, 여기에서 세운 전공으로 훈련원 주부(主簿)·부정(副正)·정(正) 등 관직에 제수되기도 하였다.<sup>14)</sup> 이 가운데 주목되는 부분은 급제 최대성·배응록의 사례인데, 임진왜란 발발 직후인 4월 말 이순신이 출전을 위해 편성한 전라좌수군 지휘부에 각각 한후장과 참퇴장으로 임명되어 있었다.<sup>15)</sup> 또한 며칠 후 옥포해전에서 유섭·이언량·김효성·이설·이응화·주몽룡 등의 활약이 확인되니 이미 임란 이전부터 의병과 연계되었거나 유사시 곧장 참전할 수 있는 수준의 연락망이 구축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임진년 4차에 걸친 출전으로 손실된 수군을 보강하기 위해 이순신이 의병을 모집하자 다양한 계층에서 자원종군하였다. 4백 여 명의 승려들과 진사·한량·교생 등 유생층도 참여하였다. 주요 임무는 역시 해전에 참전하거나 해안 지역 요해처를 파수하는 것이었다.<sup>16)</sup> 이순신은 이들의 활약상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의병장 순천 교생 성응지와 승장 수인·의능 등이 이런 전란에 제 몸의 편안을 생 각하지 않고 의기를 발휘하여 군병들을 모집하여 각각 300여 명을 거느리고 나 라의 치욕을 씻으려 하였는바, 참으로 칭찬할 만한 일일 뿐 아니라 수군의 진 중에서 2년 동안 스스로 군량을 준비하여 이곳 저곳에 나누어 주면서 간신히 양 식을 이어대는데, 그 부지런함과 고생스런 모습은 군관들보다 배나 더 하였으 되, 조금도 수고로움을 꺼리지 않고 지금까지 부지런할 따름입니다. … 순천에 사는 전 만호 이원남은 이번에 의병을 모집하여 거느리고 전선을 타고 와서 수군 에 소속되기를 청원하므로 방금 장수로 배정시켜 적을 무찌르게 하였음을 아뢰 옩니다.<sup>17)</sup>

위에서 언급한 인물들은 각자 수백 여 명의 의병을 이끄는 의병장으로서 자진해서 수군으로 들어와 수군력 증강에 큰 몫을 차지하고 있었다. 성응지·삼혜·의능 등이 이끄는 의병들은 1593년 2월 웅천상륙작전에서도 활약상이 드러났는데, 창검을 휘두르고 활과 화포를 쏘며 중일 역전하여 무수

한 적병을 사살하였다고 할 정도의 전과를 올렸다.<sup>18)</sup> 특히 순천 출신의 삼혜와 흥양 출신의 의능이 이끄는 승병들은 임진왜란 이후에도 그 조직이 지속되었다. 즉, 흥국사를 중심으로 300여 명의 상비군을 갖추고 전라좌수군으로 편제되었다.<sup>19)</sup> 이는 전라좌수군의 독특한 전통으로 이어졌으니 전란시 의승군(義僧軍)의 역할이 작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의병이 수군의 후방을 지원하는 임무는 군량 및 물자를 보급하는 등의 병참활동에 종사하거나 해안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전투하는 사례를 들 수 있다. 병참활동의 사례는 정사준·사횡·정원명·상명·정빈 등 순천부 사족 출신들의 활약상으로서 전란기 내내 전라좌수군에 군량 및 군수품을 조달하였다. 특기할 만한 것은 이들이 모은 의연곡(義捐穀)을 왕이 있는 의주 행재소까지 조달하였던 점이다.<sup>20)</sup> 정사준은 광양 전탄의 북병장으로 활동하기도 하였고<sup>21)</sup> 초종 제조법을 알아내어 만들어 올리기도 하였다.<sup>22)</sup> 해안가에서 독자적으로 의병단을 이끌고 이순신의 지휘·통제를 받는 사례는 의병장 신군안(申君安)이 대표적이다. 신군안은 정유재란시 향리에서 의병을 일으켜 흥양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중 이순신으로부터 의병장 차정문서(差定文書)<sup>23)</sup>를 받았다. 그 내용은 의병에 대한 지휘통솔권이 조정에서 수군통제사에게 부여되었다는 것, 의병활동의 전과를 치하하고 의병장으로 차정하였으니 더욱 분발하라는 것이다. 정유재란 당시 정규 수군의 기능이 약화된 상황에서 이러한 의병과의 연계는 실질적으로 수군력을 보완하는 방책이었다.

## IV. 일본의 전략 변화와 왜성

### 1. 일본의 2차 진주성 공략과 남해안의 동태

1593년 1월, 평양성전투에서 패배한 일본군은 한성까지 후퇴하였다. 전세가 바뀌자 조선 조정에서는 일본군이 곧 도망하여 본국으로 철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순신에게 명하여 돌아가는 적을 무찌르도록 하였다.<sup>24)</sup> 이에 조선 수군은 웅천을 공략함으로써 양산과 김해의 길을 막아 후방의 안전을 확보한 다음 부산으로 진격할 계획을 세웠다. 2월 18일부터 3월 6일 사이에 웅

18) 「난중일기」, 癸巳年 2월 22일; 『이충무공전서』, 권3, 狀啓2, 「討賊狀」

19) 신윤호, 「호좌수영지를 통해 본 전라좌수군의 운영과 충무공 현창」, 『충무공 이순신과 한국 해양』 3, 해군사관학교 해양연구소, 2016

20) 『이충무공전서』, 권2, 狀啓1 「裝送戰穀狀」·「裝送戰穀及方物狀」

21) 위의 책, 권2, 狀啓1, 「裝送戰穀狀」

22) 위의 책, 권3, 狀啓2, 「封進火砲狀」

23) 고흥군 두원면 대전리 고령 신씨 종가 소장 첩자로서 1597년 12월 이순신 친필문서이다.

24) 『임진장초』(조선사편수회編, 소화 10년), 狀20(만력 21년 정월 22일)·狀21(만력 21년 정월 25일)

25) 『이충무공전서』 권3, 狀略2, 『討賊狀』·『統船一艘擯覆後待罪狀』

26) 『日本戰史-朝鮮役-』, 參謀本部(復刻板, 1978), 文書 제96호

27) 위의 책, p.107(文書 제100호)

28) 『日本戰史-朝鮮役-』, 參謀本部(復刻板, 1978), pp.257-260(文書 제130호)

친의 적들을 공격하여 100여 명을 살상하고 조선인 포로 5명을 구출하였다. 그 과정에서 조선의 통선 1척이 전복되기도 하였다.<sup>25)</sup> 그러나 수군만으로 적을 완전히 섬멸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한편, 일본군은 패주하여 한성에 주둔하였고 군량도 부족하였다. 현 상황에 대하여 도요토미는 ‘부산과 도성 사이에서 적국(赤國, 전라도)의 견제를 받고 있기 때문’ 이라고 판단하였다. 즉 부산과 한성 사이의 번성(番城)으로 구축된 보급선이 전라도·경상도 의병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공격받아 보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본은 이를 타개하기 위한 책략으로 전라도 점령을 계획하였고 그 첫 번째 목표를 진주성으로 정하였다.<sup>26)</sup> 그런데 한성에 주둔한 일본장수 17인은 3월 3일 연서장에, ‘주둔지의 군량으로는 4월 11일까지 버틸 분량뿐이고 부산으로부터 군량을 운송하는 것 또한 곤란’하다고 보고함으로써 더 이상 한성에 주둔할 수 없음을 시사하였다. 이에 도요토미는 3월 10일 한성에서 군사를 철퇴할 것을 명하였고 동시에 진주성 공격을 지시하였다.<sup>27)</sup> 이 시점은 당초의 목표인 ‘정명가도(征明假道)’에서 ‘조선 지배’로 전략이 전환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북진을 포기하고 남부 지역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정책을 폈다.

1593년 4~5월 진주성 공격이라는 목표에 따른 작전 지시를 수차례에 걸쳐 내린 후 일본군은 5월 20일 총병력을 공성대와 수비대로 나누었다. 공성대는 진주성 공격을 위해 제1대~제5대까지 총 92,972명으로 편성하였다.

□ 표 1 공성대 현황<sup>28)</sup>

구분	주장(主將)	병력수
제1대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 등	25,624
제2대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 등	26,182
제3대	우키타 히데이에[宇喜多秀家] 등	18,822
제4대	모리 히데모토[毛利秀元] 등	13,600
제5대	고바야카와 타카카게[小早川隆景] 등	8,744
총 92,972명		

공성대 장수들의 면면을 보면 조선에 있던 일본군 장수들 가운데에서도 매우 유력한 인물들이었다. 조선 전역으로 침략했다가 모두 후퇴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 병력이 진주성 공략을 위한 작전에 투입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진주성을 지키는 병력은 김천일 등 의병 3천 여 명과 수만의 백성들 뿐이었다. 진주성은 1593년 6월 21일~29일까지 9일 간의 공방전 끝에 동쪽 벽이 붕괴되면서 함락되었다.

한편, 수비대의 임무는 진주성을 공격하는 공성대의 보급을 담당하였으며, 또 하나는 조선 수군으로부터 부산 본진을 방어하는 것이었다. 일본은 부산·김해·기장·거제도·가덕도 등 부산을 중심으로 그 주변을 둘러싼 방어선을 구축하고 그중 수군은 가덕도에 주둔하면서 거제도 주둔군과 협력하여 후일을 대비토록 하였다.

□ 표 2 수비대 현황<sup>29)</sup>

주둔지	장수	병력수	소계
부산성	모리 데루모토[毛利輝元]	3,000	6,990
	마시타 나가모리[増田長盛]	1,624	
	마에노 나가야스[前野長康]	922	
	가토 미쓰야스[加藤光泰]	1,097	
	하야카와 나가마사[早川長政]	347	
김해성	모리 시게마사[毛利重政]	520	520
기장성	가메이 코레노리[龜井眞矩]	1,336	1,336
거제도	하치스카 이에마사[蜂須賀家政]	4,500	14,380
	이코마 치카마사[生駒親正]	2,450	
	조소카베 모토치카[長宗我部元親]	2,590	
	후쿠시마 마사노리[福島正則]	2,500	
	도다 가츠타카[戸田勝隆]	2,340	
가덕도(수군)	구키 요시타카[九鬼嘉隆]	834	5,460
	가토 요시아키[加藤嘉明]	314	
	칸 미치나가[菅達長]	106	
	구루시마 미치후사[來島通總]	570	
	와키자카 야스하루[脇坂安治]	900	
	도도 타카도리[藤堂高虎]	1,473	
	호리노우찌 우지요시[堀内氏善]	574	
	스기타니 덴사부로[杉谷氏宗]	185	
	쿠와야마 카즈하루[桑山一晴]	504	
	쿠와야마 사다하루[桑山貞晴]		
총 28,686명			

29) 위의 책, pp.260-262(文書 제130호)



30) 『이충무공전서』, 권3, 狀啓2, 「逐倭船狀」·「陳倭情狀」

31) 『이충무공전서』, 권3, 狀啓2, 「陳倭情狀」

32) 臣所率 戰船四十二隻 伺候小船五十二隻 右水使李德禎所率 戰船五十四隻 伺候小船五十四隻…(『이충무공전서』, 권3, 狀啓2, 「請湖西舟師繼援狀」)

5~7월, 수군을 이끌고 동래·부산을 공격하라는 명령이 이순신에게 수차례 내려졌다. 이에 이순신은 원균·이억기와 합세하여 거제도 인근 바다에 결진하였고 육상군이 남하하여 창원과 웅천의 적군을 바다로 몰아내기를 2달가량 기다렸다. 당시 육상의 조·명 군사와 조선 수군이 연락하며 수륙합공작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진주성으로 진격한 9만 여 명의 공성대에 의해 진주·의령의 길이 막히면서 선산으로부터 왕래하던 연락선이 끊겼고 명군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작전을 실행하지 못하였다.<sup>30)</sup>

일본군은 군사력을 총동원하여 진주성을 공격함과 동시에 조선 수군의 공격에 대비하여 남해안 일대에 수비대를 배치하였다. 이순신이 탐색한 일본 수비대의 동태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다.

동으로는 부산으로부터 서로는 웅천에 이르기까지 100여 리에 서로 바라보고 보루를 쌓고 성채를 엮어서 벌이나 개미떼같이 진치고 있으니 참으로 통분합니다. … 지난 6월 14일 육지에서는 창원의 적들이 바로 함안으로 돌진하자 함안에 머무르고 있던 각 도의 모든 장수들이 의령 등지로 퇴각하였으며, 15일 바다에서는 적선 대·중·소선을 아울러 무려 7~800여 척이 부산·양산·김해로부터 웅포·제포·안골포 등지로 옮겨고 연일 잇대어 이르는 것이 현저히 수륙으로 나누어 침범할 양상이 있으므로 우리 수군들은 거제도 앞바다에 결진하면 외양으로 침범해 오는 적을 미처 달려가서 가로막지 못하였고, 외양에 결진하자니 안바다의 적을 미처 요격하지 못하겠으므로 거제땅 바깥바다의 두 갈래진 요충지와 작년에 대첩한 견내량과 한산도 등지에 진을 합하여 길을 막고 겸하여 안팎의 사변에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sup>31)</sup>

6월 14일 공성대가 창원에서 진주성으로 향하며 함안의 군사를 물리치자 다음날 수비대 7~800여 척이 해안가를 따라 서쪽 웅천 주변까지 이동하여 곳곳에 진을 치고 성을 쌓고 있었다. 이때 조선 수군의 규모는 전선·사후선 200여 척<sup>32)</sup>이었는데 한산도를 중심으로 결진하여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거제도 안바다, 즉 현재의 진해만으로 진격했을 때 일본 수군이 거제 외양(外洋)으로 침범해 올 경우 후방이 불안해지며, 거제 외양

으로 진격하면 안바다로 침범해 오는 적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함부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 이는 일본군의 규모가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조선 수군은 거제도의 내양(內洋)과 외양, 어느 쪽으로 침범해 오더라도 방어할 수 있는 한산도에 진을 치고 있었다.

6월 23일, 웅포 등지에 결진한 일본 수비대는 그 영역을 확장하여 거제도 영등·송진·장문·하청·가이 등지로 잇달아 옮겨와 소굴을 만들고 동서로 호응하며 서로 도왔다. 이순신이 “3도의 관옥전선이 겨우 100여 척이고 각각 소선을 거느리고 있는지라 저들은 많고 우리는 적으며 저들은 쉽고 우리는 어려운 형세이므로…”<sup>33)</sup>라고 하였으므로 조선 수군보다 병력이 많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주둔한 곳은 지형적으로 깊은 만(灣)을 끼고 호응할 수 있는 기각지세를 이루고 있으므로 선불리 진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일본 수비대의 이러한 방어선 구축은 조선 수군으로부터 부산 본진을 지키면서 진주성 공성대의 보급선을 확보하려는 전략의 일환이었다. 6월 29일, 진주성이 함락되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장수들의 공로를 치하하고 공성대와 수비대의 군사를 전면 재배치하여 각자의 위치에서 왜성을 쌓거나 수비하도록 하였다. 장기적으로 조선 점령의 실행 단계에 들어간 셈이었다.

□ 표 3 2차 진주성전투 직후 왜성 축성 및 군사 배치 현황<sup>34)</sup>

	왜성명	위치	축성 및 수비 장수
1	서생포왜성	울산시 울주구 서생동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
2	※ 서생포왜성 지성	미상	
3	임랑포왜성 (せいくわん城)	부산시 기장군 임랑리	모리 요시나리[毛利吉成]
4	기장왜성	부산시 기장군 죽성리	쿠로다 나가마사[黒田長政]
5	동래왜성	부산시 동래구 칠산동	깃카와 히로이에[吉川廣家]
6	부산왜성	부산시 동구 좌천동	모리 히데모토[毛利秀元]
7	박문구성(용미산성) ※ 부산왜성 지성	부산시 중구 중앙동	

33) “三道板屋戰船 僅至百有餘隻 各率小船 衆寡之勢 不同難易之形 …”(『이충무공전서』, 권3, 狀啓2, 「陳倭情狀」)

34) 『日本戰史-朝鮮役-』, 參謀本部(復刻版, 1978), pp.117-118·「附記」, pp.35-40; 『慶南研究』9,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13

8	죽도왜성(김해성)	부산시 강서구 죽림동	나베시마 나오시게[鍋島直茂]
9	구포왜성(감동포성) ※ 죽도왜성 지성	부산시 북구 구포동	
10	가덕왜성	부산시 강서구 놀차동	고바야카와 다카카게[小早川隆景] 다치바나 무네시게[立花宗茂]
11	가덕지성 ※ 가덕왜성 지성	부산시 강서구 성북동	
12	안골포왜성	창원시 진해구 안골동	와키자카 야스하루[脇坂安治] 구키 요시타카[九鬼嘉隆] 가토 요시아키[加藤嘉明] ※ 3인이 1년 주기로 교대
13	웅천왜성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 소 요시토시[宗義智] 마쓰우라 시게노부[松浦鎮信]
14	자마왜성 ※ 웅천왜성 지성	창원시 진해구 웅천동	
15	명동왜성 ※ 웅천왜성 지성	창원시 진해구 명동	
16	영등포왜성	거제시 장목면 구영리	시마즈 요시히로[島津義弘]
17	장문포왜성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후쿠시마 마사노리[福島正則] 도다 가츠타카[戸田勝隆] 조소카베 모토치카[長宗我部元親] ※ 3인이 1년 주기로 교대
18	송진포왜성	거제시 장목면 송진포리	하치스카 이에마사[蜂須賀家政] 이코마 치카마사[生驥親正] ※ 2인이 1년 주기로 교대

이 시기부터 경상도 동남해안 지역에 왜성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다. 일본군이 성을 쌓고 집을 짓고 본국으로부터 물자를 수송하는 등의 동태는 일본군에 붙잡혔다 탈출한 조선인들, 조선 수군에 붙잡힌 일본군 등을 통해 그 생생한 정보가 전달되었다. 이순신이 이들을 문초하여 수집한 내용 중 붙잡혔다 도망해온 고성 수군 진신귀(陳新貴)의 구술이 가장 상세하다.

8월 초8일 왜선 3척이 소인의 집앞에 상륙하자 형 진휘(進輝)와 일시에 포로되어 거제도 영등포에 도착한즉, 그 포구 貫革基와 선창가와 북봉 밑 세 곳에 집을 지은 것이 200여 채나 되었으며, 또 북봉에는 나무를 쳐서 땅을 평평히 만들고 토성을 쌓았는데 주위는 매우 넓으며 그 안에서 방금 집을 짓고 있었습니다. 왜인들 중에 3분의 1은 우리나라 사람이 서로 섞여 일하고 있었으며 그들 본국으로부터 군량과 겨울을 지낼 속옷들을 배에 싣고 2, 3일 걸러 연속하여 실어왔으며, 그 포구에 머무는 배들은 드나드는 것이 일정하지 않은데 지금 50여 척이나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장문포와 송진포 등지에도 산봉우리를 깎아 평평하게 하고 아울러 토성을 쌓고서 성 안에 집을 지었으며 배들은 대·중선을 아울러 혹은 100여 척 혹은 70여 척이 언덕 아래 벌여 있을 뿐 아니라, 웅포의 서쪽 산봉우리 와 제포의 북쪽 산과 안골포의 서쪽 산봉우리 등지에도 역시 토성을 쌓고 성 안에 집을 지었는데, 대어있는 배들은 언덕이 가리워 바라볼 수 없었으나 제포 선창에는 대·중선이 무수히 벌여 대어 있었으며, 그 밖에도 그들 본국과 가덕으로 향하는 웅포와 거제의 배들이 연속하여 끊이지 않았습니다.<sup>35)</sup>

진신귀는 일본군에 붙잡혀 나무를 베고 물 길어 오는 일을 하며 적진에서 약 12일 동안 본 바를 증언하였다. 그는 일본군이 영등포·장문포·송진포 등에서 수백 채의 집을 짓고 왜성을 쌓는 과정과 50~100여 척의 배가 정박된 모습, 본국으로부터 물자를 실어 나르는 모습 등을 목격, 일본군이 오랫동안 주둔할 목적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는 이외에도 일본군이 거제도와 마주하는 웅천·안골포 등 곳곳에 왜성을 쌓은 것이나 수많은 선박이 정박 또는 본국과 왕래하는 정황을 이야기하였다. 이러한 증언은 포로가 되었다 탈출한 봉사 제만춘의 증언, 순천군관 김중윤·홍양군관 이진 등이 정탐한 내용, 일본군 포로 망곳지(亡古叱之)의 문초 내용 등과 비교하여 크게 다르지 않았다.

특히 망곳지의 구술 가운데, 심아둔손(沈我損屯)이 군사 1,300여 명을 거느리고 영등포성 안에 웅거했다거나 조승감(鳥乘監)이 군사 900여 명을 거느리고 장문포에 성을 쌓고 둔거했다는 내용<sup>36)</sup>은 <표 3>과 일치한다. 이는 일본군의 배치가 도요토미의 명령에 따라 실행되고 있음을 부분적으로 방증하고 있다.

35) 『이충무공전서』 권3, 狀啓2, 「陳倭情狀」

36) 위의 책, 권3, 狀啓2, 「登聞擒倭所告倭情狀」, '심아둔손(沈我損屯)'은 시마즈 도노[島津殿]를 소리나는 대로 적은 것으로, 조승감(鳥乘監)은 조소카베[長宗我部]를 소리나는 대로 적은 것으로 보인다

37) 『日本戰史-朝鮮役-』, 參謀本部, 復刻板, 1978, pp.107-110

38) 眞井正之, 『豊臣政權の海外侵略と朝鮮義兵研究』, 青木書店, 1996, p.50

39) 화평조건 7조 가운데 '조선의 남부 지역을 지배'한다는 명확한 문구는 없으나 '8도를 분할하여 그 중에서 4도와 한성을 조선국왕에게 주겠다'는 문구를 분석하면 조선의 남부 4도를 지배하겠다는 의도로 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김경태, 『임진전쟁기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강화조건 연구』, 『조선시대사학보』 68, 조선시대사학회, 2014)

## 2. 일본의 조선 점령 정책과 왜성의 축성

일본은 당초 명나라 정벌을 목표로 조선 내의 침략 노선을 구축하였다. 그러나 전국적인 의병의 봉기와 조선 수군의 활약, 명군의 파병 등으로 인해 1593년 3월 10일 경성에서 퇴각하라는 명령과 함께 진주성 공격을 지시하였다.<sup>37)</sup>

일본은 진주성을 함락시킨 후 전라도로 출진하여 완전히 토벌할 것을 명하였기 때문에 진주성 공격 지시는 실질적으로 전라도 점령에 대한 계획이었다. 전년도 1차 진주성전투에서 패전했기 때문에 진주성 재공격을 보복의 성격이 강한 전투라고 볼 수도 있으나, 일본군이 패한 전투는 진주성전투 외에도 한산도해전, 행주전투 등 여러 곳에서 있었기 때문에 보복을 위한 전투라는 것은 명분일 뿐 실력으로 조선을 지배하기 위한 수순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조선 침략 후 약 1년 만에 군사들이 모두 철수하였으니 큰 희생을 치른 전쟁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날 경우 도요토미의 정권 유지도 곤란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선의 남부 지역만큼은 반드시 확보하려고 했던 것이다.<sup>38)</sup>

도요토미의 이러한 의도는 강화교섭 과정에서도 변함이 없었다. 일본은 명 측에 요구한 화평조건 7조에서 '조선의 남부 지역 지배'<sup>39)</sup>를 요구하였으며, 명 측이 제시한 '조선에서의 철병' 요구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강화교섭을 결렬시키고 결국 정유재란을 일으켰던 것이다. 따라서 강화교섭 과정에서 드러난 도요토미의 의지를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벽제관전투 이후 명·일 강화교섭이 본격화하였다. 일본 측이 명의 강화사 파견을 요구하자 송응창은 그의 부하 謝用粹·徐一貫을 나고야[名護屋]로 보냈다. 당시 포로로 일본 나고야에 있었던 제만춘의 증언에 따르면, 두 사신들이 나고야에 도착하자 성 밖의 여염집에 6일가량을 머물게 한 후 성안으로 들어 접견하였다고 한다. 또한 명 사신이 화친을 요구하는 한편 명 황제가 조선 국왕에게 보내는 글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문서를 제시하였다고 한다.

일본 무장들이 중국 땅에 생각을 가지니 이것은 모기발로 바다를 건너려 함과 같은 것이라. 참으로 멀리 헤아리지 못하는 일이다. 근래에 백전백승하였으니 한 번만 참으면 천만가지 일이 더욱 안정될 것이다.<sup>40)</sup>

이는 명나라의 위엄을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도요토미는 오히려 두 사신이 나고야성을 나올 때 군대의 위엄을 강하게 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들에게 화평조건 7조를 제시하였다. 더욱 주목할 부분은 5월 20일 진주성 공격에 대한 구체적인 작전 지시를 내렸는데, 이때가 명나라 사신들과 접견하는 동안이었다는 점이다. 명 사신들은 5월 15일 나고야에 도착하여 6월 29일까지 머물렀다.

도요토미는 처음부터 강화교섭에 대한 기대가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 강화의 조건을 제시한 후에도 전라도 공격을 지시하였으며 그 후에 왜성을 축조하도록 했던 정황이나, 진주성 함락 이후 그가 조선에 주둔한 다치바나 무네시게[立花宗茂]에게 보낸 문서(9월 23일) 가운데, '명나라와의 강화에 관해서는 생각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성곽을 건설하여 각자 주둔하라'고 한 데서도 이를 알 수 있다. 그는 왜성을 쌓고 장기간 주둔할 수 있도록 군량 및 선박·수부(水夫) 등의 조달을 지시하고 '전라도를 시작으로 조선에 진격할 작정이다'라고 하였다.<sup>4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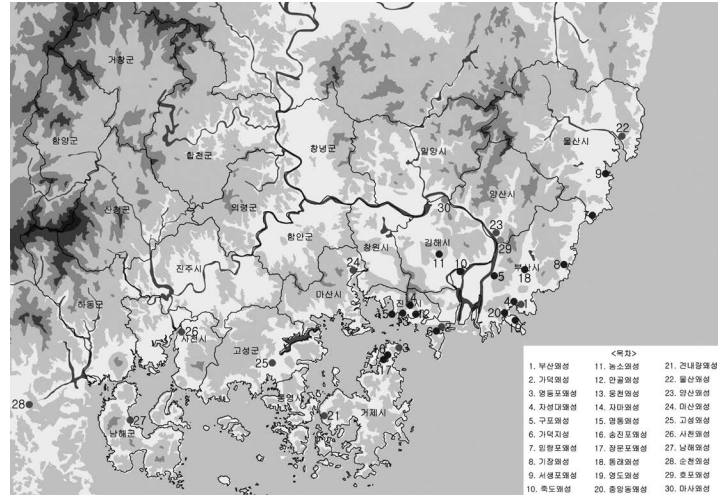
1592~3년 사이에 축성된 왜성은 부산을 중심으로 동쪽으로 기장·서생포, 서쪽으로는 안골포·웅천 및 거제의 영등포·송진포·장문포로 분포되어 강화교섭 기간 내내 주둔하고 있었다. 정유재란 때는 동쪽으로 울산왜성, 서쪽으로 사천·남해 및 전라도 순천왜성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를 확장하여 점진적으로 조선의 남부 지역을 잠식하는 형국을 띠고 있다.

일본은 왜성의 구조적으로 복잡한 통로와 여러 개의 성곽[곡륜, 曲輪] 배치를 활용하여 여러 겹의 방어선을 형성했다. 특히, 지리적으로 바다나 하천의 인근에 축성함으로써 선박을 이용한 병력·물자의 수송 및 연락이 편리하도록 하였다.

40) 『이충무공전서』, 권3, 狀啓2, 「登聞被擲人所告倭情狀」

41) 曾根勇二, 앞의 글

□ 그림 1 임진왜란기 왜성의 분포<sup>42)</sup>



## V. 맺음말

이순신의 장계를 통해 임진왜란의 구체적 실상을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임란 직전까지 조선은 일본군의 특성을 파악하지 못했다. 조선의 전선은 해전을 목적으로 만들었고, 일본의 선박은 수송을 목적으로 만들었던 근본적 차이를 알지 못했던 것이다. 이 때문에 전란에 대비해 육지의 읍성만을 수축하였다가 전쟁 발발 후 해전을 경험하고 나서야 수군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그 보강책을 마련하였다. 일본 측에서도 조선 수군의 우수성을 사전에 알지 못했음은 물론이다. 수군장인 와키자카 야스하루가 용인까지 진격하였다가 도요토미의 명으로 급히 내려와 해전에 출전할 정도였으니 일본 수군의 전략은 처음부터 해전에 대한 계획이 없었으며 육상부대의 보급을 담당하는 것에 불과하였다.

둘째, 조선 수군의 구성 성분에 관한 것이다. 앞서 말한 수군의 중요성이

대두된 만큼 그 구성원의 계층 및 성분에 대한 분석은 전력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왜냐하면 배를 다룰 줄 알고 물길을 아는 것이 수군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전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수군도 육상군과 마찬가지로 관군, 즉 정규군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가운데 연해 지역 출신의 의병들이 참전하거나 징발되기도 하였다. 연해 지역 출신들이 수군에 대거 포함됨으로써 수군의 전력이 배가될 수 있었다.

셋째, 일본군은 당초 ‘證明假道’를 목표로 하였으나 의병의 활약으로 보급에 문제가 발생하고 조선 수군의 활약 및 명군의 출병 등 전세가 불리해지자 ‘조선 지배’로 목표를 수정하였다. 그 시기는 1593년 3월 이후 전라도 정벌을 위한 진주성 공략을 지시하면서부터였다. 이를 위해 부산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으로 점차 범위를 확장하여 동쪽으로는 서생포왜성, 서쪽으로는 거제·웅천 지역에 집중적으로 왜성을 쌓고 오래 주둔할 것을 명령하였다. 일본군의 이러한 동태는 이순신의 장계에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도요토미의 명령 내용이 그대로 실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왜성은 정유재란기에 들어서 동쪽으로 울산왜성, 서쪽으로 순천왜성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크게 확장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일본이 조선의 남부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해 나감을 알 수 있다.

## “이순신의 狀啓를 통해 본 임진왜란”에 대한 토론문

김강식  
한국해양대학교

이 논문은 이순신이 전장(戰場)에서 선조(宣祖)에게 직접 올렸던 장계(狀啓)를 통해서 임진왜란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시도된 글이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임진왜란 직전까지 조선은 일본군의 특성을 파악하지 못했으며 일본군 또한 조선 수군의 우수성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점, 조선 수군의 구성은 연해 지역의 의병이 참여하거나 배를 다룰 줄 아는 연해 지역 출신이 포함되어 전력이 배가되었다는 점, 일본은 의병의 활약과 조선 수군의 활약 및 명군의 출병 등으로 전세가 불리해지자 조선 지배로 목표를 수정하여 조선 남부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해 나갔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 논문이 이러한 측면에서 나름대로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아직 완성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보완했으면 하는 점과 아쉬운 부분을 중심으로 토론자의 입장에서 언급해 보고자 한다.

우선 논문집의 주제인 ‘충민공계초에 대한 검토와 문화재적 가치’에 부합하는 주제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물론 다른 논문들과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논문 주제에 대한 사전 정지작업이 있었겠지만, 본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李忠武公全書』의 장계를 대상으로만 분석하여 서술에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 못내 아쉽다. 구체적으로 논문에서 인용된 장계는 「封進鳥銃狀」, 「請送醫救癘狀」, 「玉浦破倭兵狀」, 「請反汗一族勿侵之命狀」, 「請量處水陸換防事狀」, 「請以魚泳潭爲助防將狀」, 「請以裴慶男屬舟師狀」, 「赴援慶尙道狀」二, 「分送義僧把守要害狀」, 「請賞義兵諸將狀」, 「裝送戰穀狀」, 「裝送戰穀及方物狀」, 「封進火砲狀」, 「討賊狀」, 「統船一艘傾覆後待罪狀」, 「逐倭船狀」, 「請湖西舟師繼援狀」二, 「陳倭情狀」, 「登聞被擄人所告倭情狀」으로 19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적인 장계의 활용과 서술 때문에 이순신의 장계가 가진 내용과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여겨진다. 그래서 대안으로 오히려 『忠愍公啟草』만 가지고 세부적으로 서술하든지, 아니면 『忠愍公啟草』를 보완에 활용하면서 서술하는 편이 이순신 장계에 대한 연구에서 구체성을 가지며, 다른 논문과의 관련성도 부각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이순신의 장계에 대한 서지학적 분석을 다룬 『忠愍公啟草』·『忠武公壬辰狀啓』에 대한 검토-국립해양박물관 소장본을 중심으로-, 「이순신의 『忠愍公啟草』에 대한 서지적 고찰」과 같은 글들을 참고한다면, 이순신 장계 검토의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서술에 직접 이용하려고 할 때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다.

필자가 지적한 대로 충무공 이순신 장계의 구체적인 내용은 전투의 경과, 정찰을 통한 적진의 동향, 조선군의 내부 실상 등이다.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을 주제별로 엮어서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다시 관련성을 가지는 구체적인 주제와 연계시켜서 서술하면서, 지금까지의 임진왜란이나 이순신에 대한 연구 성과를 반영하면 좋지 않을까 한다. 지금까지 이순신 장계를 연구한 여러 논문에서는 이순신의 장계를 부분적으로 필요에 따라 활용하고 있다. 만일 장계의 구체적 내용을 주제별로 연계해 전체적으로 제시하고 최신 연구 성과를 반영한다면 이순신 장계의 전체적인 내용 파악과 소개, 아울러서 구체적으로 장계가 가진 사료적 가치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임진왜란에 대한 세밀하고 방대한 정보를 가진 이순신 장계의 특징을 보다 잘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연구가 진행된다면 본문의 Ⅱ장에서 일본의 해상작전 개념과 조선에서 수군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에 대한 서술이나, Ⅲ장의 수군 구성과 의병의 활약과 같은 서술이 가능해지며, 아울러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본다. 반면에 Ⅳ장의 2차 진주성 공격과 관련된 공성대와 수비대의 편성, 2차 진주성전투 이후의 왜성의 축성과 현황 등은 임진왜란사의 전체적인 전황을 설명해 준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논문집의 주제를 고려한다면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남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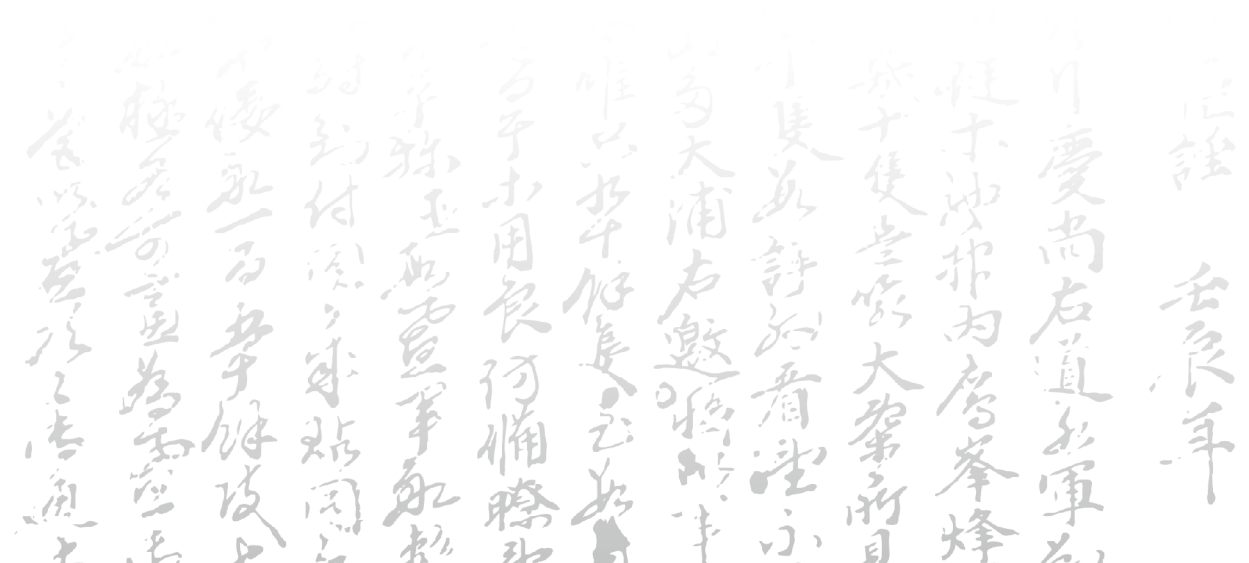
아울러 이 분야에 대한 서술에서는 지금까지 행해진 많은 선행 연구성과를 반영해야 할 문제도 함께 남아 있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서론 부분에서 지금까지 이순신의 장계가 임진왜란사, 특히 해전사나 군사사에서 어떻게 연구에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와 아울러 이순신 장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파악을 전제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했을 경우 이순신의 장계에 녹아 있는 생생한 이야기들이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면서 우리 곁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Ⅲ. 『忠愍公啓草』의 교감 작업과 그 특징

안승준

토론문 김주식



# 『忠愍公啓草』의 교감 작업과 그 특징

안승준<sup>1)</sup>  
한국학중앙연구원

- I. 머리말
- II. 공문서로서 『충민공계초』의 가치와 의의
- III. 『충민공계초』의 교감상의 특징
- IV. 맺음말

## I. 머리말

조선시대의 공문서 관리 방식은 중앙 및 지방 관아에서 원본을 보존하는 시스템이 아니었다. 누층적(累層的) 자료일 경우 시행 당시의 원본을 파기하고 등록(謄錄)의 형태로 보관하였다. 이러한 시스템 때문에 관리와 보존이 철저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지방 수령이나 관찰사 등이 새로 부임하게 되면 전임자 재임 시의 공문서들이 흩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지방 감영이나 관부에서 중앙에 보고한 문서 역시 이를 수령한 한성(漢城)의 중앙 관부가 제대로 보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게다가 일제강점기에 이르러서는 중앙 관부의 문헌이 대부분 소실되거나 유출되어 버렸다.

조선시대에는 <표 1>과 같이 공문서를 원본(原本), 등록(謄錄), 문집(文集), 전사본(傳寫本) 네 가지 형태로 보존했다. 원본은 교지류(教旨類)와 과거류(科擧類)를 제외하고 대부분 파기되었으며, 남아있는 것은 관부, 향청, 사가나 문중, 서원, 향교 등에서 소장하고 있다. 등록은 관부, 서원, 향교 등에 보관되어 있는데, 남아있는 건수가 매우 적다. 문집은 어떤 한 인물의 일대기

나 글 모음집으로 사가나 문중에서 많이 보관하고 있다. 전사본은 공문서인 계본(啓本)등록을 전사하는 것인데, 관부, 사가나 문중에서 보관하고 있다.

□ 표 1 조선시대 공문서의 보존 형태

구분	소장처	사례	특징
원본	중외(中外)의 관부, 향청(鄕廳), 사가(私家(門中)), 서원, 향교 등	- 丹城縣戶籍大帳 (단성현→단성향교) - 報題錄(충정감영, 필사본 38책, 동경대 아가와문고) - 戶房謄錄(영남대학교) - 解由文書	교지(教旨), 홍패(紅牌) 백패(白牌), 시권(試券), 녹패(祿牌), 입안(立案) 등 교지류(教旨類), 과권류(科擧類)를 제외하면 대부분 파기됨.
등록	중외의 관부, 서원, 향교 등	- 訓局謄錄(장서각) - 紹修書院謄錄	극히 일부만 전존(傳存)
문집	사가(문중)	- 西厓集(柳成龍) - 農圃集(鄭文字) - 李忠武公全書(李舜臣)	인물의 일대기와 관련된 자료
전사본	관부, 사가(문중)	忠愍公啓草	공문서인 계본(啓本)등록(啓本謄錄)을 전사(傳寫)

장계(狀啓)는 조선시대 관찰사·병사·수사 등이 왕에게 보고하거나 청하는 문서를 말한다. 장계는 승정원에서 열어보고 담당 승지가 이를 왕에게 올려서 왕의 재가를 받은 다음, 계하인(啓下印)을 찍고 그 장계의 내용과 관계 있는 관서에 하달(下達)된다. 따라서 『임진장초』, 『충무공전서』에 수록되어 있는 장계들은 실제로는 계본(啓本)이다.

『충민공계초(忠愍公啓草)』는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李舜臣)이 작성한 공문서인 장계의 전사본(傳寫本)이며, 후대에 이르러서는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정고본(定稿本)<sup>2)</sup>이 되었다. 그런데 『충민공계초』는 최근 들어 발견된 자료이므로 그에 대한 연구도 많지 않다. 따라서 『충민공계초』와 함께 이순신 장계의 여러 이본들에 대한 종합적 조사와 연구를 통해 이순신 관련 기록의 원본성과 계열성을 밝힐 필요가 있다.<sup>4)</sup> 그 일환으로 본 글에서는 『충민공계초』의 교감 작업을 통해 파악한 『충민공계초』의 자료적 가치와 성격을 논하고자 한다.

2) 稿本은 편자나 저자가 내용을 고안하여 처음으로 쓴 책을 말하며, 定稿本은 고본을 교정하거나 첨삭하여 定稿한 책을 말한다.

3) 『충민공계초』는 국립해양박물관이 2013년 4월 공개구입하여 공개함으로써 그 존재가 알려지게 되었다.

4) 박선이, 『임진왜란 시기 狀啓에 나타난 朝鮮式 漢文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2;  
박선이, 『朝鮮式 漢文의 문체적 특징에 대한 小考 - 임진왜란 시기 狀啓를 중심으로 -』, 『泰東古典研究』 36, 2016;  
노승석, 『이순신의 충민공계초(忠愍公啓草)에 대한 서지적 고찰』, 『문화재』 72, 2016;  
전경호, 『忠愍公啓草』, 『忠武公壬辰狀啓』에 대한 검토-국립해양박물관 소장본을 중심으로-, 『도서문화』 48, 2016

5) 『충무공임진장계(忠武公壬辰狀啓)』의 표지에는 '要覽'으로 책명이 적혀 있으며, 그 오른쪽에 작은 글씨로 '晉陽陷口敘事'와 '忠武公壬辰口'라는 부제가 두 줄로 쓰여 있다. 따라서 제목을 『要覽』으로 해야 하지만, 국립해양박물관 학예연구실은 장계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충무공임진장계(忠武公壬辰狀啓)』를 유물의 명칭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새로운 명칭은 장계의 중요성을 살린다는 측면에서 적합하지만, 단점도 있다. 이 유물에서 장계는 관인이 많이 찍힌 부산포 첨사진(釜山浦僉使鎭) 공문서의 이면지에 기록되어 있는데, 원래의 공문서가 조선 수군사(水軍史)와 왜관사(倭館史)에서 갖는 중요한 의미가 이 새로 붙인 명칭에 의해 훼손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II. 공문서로서 『충민공계초』의 가치와 의의

이순신 장계의 이본은 국립해양박물관이 소장한 『충민공계초(忠愍公啓草)』와 『충무공임진장계(忠武公壬辰狀啓)』<sup>5)</sup>, 현충사가 소장한 『임진장초(壬辰狀草)』, 해군사관학교 박물관이 소장한 『충무공계초(忠武公啓草)』, 그리고 규장각이 소장한 『이충무공전서(李忠武公全書)』가 있다.

□ 표 2 이순신 장계(啟草) 이본 비교

이본명	발간 시기	발간 목적	필체·필사자	소장처	참고
『충민공계초』	1662년 (현종3)	- 표제에 '壬辰年兵亂事'라는 부제(副題)가 있음. - 공문서 원본을 전문 서리(書吏)가 필사함.	- 초서(일부 행서) - 관부(官府)의 서리(書吏)	국립 해양 박물관	필사본 1책 73장 68편
『임진장초』	18세기 전후 (추정)	- 임진왜란 승리의 전말을 기록함. - 우선(爲先: 충무공 顯揚)	- 혼재(해서, 행서, 초서) - 충무공 중가의 인물이 필사	현충사 (충무공 중가)	필사 1책 61편
『충무공계초』	조선 후기	- 후손들의 충무공 공적 주지 차원	해서	해군 사관학교 박물관	필사본 1책 63편
『충무공 임진장계』	1724년 이후	-	행서	국립 해양 박물관	필사본 1책 14편
『이충무공 전서』	1795년 (정조19)	정조의 어명에 의해 편찬	해서	규장각 등	활자본 14권 8책 71편

우선 각 이본에 수록된 장계의 편수를 비교해 보면, 『충민공계초』 68편, 『임진장초』 61편, 『충무공계초』 63편, 그리고 『충무공임진장계』 14편, 『이충무공전서』 71편이다. 『충민공계초』에는 『임진장초』에 없는 12편이 수록되어 있고, 『임진장초』에는 『충민공계초』에는 없는 5편이 수록되어 있다. 『충무공계초』에는 총 63편이 실려 있으며, 그중에서 『임진장초』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61편이고, 나머지 2편은 『충민공계초』에 수록되어 있는 장계와 일치한다. 『충무공임진장계』의 14편은 『충민공계초』와 『임진장초』에 모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이다. 또한 『이충무공전서』는 이러한 자료들을 모두 종합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즉 장계 78편이 현전하는데, 그중 5편은 다른 이본에는 없고 『이충무공전서』에만 수록된 것이다. 따라서 『이충무공전서』를 제외한 다섯 종의 문헌 중 단연 중심이 되는 것은 『충민공계초』와 『임진장초』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 두 자료를 중점적으로 비교 분석하겠다.

『충민공계초』는 공문서 원본을 전사(傳寫)한 것이며, 작성 시기(康熙 元年, 1662년)가 분명하다. 필체는 초서체이나 일부는 행서로 쓰여 있다. 이러한 필체와 지질로 볼 때, 『충민공계초』는 전문 서리(書吏)가 특유의 공문서 서체로 쓴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 자료는 『임진장초』를 비롯한 다른 필사본과 비교 검토한 결과 공문서로서 그 원본에 가장 가까운 것으로 보이며, 바로 이점이 『임진장초』와의 가장 큰 차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기존 연구들은 『임진장초』의 필사 시기를 18세기에 편찬된 것으로 보고 있다.<sup>6)</sup> 따라서 『충민공계초』는 이순신 장계의 이본류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이며, 조선 중기 공문서의 원본에 가까운 계본(善本)이라 할 수 있다.

『임진장초』에는 이순신이 1592년 4월 1일부터 1594년 정월 1일까지 전라좌수사로 근무할 때 그리고 전라좌수사와 삼도수군통제사를 겸직할 때 조정에 보고한 군무 관련 장계 61편이 수록되어 있다. 『충민공계초』에는 1592년 4월 15일부터 1594년 4월 20일까지의 장계가 68편 수록되어 있다. 장계의 수록 편수를 보면, 『충민공계초』에는 『임진장초』보다 7편이 더 수록되어 있다. 그런데 『임진장초』에는 『충민공계초』에 없는 5편의 장계가 수록되어 있고, 『충민공계초』에는 『임진장초』에 없는 12편의 장계가 더 수록되어 있다. 따라서 두 자료에 수록된 장계 편수의 차이는 17편이다.

게다가 『충민공계초』에는 없고 『임진장초』에 수록된 5편의 장계는 『충무공계초』와 『이충무공전서』에도 있지만, 『임진장초』에는 없으나 『충민공계초』에는 있는 12편의 장계는 『이충무공전서』에만 수록되어 있다. 그런데 『이충무공전서』에 수록된 장계는 원문에서 이두식 표현을 모두 삭제하고 중국식 한문으로 많이 고쳐 수록된 것들이다. 따라서 이 12편의 원문은 『충민공

6) 필체와 지질을 근거로 보면 『임진장초』는 18세기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한 편 정진술은 『임진장초』에 전라좌수사의 관인이 찍혔기 때문에 이순신의 후손 중 전라좌수사를 역임한 사람에 의해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정진술, 『忠愍公啓草』의 書誌學的 考察, 『이순신 장계와 충민공계초 연구』, 국립해양박물관 편, 2017, pp.82-112) 그는 이순신의 후손 중 전라좌수사를 역임한 사람이 이봉상(李鳳祥, 1709), 이명성(李命祥, 1732), 이태상(李泰祥, 1747), 이한창(李漢昌, 1766)이기 때문에 『임진장초』가 18세기에 편찬되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7) 이 책 p.115에서 옥영정이 언급한 책.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소장. 존경각의 소장품 서지사항에는 『忠武李公純臣壬辰倭變狀啓』로 표기되어 있다. 자료의 표지에는 『李忠武啟草』라 쓰여 있다.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새로운 장계가 수록되어 있지는 않다.

8) 편의상 『충민공계초』를 [충민], 『임진장초』를 [임진], 『충무공계초』를 [계초], 『충무공임진장계』를 [장계], 『이충무공전서』를 [전서]로 표기하였다.

9) 국립해양박물관, 『충민공계초』, 민속원, 2017  
 충민 1a:1 / 전서卷2 1a:2 狀啓－因倭警待變狀 / 임진 1a:1 / 계초 1a:1 / 장계 1a:1  
 충민 1a:1은 『충민공계초』 1a쪽 첫 번째 행을 의미한다.

계초』를 통해서만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이순신의 장계가 수록되어 있는 자료들에는 편찬 시기가 대부분 기록되어 있지 않아 추정만 할 수 있다. 『이충무공전서』의 경우만 기록이 있어 연대를 알 수 있다. 그런데 『충민공계초』에는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에 『康熙元年壬寅三月念日晝終』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강희 원년(康熙元年)’은 조선의 현종 3년 즉 서기 1662년이다. ‘염일(念日)’은 초하룻날부터 스무 번째 되는 날 즉 20일이다. 따라서 1662년 3월 20일에 전사를 마쳤다는 뜻이다. 이순신의 장계와 관련된 자료들 중에서 전사를 마친 날을 기록한 것이 『충민공계초』와 『이충무계초』<sup>7)</sup> 두 가지뿐이다. 그런데 앞에서 본 것처럼 그 시대가 더 오래된 것은 『충민공계초』이다. 이 자료는 임진왜란이 끝난지 54년 후에 작성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임진장초』가 국보라면, 『충민공계초』는 고문서학적으로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Ⅲ. 『충민공계초』의 교감상의 특징

먼저 『충민공계초』, 『임진장초』, 『충무공계초』, 『충무공임진장계』, 『이충무공전서』 다섯 가지 이본을 교감하기 위해 1592년(선조25) 4월 15일 술시(戌時)에 보낸 장계 1편을 사례로 제시하겠다. 『충민공계초』에 수록된 이 장계의 번역문과 다섯 가지 자료의 원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sup>8) 9)</sup>

#### 가. [번역문(충민)]

啓本-因倭警待變狀(1) : 전라좌도 수군절도사 신 이순신이 삼가 변고에 대비하는 일을 아뢰입니다. 금일 4월 15일 술시(戌時)에 관문(關文)을 받았습니다. 수군절도사 원균(元均)이 4월 14일에 보낸 것입니다. “당일 사시(巳時)에 접수한 가덕진첨사 전응린(田應麟)과 천성보 만호 황정(黃斑) 등의 치보(馳報)에 따르면 ‘응봉(鷹峯) 봉수(烽燧)의 망군(望軍) 이등(李登)과 연대(煙臺)의 감고(監考) 서건(徐巾)등이 달려와서 「금일 4월 13일 신시(申時)에 몇십 척인지 알 수는 없었지

만 왜선이 대략 보기에는 90척이 넘고, 본토에서 처음 나오기 시작해서 좌도의 유이도(紐伊島)를 지나서 부산포(釜山浦)까지 향해 가려고 합니다. 멀고 어둡기 때문에 몇 척이나 되는지 상세히 볼 수는 없었지만 연속하여 나왔습니다.”라고 보고하였습니다. (중략) 연해안의 각 관(官)과 포(浦)에도 동시에 파발로 공문을 보내어 변고에 대비하도록 일렀습니다. 1592년(선조25) 4월 15일 술시(戌時) 절도사 신 이순신.

#### 나. [충민]

全羅左道水軍節度使 臣 李舜臣謹 (壬辰年) 啓爲待變事 今四月十五日 戌時 到付 同月十四日施行 慶尙右道水軍節度使元均關內 當日巳時 到付 加德鎭僉使田應麟天城堡萬戶黃斑等馳報內 鷹峯烽燧望軍李登 煙臺監考徐巾等進告內 今四月十三日申時倭船不知其幾十隻是喻 大槩所見九十餘隻亦 本土始出 左道紐伊島過釜山浦了以 指向次 遠暗乙仍于 隻數詳細看望不得爲在果 連續出來是如 (중략) 沿海各官浦設置 一時發馬 行移檢飭待變口白卧乎事は良尔云云<sup>10)</sup> 萬曆二十年四月十五日 戌時 節度使 臣李

#### 다. [임진]

全羅左道水軍節度使 臣 李 謹啓爲待變事 今四月十五日 戌時 到付 同月十四日施行 慶尙右道水軍節度使元均關內 當日巳時 到付 加德鎭僉節制使田應麟 天城堡萬戶黃斑等馳報內 鷹峯烽燧監考李登 烟臺監考徐巾等進告內 今四月十三日申時倭船不知其幾十隻是喻 大槩所見九十餘隻亦 本土始出 左道紐伊島過 釜山浦了以 指向次 遠暗乙仍于 隻數詳細看望不得爲在果 連續出來是如 (중략) 沿海各官浦設置 一時發馬 行移檢勅待變爲白卧乎事は良尔 謹具啓 聞 萬曆二十年 四月十五日 戌時 節度使 臣李

#### 라. [계초]

全羅左道水軍節度 臣 李 謹啓爲待變事 今四月十五日 戌時 到付 同月十四日施行慶尙右道水軍節度使元均關內 當日巳時 到付 加德鎭僉節制使田應麟 天城堡萬戶黃斑等馳報內 鷹峯烽燧監考李登 烟臺監考徐巾等進告內 今四月十三日申時倭船不知其幾十隻是喻 大槩所見九十餘隻亦 本土始出 左道紐伊島過 釜山浦了以 指向次 遠暗乙仍于 隻數詳細看望不得爲在果 連續出來是如 (중략) 沿海

10) ‘口白卧乎事は良尔云云’은 첨지로 덮혀 있다. □부분은 첨지로 인해 볼 수 없지만 다른 자료와 비교해 보면 ‘爲’임을 알 수 있다.

各官浦段置一時發馬 行移檢勅待變爲白卧乎事是良尔 謹具啓 聞 萬曆二十年 四月十五日 戌時節度使 臣李

마. [장계]

全羅左道水軍節度 臣 李舜臣 謹啓爲待變事 今四月十五日 戌時 到付 同月十四日施行 慶尙右道水軍節度使元均移關內 當日巳時 到付 加德僉使田應麟 天城萬戶黃斑等馳報內 鷹峯烽燧監考李登 烟臺監考徐巾等進告內 今四月十三日申時倭船不知其幾十隻是隱喻 所見九十餘隻亦 本土始出 左道柵伊島過 釜山浦了以 指向而 遠暗乙仍于 隻數詳細看望不得爲在果 連續出來是如 (중략) 沿海各官浦段置 一時發馬 行移檢勅待變緣由 謹具啓 聞 萬曆二十年 四月十五日 戌時

바. [전서]

狀啓一 因倭警待變狀 謹啓爲待變事 今四月十五日 戌時 到 慶尙右道水軍節度使元均關內 當日巳時 加德鎮僉節制使田應麟·天城堡 萬戶黃斑等馳報內 鷹峯烽燧監考李登·煙臺監考徐建等進告 今四月十三日申時 倭船不知其幾十隻 大槩所見九十餘 左道柵伊島經過 釜山浦指向 連續出來云 (중략) 沿海各官浦 一時行移檢勅

1. 문서 양식

『충민공계초』와 『임진장초』에는 문서 양식에서 크게 두 가지 차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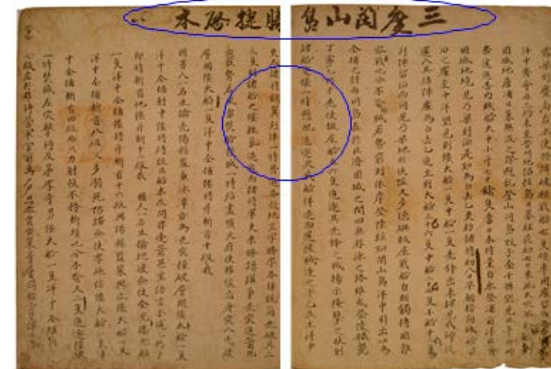
첫째, 『임진장초』에는 원문서에 나타나는 공문서 양식의 기두어(起頭語), 종결어(終結語) 등이 대부분 기록되어 있다. 이에 비해 『충민공계초』의 장계에는 기두어 부분이 ‘謹啓爲待變事’와 같은 문구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러한 기두어 문구는 공문서의 형식이 아니다. 즉 ‘謹啓爲待變事’ 앞에 있어야 할 형식적 표현이 생략된 것이다. 또 『충민공계초』에서는 종결어 부분 역시 ‘云云’ 등으로 생략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즉 『충민공계초』는 의례적인 인사말이나 투식으로 이루어진 공문서의 특징적 부분을 생략하고, 작성 목적에 따라 이순신의 보고 문서 내용 중심으로 엮어졌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임진장초』는 관부(官府)에 보관되어 온 문서들의 전 문장

을 그대로 전사했으며, 『충민공계초』는 앞뒤 기두어와 종결어를 빼고 내용을 중심으로 편집했다는 점이 두 문서의 중요한 차이점 중 하나이다.

또 다른 차이점은 관인(官印)의 유무이다. 관인은 『임진장초』에만 나타나는데, ① 문서의 발행일자 등 중요 부분과 ② 상하 글자의 도치, 수정 등 교정된 부분에 전라좌수영(全羅左水營)의 관인이 날인되어 있다. 발행일자 등 중요한 부분과 오자와 탈자의 교정 부분에 날인했다는 점은 관부가 소장해 온 성책 문서의 통상적인 예와 유사하다.

그러나 관문서 날인시 지그재그 형태로 홀수로 날인하던 관행이 『임진장초』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임진장초』에는 두 페이지에 걸쳐 관인이 날인되어 있는 부분도 종종 발견된다. 『임진장초』의 경우에는 여러 명의 전사자(傳寫者)가 장계를 낱장에 1편씩 전사한 후 이를 붙여 두루마리식으로, 즉 한 장의 종이에 긴 축을 가진 형태로 제작하였다가 어느 시점에 첩책(帖冊) 형태로 재구성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본문 위의 추기한 글자 즉 두주(頭註) 부분도 단절된 것들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페이지의 양 끝 부분의 글자가 잘린 부분까지 나타나고 있는 점들은 이러한 추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요컨대 관부의 정식 문서로서 오자(誤字)의 수정, 도치 등의 부분을 중심으로 관인을 찍었으며, 원래는 긴 축 형태로 제작되었다가 축을 잘라 첩책하는 과정에서 글자나 문장이 절단되는 부분이 발생하기도 한 것이다.

□ 그림 1 글자가 잘린 사례(『임진장초』)



- 11) 이 글의 5. 교정, 1) 첨지사용의 4번 기사 참고
- 12) 唱準 : 호적, 입안 등에서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글의 내용을 부르고(唱) 다른 한 사람이 이를 받아서 쓰는(準) 형식
- 13) 『임진장초』에는 빈 첨지가 붙어 있고 『충민공계초』에는 첨지에 부가 설명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만약 『임진장초』가 먼저 작성되고 이를 베낀 것이 『충민공계초』라고 주장한다면 두주의 첨지 부분을 작성한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

두루마리 형태의 관문서를 첩책하는 과정에서 문서의 내용이 다소 훼손되거나 관인이 두 조각이 나는 것은 통상적인 관문서의 관리 상태라고 볼 수 없다. 다시 말해 관부에서 문서를 잘라 관인이 잘리는 경우는 없다고 보았을 때, 첩책은 뒷날 덕수 이씨 종가가 관리 차원에서 실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임진장초』가 원래 두루마리 형태의 문서로 되어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이는 『임진장초』가 공문서 원본은 아니나 그 원본을 일괄 전사한 것임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인 것이다.

『임진장초』는 관인이 찍혀 있고 여러 사람의 필체가 나타나므로 여러 명에 의해 작성된 관부 문서임이 분명하고, 『충민공계초』는 필체를 볼 때 달필의 관리(1명으로 추정)가 전사한 공문서임이 분명하다.

## 2. 두주(頭註)

『충민공계초』에는 첨지에 두주(頭註)를 단 경우가 총 15회 나타난다. 문서를 전사할 때 빠진 부분이 있는 경우 첨지를 붙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임진장초』의 첨지는 내용이 없는 빈 종이어기 때문에 이 자료만 보면 왜 첨지를 붙였는지 그 의미를 알 수 없다. 그런데 『충민공계초』와 『임진장초』에는 공통적으로 첨지(籤紙)가 붙어 있는 부분이 있다. 따라서 『충민공계초』의 동일한 위치에 붙은 첨지와 비교해 보면, 『임진장초』에 붙인 첨지의 의미를 알 수 있다.

『충민공계초』를 작성한 관부는 이를 원문과 대조하면서 누락이 발견되면 여기에 첨지를 붙이고 두주를 기록했을 가능성이 높다. 첨지에 ‘... 不書’라고 기재된 경우<sup>11)</sup>가 있기 때문에 이 추측은 설득력이 있다. 가설이기는 하지만, 『충민공계초』는 원문을 직접 보고 베낀 것이 아니라 창준(唱準)<sup>12)</sup> 형태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창준 과정에서 누락된 내용이 발생하면 나중에 그것을 첨지에 적어 보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sup>13)</sup>

□ 그림 2 첨지에 두주가 쓰인 사례(『충민공계초』)



두 문서의 동일 부분에 첨지를 붙인 것은 공문서의 생략 부분을 보완하는 과정에 행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임진장초』와 『충민공계초』는 동일한 관부에서 작성되고 관리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편 『충민공계초』에는 첨지 외의 두주가 나타나지 않지만, 『임진장초』에는 4회에 걸친 승첩(勝捷)<sup>14)</sup>이 두주로 기록되어 있다.<sup>15)</sup> 이는 관부에서 『임진장초』를 전사한 목적과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다. 관부에서는 전쟁과정을 이해하고 승전 당시의 전투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임진장초』를 전사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승첩 두주는 승전의 요인과 과정을 살펴보고 그 내용을 보고하는 데 활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 3. 표기

이순신 장계의 이본들은 표기수단과 삭제사항에서 차이가 있다. <표 3>은 이를 정리한 것이다.

- 14) 옥포(玉浦) 해전, 당항포(唐項浦) 해전, 한산도(閑山島) 해전, 부산포(釜山浦) 해전
- 15) 『임진장초』에서 원문의 필체에 비해 승첩 내용을 기록한 두주의 필체는 격이 낮으며 원문과도 조화롭지 않다. 따라서 승첩과 관련된 두주들은 이순신 본가의 사람에 의해 아주 후대에 추가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16) 『충민공계초』, 『충무공계초』, 『충무공 임진장계』는 처음부터 한 권의 책으로 만들려는 의도를 갖고 전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표 3 이순신 장계 이본들의 표기상의 특징

이본명	표기상의 특징
『충민공계초』	· 표기수단 : 이두 사용 · 삭제사항 : 기두어, 투식어, 발신자 생략(다수)
『임진장초』	· 표기수단 : 이두 사용 · 삭제사항 : 기두어, 투식어, 발신자 기재(다수)
『충무공계초』	· 표기수단 : 이두 사용
『충무공임진장계』	· 표기수단 : 이두 사용 · 삭제사항 : 인명, 지명 생략
『이충무공전서』	· 표기수단 : 이두 사용하지 않음. · 삭제사항 : 발신자, 날짜 생략

우선 이순신 장계 이본들을 이두가 사용된 장계와 사용되지 않은 장계로 분류할 수 있다. 『이충무공전서』를 제외한 네 가지 자료는 모두 이두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이충무공전서』에는 발신자가 없고 날짜도 없다. 『충무공임진장계』에는 인명과 지명의 나열이 생략되어 있다. 이를 통해 조정에서는 발신자와 날짜보다는 내용을, 그리고 부산진첩사진에서는 참여자들이나 전투를 하거나 작전을 한 장소들보다 다른 내용을 더 중시했음을 알 수 있다.

『충민공계초』에는 첫 장계의 경우 원문 전체가 원래의 양식대로 전사되어 있다. 나머지 장계들에서는 기두어와 투식어가 생략되어 있기도 하고, 발신자가 생략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충민공계초』에서 생략된 사항들이 『임진장초』에는 거의 다 전사되어 있다. 『임진장초』는 긴 축으로 된 한 장의 두루마리에 여러 명이 전사한 것을 이후에 성책(成冊)한 것이기 때문에, 원문이 그대로 전사되어 있는 것이다.<sup>16)</sup> 이에 비해 『충민공계초』에서는 첫 장계에 등장하는 기두어, 투식어 등이 나머지 장계들에서도 반복되기 때문에, 이러한 상투적인 표현들이 첫 장계 이후에는 생략된 것으로 보인다.

#### 4. 오기(誤記)

다른 자료들에서 일치하는 글자를 사용할 때 어느 한 자료의 글자만 다르게 기재되어 있을 경우, 또 이것이 문맥상 이해가 되지 않을 경우, 이 상이한 글자를 오기(誤記)로 간주할 수 있다. 『충민공계초』에서 오기로 추측되는 사례를 몇 가지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5번 기사 : 書狀是白乎等用良臣矣所屬船師各官浦諸將等乙馳援時  
⇒ 船 → 舟의 오기. [임진], [전서], [계초], [장계] 舟

7번 기사 : 順川寶城等官  
⇒ 川 → 天의 오기. 順天을 借音한 글자. [임진], [전서], [계초], [장계] 天

8번 기사 : 毋犯一捷  
⇒ 犯 → 狃의 오기로 보임. [전서], [계초] 狃

21번 기사 : 亦中皮翎箭  
⇒ 翎 → 翎의 오기로 보임.

26번기사 : 接伴使尹銀壽書狀據  
⇒ 銀 → 根의 오기로 보임.

31번기사 : 臣矣軍官訓練主簿鄭思峻亦  
⇒ 峻 → 竣의 오기로 보임.

41번기사 : 非臣任檀  
⇒ 檀 → 檀의 오기로 보임.

42번기사 : 關內辭辭相考施行事  
⇒ 辭 → 緣의 오기로 보임.

62번기사 : 左斥候將固城縣令趙疑道  
⇒ 疑 → 凝의 오기로 보임. [전서] 凝

70번기사 : 而公之忠烈 竟主殞身 何天之報施不同也  
⇒ 主 : 문리상 旣의 오기로 보임.

오기의 사례는 단순한 오기, 유사한 글자 형태에 의한 오기, 유사한 발음에 의한 오기, 유사한 뜻에 의한 오기 즉 네 가지 유형의 오기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단순한 오기의 사례로는 42번, 70번 기사가 있다. 말 사(辭)자는 가 장자리 연(緣)자의 오기이고(42번 기사), 임금 주(主)자는 이를 지(至)자의 오기이다(70번 기사).

두 번째, 유사한 글자 형태에 의한 오기는 8번, 21번, 26번, 31번, 41번, 62번 기사 등에서 발생한다. 범할 범(犯)자는 친압할 뉴(狃)자의 오기이다(8번 기사). 우(翹)자는 깃 령(翎)의 오기이다(21번 기사). 은 은(銀)자는 뿌리 근(根)자의 오기이고(26번 기사), 높을 준(峻)자는 마칠 준(竣)자의 오기이다(31번 기사). 박달나무 단(檀)자는 멋대로 할 친(擅)자의 오기이고(41번 기사), 의심할 의(疑)자는 얼길 응(凝)자의 오기이다(62번 기사).

세 번째, 유사 발음에 의한 오기는 7번, 31번 기사를 예로 들 수 있다. 내 천(川)자는 하늘 천(天)의 오기이다(7번 기사). 높을 준(峻)자는 마칠 준(竣)자의 오기이다(31번 기사).

마지막으로 유사한 뜻에 의한 오기는 5번 기사를 예로 들 수 있는데, 배 선(船)자는 배 주(舟)자의 오기이다.

위의 사례에서 5번, 7번, 8번, 62번 기사는 다른 자료들과 비교할 때 오기인 것으로 알 수 있는 경우이다. 5번 기사의 경우 『충민공계초』에는 ‘船’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임진장초』, 『충무공계초』, 『충무공임진장계』, 『이충무공전서』에는 모두 ‘舟’로 표기되어 있어 ‘船’이 ‘舟’의 오기임을 알 수 있다. 7번 기사의 경우 『충민공계초』에는 지명이 ‘順川’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임진장초』, 『충무공계초』, 『충무공임진장계』, 『이충무공전서』에는 모두 ‘順天’으로 표기되어 있어 ‘川’이 ‘天’의 오기임을 알 수 있다. 8번, 62번 기사의 사례도 이와 같이 이해할 수 있다.

## 5. 교정

『충민공계초』에서 나타나는 교정은 첨지 사용과 부호 ‘\$’의 사용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 1) 첨지 사용

첨지를 사용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1번 기사 : (1a:9) 爲白卧乎事所 → 첨지로 爲를 가림.

(1a:13) 變口事口…口 → 첨지로 事를 가림.

(1b:1) 此非尋常歲遣之類是白 → 첨지로 是白을 가림.

(1b:3) 口白卧乎事是良尔云云 → 첨지로 모두 가림.

4번 기사 : (2b:10) 本道監兵使處并以通議爲白有如乎今四月二十六日

→ 頭註로 첨지에 “四月廿六日至(書)狀是白置不書”라고 기록함.

본문에 누락된 ‘至(書)狀是白置’가 있어야 문서가 완성된다는 의미임.

⇒ [임진] 같은 위치에 빈 첨지가 붙어 있음.

(3a:7) 今四月二十七日 寅時 在鎮祗受 同月二十三日成貼 宣傳官趙銘 齎來左副承旨書狀內

→ 同月二十三日에 대한 頭註로 첨지에 “今四月二十七日至 書狀是白有亦 不書”라고 기록됨.

⇒ [임진] 같은 위치에 빈 첨지가 붙어 있음.

8번 기사 : (12b:1) 臣等舟師段 → 첨지로 段을 가림.

⇒ [임진], [계초], [장계] 段, [전서] 없음

13번 기사 : (24b:7) 13번 기사 첫 행 위에 첨지에 頭註로 ‘口…口書’라고 쓰여 있음.

16번 기사 : (26a:6) 去壬辰十二月廿八日成貼 宣傳官蔡津賣來右副承旨書狀內

→ 16번 기사 첫 행 위에 頭註가 쓰인 첨지가 있으나 결락됨.

⇒ [임진] 狀內 위에 첨지가 붙어 있음.

- 17번 기사: (26a:10) 宣傳官安世傑齋來左副承旨書狀內  
→ 『忠愍公啟草』에는 첨지가 없음.  
⇒ [임진] 承政院開拆 正憲大夫具銜臣李宣傳官安世傑齋來左副承旨書狀內. 宣 위에 첨지가 붙어 있음.
- 18번 기사: (26b:2) 宣傳官李齋來去正月廿九日成帖右副承旨書狀內節該 天兵 既克平壤  
→ 『忠愍公啟草』에는 첨지가 없음.  
⇒ [임진] 兵 위에 첨지가 붙어 있음.
- 21번 기사: (28b:10) 21번 기사 첫 행 위 첨지에 頭註로 ‘口…口月初六日’이라고 쓰여 있음.  
(28b:21) 첫 행 위 첨지에 頭註로 ‘口…口月初六日’이라고 쓰여 있음.
- 24번 기사: (31b:11) 差員封庫爲有臥乎所 → 첨지로 所를 가림.
- 25번 기사: (32b:3) 첫 행 위 첨지에 頭註로 ‘口…口更’이라고 쓰여 있음.  
⇒ [임진] 빈 첨지가 붙어 있음.
- 26번 기사: (32b:7) 첫 행 위에 첨지가 있으나 결락되어 읽을 수 없음.
- 27번 기사: (33a:5) 첫 행 위 첨지에 頭註로 ‘口…口更’이라고 쓰여 있음.  
⇒ [임진] 빈 첨지가 붙어 있음.
- 28번 기사: (33a:10) 兩南水軍戰船一時齊會  
⇒ [임진] 頭註에 黑線이 그어진 첨지가 붙어 있음.  
(33b:6) 宣傳官高世忠齋來有旨書狀祗受良中  
→ 頭註가 쓰인 첨지가 있으나 결락되어 읽을 수 없음.
- 29번 기사: 첫 행 위 頭註가 쓰인 첨지가 있으나 결락되어 읽을 수 없음.  
‘口…口更’으로 추정됨.
- 50번 기사: 첫 행 위 첨지에 頭註로 ‘口…口更’이라고 쓰여 있음.  
⇒ [임진] 상단에 첨지가 붙어 있음.

첨지는 빈 첨지, 결락된 첨지, 누락 부분 기재용 첨지, 문서를 보완하는 글이 적힌 첨지로 유형화시킬 수 있다.

빈 첨지는 1번 기사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爲’, ‘事’, ‘是白’, ‘口白卧乎事是良尔云云’이 첨지로 가려져 있는데, 첨지에는 아무런 표시가 없다. 8번 기사에서는 ‘段’, 24번 기사에서는 ‘所’가 빈 첨지로 가려져 있다. 가려진 글자가 중요한 의미를 갖거나 그 글자가 반드시 없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 예로 8번 기사의 경우, 『충민공계초』에서는 ‘段’이 빈 첨지로 가려져 있지만, 『임진장초』, 『충무공계초』, 『충무공임진장계』에는 첨지 없이 ‘段’이 기재되어 있고, 『이충무공전서』에는 ‘段’이 없다. 따라서 빈 첨지로 글자를 가린 이유는 알 수 없다.

□ 그림 3 빈 첨지를 사용한 사례



결락된 첨지의 사례는 16번, 26번, 28번, 29번 기사에 등장한다. 16번 기사에는 ‘狀內’에 첨지가 있었는데, 결락되어 있다. 『임진장초』에는 이 부분에 첨지가 있다. 16번과 26번 기사에서는 첫 행 위에 첨지가 있었는데 결락되어 있고, 28번 기사에도 두주가 쓰인 첨지가 결락되어 있다. 29번 기사도 마찬가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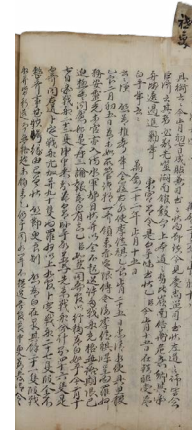
누락 부분 기재용 첨지는 13번, 21번, 25번 기사에서 볼 수 있다. 이 사례들은 모두 첨지에 두주를 기록한 경우이다. 13번 기사에는 첨지에 ‘□…□書’라고 쓰여 있다. 21번 기사에는 ‘□…□月初六日’이라는 두주가 첨지에 기재되어 있다. 24번 기사에는 ‘□…□更’라는 두주가 첨지에 기재되어 있다. 이렇게 첨지에 기재된 두주들은 날짜나 간단한 글자의 누락을 보충해준다.

문서를 보완하는 글이 적힌 첨지는 4번 기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원문 ‘本道監兵使處并以通議爲白有如乎今四月二十六日’에 첨지가 붙어 있는데, 그 첨지에는 ‘四月廿六日至(書)狀是白置不書’라는 두주가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至(書)狀是白置’를 쓰지 않았는데, 이 문구가 있어야 고문서가 완성된다는 의미이다. 『임진장초』에는 같은 위치에 빈 첨지가 붙어 있다. 또한 『충민공계초』의 같은 4번 기사에 ‘今四月二十七日 寅時 在鎮祗受 同月二十三日成貼 宣傳官趙銘齋來左 副承旨書狀內’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同月二十三日’에 대한 두주가 첨지에 ‘今四月二十七日至書狀是白有亦 不書’라고 기록되어 있다. 『임진장초』에는 같은 위치에 빈 첨지만 붙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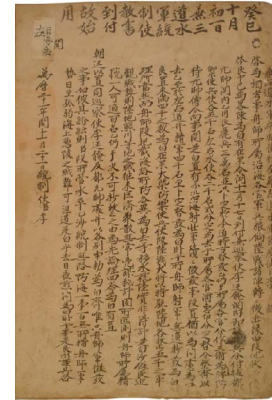
유형화 할 수 없는 첨지의 두주 중에는 ‘祗受’라고 쓰인 것도 있다. 56번 기사에서 첫 행 위에 첨지가 붙어 있는데, 그 첨지에 ‘祗受’라는 두주가 적혀 있다. ‘祗受’는 ‘공경히 받았다’는 의미이다.

참고로 『충민공계초』에는 없지만, 『임진장초』에는 있는 첨지 중에는 ‘日子相左’라는 두주가 쓰인 것들이 있다. 32번 기사에 ‘萬曆二十一年 九月初 日’가 있는데, 그 상단의 첨지에 ‘日子相左’라고 쓰여 있다. ‘일자가 서로 어긋난다’는 의미이다. 34번 기사에서도 ‘萬曆二十一年 閏十一月二十一日 統制使 臣李’에 붙인 첨지에는 ‘日子相左’라는 두주가 쓰여 있다. 이 두주들은 시간 순서대로 편집되지 못하고 ‘九月’의 기사가 ‘八月’의 기사보다 앞에 쓰였다거나, ‘閏十一月二十一日’의 기사가 ‘閏十一月十七日’의 기사보다 앞에 쓰여 있어 순서가 바뀌었다는 뜻이다.

□ 그림 4 ‘祗受’라는 두주가 적힌 사례 (『충민공계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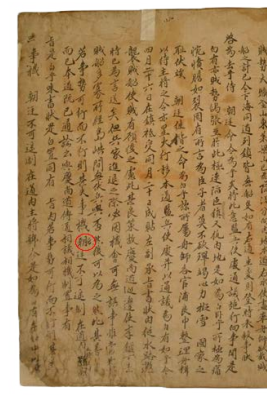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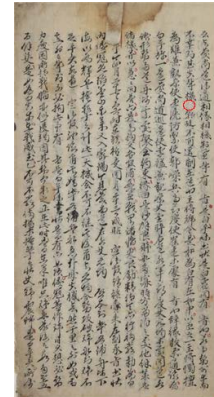
□ 그림 5 두주(日子相左)가 쓰인 사례 (『임진장초』, 34번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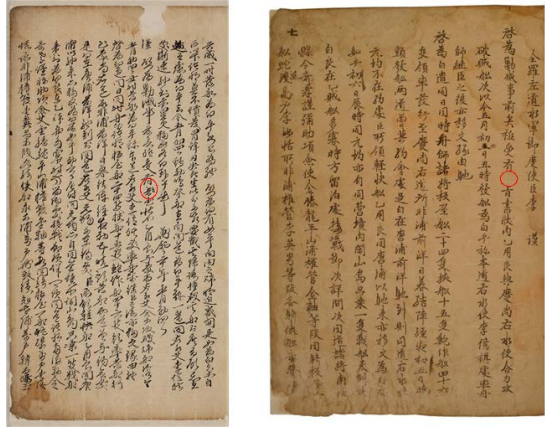
2) 부호 ‘\$’의 사용

이어서 『충민공계초』의 교정 부호의 사용과 그 용례를 『임진장초』와 비교하여 살펴보겠다. 교정 부호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이다. 이 부호는 『충민공계초』와 『임진장초』 두 자료 모두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 부호가 지시하는 바가 항상 동일했던 것은 아니다.

□ 그림 6 부호 ‘\$’의 사용과 띄어쓰기 사례 (좌 『충민공계초』(띄어쓰기), 우 『임진장초』(\$사용), 각 4번 기사)



□ 그림 7 부호 'S'의 사용과 띄어쓰기 사례  
(좌 『충민공계초』(S사용), 우 『임진장초』(띄어쓰기), 각 7번 기사)



- 1번 기사 : (1a:10) 當日馳S啓爲白乎所 ⇒ [임진] 當日馳(줄바꿈)啓爲白乎所
- 4번 기사 : (2b:13) 則甚失事機(한칸띄움)朝廷不可遙制  
⇒ [임진] 則甚失事機S朝廷不可遙制
- 7번 기사 : (6a:5) 前矣祗受有S旨書狀內乙用良  
⇒ [임진] 前矣祗受有(한칸띄움)旨書狀內乙用良
- 8번 기사 : 倭船被擄我S國人 ⇒ [임진] 倭船被擄我(한칸띄움)國人
- 10번 기사 : 謹S啓爲移上事 ⇒ [임진] 謹(줄바꿈)啓爲移上事
- 14번 기사 : 臨機把扼截殺事有S旨及追乎到付有(한칸띄움)旨書狀內  
⇒ [임진] 臨機把扼截殺事有(한칸띄움)旨及追乎到付有(한칸띄움)旨書狀內
- 19번 기사 : 獲成一S國之根本 ⇒ [임진] 獲成一(한칸띄움)國之根本
- 19번 기사 : 勤(한칸띄움)王恢復 ⇒ [임진] 勤S王恢復
- 20번 기사 : 謹S啓爲相考事 ⇒ [임진] 謹(줄바꿈)啓爲相考事

- 23번 기사 : 道內奉S命帥臣等  
⇒ [임진] 道內奉命帥臣等(줄바꿈·띄어쓰기 없음)
- 24번 기사 : 謹S啓爲取稟事 ⇒ [임진] 謹(줄바꿈)啓爲取稟事
- 36번 기사 : 托以投附我S國爲言 ⇒ [임진] 托以投附我(한칸띄움)國爲言
- 40번 기사 : 并以更良各別申勅S啓下爲白乎去  
⇒ [임진] 并以更良各別申勅(한칸띄움)啓下爲白乎去
- 41번 기사 : 突山島S國屯田 ⇒ [임진] 突山島(한칸띄움)國屯田
- 42번 기사 : 謹(한칸띄움)啓爲取(한칸띄움)稟事  
⇒ [임진] 謹(줄바꿈)啓爲取S稟事
- 45번 기사 : 兼巡便否以S啓何如 ⇒ [임진] 兼巡便否以(줄바꿈)啓何如
- 57번 기사 : 弛緩至於此極是白置S朝廷以各別催促爲白乎去  
⇒ [임진] 기사 없음. [전서] 弛緩至於此極自(한칸띄움)朝廷各別催促
- 61번 기사 : 追到爲有齊節S唐兵持牌文出來事段 ⇒ [임진] 기사 없음.

『충민공계초』에 이 부호가 나타난 부분이 『임진장초』에서 줄바꿈 처리된 사례는 1번, 10번, 20번, 24번, 45번 기사이다. 또 『임진장초』에서 한 칸 띄움으로 나타나는 사례는 7번, 8번, 14번, 19번, 36번, 40번, 41번, 57번 기사이다. 『충민공계초』에 이 기호가 있지만 『임진장초』에는 아무런 표시나 교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23번, 61번 기사이다.

반대로 『충민공계초』에 한 칸 띄워진 부분이 『임진장초』에서 부호 S로 기재된 사례는 4번, 19번, 42번 기사이다. 그밖에도 『충민공계초』에 한 칸 띄워져 있는 부분이 『임진장초』에서는 줄바꿈으로 되어 있는 사례가 있는데, 42번 기사가 그 사례에 속한다.



#### IV. 맺음말

『충민공계초』에는 『임진장초』에 실려 있지 않는 12편의 장계와 이항복의 「이통제비명」, 「고통제사이공유사」, 박승종의 「충민사기」가 수록되어 있다. 『임진장초』에는 『충민공계초』에 실려 있지 않는 5편의 장계가 수록되어 있다. 따라서 두 본 모두 이순신의 모든 장계가 망라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편찬 작업 시 조사가 가능한 정도까지만 각 자료에 수록되었으며, 현존하던 모든 장계를 모아 편찬한 것이 후일 정조대에 발간된 『이충무공전서』이다. 그러나 『이충무공전서』에는 편찬 작업 중 이두를 삭제하고 정격한 문으로 고친 부분이 많아 원문의 형태를 상실한 장계들이 수록되어 있다. 요컨대 『이충무공전서』는 『충민공계초』와 『임진장초』라는 두 본을 종합하고 정격한문을 구사하여 정보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충민공계초』와 『임진장초』는 원문의 형태와 이두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원자료에 가깝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충민공계초』와 『임진장초』를 비교해 보았을 때, 『충민공계초』에는 『임진장초』를 통해서 파악 가능한 부분이 존재하며, 『임진장초』 또한 『충민공계초』를 통해 파악 가능한 부분이 존재한다. 이 두 문서는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이다. 따라서 『충민공계초』는 『임진장초』와 동일한 내용적 가치를 지닌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임진장초』는 편찬 시기에 대한 기록이 없으나 『충민공계초』는 1662년 3월 20일이라는 정확한 편찬 시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어느 자료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가치를 지닌 자료라 하겠다.

#### “『忠愍公啓草』의 교감 작업과 그 특징”에 대한 토론문

김주식  
국립해양박물관

『충민공계초』의 공개 이후, 그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움직임이 학계에서 조금씩 있어 오다가, 2015년 4월 말 언론의 조명을 받은 이후 그러한 노력이 관계(官界)와 학계에서 더욱 확산되었다. 그러나 『충민공계초』에 대한 본격적인 학술조사와 연구가 미비했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은 정확하게 기재된 편찬연도만 강조하는 등 막연한 움직임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충민공계초』에 대한 교감 작업은 이 자료에 대한 일차적이면서 가장 기본적인 학술 조사라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서명(書名)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이 자료의 표지에는 『忠愍公啓草』라고 제목이 쓰여 있으며, 그 오른쪽에 작은 글씨로 「壬辰兵亂事」라고 부제가 적혀 있다. 사당 이름을 본 따 책에 ‘충민공(忠愍公)’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면, ‘충렬사(忠烈祠)’도 있는데 왜 ‘충렬공’으로는 부르지 않았는지 의문이 든다. 또한 이순신이 사후 충무공, 충민공, 충렬공 등 여러 가지 시호로 불렸는지 여부도 궁금하다.

두 번째는 ‘충민사(忠愍祠)’의 기원과 『忠愍公啓草』라는 서적명과의 관련성에 대한 질문이다. 흔히 「충민사기」를 근거로 1601년에 선조가 이 사당을 건립하고 사액했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선조수정실록』의 1598년 11월 11일자 기사에 “바닷가 사람들이 사우(祠宇)를 짓고 충민사(忠愍祠)라 불렀다.”는 기록이 있다. 이에 따르면 충민사는 이순신이 전사한 후 좌수영 주민들이 스스로 지은 사당이며, 선조는 후에 사액만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순신에게 ‘충무공(忠武公)’이라는 시호가 하사된 때는 1643년이고, 『충민공계초』의 필사연도는 1662년이다. 『충민공계초』는 충무공이라는 시호를 하사하고 19년이 지났을 때 편찬되었다. 그렇다면 왜 편찬자는 왕이 이미 하사한 충무공이라는 시호를 사용하지 않고 충민공이라는 시호를 사용했을까? 왕정국가에서

1) 정진술, 『忠愍公啓草』의 書誌學的 考  
명, 『이순신 장계와 충민공계초 연구』,  
국립해양박물관 편, 2017, pp.82-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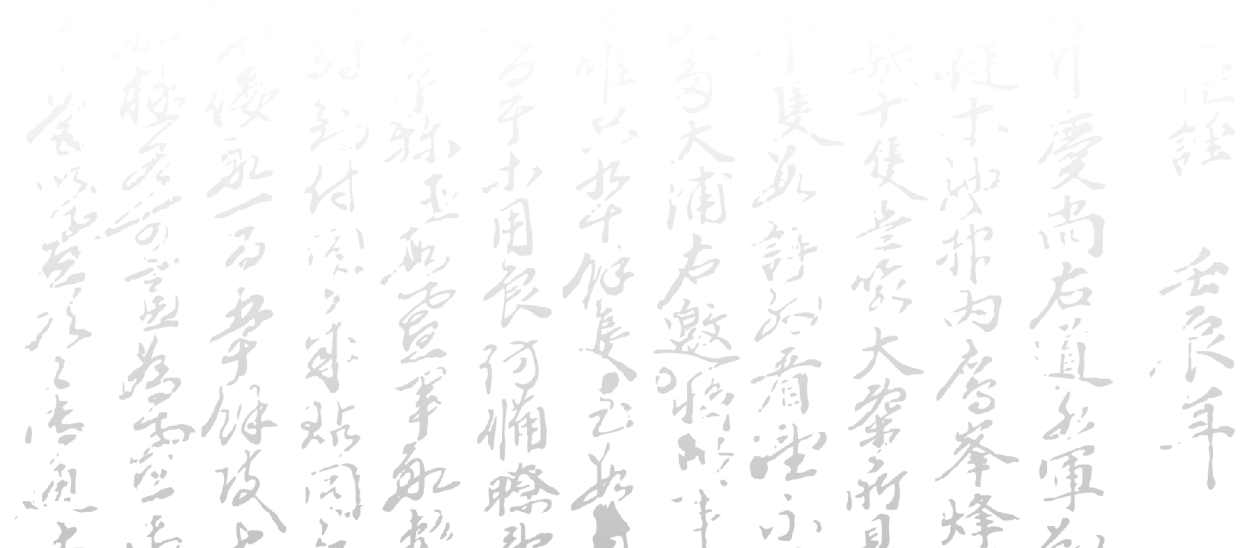
왕이 하사한 시호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가능한 일이었을까? 혹시 편찬자가 왕이 하사한 시호가 아닌 백성이 지어준  
충민공이라는 명칭을 의도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닐까?

세 번째는 작성자 비정과 자료의 선후관계에 대한 의문이다. 정진술은  
『충민공계초』를 이순신 후손이 사적(私的)으로 작성한 것<sup>1)</sup>이라고 보고 있고,  
안승준은 전문교리가 작성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즉 작성자 비정에 차이가  
있는데, 이 점에 대한 부연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정진술과 안승준 모  
두 『임진장초』가 18세기에 편찬되었다는 데는 의견의 일치를 보여주었으나,  
『충민공계초』와 『임진장초』 두 자료의 작성 시기에 대한 선후관계가 어떤 것  
인지에 대해서는 더 자세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 IV. 『忠愍公啓草』의 書誌學的 考명

정진술

토론문 옥영정



# 『忠愍公啓草』의 書誌學的 조명

정진술  
순천향대학교

- I. 머리말
- II. 李舜臣 狀啓의 謄抄와 문서양식
- III. 『忠愍公啓草』의 書誌的 高찰
- IV. 기타 李舜臣 狀啓 抄本
- V. 맺음말
- 부록. 현존하는 이순신 장계 총 목록

## I. 머리말

忠武公 李舜臣(1545-1598)은 임진왜란(1592-1598) 7년 동안 전라좌수사 또는 전라좌수사 겸 삼도수군통제사로서 조선 수군의 운영과 해전을 수행하면서 많은 장계(狀啓)<sup>1)</sup>를 조정에 올렸다. 그는 조정에 올렸던 장계를 훗날 업무에 참고하기 위해 등초(謄抄, 원본에서 베껴 옮김)하여 두었다. 이순신이 등초해 두었던 장계는 후대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여러 차례 필사되었고, 『忠愍公啓草』는 이렇게 필사된 초본(抄本, 원본에서 필요한 부분만 뽑아서 베껴 책이나 문서)들 가운데 하나로 현재 국립해양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순신 장계 중 그 내용이 오늘날까지 전해오고 있는 것은 1592년에서 1594년에 이르는 장계 78편이다. 『충민공계초』에는 이 가운데 68편이 수록되어 있다. 특히 『충민공계초』는 『壬辰狀草』에 없는 12편의 장계가 비교적 원문에 가까운 모습으로 수록되어 있어 근래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금번에 필자에게 주어진 주제는 『충민공계초』를 서지학적(書誌學的)으로 조명하는 것이다. 해양사를 전공한 필자에게 서지학은 생소한 분야지만, 평소 애 해양사의 한 분야인 이순신과 임진왜란 해전사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졌던 관계로 필자에게 이러한 연구 주제가 있게 되었다.

서지학은 도서(圖書)를 연구 대상으로 하는 학문으로, 도서 및 도서 관계 사항의 일반연구와 각개의 도서에 관한 고증적 연구가 행해지며, 도서의 분류·해제(解題)·감정(鑑定) 등이 이루어지는 학문이라고 사전적으로 정의되어 있다. 필자는 이러한 서지학적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룰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필자의 능력 범위 내에서 『충민공계초』를 고찰할 수밖에 없다.

먼저 주제에 접근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 이순신 장계가 등초된 과정과 장계의 문서양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그리고 나서 『충민공계초』의 서지(書誌), 유래, 구성 내용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며, 이어서 『충민공계초』(충)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기타 이순신 장계 초본(抄本) 예컨대, 『壬辰狀草』(임), 『忠武公遺事』(유), 『要覽』(요), 『李忠武公全書』(전), 『忠武公啓草』(계)들의 서지(書誌)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 II. 李舜臣 狀啓의 謄抄와 문서양식

이순신은 임진왜란 동안 전라좌수사 혹은 겸삼도수군통제사로서 전쟁 수행 및 직무와 관련한 많은 보고서를 국왕과 세자에게 올렸다. 흔히 장계라 불리는 그 문건들은 법전에 따라<sup>2)</sup> 전라좌수영 장계등록(狀啓謄錄)으로 작성하여 보존되었어야 하지만,<sup>3)</sup> 오늘날까지 전해오는 당시의 장계등록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지금으로서는 이순신 장계의 원본문서는 볼 수가 없다.

이순신은 조정에 올렸던 장계들을 다행히도 따로 등초하여 지니고 있었는데, 이는 그의 장계들이 전쟁과 관련된 중요한 공문서였기 때문에 사안의 진행사항을 계속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고 또 훗날 업무에 참고하기 위해

2) 『經國大典』, 禮典, 用文字式, “官府文字 並置立案 以憑後考”

3) 이형중, 『조선시대 등록(謄錄)체계의 기록학적 의미와 현대적 변용』,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2, pp.40-42

4) 『亂中日記』 甲午年(1594) 3월 7일, 이순신은 한산도에서 명나라 선유도사 담중인(譚宗仁)의 금토파문(禁討牌文)에 대한 답장을 지어 공문으로 보내면서 군관 정사립(鄭思立)을 시켜 써보낸 바가 있었다.

5) 이형중, 앞의 글, p.19에 의하면, 조선 시대에는 원칙적으로 해서체로 공문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었다.

서였다. 이러한 등초 작업은 이순신 자신이 직접 했을 수도 있었겠지만, 아랫사람을 시켜서 작업했을 가능성이 크며,<sup>4)</sup> 해서체(楷書體)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sup>5)</sup> 여기서는 논리 전개의 편의상 이순신이 따로 등초하여 보관하였던 이 장계들을 '李舜臣 膽抄狀啓'(또는 '등초장계')라 부르기로 한다. '이순신 등초장계'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상당 기간 동안 이순신 본가에 보관되어 왔다.

'이순신 등초장계'는 후대에 여러 사람들이 이를 선별적으로 필사하여 다양한 명칭의 초본(抄本)으로 작성되었다. 예컨대, 『忠愍公啓草』, 『壬辰狀草』, 『忠武公遺事』, 『要覽』, 『李忠武公全書』, 『忠武公啓草』 등이다. 이 초본들에 대한 각각의 서지(書誌)는 Ⅲ장과 Ⅳ장에서 후술될 것이다. 현재까지 전해오는 이 초본들에 의하면, 이순신 장계는 모두 78편이다. 『충민공계초』에 68편, 『임진장초』에 61편, 『이충무공전서』에 71편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세 책을 포함한 여러 초본에 있는 것들을 대조하여 중복된 것을 빼고 종합하면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78편이 된다. 이 장계들을 『임진장초』를 기준으로 하여 순서대로 목록을 정리한 것이 부록의 '현존하는 이순신 장계 총 목록'이다.

□ 표 1 초본(抄本)별 이순신 장계 편수와 중복 편수 현황

중복 편수	『忠愍公啓草』	『壬辰狀草』	『忠武公遺事』	『要覽』	『李忠武公全書』	『忠武公啓草』
9	○	○	○	○	○	○
4	○	○	○		○	○
5	○	○		○	○	○
31	○	○			○	○
7	○	○				○
5		○			○	○
2	○				○	○
3	○		○		○	
7	○				○	
5					○	
78	68	61	16	14	71	63

이순신 장계는 부록에서 분류하고 있는 바와 같이 네 가지 문서양식으로 되어 있는데, 곧 장계(狀啓)·장달(狀達)·계본(啓本)·달본(達本)이다.

장계(狀啓)는 조선시대 관찰사·병사·수사 등 왕명을 받고 외방에 나가 있는 신하가 자기 관하의 중요한 일을 국왕에게 보고하거나 청하는 문서를 말한다. 장계는 승정원에서 열어보고 담당승지가 이를 왕에게 올려서 왕의 재가를 받은 다음, 계하인(啓下印, 啓字를 새긴 도장)을 찍고 그 장계의 내용과 관계있는 관서에 하달하게 된다.<sup>6)</sup> 특별히 대리청정(代理聽政)하는 세자에게 올리는 문서는 장달(狀達)이라 부르고, 승정원 또는 시장원<sup>7)</sup>에서 열어보고 세자에게 올리며, 세자의 재가를 받아 그 내용과 관련있는 관부에 하달하여 시행하였다.<sup>8)</sup>

『경국대전』에 장계의 서식은 나와 있지 않으나 장계도 일정한 서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sup>9)</sup> 『典律通補』 別編에 의해 아래와 같은 서식으로 알려져 있다.<sup>10)</sup> 세자에게 올리는 장달의 서식은 아래 장계의 서식에서 선계(善啓)를 선달(善達)로 대치한 형식이다.

具銜 臣 姓 署名  
某事 云云 爲白臥乎事是良尔(혹은 爲白只爲) 詮次  
善啓向教是事  
年號幾年某月某日

장계는 후대의 업무에 참고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원본문서를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원본문서를 그대로 옮겨 적어[謄書] 새롭게 책자 형태로 편찬했다.<sup>11)</sup> 이렇게 만들어진 기록물을 장계등록(狀啓謄錄)이라고 하는데, 장계등록은 장계를 보내는 기관의 명칭을 제목으로 삼는다. 예컨대, 경기감영에서 보낸 장계를 등록한 것은 『京畿監營啓錄』, 전라도의 병영에서 보낸 장계를 등록한 것은 『全羅兵營狀啓謄錄』 등으로 표시한다.<sup>12)</sup>

계본(啓本)은 2품 이상의 관아 또는 중외제장(中外諸將) 등이 중대한 일을 국왕에게 올리던 문서양식이다. 『경국대전』에 계본식(啓本式)<sup>13)</sup>으로 그 서

6) 최승희, 『改正 增補版 韓國古文書研究』, 지식산업사, 2011, p.164

7) 『壬辰狀草』에 의하면, 世子侍講院에서 열어보도록 되어 있다.

8) 최승희, 『장달』,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

9) 이형중, 앞의 글, p.42

10) 최승희, 위의 책, p.165

11) 박선이, 『임진왜란 시기 狀啓에 나타난 朝鮮式 漢文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p.8

12) 이형중, 앞의 글, p.41

13) 『經國大典』 啓本式 :  
某衙門 某職 臣某 謹  
啓爲 某事 云云 謹具啓  
聞 伏 候  
教 旨 謹 啓  
年 印 月 日 某職 臣某 某職 臣某

14) 박선이, 앞의 글, p.8; 『經國大典』, 「禮典」, 「用文字式」, “二品衙門直啓(中外諸將 承政院 掌隸院 司諫院 宗簿寺 亦得直啓 各司有繁事 則提調直啓 大事啓本 小事啓目 外則無啓目) 直行移(相考事 外皆啓) 其餘衙門 並報屬曹”

15) 최승희, 앞의 책, p.155

식이 나와 있다. 장계가 승정원의 담당승지를 통해 국왕에게 보고되는 문서였던 반면에, 계본은 승정원을 거치지 않고 국왕에게 바로 보고되는 문서였다.<sup>14)</sup> 계본에 해당하는 문서로 세자에게 바로 올리는 문서양식은 달본(達本)이라 하였다.

외방(外方)의 계본은 이두를 섞어 썼는데, 『典律通補』 별편에 의해 아래와 같은 서식으로 알려져 있다.<sup>15)</sup> 여기에는 『경국대전』의 계본식에서 보이지 않던 이두문이 나와 있고, 이는 『임진장초』나 『충민공계초』 등에서 실제로 살펴볼 수 있는 서식이다. 한편, 승정원 또는 시강원을 거치지 않고 세자에게 바로 보고되는 달본의 서식은 아래 계본의 서식에서 계(啓)를 달(達)로 대치한 형식이다.

單衙 臣 姓名 謹

啓爲某事 云云 爲白只爲(또는 爲白遣) 謹具啓

聞

年號幾年某月某日 單衙 臣 姓 署名

이순신은 1591년에 전라좌수사로 부임하여 1592년에 임진왜란을 맞이하였다. 오늘날까지 전해오는 그의 장계초본들로 미루어 유추해 보건대, 이순신은 임진왜란이 발발한 직후부터 자신이 조정에 올렸던 장계들을 등초하여 가지고 있었고, 1597년 2월에 통제사에서 파직되어 의금부로 잡혀갔을 때는 그때까지 등초해 두었던 장계 곧 ‘등초장계’들을 자신의 집으로 옮겼던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까지 전해오는 장계의 일자가 1594년에 멈춘 것을 근거로 이와 같이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이순신이 1597년 8월에 통제사에 재임명된 이후부터 1598년에 노량해전에서 전사하기까지 그가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등초장계’들은 수습되지 못했던 것 같다. 이순신의 유해는 노량해전에서 자신의 곁을 지키고 있었던 만아들 이회(李薈, 1567~1625)에 의해 고금도로부터 아산의 본가로 옮겨졌는데, 이때 이순신의 중요한 유품들, 예컨대 삼도수군통제사

재임명장인 기복수직교지(起復授職教旨), 재임명시 함께 발부되었던 사부유서(賜符諭書), 고금도에서 명나라 수군 장수들로부터 선물 받은 도배(桃盃), 요대(腰帶) 등도 함께 옮겨졌다. 그렇지만 오늘날 아산 본가(현충사)에는 이 유물들 외에도 있어야 할 1594년 이후의 장계들이 보이지 않는다. 추정컨대, 만아들 이회 일행은 부친의 유해 수습에 골몰하느라 고금도 통제영에 있었던 많은 ‘등초장계’들을 완전히 챙기지 못한 것이 아닌가 싶다.

임진왜란 종료 이후 이순신과 관련된 기록물은 두 차례에 걸쳐 크게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는 이순신의 현손(玄孫)이자 봉사손(奉祀孫)인 이홍의가 1715년에 『충무공가승』<sup>16)</sup>을 편찬하면서 유고(遺藁)들을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이때 친필일기와 장계는 수록되지 않았다. 두 번째는 정조의 지시에 의한 1795년의 『이충무공전서』 편찬이다. 이때는 장계를 포함한 이순신과 관련된 모든 문서들이 규장각에서 종합 편찬되었다.

이순신 본가에 오랫동안 소장되었던 ‘등초장계’들은 1795년에 『이충무공전서』가 편찬될 때까지도 보존되어 왔으나, 그 이후에 유실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행인 것은 유실되기 이전에 ‘등초장계’들에 대한 필사 작업이 여러 차례 이루어져 그 내용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는데, 『충민공계초』도 그중의 하나이다.

### III. 『忠愍公啓草』의 書誌的 高찰

#### 1. 『忠愍公啓草』의 書誌

『충민공계초』는 1592년 4월 15일자 계본을 시작으로, 1594년 4월 20일자 계본까지 3년 치 68편의 이순신 장계를 다른 사람이 옮겨 적은 것이다. 이순신의 친필은 아니지만 임진왜란과 이순신을 연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로서 현재 국립해양박물관에 보존되어 있다. 『충민공계초』의 서지에 대해서는 이미 고찰된 바가 있다. 예컨대, 박선이가 그의 석사학위 논문 말미에 부록으로 『충민공계초』에 대한 간략한 검토 결과를 실었는데, 거기에는 <표 2>

16) 『충무공가승』의 구성과 내용은 윤정, 『肅宗代 『忠武公家乘』 편찬의 경위와 정치적 함의-『李忠武公家乘』의 원전에 대한 검토-』, 『역사와 실학』 55, 역사실학회, 2014, pp.123-134에 자세히 다.

17) 박선이, 앞의 글, p.83

18) 노승석, 『이순신의 『충민공계초(忠愍公啓草)』에 대한 서지적 고찰』, 『文化財』 49-2, 국립문화재연구소, 2016

19) 박선이, 앞의 글, p.83

20) 조선시대에 충민공(忠愍公)이라는 시호(諡號)를 받은 사람은 林慶業 등 22명에 이른다(『增補文獻備考』, 권240, 職官考, 諡號).

21) 왕명이 아닌 전라좌수영의 군졸들과 지역민들의 힘으로 세워졌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김대현, 『여수 충민사의 건립경위 및 연대에 관한 재고찰』, 『이순신연구논총』 22, 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 2014)

22) 노승석, 위의 글, p.8

와 같은 서지사항이 포함되어 있다.<sup>17)</sup> 노승석도 『충민공계초』를 서지적으로 고찰한 논문을 발표하였는데, 논란이 되었던 ‘장계별책’이 곧 『충민공계초』라는 주장이 그 요지였다.<sup>18)</sup>

『충민공계초』는 1책 73장의 필사본으로 표지가 심하게 마모되어 있으나, ‘忠愍公啓草’라는 표제가 확인되며, 표제의 오른쪽에 표제보다 조금 작은 글자로 ‘(壬)辰年兵亂事’라는 부제가 희미하게 보이고, 또 다른 식별되지 않는 글자도 표지에 있다. 편자는 알 수 없으나, 책의 말미에 있는 ‘康熙元年 壬寅 三月 念日 書終’이라는 기록을 통해 편자가 1662년(현종 3) 3월 20일에 필사를 마쳤음을 알 수 있다. 본문은 판식(板式)이 없고, 무계(無界)에 행서(行書)로 필사되었으며, 반엽(半葉) 13행(行) 자수부정(字數不定)이다.<sup>19)</sup>

□ 표 2 『충민공계초』의 書誌 사항

서명	忠愍公啓草
편저자	編者未詳 / 李舜臣 著
판본	筆寫本
간행	간행장소 : 미상 / 간행년도 : 1662년 (현종 3)
형태	크기 : 23.9×41.2cm / 線裝, 1책(73張) / 楮紙 / 漢文 판식 : 無界, 13行 字數不定
印記	無
소장처	국립해양박물관

『충민공계초』가 편찬된 1662년 이전인 1643년(인조 21)에 이순신에게 이미 충무공(忠武公)이라는 시호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이순신을 충무공이 아닌 충민공<sup>20)</sup>으로 호칭하고 있다. 이순신을 충민공으로 부르게 된 것은 그가 전사한 후인 1601년(선조 34)에 선조가 그의 충성과 위훈을 기려 전라좌수영(여수)에 사당을 건립하고,<sup>21)</sup> 충민(忠愍)이라 사액(賜額)한 데서 유래한다. 그 후 1633년에 남해현령 이정진이 노량 충렬사 안에 이순신을 추모하기 위해 충민공비(忠愍公碑)를 세우고, 1666년에는 최시용이 『난중잡록』 서문에 “李忠愍이 통제사로 큰 공을 세우고는 총탄을 맞고 전사하자, 공은 시를 지어 애도했다”고 썼다.<sup>22)</sup> 『충민공계초』가 편찬되었을 당시에

이순신은 충무공과 더불어 충민공으로도 불렸던 것이다.

선조-인조 당시 충민사는 전라좌수영과 더불어 이순신 사적의 중심지로서,<sup>23)</sup> 이순신 추모시(追慕詩)의 상징이 되었다. 예컨대, 류성룡(柳成龍, 1542~1607)의 「哀李統制」에는 “슬프다 충민사 두어칸 사당”<sup>24)</sup>, 이수광(李睟光, 1563~1628)의 「忠愍祠」에는 “지금에 이 바다 위에 누가 님을 이을꼬”<sup>25)</sup>, 정운희(鄭運熙, 1566~1635)의 「忠愍祠」에는 “진 쳤던 언덕에 새 사당 짓고”<sup>26)</sup>, 홍우원(洪宇遠, 1605~1687)의 「題忠愍祠」에는 “바닷가 영문 북쪽 산기슭 위에 찬란한 사당집을 우뚝 세우니 사당 이름 석 자는 빛나는 어필(御筆)”<sup>27)</sup>이라 읊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충민사는 곧 이순신을 기리는 사당이라는 인식을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추정컨대, 『충민공계초』 편찬자는 이순신에게 충무공이라는 시호가 내려진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일찍부터 이순신이 ‘충민’으로 불렸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충민공’이라는 칭호를 사용하지 않았을까 싶다.

## 2. 『忠愍公啓草』의 편찬 유래

『충민공계초』는 장계 68편에 이어 책의 뒷부분에 이항복(李恒福)이 지은 「李統制碑銘」(1615),<sup>28)</sup> 박승종(朴承宗)이 지은 「忠愍祠記」(1609),<sup>29)</sup> 이항복이 지은 「故統制使李公遺事」(1601)<sup>30)</sup>가 차례대로 기술되어 있다. 이 3건의 기사는 특이하게도 『충민공계초』가 편찬되기 이전에 모두 당시 전라좌수영(여수)에만 있었던 비석 혹은 사당과 관련된 글들이다.

『충민공계초』(1662)가 편찬될 당시에 아산 이순신 본가에는 조카 이분(李芬, 1566~1619)이 1600년 무렵에 지은 것으로 추정되는 「行錄」, 최유해(崔有海, 1588~1641)가 지은 「行狀」, 이식(李植, 1584~1647)이 지은 「諡狀」 등 이순신의 행적과 관련된 뛰어난 문건들이 이미 보존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김육이 1660년에 지은 신도비문(神道碑文)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민공계초』에는 이러한 뛰어난 문건들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로 유추해 볼 때, 『충민공계초』는 여수의 충민사를 대상으로

23) 윤정, 앞의 글, p.131

24) 『李忠武公全書』, 권12, 부록4, 「哀李統制」, “淒涼數間愍忠祠”

25) 위의 책, 권12, 부록4, 「忠愍祠」, “至今滄海上 誰復嗣戎功”

26) 위의 책, 권12, 부록4, 「忠愍祠」, “陣磧開新廟”

27) 위의 책, 권12, 부록4, 「題忠愍祠」, “驃騎營北海山上 突兀金碧開神祠 輝輝三字自御賜”

28) 비문의 원래 이름은 「統制李公水軍大捷碑」이며, 『이충무공전서』에는 「全羅左水營大捷碑」로 되어 있다. 1615년에 비문이 지어졌고, 1620년 전라좌수영(여수)에 비석이 세워졌다.

29) 1609년에 전라관찰사 박승종이 충민사를 순시하면서 지은 글이다.

30) 「故統制使李公遺事」는 전라좌수영에 충민사를 건립하면서 1601년 이항복이 지은 글로 「忠武公家乘」과 「李忠武公全書」에는 「忠愍祠記」로 되어 있다.

31) 1662년 전후의 전라좌수사는 崔廷顯 (1659년 부임), 朴洞(1661년 부임), 俞旋 (1662년 부임)으로 덕수 이씨는 보이지 않는다.(1815년 간행 『湖左水營誌』 참고)

32) 『효종실록』 권18, 효종 8년, 6월 7일(무인)

33) 위의 책, 권20, 효종 9년, 6월 11일(정축)

34) 위의 책, 권21, 효종 10년, 윤3월 28일(무자), 30일(경인)

35) 위의 책, 권5, 현종 3년, 2월 2일(병오)

36) 위의 책, 권7, 현종 4년, 10월 5일(기해)

37) 위의 책, 권10, 현종 6년, 5월 1일(병술)

38) 『三世家狀』 嘉義大夫 德原君(李弘毅) 墓碣

39) 『효종실록』 권11, 효종 4년, 8월 23일(을유)

이순신의 위훈을 선양하기 위해 편찬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충민공계초』는 편찬된 이후 오랫동안 덕수 이씨 충무공파 종가에 소장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아, 편찬자는 전라좌수영과 충민사를 흠모하는 이순신의 종손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sup>31)</sup>

『충민공계초』가 편찬된 1662년을 전후로 수년 동안 조정에서는 이순신과 그 후손에 대한 대우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되었다. 1657년(효종 8)에 대사헌 민응형이 절의(節義)는 국가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므로 이순신의 자손을 등용할 것을 건의하였고,<sup>32)</sup> 1658년(효종 9)에는 영돈령부사 김육의 건의에 따라 이순신의 묘소에 표석(表石)을 세우고 또 그 자손을 등용하도록 하였다.<sup>33)</sup> 1659년(효종 10)에는 남해 노량에 충무공 이순신의 비를 세웠으며, 효종은 비문을 받아 직접 읽어보기도 하였다.<sup>34)</sup> 또 예조(禮曹)가 통제사 정익(鄭楡)이 노량에 세웠던 이순신 사당에 묘액(廟額)을 내려주기를 청하자 현종은 1662년(현종 3)에 충렬(忠烈)의 호를 사액하였고,<sup>35)</sup> 1663년(현종 4)에는 통영의 사당에도 충렬(忠烈)의 호를 사액하였다.<sup>36)</sup> 1665년(현종 6)에는 아산의 이순신 사당에 예관을 보내 제사를 지냈다.<sup>37)</sup>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1667년(현종 8)에 이순신의 4대 종손 이홍의(李弘毅, 1648~1735)가 음사(蔭仕)로 제릉참봉(齊陵參奉)에 임명되었으며, 그는 훗날 신령현감을 역임하였다.<sup>38)</sup>

추정컨대, 북벌을 도모하고 있던 효종이 이순신과 같은 뛰어난 무장(武將)을 갈망하는 가운데,<sup>39)</sup> 이순신에 대한 추모의 분위기가 크게 증대되었고, 현종 대인 1662년에 이르러 전라좌수영과 충민사를 흠모하는 이순신의 후손이 『충민공계초』를 작성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 3. 『忠愍公啓草』의 구성과 내용 검토

『충민공계초』는 이순신이 국왕 또는 세자(광해군)에게 올린 장계 68편을 수록하고 있다. 국왕에게 올린 장계 14편과 계본 49편, 세자에게 올린 장달 3편과 달본 2편이다. 장계에 이어 책의 뒷부분에는 오성부원군(鰲城府院君)

이항복(李恒福)이 지은 「李統制碑銘」, 관찰사(觀察使) 박승종(朴承宗)이 지은 「忠愍祠記」, 이항복이 지은 「故統制使李公遺事」가 차례대로 기술되어 있다.

『충민공계초』에 수록된 장계를 연도별로 보면, 만력(萬曆) 20년(1592) 장계 14편, 만력 21년(1593) 장계 29편, 만력 22년(1594) 장계 22편, 일자 미상 3편이 포함되어 있다.

임진왜란 첫 해인 1592년(임진)의 장계 내용을 보면, 일본군이 대거 내침함에 따라 관찰사(觀察使)·병사(兵使)·수사(水使)들 간에 긴박하게 오고 간 적정(賊情)과 대비 현황, 경상도 해역으로 4차례 출전하여 벌인 전투상보(戰鬪詳報), 군량의 배분 조치, 한산도에 포위된 왜병의 도망, 전사한 녹도만호 정운의 이대원 사당 배향, 일족에게 징발하지 말라는 명령의 취소 요청 등이 포함되어 있다.

1593년(계사)의 장계 내용은, 의승병의 요충지 분송 배치, 피란민의 돌산도 입도 경작, 웅포 해전의 전투상보, 수군 소속 고을의 해전 전속, 광양현감 어영담의 유임 및 조방장 임명 요청, 충청도 수군의 후원 요청, 왜군의 정세, 정철총통의 개발, 유향의 지원, 통제사 직무 수행을 위한 문신 종사관 임명, 연해안의 군병기를 수군에 전속, 연해안에 둔전 설치, 한산도에서 무과시행 요청 등이 포함되어 있다.

1594년(갑오)의 장계 내용은, 승장의 위조문서, 수륙군을 바꾸어 방비시키는 일의 불합리성, 방비군의 결원을 낸 수령의 처벌, 홍양 목관 교체, 수륙군의 교차 징발 폐단, 왜군의 정세, 일족에게 징발하지 말라는 명령의 취소, 충청수사 후원 독촉, 집결지시에 지체하는 장수들의 처벌, 의병장들에게 포상 건의, 제2차 당항포 해전 전투상보, 무과 특별시험 결과, 소속 장수들의 교대 휴가 실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지금까지 이순신 장계는 『이충무공전서』에 71편으로 가장 많이 수록되어 있었으나, 수록된 장계들에는 이두문이 모두 빠지고, 첫머리와 끝부분도 삭제되며, 전사자(轉寫者)가 임의로 수정한 내용도 많아 ‘이순신 등초장계’의

40) 『충민공계초』의 대표적인 이두문 오류는 다음과 같다.

부록 순번1, 因倭警待變狀(1), “必是歲遺船是在果唯只”→“是白在果”(임,유,계)

부록 순번7, 玉浦破倭兵狀, “登山之賊是白乎矣”→“爲白乎矣”(임,유,계)

상동, “罷陣爲白在而亦”→“爲白乎在亦”(임,유,계)

부록 순번8, 唐浦破倭兵狀, “反爲示弱分叱不諭”→“叱分不諭”(임,유,계)

상동, “招辭是白齊同人等具是”→“是白有亦”(임,유,계)

상동, “爲白有如可”→“爲白如可”(임,유,계)

부록 순번9, 見乃梁破倭兵狀, “招辭爲白有亦”→“是白有亦”(임,유,계)

상동, “開諭爲白有乎餘”→“爲白有齊”(임,유,계)

부록 순번66, 陳倭情狀, “追到爲有齊”→“爲白有齊”(유)

원 모습을 잃고 있었다. 다행히 『이충무공전서』의 이러한 결함은 『임진장초』가 보완해주었다. 그렇다면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임진장초』에도 없던 17편의 장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그 원 모습과 작성일자를 여전히 알 수가 없었다. 그런데 『충민공계초』를 통해 그 17편 중 다음 <표 3>에 제시한 12편의 장계에 대해 『이충무공전서』를 보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충민공계초』를 통해 『임진장초』와 『이충무공전서』에 각각 상이하게 필사된 자구(字句)를 대조하여 판별할 수 있게 되었다. 『임진장초』가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마모되어 식별이 곤란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중 지금까지는 『이충무공전서』로도 확인할 수 없는 자구가 있었으나 이제 『충민공계초』로 식별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 표 3 『이충무공전서』를 보완하는 『충민공계초』장계 12편의 목록

순번(부록)	문서 양식	작성일자	장계 제목
62	啓本	萬曆 22년 2월 25일	請忠清水軍節度使催促到陣狀
63	“	萬曆 22년 2월 25일	請罪遲留諸將狀
64	“	萬曆 22년 3월 10일	請賞義兵諸將狀
65	“	萬曆 22년 3월 10일	請措劃軍糧狀
66	“	萬曆 22년 3월 10일	陳倭情狀
67	“	萬曆 22년 3월 10일	唐項浦破倭兵狀
68	“	萬曆 22년 4월 20일	陳倭情狀
69	“	萬曆 22년 4월 2일	請罪過期諸將狀
70	“	萬曆 22년 4월 19일	哨探倭兵狀
71	“	萬曆 22년 4월 11일	設武科別試狀
72	達本	萬曆 22년 4월 20일	舟師所屬諸將休番狀
73	啓本	萬曆 22년 4월 20일	請罪關防諸將狀

이와 같은 장점들이 있는 반면에, 『충민공계초』는 몇 가지 단점도 있다. 장계 첫 편부터 오자(誤字)와 탈자(脫字)가 발생하며, 전체적으로도 그 빈도가 상당히 높다. 특히 내용 가운데 누락된 부분이 많고, 이두문에도 오탃자가 나타나는데,<sup>40)</sup> 이는 관청의 보고문 작성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필사했을 때 문으로 보인다. 또한 필사자는 군사(軍事)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사람으로 보

인다. 예컨대, 첫 번째 장계인 ‘因倭警待變狀(1)’에서 여타의 모든 장계초본들이 “鷹峯烽燧監考”로 기술한 것을 “鷹峯烽燧望軍”이라 표현하였다. 필사자는 봉수관리를 위해 봉화대를 순회 감독하던 관리를 ‘감고(監考)’라 호칭한 것을 몰랐기 때문에 이를 ‘망군(望軍)’으로 기술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치밀하지 못한 필사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충민공계초』는 관직에 나아가지 못한 이순신 후손가운데 글 잘 쓰는 사람이 필사했을 것으로 보인다.<sup>41)</sup>

『충민공계초』는 첫 장계의 첫머리 부분에서만 법식대로 근계위(謹啓爲)의 계(啓)자를 별행(別行)으로 하여 한 자 올려 썼을 뿐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啓자를 문장 속에서 한 칸만 띄우고 썼다. 반면에 『임진장초』는 ‘이순신 등 초장계’ 그대로 충실히 필사하였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이런 연유로 후대에 초본(抄本)들을 필사할 때 참고본으로 『충민공계초』보다는 『임진장초』를 선호했던 것으로 보인다.

『충민공계초』는 머리말과 끝부분이 생략되어 장계의 문서양식을 판별하기 어려운 것도 있다. 그 대표적인 몇 가지 사례들을 예시하면 다음 <표 4>와 같다. 이들은 『임진장초』와 비교해 보면 대개 장계 문서양식으로 식별된다.

□ 표 4 『충민공계초』의 장계 중 시작과 끝부분이 생략된 주요 사례

순번(부록)	작성일자	장계 제목	사례
20	萬曆 21.01.22	命率舟師截賊歸路諭書(1)	去壬辰十二月 廿八日 成貼 宣傳官 蔡津賚來...중략...書狀乙 臣今正月 廿一日 巳時在鎮祗受 爲白乎 萬曆廿一年 正月 廿二日
21	萬曆 21.01.25	命率舟師截賊歸路諭書(2)	宣傳官安世傑賚來...중략... 書狀乙 臣今正月 廿五日 辰時 在鎮祗受 爲白臥乎事 萬曆廿一年 正月 廿五日
22	萬曆 21.02.17	令水陸諸將直擣熊川狀	宣傳官李賚來...중략... 巡察使處移文催促爲白臥乎事 萬曆二十一年 二月 十七日

41) 박선이는 앞의 글, pp.84-88에서 『충민공계초』는 관청에서 필사한 것으로서, 이순신을 재평가하는 과정에서 편찬된 국가적 차원의 편찬물이라 주장하였는데, 동의하기 어렵다.



『충민공계초』는 『임진장초』·『충무공유사』·『이충무공전서』와 비교해 볼 때 누락된 부분이 상당하다. 필사자가 일부러 누락시킨 부분이 있는가 하면, 부주의로 누락된 부분도 있다. 『임진장초』·『충무공유사』·『이충무공전서』와 비교하여 드러나는 수많은 오탈자 사례 가운데 내용이 크게 누락된 대표적인 사례를 예시하면 <표 5>와 같다.

□ 표 5 『임진장초』와 비교한 『충민공계초』의 대표적인 내용 누락 사례

순번(부록)	작성일자	장계 제목	내용 누락 사례(괄호 속의 부분이 누락된 내용)
7	萬曆 20.05.10	玉浦破倭兵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蛇渡僉使金浣 倭大船一隻 (防踏僉使 李純信 倭大船一隻 光陽縣監 魚泳潭 倭大船 一隻) 同部統屬</li> <li>- 臣矣帶率軍官 (前奉事 李滌) 宋希立等 同力 (倭大船) 二隻 軍官 (定虜衛) 李鳳壽等 (倭大船) 一隻 (軍官別侍衛) 宋漢連 (倭中船) 一隻 爲等如</li> </ul>
8	萬曆 20.06.14	唐浦破倭兵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斬首不多爲白如乎 (慶尙右水使 元均 接戰翌日 分遣挾船 庶幾收斬叱分不喻 同) 慶尙沿海鮑作等</li> <li>- 樂安統船射夫趙千君 (水軍 宣進斤 無上 私奴 世孫 鉢浦射夫 水軍 朴長春) 土兵 張業同</li> <li>- 綾城助防 崔亂世 (寶城一船 軍官金益水 射夫吳彥龍 無上鮑作欣孫 蛇渡一船 軍官陳武晟 林弘楠 射夫水軍金億水 陳彥良 新選許福男 助防田光禮 防炮匠許元宗 土兵鄭於叱金 呂島船 射夫石千介 柳水 宣有石) 等殷 逢箭不至重傷</li> </ul>

9	萬曆 20.07.10	見乃梁破倭兵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他倭并斬首十二級 (我國人一名生擒 蛇渡僉使金浣 倭大船一隻 洋中全捕 倭將并斬首十六級) 興陽縣監裴興立</li> <li>- 呂島船格軍 (興陽水軍姜必仁 林必斤 張千奉 蛇渡一船甲士裴中之 鹿島一船) 興陽新選朴應龜</li> <li>- 沙工朴斤世 崔白 水軍 (金弘屯 水軍俞必丁 李應弘 朴彥海 申哲 姜牙金 軍官田光禮 同鎮二船格軍鄭可當 鄭于當 吳凡同 鹿島二船軍官成吉伯 新選金德壽 水軍姜永男 朱必上 崔永安 土兵私奴毛老孫 射夫長興軍士閔時澍 格軍興陽水軍李彥丁 樂安一船格軍鮑作業同 世千 李淡 孫亡龍 同郡二船射夫金鳳壽 鮑作禾里同 壯軍朴如山 私奴難孫 寶城船無上吳欣孫 格軍奴夫皮 興陽一船鮑作古邑同 南文同 進同 官奴之南 同縣二船防炮匠正兵李亂春 射軍私奴吳茂世 格軍私奴風破同 奴大福 奴金孫 保人朴千每 私奴八連 奴欣每 奴每孫 奴克只 保人朴鶴昆 光陽船都訓導金溫 無上金淡代 格軍先同 營龜船格軍土兵金延浩 奴億只 洪允世 丁乞 張水 崔夢汗 水軍鄭希宗 趙彥夫 朴開春 全巨之 營三船鎮撫李自春 趙得 朴先厚 張每年 格軍鮑作李文世 土兵金年玉 奴鶴每 奴永耳 朴外同 鉢浦一船土兵李老郎 李仇連 水軍趙道本 同浦二船水軍崔己 金信末 崔永文 興陽三船私奴風世 鮑作亡仇之 亡己) 欣福等 重傷爲白在果</li> </ul>
---	----------------	---------	---

11	萬曆 20.09.10	釜山破倭兵狀	<p>- 前後四次赴敵 十度接戰 (皆致勝捷爲白良置 將士功勞以論之 則莫逾於今次釜山之戰)是白置</p> <p>- 營捍後船水軍(李宗 格軍士兵金江斗 朴成世 營龜船士兵鄭仁伊 朴彥必 呂島船士兵鄭世仁 射夫金希)全 蛇渡一船軍官金鵬萬 (沙工士兵水軍安元世) 格軍(士兵水軍)崔汗終 光陽水軍裴植(宗 興陽一船格軍鮑作北介) 營虞侯船射夫(鎮撫)仇銀千 防踏一船格(括)軍奴春好 (奴甫吞 同鎮龜船格括軍奴春世 格軍奴延石 實城水軍李加叱福 實城船無上欣孫等殷 中丸不至重傷 臣所騎船士兵水軍金永見 鮑作今同 防踏龜船)順天射夫(新選)朴世奉等殷 逢箭</p> <p>- (倭物秩 倭甲五部內 一金甲 倭甲 兜鍪三 倭長槍二柄 倭銃筒四 倭大錠四 倭騎鞍一部 於赤一部 倭超床一 倭各色衣七 倭婆羅二隻 倭鉛鐵二百三十斤 倭竹鐵箭十二部五介 倭長箭五部二十三介 倭無鐵箭二部十一介 倭伐爐一 倭鼎一 倭櫓一 我國長箭九介 鎌子一柄 地字銃筒二柄 玄字銃筒二柄 大碗口一 彫皮一令)</p>
18	萬曆 21.01.26	分送義僧 把守要害狀	<p>- 房處仁乙良(陶灘 姜姬悅及僧性輝等乙良豆恥 信海乙良石柱 智元乙良雲峰)八良時爲等如把守要害</p>
34	萬曆 21.08.10	陳倭情狀	<p>- 帶連接 長門浦 (松珍浦等處殷置 削平峰頭 並築土城 城內造家 船隻殷 大中井或百餘隻 或七十餘隻 列泊岸下叱分不喻 熊浦)西峯 齊浦北山</p>
37	萬曆 21.08.	登聞被擄人 所告倭情狀	<p>- 烽燧軍朴檢孫 (牧子朴檢失 寺奴金國 金軒山 奴豆伊 寺奴允春 梁山居姜銀億 朴銀玉 金海居甲匠金達亡 私奴仁上)等十二名</p>
67	萬曆 22.03.10	唐項浦破倭兵狀 ※『忠愍公全書』 와의 비교	<p>- (全羅左右道諸將 折衝將軍舟師助防將魚泳潭 倭大船二隻焚滅...중략31행...鎭海縣監鄭沆倭中 船一隻焚滅)</p>

68	萬曆 22.04.20	陳倭情狀 ※『忠武公遺事』 와의 비교	<p>- 同縣正兵許能連等 (金加應孫 別侍衛趙允信 水軍劉應上) 當爲被擄處 還節次及賊中所爲 推問招內 (金應之殷 巨濟縣東面居生爲旅 校生許應奎 辛世英等 以同力討賊 許應奎殷爲賊被戮矣 身叱分得生爲有在乎) 前年七月十九日 賊倭七名</p> <p>- 倭奴二名出他之際 (許能連 金加應孫 趙允信) 金應上等</p> <p>- 他餘事殷 知不得爲齊 (許能連殷 巨濟邑內居正兵 以前年七月二十四日 妻并四名 一時爲賊被擄 場門浦鳥乘監陣良中足付 十二歲女子殷 他倭處移賣 不知去處)矣 身夫妻及七歲女子殷</p> <p>- 金應之招辭一樣 (是齊劉應上殷 慶尙道右水營吹螺赤 巨濟居生爲如乎 日不記前...중략18행...金加應孫 趙允信 劉應上)等 亦被擄女人十一名 招集</p>
----	----------------	---------------------------	---

42) 예를 들어, 부록 순번31 장계 「命整船勤 賊論書」의 내용 중, 지금까지 『임진장초』 에는 「整樂船兵」으로, 『이충무공전서』 에는 「整樂兵船」으로 되어 있어 어느 것이 올바른지 알 수 없었으나, 『충민공계초』 에서 「整樂船兵」이 맞는 것으로 판별되었다.

이러한 몇 가지 결함 사항에도 불구하고 『충민공계초』는 『임진장초』에 없는 장계를 12편이나 실고 있고, 이 12편은 이두문과 앞뒤 문장이 빠진 『이충무공 전서』에서는 그 원형을 확인할 수도 없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특히 『충민공계초』는 이순신 장계의 핵심 자료라 할 수 있는 『임진장초』와 『이충무공전서』의 상이한 부분을 명확히 판별해 주고 있다.<sup>42)</sup> 뿐만 아니라 『충민공계초』는 지금까지 『이충무공전서』에만 나와 있어서 작성일자를 알 수 없었던 장계 12편의 일자를 밝혀주고 있다. 또한 『충민공계초』는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마모가 심해진 『임진장초』를 사실상 완전 복원이 가능하게 해준다.

#### IV. 기타 李舜臣 狀啓 抄本

43) '壬辰狀草'라는 표현보다 오히려 '壬辰啓本'이 옳다는 주장이 있다. (최승희, 앞의 책, 지식산업사, 2011, p.155)

44) 朝鮮史編修會, 『亂中日記草·壬辰狀草』, 朝鮮史料叢刊 第六, 1935(東京 第一書房, 1978 復刊), 解説 p.4

45) 朝鮮史編修會, 앞의 책, p.4;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 『국보제 76호 이순신난중일기 및 서간첩 임진장초 보존처리』, 2015, pp.106-127

46) 『湖左水營誌』, 先生案, 1815(해군사관학교 박물관 소장)

현존하는 이순신 장계 초본은 『충민공계초』 외에도 『임진장초』, 『충무공유사』, 『요람』, 『이충무공전서』, 『충무공계초』 등이 있으며, 각각의 서지사항은 아래 <표 6>과 같다.

□ 표 6 『충민공계초』 이외의 이순신 장계 초본 서지

서명	『壬辰狀草』	『忠武公遺事』	『要覽』	『李忠武公全書』	『忠武公啓草』
편자	미상	미상	미상	윤행임	미상
판본	필사본	필사본	필사본	활자본	필사본
간행년도	미상	1716~1792	1724년 이후	1795	19세기 이후
형태	1책(85장) 47×34.6cm	1책(94장) 34×23.6cm	1책(50장) 20×26cm	14권 8책 35×22.4cm	1책(103장) 35.3×27cm
인記	全羅左道水軍節度使印	帝室圖書之章	있음	-李王家圖書之章 -奎章之寶	해군사관학교
소장처	문화재청 현충사 관리사무소	서울대학교 규장각	국립해양 박물관	서울대학교 규장각	해군사관학교 박물관

『壬辰狀草』는<sup>43)</sup> 1592년 4월부터 1594년 1월까지 3년 치 61편의 '이순신 등 초장계'를 장계등록(狀啓謄錄)의 예에 따라 다른 사람이 해서체(楷書體)로 옮겨 적은 것이다.<sup>44)</sup> 이순신의 친필은 아니지만 임진왜란과 이순신을 연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로 『난중일기』 초고본과 함께 국보 제76호로 지정되어 현충사에 보존되어 있다. 필사본 1책이며 지면에는 '全羅左道水軍節度使印'이라는 네모난 주인(朱印)이 찍혀 있다.<sup>45)</sup> 이 주인으로 미루어 볼 때, 『임진장초』는 일단 전라좌수영에서 필사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임진장초』는 이순신의 후손으로 전라좌수사를 역임한 사람에 의해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순신의 후손으로 전라좌수사를 역임한 이는 1709년에 부임한 이봉상(李鳳祥), 1732년에 부임한 이명상(李命祥), 1747년에 부임한 이태상(李泰祥), 1766년에 부임한 이한창(李漢昌)을 들 수 있다.<sup>46)</sup>

여기서 주목되는 인물은 이순신의 현손(玄孫)이자 봉사손(奉祀孫)으로 앞서 언급한 바 있는 이홍의(李弘毅)와 그의 조카 이봉상(李鳳祥, 1676~1728)이다. 이홍의는 『이충무공전서』의 저본이 되었던 『忠武公家乘』의 편찬을 주도하였던 인물이다. 이봉상은 1709년에 전라좌수사에 임명되자 백부(伯父) 이홍의를 도와 『충무공가승』의 간행에 착수하였으나 병으로 체직(遞職)되어 완성하지 못하고, 1715년에 함경남도병마사로 임용되면서 비로소 완간하였다. 특히 이봉상은 전라좌수사로 재임하면서 충민사 제실(齋室)을 창건하는 등 이순신 사적의 정비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sup>47)</sup> 그런데 『충무공가승』에는 이순신 장계가 빠져있다. '등초장계'의 정리와 이를 장계등록(狀啓謄錄)의 예에 따라 필사하는 작업은 쉽지 않은 일로, 관청의 힘을 빌려야 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이런 이유로 필자는 『임진장초』가 이홍의의 부탁으로 조카인 전라좌수사 이봉상이 작성했을 수도 있음을 가설로 제시해둔다.

『임진장초』는 부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계 순서가 대략적으로 맞추어졌을 뿐 완전한 날짜 순서가 아니다. 반면에 『이충무공전서』의 장계는 완전하게 날짜순으로 배열되어 있다. 이는 당시까지 산만하게 보존되고 있던 '등초장계'를 『이충무공전서』 편찬자가 날짜순으로 정리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임진장초』는 『이충무공전서』보다는 앞선 시기에 작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임진장초』는 장계 순서가 『충민공계초』와 동일하다. 다만 『충민공계초』에 비해 중간에 5편 추가되었다. 이것은 『충민공계초』가 모본으로 삼은 '등초장계' 꾸러미를 『임진장초』도 그대로 이어받아 필사하면서, 새롭게 수습한 5편의 '등초장계'를 해당 날짜에 끼워넣었던 것으로 보인다.<sup>48)</sup> 그러므로 『임진장초』는 『충민공계초』 이후에 작성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종합하면 『임진장초』의 작성시기는 『충민공계초』(1662)보다 늦고 『이충무공전서』(1795)보다는 빨랐을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이순신 후손 이태상이 집안에 전해 내려오는 이순신의 계본이 없어질까 염려하여 1760년 삼도수군통제사에 부임하자마자 추려내어 베꼈다는 점이다.<sup>49)</sup> 이렇게만 보면, 『임진장초』는

47) 윤정, 앞의 글, pp.110-136

48) 『壬辰狀草』의 필사자가 『충민공계초』 뒷쪽에 수록된 12편을 왜 누락시켰는지는 알 수 없다.

49) 『李忠武公全書』, 권11, 부록3, 『狀啓草本跋』, "殆百有七十餘年矣 今乃以余不肖猥叨...중략... 啓本拋棄于流來陳簿者久矣 慮其永爲泯沒 拾出改謄藏之".

50) 이태상은 충무공 第2子 孩 -之哲(양자)-지석 제2자 光輔-광보 제1자 弘規-홍규 제1자 泰祥으로 이어지며, 종손 李萬祥(『忠武公家乘』의 編者 李弘毅의 장남)과는 족보상 10촌, 혈연상 6촌 간이었다.

51) 朝鮮史編修會, 앞의 책, p.4와 노승식, 앞의 책, p.5에는 『임진장초』가 이태상이 등서한 초본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52) 『忠武公遺事』와 동일한 『忠武公家乘』 권 3 「行錄」의 丁酉年 9월 기사는 “今若專廢”, “一百三十三隻”, “解圍而走”로 되어 있으나, 『李忠武公全書』 권9에 수록되어 있는 「行錄」에는 “今若全廢”, “三百三十三隻”, “解圍走”로 되어 있다.

53) 『李忠武公全書』, 繪音, 壬子(정조 16) 八月 十九日

54) 본 논문 탈고 후에야 입수한 전경호의 논문(『忠愍公啓草』, 『忠武公壬辰狀啓』에 대한 검토-국립해양박물관 소장본을 중심으로-, 『島嶼文化』 48,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2016)에 의하면, 이 책의 제목을 이미 『忠武公壬辰狀啓』로 결정하였다고 한다.

통제사 이태상이 등서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임진장초』에는 ‘삼도수군 통제사인’이 아닌 ‘전라좌도수군절도사인’이 적혀있기 때문에 이태상이 작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리고 『임진장초』는 충무공과 종손 집안에 대대로 소장되어 왔는데, 이태상은 종손이 아니라는 점도<sup>50)</sup> 유념해야 한다.

이러한 전말로 미루어 보건대, 『임진장초』는 이태상이 1760년에 작성한 장계초본과는 다른 것으로 추정되며,<sup>51)</sup> 이태상이 작성한 장계초본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忠武公遺事』는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책자로, 이순신의 생애를 기술한 『忠武公遺事』에 이어 『忠武公啓本』 16편이 수록되어 있다. 『충무공유사』는 1716년(숙종 42)에 전라좌수사 이여옥이 발간한 『충무공가승』에 수록되어 있는 이분(李芬)의 『行錄』을 머리 부분만 빼고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다. 『충무공유사』는 『이충무공전서』에 실려있는 『行錄』과는 내용이 약간 다르다.<sup>52)</sup> 따라서 『충무공유사』는 1716년 이후에 작성된 초본으로 볼 수 있다. 정조는 1792년(정조 16) 8월에 ‘李忠武遺事’를 읽으며 이순신의 위훈에 크게 감명을 받고, 내각에 지시하여 전서(全書)의 편찬을 지시한 바가 있다.<sup>53)</sup> 이때 정조가 읽었던 책자 ‘李忠武遺事’가 곧 『忠武公遺事』로 추정된다.

부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충무공유사』의 『忠武公啓本』 16편은 엄선된 내용들이다. 임진왜란 초기의 전황, 임진년의 4차례 해전, 계사년의 옹포해전, 강화회담 중이던 계사년 8월과 윤11월의 왜군 정세 및 갑오년 3월과 4월의 왜군 정세, 제2차 당항포해전 등 이순신이 수행한 주요 해전과 중요한 적정계본(賊情啓本)들이 빠짐없이 수록되어 있다. 또한 흐트러짐이 전혀 없는 매우 단정한 해서체로 필사된 것으로 볼 때, 『충무공유사』는 국왕에게 보고하기 위해 특별히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要覽』은 국립해양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책자로, 서명은 책자의 표지가 심하게 마모되어 불명확하지만, 일단 식별 가능한 글자만 가지고 필자가 임의로 붙인 것이다.<sup>54)</sup> 이순신의 장계 14편과 끝 부분에 안방준(安邦俊, 1573~1654)이 저술한 진주서사(晉州敘事)가 수록되어 있다. 진주서사

는 1593년에 일본군에 의해서 진주가 함락된 전말을 기술한 것이다. 『요람』에 수록된 장계는 모두 『임진장초』, 『충민공계초』, 『충무공계초』, 『이충무공전서』에도 수록되어 있는 것들이다. 필사자가 원문을 임의로 요약 및 수정하거나 누락시킨 부분이 많지만, 여러 판본에 있는 내용상의 차이점을 서로 대조하여 밝힐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이외에도 본 책자는 부산진첨사(釜山鎭僉使)가 발행한 「至給倭運米軍排日成冊」, 「倭人去來數開錄成冊」의 이면지를 활용하여 편찬되었는데, 이면지는 임인(壬寅)년에서 갑신(甲辰)년까지의 문서로, 당시 부산 왜관에 거주한 왜인 수와 왜선 수가 파악된다.<sup>55)</sup> 이면지에 기록된 “甲辰 閏四月”이 1724년(영조 4)에 해당되므로 이 책의 편찬 시기는 그 이후가 될 것이다.

『李忠武公全書』는 정조의 지시로 1795년에 규장각에서 편찬한 책으로, 권 2~권4에 이순신의 장계 71편이 수록되어 있다. 이들 장계는 『임진장초』에 없는 장계 17편을 포함하고 있고, 또 어떠한 장계초본에도 없는 5편의 장계를 포함하고 있어, 1795년에 편찬될 당시까지도 『임진장초』가 아닌 장계초본의 원형자료 곧 ‘등초장계’가 덕수 이씨 충무공파 종가에 소장되어 있었음이 확인된다. 특히 『이충무공전서』의 장계는 작성일자 순서대로 수록되어 있는 점이 『임진장초』와는 다르며, 또한 『이충무공전서』 권4의 『唐項浦破倭兵狀』에는 어떠한 장계초본에도 없는 참전 장수들의 이름과 전술 편제 및 전과가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충무공전서』의 장계 내용은 이두문과 머리 부분 및 끝부분이 생략되고, 내용도 필사자가 임의로 개작한 것이 있어 ‘등초장계’ 원형을 상실하였다는 점이 아쉽다.

『忠武公啓草』는 이순신의 후손 이재훈이 1974년에 해군사관학교에 기증하여 현재 해군사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책자로, 이순신의 장계 63편<sup>56)</sup>이 정성들여 쓴 해서체로 등초되어 있다. 내용의 맨 뒤쪽에는 장계와는 전혀 다른 필체의 국한문 혼용으로 된 4쪽 분량의 글이 실려 있는데, 신채호(申采浩)가 1908년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에 연재한 바 있는 ‘水軍第一偉人李舜臣傳’ 제1장과 제2장 일부이다. 이것으로만 보면, 『충무공계초』는 매우 늦은 시기에 필사된 것으로 보인다. 『충무공계초』는 수록된 장계의 순

55) 왜인 602명과 왜선 17척 혹은 왜인 625명과 왜선 18척이다.

56) 원래 대학박물관 유물전시화 작업의 일환으로 필자가 작성하여 '문화유산 종합정보서비스'(2017년 5월 현재는 네이버 지식백과 e뮤지엄과 연계됨)에 올려졌던 '충무공계초' 해설자료에는 62편으로 되어 있으나 63편이 올바르다.

57) 노승석은 앞의 글, p.13에서 이은상이 말한 이 '장계등본 별책'은 '충무공유사(제조변방지초)'를 잘못 파악한 견해라 주장하였다.

58) 노산 이은상 역주해, 『충무공 친필초고본 난중일기』, 현암사, 1968, p.10, "장계등본 별책 끝에 최후 10일 동안의 일기 한 장이 붙어 있음을 본다".

번이 『임진장초』와 동일하며 내용도 거의 일치하여 『임진장초』를 보고 필사한 느낌이 든다. 다만 장계의 분량이 『임진장초』의 61편보다 2편이 더 많은데, 그 2편은 『충민공계초』와 『이충무공전서』에도 실려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그 2편은 『충민공계초』와는 이두문과 몇몇 글자의 차이가 있고, 문서양식도 약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전적으로 『충민공계초』만 보고 필사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종가에 보존하고 있던 '등초장계'를 보고 필사한 것이 아닌가 싶다.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등초장계'는 대략적으로 19세기 무렵 까지도 보존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 필자가 확인할 수 있는 6종류의 이순신 장계 초본에 대해 살펴본 결과, 아직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초본류가 더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 이유는 이태상이 1760년에 필사한 초본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또 이은상도 1968년 3월에 난중일기 해설문에서 최후 10일 동안의 일기 한 장이 붙어 있는 '장계등본 별책'<sup>57)</sup>을 언급했기 때문이다.<sup>58)</sup> 실제로 상기 6종류의 초본들 중 최후 10일 동안의 일기가 붙어 있는 초본은 없다. 한편, 장계 78편 중 73편은 최소한 2종류 이상의 초본들에 수록되어 있는 데 비해, 5편만은 오직 『이충무공전서』에만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5편이 함께 수록된 초본도 별도로 존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V. 맺음말

이순신은 전라좌수사 혹은 겸삼도수군통제사로서 임진왜란 동안 전쟁 수행 및 직무와 관련된 많은 장계를 국왕과 세자에게 올렸다. 현재까지 전해오는 이순신 장계는 모두 78편이며, 이는 네 가지 문서양식으로 되어 있는데 국왕에게 올린 장계 22편과 계본 50편, 세자에게 올린 장달 3편과 달본 3편이다.

이순신은 임진왜란 동안 조정에 올렸던 많은 장계들을 따로 등초하여 두었다. 여기서는 편의상 이를 '등초장계'라 불렀다. '등초장계'는 이순신 본가에 오랫동안 소장되어 오다가 대략 19세기 무렵에 이르러 유실되었다. 다행히 여러 차례 필사 작업이 이루어져 그 초본이 전해오는데, 『忠愍公啓草』,

『壬辰狀草』, 『忠武公遺事』, 『要覽』, 『李忠武公全書』, 『忠武公啓草』 등이 현존하고 있다.

이순신의 유고(遺藁)는 2차례에 걸쳐 정리되었다. 첫 번째는 이순신의 현손이자 봉사손(奉祀孫)인 이홍의가 1715년 『충무공가승』을 편찬하면서 정리하였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때 친필일기와 장계는 수록되지 않았다. 두 번째는 정조의 지시에 의한 1795년의 『이충무공전서』 편찬이다. 이때는 이순신과 관련된 모든 문서들이 규장각에서 종합 편찬되었다.

『충민공계초』는 1592년 4월에서 1594년 4월까지의 이순신 장계 68편을 다른 사람이 필사해 둔 책으로, 국왕에게 올린 장계 14편과 계본 49편, 세자에게 올린 장달 3편과 달본 2편이 포함되어 있다. 1책 73장의 필사본으로 1662년(현종 3) 3월 20일에 작성되었다. 장계에 이어 책의 뒷 부분에는 이항복이 지은 「李統制碑銘」, 박승종이 지은 「忠愍祠記」, 이항복이 지은 「故統制使李公遺事」가 차례대로 기술되어 있다.

이순신을 충민공으로 호칭한 것은 충민사에서 연유된다. 충민사는 이순신의 충성과 위훈을 기리기 위해 1601년(선조 34)에 당시 전라좌수영(여수)에 건립된 사액 사당이다. 그후 1643년(인조 21)에 이순신에게 충무공이라는 시호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충민공계초』는 이순신을 충민공으로 호칭하고 있다. 이는 『충민공계초』가 편찬되었을 당시에도 이순신은 충무공과 더불어 충민공으로도 계속 불렸기 때문이다. 북벌을 도모하던 효종은 이순신과 같은 뛰어난 무장을 갈망하였다. 그리하여 이순신에 대한 추모의 분위기가 크게 고양되었고, 이런 분위기에서 현종 대에 이르러 전라좌수영과 충민사를 흠모하는 이순신 후손에 의해서 『충민공계초』가 작성되었다.

이순신 장계는 『이충무공전서』(71편)에 가장 많이 수록되어 있으나, 수록된 장계들은 이두문이 모두 빠지고, 첫머리와 끝부분도 삭제되며, 전사자(轉寫者)가 임의로 수정한 내용도 많아 '등초장계'의 원 모습을 잃고 있었다. 다행히 『이충무공전서』의 이러한 결함은 그동안 『임진장초』가 보완해주었다. 그렇더라도 『임진장초』에도 없는 17편의 장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그

원형과 작성일자를 여전히 알 수 없었다. 그런데 『충민공계초』를 통해, 그 17편 가운데 12편의 장계에 대해 『이충무공전서』를 보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충민공계초』는 『임진장초』와 『이충무공전서』에 각각 상이하게 필사된 자구(字句)를 대조하여 판별해 줄 수 있게 되었다. 『임진장초』가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마모되어 식별이 곤란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지금까지는 『이충무공전서』로도 확인할 수 없는 자구가 있었으나 이제 『충민공계초』로 식별이 가능하게 되었다.

『충민공계초』는 이와 같은 장점들이 있는 반면에 몇 가지 단점도 있다. 『임진장초』 및 『이충무공전서』와 비교해 볼 때 장계 첫 편부터 이탈자가 발생하며, 전체적으로도 그 빈도가 상당히 심하다. 특히 내용 가운데 누락된 부분이 많다. 필사자가 일부러 누락시킨 부분이 있는가 하면, 부주의로 누락된 부분도 있다. 또 이두문에도 이탈자가 나타나는데, 이는 관청의 보고문 작성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필사했기 때문일 것이며, 필사자는 군사(軍事)에 대한 지식도 부족한 사람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로 보아 『충민공계초』는 관직에 나아가지 못한 이순신 후손 가운데 글 잘 쓰는 사람이 필사했던 것으로 보인다.

『충민공계초』는 첫 장계의 첫머리 부분에서만 장계의 문서양식에 따라 ‘근계위(謹啓爲)’의 계(啓)자를 별행으로 하여 한 자 올려 썼을뿐, 나머지 장계는 거의 대부분 啓자를 문장 속에서 한 칸만 띄우고 썼다. 반면에 『임진장초』는 ‘등초장계’의 원형을 충실히 따랐다. 이런 연유로 후대의 초본들을 필사할 때 참고본으로 『충민공계초』보다는 『임진장초』를 선호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충민공계초』는 머리말과 끝부분이 생략되어 장계의 문서양식을 판별하기 어려운 문서도 있는데, 『임진장초』와 비교해 보면 대개 ‘장계’ 양식으로 식별되는 것들이다.

이러한 몇 가지 결함사항에도 불구하고 『충민공계초』는 『임진장초』에 없는 장계를 12편이나 신고 있고, 이 12편은 이두문과 앞뒤 문장이 빠진 『이충무공전서』에서는 그 원형을 확인할 수도 없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서지적 가치를 지닌다. 특히 『충민공계초』는 ‘이순신 등초장계’의 핵심이라 할 수 있

는 『임진장초』와 『이충무공전서』 두 책 간 내용상 상이한 점을 명확히 판별해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이충무공전서』에만 나와 있어서 작성일자를 알 수 없던 장계 12편의 일자를 밝혀주고 있다. 또한 『충민공계초』는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마모가 심해진 『임진장초』를 사실상 완전 복원이 가능하게 해주는 학술적 가치를 지닌다.

## 부록. 현존하는 이순신 장계 총 목록

※ 약자 : 임(『임진장초』), 충(『충민공계초』), 유(『충무공유사』), 요(『요람』), 계(『충무공계초』), 전(『이충무공전서』)

순번	문서양식	작성일자 (『임진장초』 기준)	제목 (조성도 역주 『임진장초』 기준)	출처
1	啓本	萬曆 20.04.15. 戌時	사변에 대비하는 일을 아뢰는 계본(1) 因倭警待變狀(1)	임,충,유,요,계,전
2	"	萬曆 20.04.16. 辰時	사변에 대비하는 일을 아뢰는 계본(2) 因倭警待變狀(2)	임,충,유,요,계,전
3	"	萬曆 20.04.16. 亥時	사변에 대비하는 일을 아뢰는 계본(3) 因倭警待變狀(3)	임,충,유,요,계,전
4	"	萬曆 20.04.27.	구원하러 출전하는 일을 아뢰는 계본(1) 赴援慶尙道狀(1)	임,충,유,요,계,전
5	"	萬曆 20.04.30. 未時	구원하러 출전하는 일을 아뢰는 계본(2) 赴援慶尙道狀(2)	임,충,요,계,전
6	"	萬曆 20.05.04	구원하러 출전하는 일을 아뢰는 계본(3) 赴援慶尙道狀(3)	임,충,요,계,전

7	"	萬曆 20.05.10 (유, 20.05.15)	제1차 옥포 승첩을 아뢰는 계본 玉浦破倭兵狀	임,충,유,요,계,전
8	"	萬曆 20.06.14	제2차 당포·당항포 등 네 곳의 승첩을 아뢰는 계본 唐浦破倭兵狀	임,충,유,요,계,전
9	"	萬曆 20.07.15 (충·유, 20.07.10)	제3차 한산도 승첩을 아뢰는 계본 見乃梁破倭兵狀	임,충,유,요,계,전
10	"	萬曆 20.07.16 (충, 20.07.10)	군량을 옮겨 조처하는 일을 아뢰는 계본 移劃軍糧狀	임,충,계,전
11	"	萬曆 20.09.17 (충·유, 20.09.10)	제4차 부산포 승첩을 아뢰는 계본 釜山破倭兵狀	임,충,유,요,계,전
12	"	萬曆 20.09.10 (충, 20.09.01)	포위되었던 왜병이 도망친 일을 아뢰는 계본 被圍倭兵逃還狀	임,충,요,계,전
13	狀啓	萬曆 20.09.11 (충, 20.09.10)	정운을 이대원 사당에 배향해 주시기를 청하는 장계 請鄭運追配李大源祠狀	임,충,요,계,전
14	"	萬曆 20.09.18	종이를 올려 보내는 일을 아뢰는 장계 封進紙地狀	임,계,전
15	"	萬曆 20.12.25	군량미와 진상물을 실어 보내는 일을 아뢰는 장계 裝送戰穀及方物狀	임,계,전
16	"	萬曆 20.09.25	군량미를 실어 보내는 일을 아뢰는 장계 裝送戰穀狀	임,계,전
17	啓本	萬曆 21.01.26	유황을 내려 주시기를 청하는 계본 請賜硫黃狀	임,계,전

18	"	萬曆 21.01.26	의승병을 분송하여 요충지를 지키는 일을 아뢰는 계본 分送義僧把守要害狀	임,충,계,전
19	"	萬曆 21.01.26	피란민에게 돌산도에서 농사짓도록 명령해 주시기를 청하는 계본 請令流民入接突山島耕種狀	임,충,계,전
20	狀啓	萬曆 21.01.22	적의 귀로를 차단하라는 유서를 받았음을 아뢰는 장계(1)	임,충,계
21	"	萬曆 21.01.25	적의 귀로를 차단하라는 유서를 받았음을 아뢰는 장계(2)	임,충,계
22	"	萬曆 21.02.17	웅천의 적을 수록 함공할 일을 아뢰는 장계 令水陸諸將直擣熊川狀	임,충,계,전
23	啓本	萬曆 20.12.10	일족에게 징발하지 말라는 명령을 취소해 주시기를 청하는 계본 請反汗一族勿侵之命狀	임,충,유,계,전
24	"	萬曆 21.04.10 (충, 21.04.)	일족에게 징발하지 말라는 명령을 취소해 주시기를 거듭 청하는 계본 申請反汗一族勿侵之命狀	임,충,계,전
25	"	萬曆 21.04.06 (충, 일자 없음)	적을 무찌른 일을 아뢰는 계본 討賊狀	임,충,유,요,계,전
26	狀啓	萬曆 21.04.06	통선 1척이 전복된 뒤에 죄를 기다리고 있음을 아뢰는 장계 統船一艘傾覆後待罪狀	임,충,요,계,전
27	啓本	萬曆 21.04.06	수군에 소속된 고을의 수령들은 해전에만 전속시켜 주시도록 청하는 계본 請舟師屬邑守令專屬水戰狀	임,충,계,전
28	"	萬曆 21.04.08 (충, 21.04.初日)	광양현감 어영담의 유임을 청하는 계본 請光陽縣監魚泳潭仍任狀	임,충,계,전

29	狀啓	萬曆 21.05.02 (충, 일자 없음)	적의 귀로를 차단하라는 유서를 받았음을 아뢰는 장계(3)	임,충,계
30	〃	萬曆 21.05.10 (충, 05.10)	충청도 수군이 계속 후원오도록 청하는 장계(1) 請湖西舟師繼援狀(1)	임,충,계,전
31	〃	萬曆 21.05.14	배를 정비하여 적을 무찌르라고 명령하는 유서를 받았음을 아뢰는 장계	임,충,계
32	〃	萬曆 21.05.14 (충, 05.14)	충청도 수군이 계속 후원오도록 청하는 장계(2) 請湖西舟師繼援狀(2)	임,충,계,전
33	〃	萬曆 21.07.01	왜선을 구축한 일을 아뢰는 장계 逐倭船狀	임,충,계,전
34	啓本	萬曆 21.08.10 (유, 21.05.14)	왜군의 정세를 아뢰는 계본 陳倭情狀	임,충,유,계,전
35	〃	萬曆 21.08. (충, 08.)	화포를 올려 보내는 일을 아뢰는 계본 封進火炮狀	임,충,계,전
36	〃	萬曆21.09.初日	해전과 육전에 관한 일을 자세히 아뢰는 계본 條陳水陸戰事狀	임,충,계,전
37	〃	萬曆 21.08. (유, 21.09.07)	포로되었던 군사가 보고하는 왜군의 정세를 들어드리는 계본 登聞被擄人所告倭情狀	임,충,유,계,전
38	〃	萬曆21.윤11.21	수군에 소속된 고을에는 육군을 배정하지 말도록 청하는 계본 請舟師所屬邑勿定陸軍狀	임,충,계,전
39	〃	萬曆21.윤11.17 (충, 윤11.17)	본영으로 돌아가는 일을 아뢰는 계본 還營狀	임,충,계,전

40	〃	萬曆21.윤11.17	포로된 왜인이 말하는 왜군의 정세를 들어드리는 계본 登聞擒倭所告倭情狀	임,충,유,계,전
41	狀啓	萬曆21.윤11.17 (충, 윤11.17)	어영담을 조방장으로 임명해 주시기를 청하는 장계 請以魚泳潭爲助防將狀	임,충,계,전,
42	〃	萬曆21.윤11.14	조총을 올려 보내는 일을 아뢰는 장계 封進倭銃狀	임,계,전
43	〃	萬曆21.윤11.17 (충, 윤11.17)	유황을 내려 주시기를 청하는 장계 請下納鐵公文兼賜硫黃狀	임,충,계,전
44	〃	萬曆21.윤11.17 (충, 윤11.17)	문신을 종사관으로 임명해 주시도록 청하는 장계 請以文臣差定從事官狀	임,충,계,전,
45	啓本	萬曆21.윤11.17 (충, 윤11.17)	연해안의 군병기를 모두 수군에 전속시켜 주시기를 청하는 계본 請沿海軍兵糧器全屬舟師狀	임,충,계,전
46	〃	萬曆21.윤11.17 (충, 윤11.17)	둔전을 설치하도록 청하는 계본 請設屯田狀	임,충,계,전
47	〃	萬曆 21.12.29 (충, 12.29)	진중에서 과거 보이는 일을 청하는 계본 請於陣中試才狀	임,충,계,전
48	〃	萬曆 22.01.初日 (충, 22.01.01)	승장의 위조문서를 봉하여 올려 보내는 일을 아뢰는 계본 封進僧將僞帖狀	임,충,계,전
49	狀啓	萬曆 22.01.初日	배경남을 수군에 소속시켜 주시기를 청하는 장계 請以裒慶男屬舟師狀	임,충,계,전
50	啓本	萬曆 22.01.初日 (충, 22.01.01)	수륙군을 바꾸어 방비시키는 일을 살피 조처하시기를 청하는 계본 請量處水陸換防事狀	임,충,계,전



59) 『壬辰狀草』(순번 57)에는 達本으로 되어 있으나, 『충민공계초』의 서식에는 啓本으로 되어있다.

60) 『壬辰狀草』(순번 59)에는 達本으로 되어 있으나, 『충민공계초』의 서식에는 啓本으로 되어있다.

51	〃	萬曆 22.01.初日	방비군의 결원을 낸 수령을 군법에 의하여 처벌하시도록 청하는 계본 關防守令依軍法決罪狀	임,충,계,전
52	〃	萬曆 22.01.17	진으로 돌아가는 일을 아뢰는 계본 還陣狀	임,충,계,전
53	〃	萬曆 22.01.10 (충, 22.01.19)	흥양목관을 교체해 주시기를 청하는 계본 請改差興陽牧官狀	임,충,계,전
54	〃	萬曆 22.01.16	수륙군이 서로 징발하는 폐단을 금지시켜 주시기를 청하는 계본 請禁沿邑水陸交侵之弊事狀	임,충,계,전
55	狀達	萬曆 21.12.25	일족에게 대충 징발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음을 아뢰는 장달	임,충,계
56	〃	萬曆 21.12.29	진중에서 과거보이는 일을 청하는 장달 請於陣中試才狀	임,충,계
57	啓本 <sup>59)</sup>	萬曆 21.12.29	군량과 무기 등을 옮겨가지 말도록 명령해 주시기를 청하는 계본 請沿海軍兵糧器勿令遞移狀	임,충,계,전
58	達本	萬曆 22.01.05	왜적의 정세를 아뢰는 달본 陳倭情狀	임,충,계,전
59	啓本 <sup>60)</sup>	萬曆 22.01.05 (충, 일자 없음)	일족에게 징발하지 말라는 명령을 다시 취소해 주시기를 거듭 청하는 계본 更請反汗一族勿侵之命狀	임,충,계,전
60	達本	萬曆 22.01.10	진으로 돌아가는 일을 아뢰는 달본 還陣狀	임,충,계,전
61	狀達	萬曆 22.01.15	적을 무찌르도록 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을 아뢰는 장달	임,충,계

62	啓本	(충, 22.02.25)	총청수사에게 빨리 도착하도록 재촉해 주시기를 청하는 계본 請忠清水軍節度使催促到陣狀	충,계,전
63	〃	(충, 22.02.25)	지체하는 여러 장수들을 처벌해 주시기를 청하는 계본 請罪遲留諸將狀	충,계,전
64	〃	(충, 22.03.10)	여러 의병장에게 상을 내리시기를 청하는 계본 請賞義兵諸將狀	충,전
65	〃	(충, 22.03.10)	군량을 조처해 주시기를 청하는 계본 請措劃軍糧狀	충,전
66	〃	(충, 22.03.10)	왜군의 정세를 아뢰는 계본 陳倭情狀	충,유,전
67	〃	(충, 22.03.10)	당항포 승첩을 아뢰는 계본 唐項浦破倭兵狀	충,유,전
68	〃	(충, 22.04.20) (유, 22.03.10)	왜군의 정세를 아뢰는 계본 陳倭情狀	충,유,전
69	〃	(충, 22.04.02)	기한을 어긴 여러 장수들을 처벌해 주시기를 청하는 계본 請罪過期諸將狀	충,전
70	〃	(충, 22.04.19)	왜병을 정탐한 내용을 아뢰는 계본 哨探倭兵狀	충,전
71	〃	(충, 22.04.11)	무과 특별시험을 보인 일을 아뢰는 계본 設武科別試狀	충,전
72	達本	(충, 22.04.20)	수군 소속의 여러 장수에게 교대 휴가를 실시한 일을 아뢰는 달본 舟師所屬諸將休番狀	충,전

61) 趙成都 譯註, 『壬辰狀草』(순번 74)에는 狀啓로 되어있으나 啓本이 올바르다.

73	啓本	(중, 22.04.20)	방비군을 결석시킨 여러 장수들을 처벌해 주시기를 청하는 계본 請罪關防諸將狀	충,전
74	啓本 <sup>61)</sup>		여도만호 김인영에게 상을 내리시기를 청하는 계본 請賞呂島萬戶金仁英狀	전
75	狀啓		조총을 올려 보내는 일을 아뢰는 장계 封進鳥銃狀	전
76	〃		방담첨사를 선정하여 임명해 주시기를 청하는 장계 請防踏僉使擇差狀	전
77	〃		충청도 전선을 기한 내에 도착하도록 해 주시기를 청하는 장계 請忠淸戰船刻期回泊狀	전
78	〃		의원을 보내어 유행병 환자를 구호해 주시기를 청하는 장계 請送醫救癘狀	전

## “『忠愍公啓草』의 書誌學的 조명”에 대한 토론문

육영정  
한국학중앙연구원

본 토론자는 올해 연구 과제 중의 하나로 정조 시대 간행된 서적을 대상으로 삼아 간행 과정과 그 특징을 살피고 있다. 이 시기에 간행된 서적 중 특히 『이충무공전서』는 정조가 특별히 지시하여 내각의 활자를 사용하여 간행하도록 하고 친히 제문을 지어 통영의 충렬사에 치제(致祭)하였다. 특히 정조는 “큰 공이나 충절을 사람들이 모두 환히 알고 있어서 그러한 이름을 얻어서 부끄럽지 않고 그러한 포상을 시행하여도 과장된 말이 아닌 이를 논한다면 바로 충무공 이순신이 가장 드러난 이일 것”이라고 하면서 책의 배포처와 전서의 구성, 인쇄 방법과 책 제목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지시하였다. 본 토론자는 인쇄된 『이충무공전서』를 볼 때만 해도 장계에 대한 관심은 기울이고 있었지만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 더군다나 국립해양박물관 소장의 『충민공계초』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아쉬웠는데 이번에 여러 가지 궁금증이 해소되었다. 다시 공부하게 된 기회라고 생각하며, 서지학적인 측면에서 논해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

논문의 필자는 『충민공계초』를 통하여 이순신 장계가 등초된 과정과 장계의 문서양식을 우선 살폈다. 그리고 『충민공계초』의 서지학인 측면으로서 유래와 구성 내용, 이어서 『충민공계초』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다른 이순신 장계 초본들로 『壬辰狀草』, 『忠武公遺事』, 『要覽』, 『李忠武公全書』, 『忠武公啓草』 등의 서지(書誌)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정리하였다. 큰 틀에서 소위 “이순신 관련 書誌”를 가늠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많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서각, 규장각, 국립도서관, 대학도서관을 비롯한 주요 소장처에 소장된 각종 이순신 관련 서지자료에 대한 통합적 관리를 통해서 자료의 성격, 현존 현황과 작성 시기, 각 기록물의 특징을 검토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는 생각이다. 이번 학술대회와 논문집 발

간을 통해 이순신 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한 기록물의 흐름 중에 장계를 비롯한 기록자료의 확대 생산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부각되었고, 전통시기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순신관련 기록물의 종합적 정리와 유통상황에 좀 더 가까이 접근해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라 생각한다.

하나의 고문헌에는 지식 정보뿐만 아니라 그것이 수집, 편찬, 간행되고 유통되어 읽히고 소장처가 옮겨지는 등, 처음에 그것이 만들어져서 현존하기까지 진행해온 자취가 담겨져 있다. 각 문헌마다 저마다의 사연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책의 외형에 드러나지 않는 내면의 이야기를 하고자 할 때 처음 만들어진 초기판본이나 후대에 전사된 필사본 역시 좋은 연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해 주는 논문이라고 생각한다. 연구과제로서 많은 자료를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계승·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 연구와 같이 고문헌이 전승 보존되는 과정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실제로 편찬된 고문헌의 규모, 종류, 실존 여부, 고문헌의 실제 상태와 기록 등을 파악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이 논문을 토대로 몇 가지 의문들을 제기하고 필자가 소개하지 않은 다른 자료를 추가해 보고자 한다.

우선, 여러 형태로 남아있는 이순신의 장계 문헌의 선후관계에 대해 좀 더 상세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본다. 필자가 『임진장초』를 『충민공계초』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본 이유는 『임진장초』의 장계순서가 『충민공계초』와 동일하지만 『충민공계초』에 비해 중간에 5편이 추가되었는데 이것이 『충민공계초』가 모본으로 삼은 ‘등초장계’ 꾸러미를 『임진장초』도 그대로 이어받아 필사하면서 새롭게 수습한 5편의 ‘등초장계’를 해당 날짜에 끼워 넣었던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반드시 『충민공계초』 이후에 필사되어야만 장계 5편을 새롭게 추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충민공계초』는 『임진장초』에 없는 장계를 12편이나 실고 있기도 하고 필자가 <표5>에서 밝혔듯이 『충민공계초』는 『임진장초』와 비교해 볼 때 누락된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임진장초』의 작성시기가 『이충무공전서』(1795)보다는 이른 것은 분명하지만 『충민공계초』(1662)보다 늦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이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듣고 싶다.

『임진장초』의 작성 주체에 대해 필자는 이순신의 후손으로 전라좌수사를 역임한 사람에 의해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奎羅左道水軍節度使印’으로 볼 때 공식적으로 전사해두고 참고하기 위해서 전라좌수영에서 작성하여 둔 것으로 볼 수는 없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필자는 『충민공계초』 작성 경위에 대해 1662년에 전라좌수영과 충민사를 흠모하는 이순신의 후손이 ‘등초장계’ 꾸러미를 바탕으로 『충민공계초』를 작성했을 것으로 보았다. 토론자의 1차적 판단으로는 필자가 언급한 “‘등초장계’ 꾸러미”가 ‘장계등록’일 가능성은 없는지 의문이 든다. 참고로 장계등록을 초록하고 이를 활용한 사례를 찾아보았다. 예컨대 예조 전객사에서 조선 중·후기 일본과의 교린 관계를 기록한 책으로 『변례집요』가 있는데, 이 책에는 장계와 그에 대한 회계의 내용이 담겨 있다. 『변례집요』에는 장계등록을 인용한 부분이 많이 있다. 예를 들어 『변례집요』 가운데 ‘送使’, ‘병오년(1666, 현종7)’ 항목에서 “무신년(1668, 현종9) 1월부터 기유년(1669, 현종10) 6월까지의 曆錄이 분실되었다. 그런 까닭에 抄錄을 따라 베꼈으니, 많은 부분이 자세하지 않다(自戊申正月至己酉六月 曆錄見失 故從抄錄曆書 事多未詳).”라는 기록이 있다. 이 내용은 장계등록이 분실되어 상고할 수 없으나 기존에 이를 초록한 것을 이용하여 편찬에 참고한 경우에 대한 언급으로 보인다. 이는 중앙에서 장계등록을 활용한 사례이며, 장계등록에 대한 초록이 이뤄진 경우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방의 장계등록을 이용한 사례는 아니지만, 부족하나마 중앙에서 가지고 있는 장계등록을 활용, 초록한 사례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충민공계초』와 비슷한 성격의 현존 간본을 찾던 중 논문에서 언급되지 않은 책을 확인하였기에 알려드리고자 한다.

표지에는 ‘忠愍公啓草[ ]’라 기록되어 있고 권말에 ‘忠烈李公舜臣壬辰倭變狀啓’라는 제목과 함께 卷之一을 표시하고 있다. 마지막에 ‘[丁]丑正月二十四日畢書’라는 기록이 있으며, 마지막에 ‘晉州敍事’가 부록되어 있다. 불분권 1책으로 55장이며 ‘진주서사’가 합철되어 있다는 점에서 논문에 언급된 『要』

覽』과 연관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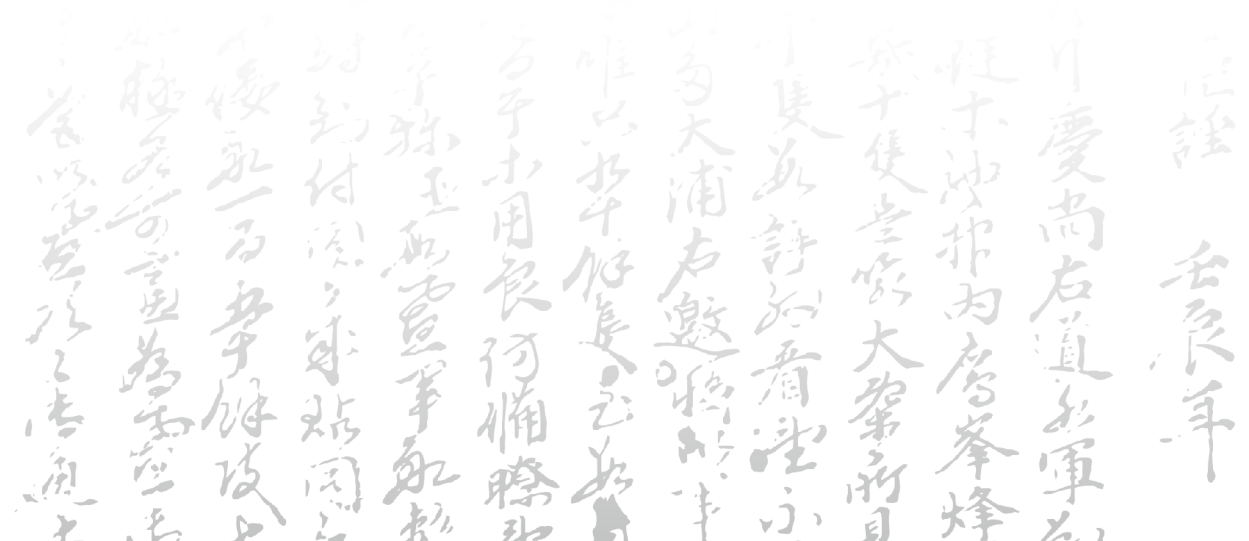
이 책은 장계가 50장, 진주서사가 5장인 필사본으로서 표지가 마모되어 있으나, '忠武公啓[ ]'라는 표제가 확인되며, 표제의 오른쪽에 표제보다 조금 작은 글자로 '晉州敘事'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보인다. 책의 말미에는 '萬曆壬辰[ ]丑正月二十四日畢書' '丁丑後三年庚辰歲餘日'이라는 기록이 있고 해주(海州) 정씨(鄭氏)의 소장인이 있다. 본문은 광곽이 없고, 무계(無界)에 행서(行書)로 필사되었으며, 글자수는 각 면마다 12행(行) 26~28자(字)이다.

그 내용을 대략 살펴본 결과 1592년 4월 15일부터 1593년 5월 14일까지 약 27편의 등초장계가 수록되어 있는데, 제목과 함께 卷之一이 권 말제이므로 나머지 장계도 옮겨 쓴 책이 남아있을 가능성도 있겠다. 논문의 필자가 제시한 부록의 “현존하는 이순신 장계 총 목록”에 없는 날짜로 “만력20년 9월 13일자”와 “만력 21년 1월 21일자”가 보인다. 이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 V. 『忠愍公啓草』의 문체적 특징에 관한 일고찰

박선이

토론문 김성갑



# 『忠愍公啓草』의 문체적 특징에 관한 일고찰

박선이  
고려대학교

- I. 머리말
- II. 『忠愍公啓草』 수록 문서의 내용 구성
- III. 『忠愍公啓草』의 문체적 특징
- IV. 맺음말

## I. 머리말

본 논문은 『忠愍公啓草』 수록 문서들의 문체를 검토하여, 그 특징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sup>1)</sup>

『忠愍公啓草』는 기존에 잘 알려진 이순신(李舜臣, 1545~1598)의 『壬辰狀草』와 마찬가지로,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이 국왕과 세자에게 올린 啓·達文을 등서한 장계등록류(狀啓謄錄類) 편찬물이다.<sup>2)</sup> 대체로 문서의 작성일자 순으로 편집되어 있다. 『壬辰狀草』와 비교하면, 제2차 당항포 전투에 대한 기록을 포함한 문서 12건이 더 수록되어 있다.

이순신의 장계를 등서한 장계등록류 편찬물은 『임진장초』, 『충민공계초』 외에도 『忠武公啓草』<sup>3)</sup>가 있다. 그리고 이순신의 문집인 『李忠武公全書』권 2~4에는 총 50건이 ‘장계’로 분류되어 전사되어 있으며, 이외 『忠武公遺事』(奎 1489)<sup>4)</sup> 등 이순신 관련 서적들에 문서들의 일부가 필사되어 전해지고 있다. 이들 문서는 전사 과정 및 수록 문헌의 성격에 따라 문서 형식의 생략, 글자의 출입 등 조금씩 상이한 양상을 보인다.

이순신의 장계는 주로 국어학계에서 이두(吏讀)를 연구하는 자료로 활용되었다.<sup>5)</sup> 한편, 이순신의 장계를 활용하여 고문서의 문체적 특징에 대해 검토한 기존 연구 성과로는 후지모토 유키오(藤本幸夫)와 박선이가 있다. 후지모토는 한국에 남아있는 공문서(公文書)와 기록류(記錄類) 등의 문장을 ‘조선한문(朝鮮漢文)’이라 명명하였다. 조선한문은 한문의 어순 또는 한국어의 어순에 따라 한자를 배치하고 한자의 음훈차(音訓借) 표기(表記)를 활용한 이두를 붙인 문장에서, 이두를 떼어내고 한문만 연결한 문장이라고 했다. 이황(李滉, 1501~1570)의 계사(啓辭)<sup>6)</sup>와 이순신의 장계를 예로 들어 조선한문의 문체적 특징을 “허사가 적고 진술하는 내용만을 차례로 중첩해서 쌓아 나간 긴박한 문체로 되어 있다. 서술자가 전달하려는 내용은 이해 되기는 하지만 문장이 유려하지 않고 어휘(語詞)의 적절한 선택과 포치(布置)에서 기인하는 조탁(彫琢)이 가해지지 않아 읽는 이에게 부자연스러움과 모종의 불안감을 준다”고 하였다.<sup>7)</sup> 박선이는 임진왜란 시기에 작성된 장계 중 이순신의 장계를 포함해서 류성룡(柳成龍, 1542~1607)·정문부(鄭文孚, 1565~1624), 세 사람의 장계를 연구대상으로, 전형적 중국식 한문계열과 다른 우리 고유의 한문의 문체적 특징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특히 국가 운영과 관련된 실무적인 행정업무에서 사용되었던 우리 고유의 한문은 내용 전달을 중심으로 하는, 정격한문의 형식미·전고의 활용·완곡한 화법·정제된 어휘의 사용·편장의 구성·가 배제되거나 최소화된 실용적인 문장임을 밝혔다.<sup>8)</sup>

이순신의 장계를 포함한 공문서에서 나타나는 우리식 한문의 문체는 특정 문서군(群)에서만 살필 수 있는 문체적 특징은 아니다.

우리식 한문으로 쓰여진 자료는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 후기까지의 자료가 전하는데, 주로 실용문에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에는 각종 사적기(事跡記) 및 형지기(形止記) 등 사건의 전말을 기록하는 데 사용되거나, 공신녹권(功臣錄券)·첩문(貼文) 등의 공문서에 사용되었다. 조선시대 초기에는 『大明律直解』·『養蠶經驗撮要』 등 중국의 법률서적과 실용서적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번역하고, 『經濟六典』 등의 법

『조선시대 등록(謄錄)체계의 기록학적 의미와 현대적 변용』,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2

3) 『충무공계초』는 이순신이 1592년(선조 25) 4월 15일 戌時부터 1594년(선조 27) 2월 25일까지 작성한 국왕과 세자에게 올린 啓·達의 문서를 작성일자를 기준으로 편집하였다. 수록 문서는 총 62건이다. 현재 해군사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http://www.museum.go.kr/>) 제공 『충무공계초』 해제 참조.

4) 『충무공유사』는 임진왜란을 전후한 시기의 이순신의 행적을 기술한 實記와 이순신의 啓文을 함께 묶은 책으로, 1책 91장의 筆寫本이다. 편찬자와 편찬 시기는 未詳이다. 전반부에 수록된 실기는 1591년(선조 24) 2월 13일 金羅左水使에 제수된 날부터 1598년(선조 31) 11월 19일 전사하기까지의 내용으로, 주로 날짜별 전투상황이 기록되어 있다. 후반부에는 1592년(선조 25)부터 1594년(선조 27)까지 올린 총 16편의 啓本이 수록되어 있다. 규장각(<http://e-kyujanggak.snu.ac.kr>), 『충무공유사』 (이경하 해제) 참조.

5) 정주호, 『“壬辰狀草”를 중심으로 한 전후기 이두 어휘 대비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2; 장세경, 『이두 자료 읽기 사전』,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1

6) 이강욱, 『啓辭에 대한 考察: 『承政院日記』를 중심으로』, 『고문서연구』 37, 한국고문서학회, 2010. pp.123-164; 啓辭는 조선시대에 중앙관청의 신하가 국왕에게 보고·요청·문의할 때 사용하던 公文이다.

7) 藤本幸夫, 『朝鮮漢文-吏·文からの昇華』, 『語文』 34, 大阪大學國語國文學會, 1978

8) 박선이, 『임진왜란 시기 狀啓에 나타난 朝鮮式 漢文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5

9) 남부현, 『吏讀研究』(태학사; 2002), p.45

10) 「李統制碑銘[鰲城府院君 李恒福]」은 李恒福의 문집 『白沙集』, 卷4에 「統制使李公露梁碑銘」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으며, 『李忠武公全書』, 卷11에 「全羅左水營大捷碑[領議政李恒福]」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이항복이 왕명을 받아 忠愍祠를 건립한 지 15년 뒤, 1614(광해군 6)에 海西節度使 柳珩이 급히 편지를 보내 와서 이순신의 碑銘을 써주기를 부탁한다. 충민사를 건립하게 된 경위와 이순신의 碑銘이 수록되어 있다. 『충민공계초』·『백사집』·『이충무공전서』에 수록된 글 간에 글자 출입이 있다. 「故統制使李公遺事[李恒福]」는 『백사집』에 동일한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으며, 『이충무공전서』, 卷11에 「忠愍祠記[領議政李恒福]」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1601년(선조 34) 이항복이 왕명을 받아 충민사를 건립하고 남긴 기록이다. 당시 충민사를 건립하는 일에 동원된 사람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으며, 李舜臣의 생애와 일화, 인품에 대해 언급하였다. 「忠愍祠記[觀察使 朴承宗]」는 『이충무공전서』, 卷11에 「忠愍祠記[二][朴承宗]」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朴承宗이 1609년(광해군 1)에 순찰사가 되어 좌수영을 순시하다가 충민사에 방문하여 제사를 지내고, 충민사가 세월이 오래되어 황폐해진 모습을 보고 순천부에 말하여 노비를 주고 전답을 허락하여 제사를 끊지 않게 하였다는 내용이다.

전을 우리식 한문으로 간행하여 반포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매매명문(賈買明文)·분재문기(分財文記)·소지(所志)·서간(書簡) 등 공·사문서를 불문하고 많은 자료가 우리식 한문으로 작성되었다.<sup>9)</sup>

문서마다 차이가 있지만, 우리식 한문은 민간에서 작성한 소장(訴狀)·매매문서 등의 문서로 내려갈수록 강하게 나타난다. 그중 장계는 국왕에게 올리는 문서로서 여타 문서들에 비해 우리식 한문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임진왜란 시기의 장계를 통해 민족문화의 발달과 더불어 다양하게 발전하여 온 우리 고유의 한문의 일면을 살필 수 있으며, 당시 실용문에서 사용되었던 언어생활 및 문장구사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충민공계초』는 이순신 장계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중 하나로, 문서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 일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료적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본 논문은 기존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우선 『충민공계초』 수록 문서의 내용 구성을 살피고 아울러 문체적 특징을 살피고자 한다.

## II. 『忠愍公啓草』 수록 문서의 내용 구성

『충민공계초』는 이순신이 전라좌수영(全羅左水營)에서 1592년(선조 25) 4월 15일 술시(戌時)부터 1594년(선조 27) 4월 20일까지 작성한 국왕과 세자에게 올린 계(啓)·달(達)의 문서를 작성일자를 기준으로 편집하였다. 수록 문서들은 총 68건으로, 계본이 49건, 장계가 14건, 달본이 3건, 장달이 2건이다. 이외 이항복(李恒福, 1556~1618)이 쓴 「李統制碑銘[鰲城府院君 李恒福]」·「故統制使李公遺事[李恒福]」와 박승종(朴承宗, 1562~1623)이 쓴 「忠愍祠記[觀察使 朴承宗]」이 수록되어 있다.<sup>10)</sup>

『충민공계초』에 수록된 문서들은 문서의 본문과 작성일자 순으로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임진장초』에 비해, 일률적으로 등서하지 않은 조악한 형식을 띠고 있다. 문서발급자의 직함성명·문서의 작성일자가 기재되지 않은

곳이 있으며, 원본문서의 양식을 생략하여 등서한 문서가 많다. 또한 '24일 書狀에 是白有亦(~이옵심이었기에)를 쓰지 않음[二十四日書狀, 是白有亦不書]' 등 본문을 등서하면서 이두를 기재하지 않은 부분을 나타내는 첨지(籤紙)와 임금의 유지(有旨)를 받고 아뢰는 장계는 '공경히 받음[祗受]'의 첨지를 붙여 놓았다.

○ 작성일자 : 1593년(선조 26) 12월 29일

○ 發·收給者 : 李舜臣·國王

\* □ : 마모된 글자

\* 01, 02… : 원문의 行數

\* 밑줄 : 이두

【壬辰狀草】

01 兼三道水軍統制使 行全羅左道水軍節度使 臣李 謹

02 啓爲取稟事. 今十二月二十三日到付兼巡察使李廷醜關內, 節

03 到付撫軍司關內, 節東宮駐進全州, 下三道武士設場試取

04 計料爲乎矣, 規矩段, 依常規, 初試·會試·殿試三次試取除良,

05 依平安道例, 一次試取後, 殿試以仍施行, 優數取人設計爲有

06 旣, 吉日段, 十二月二十七日以, 試取計料亦, 未酌定爲有在果, 日

07 期甚迫, 優數試取之意, 星火馳通, 俾無遺珠之患向事關是去有等以, 關

08 內辭緣相考施行向事關是白置有亦, 變生二載, 南中武士, 長在戰陣,

09 無以慰悅之, 至今聞東宮駐駕完山大小臣民, 莫不感動爲白如乎,

10 又聞十二月二十七日全州府設場之命, 海陣士卒, 咸欲樂赴爲白乎矣, 水路

11 遙遠, 未及期限爲白沙餘良, 與賊相對, 不無意外之患, 精軍勇士, 一時出

12 送不得事是白昆, 舟師所屬軍乙良, 依慶尙道例, 陣中以試取以, 解

13 軍情爲白乎矣, 規矩中有騎射爲白在如中, 遠海絕島, 無可馳騁之

14 地爲白昆, 騎射本乙良, 片箭以試才, 似爲便益爲白乎去, 妄料敢

15 稟爲白去乎, 朝廷以善處爲白只爲, 謹具啓聞 伏候教旨.

16 萬曆二十一年十二月二十九日<sup>11)</sup>

11) 李舜臣, 『壬辰狀草』, 문화재청본 면 판. 獨문은 국가기록유산을 참조하였다.

## [忠愍公啓草]

- 01 謹啓爲取稟事. 今十二月二十三日到付兼巡察使李廷旻關內, 節到付撫  
 02 軍司關內, 節東宮駐進全州, 下三道武士設場試取計料爲乎矣, 規矩段, 依常  
 03 規, 初試·會試·殿試三次試取除良, 依平安道例, 一次試取後, 殿試以仍施行,  
 04 優數取人設計爲有於, 吉日段, 十二月二十七日以, 試取計料亦, 未酌定爲有  
 在果, 日期甚  
 05 迫, 優數試取之意, 星火馳通, 俾無遺珠之患向事關是去有等以, 關內辭緣相考施行  
 06 事關是白置有亦, 變生二載, 南中武士, 長在戰陣, 無以慰悅之, 至今聞東宮駐駕完山  
 07 大小臣民, 莫不感動爲白如乎, 又聞十二月二十七日全州府設場之命, 海陣士卒, 咸欲  
 08 樂赴爲白乎矣, 水路遙遠, 未及期限爲白沙餘良, 與賊相對, 不無意外之患, 精軍  
 10 勇士, 一時出送不得事是白昆, 舟師所屬軍乙良, 依慶尙道例, 陣中以試取以, 解軍情  
 11 爲白乎矣, 規矩中有騎射爲白在如中, 遠海絕島, 無可馳騁之地爲白昆, 騎射  
 12 本乙良, 片箭以試才, 似爲便益爲白乎去, 妄料敢稟爲白去乎, 朝廷以善處  
 13 爲白只爲, 十二月二十九日<sup>12)</sup>

위의 문서는 모두 1593년(선조 26) 12월 29일에 작성된 계본으로, 『임진장초』와 『충민공계초』에 수록되어 있다. 충청도·전라도·경상도에 무과(武科)를 시행하여 인재를 선발한다는 공문을 받고, 시험 규정 일부를 변경할 것을 청하는 내용이다. 『임진장초』의 경우, 문서 발급자의 직함성명-문서의 본문-작성일자 순으로 기재되어 있다. 당시 이순신의 직함과 성명인 ‘兼三道水軍統制使 行全羅左道水軍節度使 臣李’, 아뢰는 내용은 계본의 투식인 ‘謹啓爲○○事’로 시작하여 ‘謹具啓聞, 伏候教旨’로 기재하고, ‘干支月日’로 문서의 작성 시기를 기록하였다. 반면, 『충민공계초』의 경우에는 직함·성명과 문서투식이 생략되어 있다.

이처럼 『충민공계초』는 『임진장초』의 내용 구성형식과 비교하여 볼 때, 전사형식에서 차이가 난다.

장계등록류 편찬물의 생산은 장계를 발송한 각 감영이나 병영에서 일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승정원에서 이를 수합해서 재편찬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리고 해당 관청이 발송한 문서를 시기별로 구분하여 수록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특정 한사람만의 문서를 수록한 등록은 많지 않다.<sup>13)</sup> 『임진장초』를 살펴보면, 문서 발급자의 직함성명·행의 구분·대두(擡頭)·격자 등이 엄격하게 지켜져 있으며 지면 곳곳에 ‘全羅左道水軍節度使印’의 관인(官印)이 남아있다. 전라좌도수군절도사는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이 1591년(선조 24)에 제수 받은 직위이다. 관인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임진왜란 당시 전라좌수영의 업무 현장에서 편찬된 것으로 추정된다. 『충민공계초』는 書末에 ‘1662년(현종 3) 3월 20일 등서하는 것을 마치다[康熙元年壬寅三月念日書終]’라는 기록이 있어 필사시기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편찬 관련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어떤 관청에서 어떠한 용도로 편찬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충민공계초』가 필사된 17세기 중엽 이전, 1658년(효종 7)부터 범국가적으로 이순신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였다. 이순신의 충절을 높이 당시 백성들과 후세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였다. 특히 김육(金堉, 1580~1658)의 경우에는 이순신의 외손자 홍우기(洪宇紀, 1633~?)의 부탁으로 이순신의 신도비명(神道碑銘)을 지었으며, 1662년(현종 3) 2월 2일에는 예조가 남해 노량에 있는 이순신의 사우(祠宇)에 액호를 내려 이순신의 절의를 높이고 후세 사람들에게 그의 충절을 권장할 것을 건의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17세기 초에서 중엽에는 국가적 차원에서 이순신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이루어졌다. 『충민공계초』는 이러한 배경에서 관청에서 편찬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시기에 편찬된 이순신의 장계등록은 문서의 형식을 온전하게 살려 수록하기보다는 전해지는 이순신의 장계를 모두 수록하는 데 의의를 두었을 것이다.

한편, 문집에 수록된 장계는 문서 투식이 생략되고, 이두가 완전히 삭제되었음을 보여준다. 문집에 수록된 문서의 형태를 살펴보자.

謹啓爲取稟事. 今十一月二十三日到兼巡察使李廷旻關內, 撫軍司關東宮駐進全州, 下三道武士設場試取計料, 規矩依常規, 初試·會試·殿試三次試取, 依平安道例. 一次試取後, 以殿試施行, 優數取人, 設科吉日, 以十二月二十七日, 試取計料, 亦未酌定. 日期甚迫, 優數試取之意, 星火馳通, 俾無遺珠之患云云. 變生二載, 南

14) 李舜臣, 『李忠武公全書』, 권3, 狀啓, 「請於陣中試才狀」

15) 『西厓集』을 편찬할 때 참여한 주요인물은 류성룡의 제자 鄭經世와 李垓, 그리고 류성룡의 아들이자 정경세의 문인이었던 柳軫(1582~1635)이다.

16) 鄭經世, 「與李叔平」, 『愚伏集』,卷10 書. “先生文集, 刪繁就約, 非徒事理當然, 又是先生本意, 固無不可. 至於文字語句, 雖稍有未簡當處, 不可一一刪節, 刪節猶可, 竄改尤未安. 當初非不知此, 而只緣狀啓公移中欲去吏讀, 故於承接處, 不免代以他字, 蓋出於不得已也. 卽見雜記中有一兩處點改, 亦有不必要刪而刪處. 鄙意欲依本文以存慎重之意, 如何如何? 大抵先生之文, 平鋪委曲, 惟取詞順意達, 讀之如相對說好話. 老兄之文, 鍛鍊刻削, 精簡矜莊, 得之於子厚者爲多. 兩家文章, 氣象自不同, 各全其真體可也.”

中武士, 長在戰陣, 無所慰悅之道, 今聞東宮駐駕完山, 大小臣民, 莫不感動. 又聞十二月二十七日全州府設場之命, 海陣士卒, 咸欲樂赴, 而水路遙遠, 未及期限, 與賊相對, 不無意外之患, 精軍勇士, 一時出送不得, 舟師所屬軍, 依慶尙道例, 陣中試取, 以解軍情, 而規矩中有騎射, 遠海絕島, 無可馳騁之地, 騎射代以片箭試才, 似爲便益, 伏願朝廷善處.<sup>14)</sup>

앞서 살펴본 문서들은 문집에 수록되면서 ‘請於陣中試才狀’이란 제목이 부가되었다. 앞의 문서들과 비교하면, 문장의 문법적 기능을 나타내는 조사류 이두의 산삭, 단어와 구절 사이를 연결하는 연결어미류 이두 중 일부는 정격한문의 접속사로 고쳤다. 그리고 우리식 한자어와 우리말 어순으로 되어 있던 일부 문장이 정격한문의 어순으로 변개된 양상을 살필 수 있다.

節[디위] : 이변

到付 : 공문서나 공식 지령이 도달되어 받다, 도달한 공문을 수령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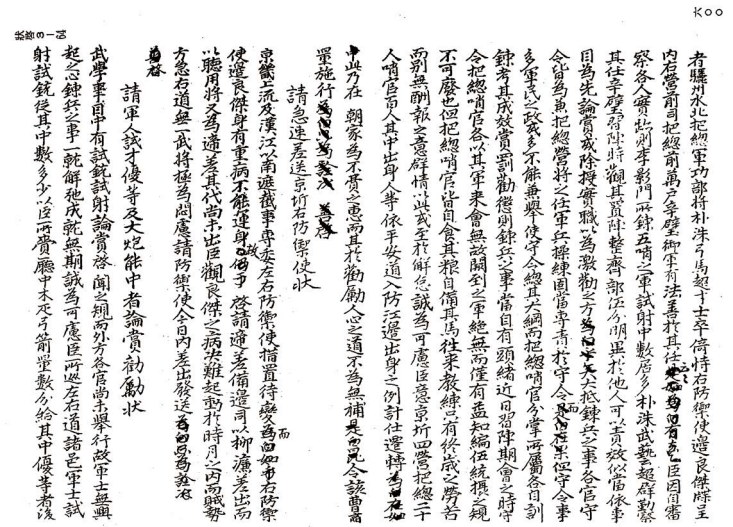
殿試以仍施行 → 以殿試施行

俾無遺珠之患向事關是去有等以 → 俾無遺珠之患云云

咸欲樂赴爲白乎矣, 水路遙遠 → 海陣士卒, 咸欲樂赴, 而水路遙遠

이외에도 『충민공계초』의 장계가 문집에 수록되는 과정에서 문장 구조를 고친 양상이 다수 나타난다. 『충민공계초』의 문장은 우리말 어순을 따르고 있는데, 문집은 대체로 정격한문의 전아한 문장이 수록되어야 하므로 많은 부분을 고친 듯하다. 이처럼 문집에 전재하는 과정에서 정격한문으로 고쳐지는 구체적인 정황을 류성룡의 장계에서도 살필 수 있다. 당시 『서어집』 편찬을 주도했던 정경세(鄭經世, 1563~1633)는 이준(李垓, 1560~1635)에게 편지를 보내어<sup>15)</sup> 류성룡이 구사한 문장의 본모습을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공문서에서 구사되어 있는 이두의 산삭은 부득이한 것이라 말한다.<sup>16)</sup> 또 『古文書集成 15 : 河回 豊山柳氏篇(I)』에는 류성룡의 문집에 수록할 글들을 교정한 원고가 영인되어 있는데, 류성룡의 장계에서 이두를 산삭하여 정격한문의 접속사로 손질하거나 우리말 어순의 문장을 정격한문의 문장으로 손질하는 등의 구체적인 변개양상이 포착된다.

□ 그림 1 류성룡(柳成龍)의 장계(狀啓)<sup>17)</sup>



위의 자료는 1594년(선조 27) 류성룡이 경기우방어사(京畿右防禦使)를 맡은 시일 내에 임명하여 파견해주시기를 국왕에게 청하는 장계이다. 류성룡의 문집 『西厓集』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번개 전] 京畿上流及漢江以南遮截事, 專委左右防禦使措置待變爲白如乎, 右防禦使邊良傑, 身有重病, 不能運身<sup>故</sup>仍于, 啓請遞差, 備邊司以, 柳瀛差出, 而以聽用, 將又爲遞差, 其代尚未出 臣觀良傑之病, 決難起動於時月之內, 而賊勢方急, 右道無一武將, 極爲悶慮. 請防禦使, 今日內差出發送爲白只爲, 謹次善啓.

[번개 후] 京畿上流及漢江以南遮截事, 專委左右防禦使措置待變, 而右防禦使邊良傑, 身有重病, 不能運身, 故啓請遞差, 備邊司以, 柳瀛差出, 而以聽用, 將又爲遞差, 其代尚未出 臣觀良傑之病, 決難起動於時月之內, 而賊勢方急, 右道無一武將, 極爲悶慮. 請防禦使, 今日內差出發送.

위의 인용문에서 연결어미류 이두를 산삭하고 한문의 접속사로 고친 변개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京畿上流及漢江以南遮截事, 專委左右防禦使措置

1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古文書集成 15 : 河回 豊山柳氏篇(I)』, 국학진흥연구사업추진회, 1994, p.600



18) 심경호, 『한문산문의 미학』, 고려대학교 출판부, 2013, p.40

19) 황위주, 『朝鮮時代 古文書의 漢文文體的 特徵』, 『대동한문학회지』 28, 대동한문학회, 2008, p.173

待變爲有知乎'의 문장에서 연결어미류 이두 '爲有知乎(~하였던)'을 산삭하고 한문의 접속사 '而'로 고쳐 뒤의 문장과 연결하였다. 또 '右防禦使邊良傑, 身有重病, 不能運身乙仍于, 啓請遞差'의 문장에서 연결어미류 이두 '乙仍于(~을 말미암아)'를 산삭하고 한문의 접속사 '故'로 고쳐 변양걸(邊良傑)이 중병 때문에 체차(遞差)를 청하게 되었음을 아뢰었다는 인과관계를 나타냈다. 그리고 문장의 일부와 문서의 양식을 삭제하였다.

이처럼 당시 장계를 포함한 공문서는 문집에 수록할 때에는 대개 이두를 삭제하고 우리말 어순의 한문문장을 정격한문의 어순으로 고쳤다. 이는 실록에 수록할 때에도 마찬가지였다.<sup>18)</sup> 따라서 당시 쓰여진 문서와 문집·실록에 수록된 문체 간에는 간극이 존재하는 것이다.

### III. 『忠愍公啓草』의 문체적 특징

장계(狀啓)는 왕명을 받아 외방(外方)으로 간 2품 이상 관원이 국왕에게 정무(政務)를 아뢰는 공문(公文)이다. 이는 정국(政局)의 어떤 사안에 대해 논리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여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는 소차(疏劄)와는 다르다. 문서 작성은 관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였다. 문서 작성은 법전에 규정된 문서양식 안에서 최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자신이 맡은 임무를 국왕에게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따라서 문서에 쓰는 문장은 문예미를 추구하기보다 내용을 전달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문체적 특징은 장계뿐 아니라 관청 간에 주고받은 첩(牒)·관(關) 등의 관문서, 개인의 권리나 의무를 주장하기 위해 작성된 매매(賣買)·명문(明文)·증빙류(證憑類) 등의 사문서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민간에서 작성한 소장·매매문서 등의 문서에 비해, 장계는 국왕에게 올리는 문서이기 때문에 우리식 한문의 양상은 비교적 약한 편이다.<sup>19)</sup>

節, 到付全羅右水使李億祺牒呈內, 節該道屬各官浦元加戰船等乙, 正月二十日內, 上道則營前洋, 下道則加里浦前洋聚到亦, 軍官·送催督爲如乎, 各官亦, 入防

水軍乙, 全不定送, 格軍整齊不得, 趁未聚到, 期限已過, 極爲悶慮乙仍于, 率先到舟師二十二隻, 今月十七日到陣爲有在果, 羅州·務安·咸平·靈光·茂長·長興·興德·古阜·扶安·沃溝等官段, 加卜定戰船, 不但不整送以乎新反, 元戰船至亦, 整送不冬叱分不諭, 各鎮浦奔赴水軍都目狀, 並以起送不冬, 船格不齊, 悶慮如是各浦所報絡繹爲沙餘良, 羣山浦萬戶李世環, 法聖浦萬戶曹大智·多慶浦萬戶李軾, 爲等如最只所管邊將以, 托以無格軍, 至今不來, 加于駭愕, 上項各官浦守令·邊將, 依軍令重治以, 徵其餘爲只爲, 牒呈是白置有亦, 七路彌滿之賊, 咸聚一方, 兇謀巧計, 無所不至, 移犯之患, 迫在呼吸之間爲白有去乙, 舟師所屬羅州以上九官守令等, 加定戰船以乎新反, 元會計付戰船至亦, 無意整送爲白沙餘良, 各鎮浦入防奔赴水軍, 無一名起送, 使各鎮浦戰船, 亦未能整齊爲白臥乎所, 軍令重事, 弛緩至此, 萬無進攻退守之路, 極爲駭愕爲白齊, 忠清水使具思稷段, 期限已過一朔, 尙未到陣, 期會重事, 弛緩至於此極是白置, 朝廷以, 各別催促爲白乎去妄料爲白臥乎事, 云云

『忠愍公啓草』1594년(선조 27) 2월 25일 啓本

위의 문서는 1594년(선조 27) 2월 25일 이순신이 충청수사가 진영(陣營)에 도착하지 않았으니 그를 재촉해 주실 것을 국왕에게 아뢰는 계본이다. 이 문서에 나타나는 우리식 한자어와 어순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결어미류 이두>

- 是白良置[이습아두] : ~이올지라도
- 爲白去乎[호 옮가온] : ~하사오므로
- 爲白遣[호 습고] : ~하시옵고
- 爲白昆[호 옮곤] : ~하옵기
- 爲白臥乎事是良矣[하습누온일야곰] : ~하옵는 일이므로
- 爲白在果[호 습견과] : ~하옵거니와
- 爲白乎等乙以[호 습온들로] : ~하옵신 줄로
- 爲白乎旆[호 습으며] : ~하사오며
- 叱分不諭[뿐아닌디] : ~뿐만 아니라

<우리식 한자어>

節[디위] : 이번

內[안] : 안에

節該[吏讀젓해] : 公文의 요지만 적을 때 표시하는 말

格軍 : 水夫의 하나로 사공의 일을 돕는 사람. 船格과 의미가 같다.

加于[吏讀, 더욱이] : 더욱

各別[吏讀, ㅈ로] : 특별히. 장계에서는 주로 ‘공로를 세운 자에게 상을 내리다[褒賞]’·‘제도 및 안건을 시행하다[施行]’·‘규정대로 시행되지 않은 행정 조치를 조사하여 규정에 따르도록 단속하다[檢飭]’ 등의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로 사용되었다.

<우리말식 문장어순>

整送不冬叱分不喻 : 非但不整送的 변용

起送不冬 : 不起送的 변용

朝廷以, 各別催促爲白乎去妄料爲白臥乎事 : 自朝廷各別催促의 변용

위의 인용문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연결어미류 이두이다. 연결어미류 이두의 사용은 구절과 구절 사이를 연결하여 뜻이 분명하게 해석되도록 하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없다. 따라서 사건의 정황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또 한자의 음훈차 표기를 활용하여 우리 말을 표현한 한자어들, 한자어의 본래 의미와 상관없는 한자들, 우리나라의 문화적·사회적 배경에서 만들어진 한자어들이 사용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한자어들을 활용하여 일부 문장의 구조를 정격한문의 정제된 문장이 아닌 우리말식 문장어순으로 배치하였다.

또 정격한문에서 주격조사는 대부분 생략되거나, 어조사 ‘之’로 관형격(~의)·주격(~이/가)·대격(~을/를) 등의 여러 가지 문법적 기능을 표기한다. 반면, 우리식 한문에서는 한자의 차자표기법을 활용하여 우리말의 다양한 조사를 표현하였다.

㉓ 遊軍將鉢浦假臣矣軍官訓鍊奉事羅大用段, 倭大船二隻, 後部將鹿島萬戶鄭運段, 倭中船二隻, 左斥候將呂島權管金仁英段, 倭中船一隻, 左部騎戰統將順天代將前奉事兪燦段, 倭大船一隻, 我國被擄兒女一名生擒, 捍後將臣矣軍官及第崔大晟段, 倭大船一隻, 斬退將臣矣軍官及第表應祿段, 大船一隻, 突擊將臣矣軍官李彦良段, 倭大船一隻, 臣矣帶率軍官訓鍊奉事下存緒前奉事金倭孝誠等段, 同力, 倭大船一隻, 慶尙諸將等, 倭船五隻我國被擄人一名生擒, 并倭船二十六隻, 爲等如銃筒放中, 撞破焚滅, 一海大洋, 烟焰漲天, 登山賊徒, 竄伏林藪, 無不摧心.

『忠愍公啓草』 1592년(선조 25) 5월 10일 初度玉浦勝捷啓本

㉔ 前年分, 順天義僧將三惠, 興陽義僧將宜能等亦, 沿海各官水軍僧, 并以優數募聚爲白良在乙, 從自願舟師以, 移屬各騎戰船, 率領討賊爲白如乎, 冬月之來, 繼糧爲難, 竝只放送, 開春即時, 期限馳到亦爲白有去乙, 節, 都惣攝僧惟晶亦, 佩印南來, 兩南各寺僧人乙, 勿論水陸義僧, 無遺推捉如是, 左道惣攝僧處英稱名人亦, 順天府松廣僧來倒, 同義將三惠·宜能等所率軍人乙, 竝只劫奪叱分不喻, 或免役免賊公文 擅自成給, 酌定軍糧, 督促捧上是如爲臥乎所, 誣罔愚民, 至於此極, 極爲駭愕爲白沙餘良, 都惣攝僧有正·惟晶亦, 僧將宜能免賤公文乙, 體察使帖文樣以, 成送爲白乎矣, 規式違格, 著暑亦異, 僞造明白爲白去等……

『忠愍公啓草』 1594년(선조 27) 1월 1일 啓本

위의 인용문 ㉓와 ㉔는 장계에 나타나는 다양한 조사류 이두 중 속격조사 ‘矣(~의)’, 주격조사 ‘段(~은/는)과 ‘亦(~이/가)’로 주어의 문법적 기능을 나타낸 예이다. ㉓에서 ‘矣(~의)’는 명사와 명사 사이를 연결한다. 특히 ‘臣矣’를 낱낱이 들어 주어, 즉 명사인 장수들의 소속을 정확하게 표현하였다. ‘段(~은/는)’은 문장 속에서 명사 뒤에 붙어 화제를 나타낸다. 정격한문에서는 명사가 놓인 위치로 문법적 기능을 나타내는 반면, 우리식 한문은 조사류 이두를 사용하여 구체적으로 문법적 기능을 명시하였다. ㉔에서 주격조사 이두 ‘亦’은 ‘~이/가’의 의미를 지닌다. 주어 뒤에 붙어 주어의 문법적 기능을 나타냈다. 앞서 살펴본 ‘段’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문법적 기능을 나타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장계의 문체는 문서 작성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우리말을 표현하는 한자들을 활용하였다. 장계는 관리가 업무 수행 중에 작성해야 하는 일종의 보고서라고 할 수 있다. 장계에는 보고하는 사건의 정황이나 사실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했다. 따라서 단어와 단어, 구절과 구절 사이에 문법적 기능을 나타내는 이두(吏讀)를 사용하여 문장이 이중적으로 해석될 소지를 피하였다. 또한 정격한문의 정제된 어휘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말 어휘들을 활용함으로써 구체성과 현장성을 확보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내용 전달에 있어서도 전달하려는 내용만을 간명하게 언급하였다. 장계와 마찬가지로 왕에게 올리는 상행문자(上行文字)인 소차(疏劄)를 예로 들어 비교해보면, 소차의 경우에는 내용 전달보다는 배경 설명 즉, 왕을 칭송한다든지 유교적 관점에서 인간 행위의 당위성을 설명하여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개진한다. 또 진고를 활용하거나 완곡한 어휘를 구사하는 등 다양한 수사법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임진왜란 때 작성된 소차와 장계를 비교·분석하여 그 특징을 살펴보자.

아래의 인용문은 1594년(선조 27) 월천(月川) 조목(趙穆, 1524~1606)이 군사감(軍資監) 주부(主簿)로서 흡곡현령(歙谷縣令)을 제수받고, 왜적에게 항거하는 문제에 대해 국왕에게 올린 소차이다. 앞부분은 전란으로 나라가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연로하고 보잘 것 없는 신하에게 관직을 제수해주신 국왕에 대한 황송함을 언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하였다.

㉞ 지금 국가가 깃에 달린 술[綴旒]처럼 위태로운데 그중에서도 가장 염려되는 것이 있습니다. 항복한 왜적을 받아들이는 것은 국가의 부득이한 입장에서 나온 계책이라는 것을 신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투항하였다고 한다면 이는 즉시 우리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인데, 지나오는 一略에 劫略을 자행하여 인심이 놀라 寇賊을 만난 것처럼 가족을 이끌고 피하는 자가 많으며, 또 그들의 오는 것이 그침이 없이 도로에 줄을 이었습니다.

㉟ 듣건대, 그 우두머리 중에도 투항하려는 자가 있다고 하는데, 이 적이 安祿山이 말을 바치던 수법을 쓰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講和한다는 설을 들으니, 더욱 통분함을 견딜 수 없습니다. 백만의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우리의 生靈을 살육하고, 우리의 宗社를 蕩覆하고, 우리의 陵寢을 훼손하였는데 돌아가지 않은 채 우리의 영토에 가득 있으면서 어떻게 강화한다고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옛날 金나라가 이러한 방법으로 송나라를 속였고 송나라는 스스로 속았습니다. 당시의 재상이던 秦檜는 이로써 나라를 그려 세가 지난 지금도 여전히 이를 갈게 합니다. 이러한 점은 전하께서도 깊이 아시는 바이므로 신이 上書하여 말할 것이 아니고, 조정에서 자연 처치함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신은 감히 많은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㊱ 다만 다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天道는 선한 자에게는 복을 주고 악한 자에게는 재앙을 내리는 것으로, 예로부터 강함을 믿고 잔학함을 부리는 자 치고 망하지 않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흠 잡힐 일도 없는데 저들은 스스로 명분 없는 군사를 일으켜 남의 나라에 재앙을 만듦이 이처럼 극도에 이르렀으니 결국 覆亡하는 재앙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옛 사람 중에 1旅와 1成의 힘으로 中興을 이룩한 자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아무리 殘敗되었다 하나 1旅와 1成으로 중흥을 이룩한 것에 비하면 백 배는 더 되지 않겠습니까.

㊲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덕을 닦아 하늘의 뜻에 부응하고, 인정을 베풀어 백성을 어루만져 宗社로 하여금 다시 편안하게 하시고, 국운을 거듭 새롭게 하는 것으로서 오랑캐를 물리치는 근본으로 삼으실 것이며, 신의 말을 듣는 선비가 항상 하는 말이라 여겨서 버리지 마소서. 신은 이제 영원히 사직하는 때를 당하여 감격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 어찌할 줄 모르겠습니다.<sup>20)</sup>

조목의 소차는 전반적으로 당대의 상황과 사실을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당시 상황에 맞는 적절한 고사를 들어 장황하게 설명하고, 당시 문제점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완곡하게 말하였다. ㉞는 서론부분에 해당한다. 위태로운 국가의 상황을 깃에 달린 술[綴旒]에 비유하고, 항복한 왜적을 받아들이는 것은 국가의 부득이한 입장에서 나온 계책을 알

20) 『宣祖實錄』 宣祖 27년(1594) 10월 17일 (신유), “(前略)方今國家, 危如綴旒, 而其中最可念者有焉. 撫納降倭, 臣固知國家出於不得已之計, 然既稱投降, 則即爲我國之民, 而一路所經, 恣行劫略, 人心駭然, 如逢寇賊, 多有擊家而避者, 且其來也不盡, 絡繹道路. 竊聞其酋亦有欲投降者. 無乃此賊出於祿山獻馬之術而然耶? 且聞講和之說, 尤不勝痛憤. 豈有率百萬之師, 殺戮我生靈, 蕩覆我宗社, 墮毀我陵寢, 瀰漫境上不去, 而謂之講和哉? 昔, 金人以此愚宋, 宋以此自愚. 當時宰相秦檜, 以此誤國, 萬世之下, 猶爲切齒. 此則殿下之所深鑑也. 臣非能上書言事者, 朝廷自有處置, 故臣不敢多言. 但復有一說焉. 天道福善禍淫, 自古恃強肆虐者, 靡或不亡. 今我無可乘之弊, 而彼自爲無名之舉, 貽禍人國, 至於此極, 終必有覆亡之禍. 古人有以一旅一成中興者, 今我國雖已殘敗, 視彼一旅一成, 豈不百倍乎? 伏願殿下, 修德以格天, 施仁以撫民, 使宗社再安, 國步重新, 以爲攘夷之本, 勿以臣言爲老儒常談, 而弗之省也. 臣今當永辭, 感淚自零, 不知所裁.”

고 있다고 하였다. ㉔는 본론 1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였다. 왜적이 무고한 우리의 백성을 살육하고 종사와 능묘를 훼손하였으므로 그들과 강화함이 부당함을 주장하였지만, 조정에서 알아서 할 것이기 때문에 자신은 많은 말을 하지 않겠다고 완곡하게 말하며 실질적으로 강화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맺는다. ㉕는 본론 2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원론적인 논의, 즉 ‘天道는 선한 자에게는 복 주고 악한 자에게는 재앙을 내린다’를 언급하며 고사(古事)를 예로 들어 본론 1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를 침략한 왜적은 결국 패망할 것이라는 자신의 주장을 아주 완곡하게 드러내고 있다. ㉖는 마지막으로 왜적을 물리치는 근본으로 국왕께서 덕을 닦아 하늘의 뜻에 부응하고, 인정을 베풀어 백성을 어루만져 종사를 다시 편안하게 하고 국운을 거듭 새롭게 할 것을 말하며 끝을 맺는다.

장계는 이와 달리 사건 중심의 서술, 간결한 내용 전달을 위주로 한다.

삼가 변란에 대비함을 아뢰는 일. 이번 4월 15일 유시에 보내어 이번 4월 16일 해시에 받은 경상우도 수군절도사 원균의 관문에 ‘이번 4월 14일 밤 8시에 성첩되어 당일 신시에 도착한 우병사의 관문과 이번 4월 14일 성첩되어 당일 신시에 받은 좌수사의 급보에, ‘이번 4월 14일 묘시에 황령산의 봉수군으로 있는 배들이 와서 ‘왜적들이 부산포의 우암에서 3개 부대로 진을 치고 있다가 일출시에 부산포의 성을 포위하고 접전하는데, 포를 쏘는 소리가 천지를 흔드는 듯 하였습니다’라고 보고하였는데, 부산포가 그러하거나 서평포와 다대포는 벌써 길이 막혀 구원병마저 지금으로서는 근접하지 못하니 참으로 안타깝고 민망합니다’라고 하였으므로 신도 방책과 계획에 따라 방비를 튼튼히 하여 굳게 지켜 적을 막아내는 일들을 각별히 조치하고 장계를 올립니다’라는 급보였습니다. 그리고 14일 오전 10시에 성첩되어 연이어 도착한 것으로 그 도의 수사가 보내온 전통에는, ‘왜적들이 당일 부산포를 포위하고 접전하던 상황은 장계하였습니다만 부산진에서 적을 제압하지 못하고 벌써 함락당하였으며, 왜적들이 부산포의 북쪽 5리쯤 되는 唐川에 결진하고 선봉에 선 왜인들은 동래에 이르렀다 하는바, 즉시 장계를 올리고 우수영으로서도 차례로 준비해야 할 일을 모

두 통고하였으며, 우도는 김해부에서 변란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당일 그곳에 이르러 연해안의 각 고을 위장과 육상의 각 관원에게 모두 통고하였으며, 우도는 김해부에서 변란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당일 그곳에 이르러 연해안의 각 고을의 위장과 육상의 각 관원에게 모두 공문을 보내어 군대와 말을 정비하여 변란에 대비시켰거니와 우수영으로도 군사와 병선을 정비하고 날로 새로워지는 정세에 대비하여 즉시 도둑의 무리를 잡으려 하는데, 전라도에도 아울러 전통하는 일입니다’라는 내용과 우수영으로 차차 전통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적의 세력이 커져 이 지경에 이르고 ‘부산의 큰 진영이 벌써 함락되었다’라고 하니 참으로 통분합니다. 신도 군사와 전선을 정비하여 바다 어귀에서 변란에 대비하며, 겸관찰사·병마절도사·우도수군절도사 및 본도 소속 연해안의 각 관포에도 아울러 급히 통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신이 소관하는 좌도는 경상도와 바다를 사이에 두고 접해있는 지역으로서 적들이 침범하는 길목의 요충지이며, 도내에서 가장 중요한 곳인지라, 침범당한 뒤에는 방비에 필요한 잡색군을 징발하지 못할 것이므로 소속된 고을에서 급히 뽑혀온 한두 패의 군사를 우선 재촉하여, 성을 지키고 해전을 맡는 일에 각각 보충시켜 모든 것을 정비하여 변란에 대비하는 일임을 아립니다.

만력 20년 4월 16일 10시 절도사 신 이<sup>21)</sup>

위의 인용문은 1593년(선조 26) 4월 16일 이순신이 사변에 대비하고 있음을 아뢰는 계본이다. 왜적이 부산포를 함락하였다는 공문을 받고 절도사와 각 관포에 군대를 정비할 것을 알리고, 왜적이 전라도에 침범해올 것을 대비해 군사를 보충하여 사변에 대비하고 있음을 아뢴다. 이 문서는 앞서 살펴본 조목(趙穆)의 상소와 달리 원론적인 논의에 대한 부분은 언급되지 않고 있다. 당시 상황에 대해 주고받은 문서를 직접 인용하면서 객관성을 확보하고, 자신의 의견만 간명하게 언급하였다.

물론 장계에서도 ‘犄角’·‘腹背受敵’·‘籠中之鳥’·‘鼎裏之魚’와 같이 전고가 분명한 용사(用事)를 활용한 예도 있다.<sup>22)</sup> 하지만 이런 표현을 구사한 곳은 많지 않다. 내용 중심의 의사 전달을 목적으로 작성하였기 때문에 수사

21) 이순신, 앞의 책, “謹啓爲待變事。今四月十六日亥時到付同月十五日酉時施行, 慶尙右道水軍節度使元均關內, 當日酉時到付今四月十四日戌時成貼, 右兵使關內, 當日申時到付今四月十四日成貼, 左水使馳報內, 今四月十四日卯時, 荒嶺山烽燧軍裏伊進告內, 倭賊等亦, 釜山浦片岩, 分三運結陣爲有可, 日出時, 同浦圍城接戰, 放砲之聲, 震天是如, 進告爲白有去等, 同鎮以乎爲白在果, 西平多大浦段, 已塞其路, 援兵乙良置, 時未馳赴, 極爲悶慮, 臣段依方略, 堅壁固守制敵等事, 各別措置爲白臥乎所, 馳啓爲臥乎味, 馳報是齊, 追乎到付十四日巳時成貼, 同道水使傳通內, 賊倭當日釜山浦圍城接戰緣由馳啓爲白有在乎, 同鎮亦, 不能制敵, 已彼陷城, 賊倭等亦, 釜山浦北距五里許唐川良中結陣, 先鋒倭入段, 東萊了以上來是如爲有臥乎所, 當刻馳啓爲去乎, 右水營以置, 次次直發移文事爲等如, 傳通馳報是置有亦, 道段, 金海府待變次以, 當日到彼, 同浦沿海, 各官衛將及內地各官, 并以發馬行移, 軍馬整齊待變令是在果, 營以置軍兵船整齊, 日新待變, 登時勦捕爲乎矣, 全羅道, 并以次次傳通向事關是置有亦, 營以置次次傳通向事關是白有亦, 賊勢熾張, 至於此極, 釜山巨鎮, 已爲陷沒是如爲白臥乎所, 極爲痛憤, 臣段置, 軍船整齊, 江口待變爲白乎餘, 兼觀察使·兵馬節度使·右道水軍節度使處及道屬沿海各官浦, 發馬傳通爲白在果, 臣所管左道段, 慶尙道一海相接之地以, 賊路要害, 道內尤最爲白去等, 犯境之後, 添防雜色乙, 勢未及調發是白乎等用良, 所屬各官奔赴, 一運軍士, 爲先催促, 添防守城, 水戰歧等如整齊待變爲白臥乎事云云。萬曆二十年四月十六日亥時 節度使 臣李。”

22) ‘犄角’은 『春秋左氏傳』襄公 14년 條에서 나왔다. 晉나라가 吳나라를 위해 越후국과 연합하여 楚나라를 공격하려 하자, 晉나라의 范宣子가 전쟁의 빌미를 제공한 吳나라를 책망하면서 會盟에 참석하지 못하게 했다. 또한 회맹의 기일이 누설될 것을 우려해 회맹에 참석하려 온 晉나라의 속국 莒의 駒支를 체포하려했다. 이에 구지는 범선자에게 풀과 莒이 협력하여 秦나라를 공격한 일을 말한다. 晉나라가 秦나라와 연합해 鄭나라를 공격할 때 연합군이었던 秦이 鄭나라와 내통하여

뿔을 공격하려 했다. 뿔의 속국이었던 꾀은 뿔을 도왔다. 구지는 진과 협력한 것을 “그 일을 사슴 잡는 일에 비유한다면, 진나라 사람은 사슴의 뿔을 잡고, 모든 용족은 다리를 잡아끌어, 진나라 사람과 함께 사슴을 거꾸러뜨린 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譬如捕鹿，晉人角之，諸戎掎之，與晉踣之.]”라고 하였다. 이 말을 들은 범선자는 구지에게 사과하고 회맹에 참석시켰다. 이러한 배경 이야기에서 만들어진 ‘技角’은 후에 협력하여 군사를 나누어 적을 견제하거나 공격하는 것을 말하게 되었다. 이순신은 狀啓에서 당시 전란의 상황을 ‘腹背受敵’이라고 많이 표현하였다. ‘腹背受敵’은 앞과 뒤에서 적이 공격하는 형세를 말한다. 『梁書』·『陳慶之傳』에서 나왔다. 『資治通鑑』에도 수록되어 있다. ‘籠中之鳥’와 ‘鼎裏之魚’는 모두 두보의 시에 나오는 문장이다. ‘籠中之鳥’는 두보의 『衡州送李大夫七丈赴廣州』에서 나왔다. 자신이 드넓은 우주에서 외로운 신세임을 탄식하여 “일월이 조롱 속의 새요, 건곤에 물 위의 부평초로세[日月籠中鳥，乾坤水上萍].”라고 하였다. 후에 새장에 갇힌 새와 같이 자유롭지 않은 신세를 말할 때 쓰이게 되었다. ‘鼎裏之魚’는 두보의 『喜聞官軍已臨賊境二十韻』에 “술 안의 물고기 조금 더 살 수 있지만, 구멍 속의 개미인데 어디로 달아나겠나[鼎魚猶假息，穴蟻欲何逃].”라는 구절에서 나왔다. 후에 멸망에 임박한 사람이나 사물을 비유하는 상황일 때 쓰이게 되었다. 이순신의 장계에서 우리나라 군사에게 포위되어 외딴 섬에 갇혀있는 왜적의 상황을 ‘籠中之鳥’와 ‘鼎裏之魚’에 비유했다.

적 표현이 배제되거나 최소화되었고, 의사 전달에 필요한 명사와 동사 또는 명사와 명사 중심의 간결한 문장을 이루었다.

㉒ 僧將守仁·義能等亦，乘此亂離，不思偷安，激發義氣，募聚軍兵，各率三百餘名，擬雪國恥，極爲可嘉爲白沙餘良，海陣兩載，自備軍糧，轉分供，艱以繼絕，其勤苦之狀，有倍軍官爲自乎矣……

『忠愍公啓草』 1594년(선조 27) 3월 10일 啓本

㉔ 倭船六隻內，三隻段，依泊海採，二隻段，加德，一隻段，永登浦境內爲旃，縣境東西各處，陸行之賊，處處放砲爲齋。

『忠愍公啓草』 1594년(선조 27) 4월 19일 啓本

인용문 ㉒에서 ‘乘此亂離，不思偷安，激發義氣，募聚軍兵，各率三百餘名，擬雪國恥’는 동사와 명사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구절이 모여 문장을 이루었다. ‘亂離·偷安·義氣·軍兵·三百餘名·國恥’는 목적어로 타동사 ‘乘·不思·激發·募聚·率·擬雪’ 바로 뒤에 놓였다. ㉔는 ‘二隻段，加德，一隻段，永登浦境內爲旃’의 구절에서 조사류 이두 ‘段(~은/는)’과 연결어미류 이두 ‘爲旃(~하며)’를 제외한 구절은 ‘二隻加德，一隻永登浦境內’가 되어 허사와 동사 없이 명사로만 이루어진 문장이 된다.

이렇듯 내용 중심의 문장, 한자의 차차표기법을 활용한 우리말식 문장 구조는 전형적 중국식 한문 계열과는 다른 우리식 한문의 문체적 특징이다. 실용문에서 주로 구사되었던 우리식 한문은 사실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문예미를 추구하지 않았다.

따라서 『충민공계초』는 국가 운영 차원에서 구사되었던 실질적인 문장 작성 행위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면서, 아울러 실제 문서가 문헌에 수록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변개 양상을 보여주는지에 대해서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IV. 맺음말

우리나라는 중국으로부터 한문을 수용하여 선진·양한·당·송의 문장을 모범으로 문예미를 추구하는 한편, 한자를 이용하여 우리말을 표현하는 나름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우리말 어순에 따라 한자를 배치하고 한자의 음과 뜻을 빌어 우리말의 명사·조사·어미를 표기하는 이두를 활용한, 정격 한문과는 구별되는, 우리나라에서만 사용된 독특한 우리식 한문이 발달한 것이다. 이 우리식 한문은 주로 실용문에서 사용되었으며,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 후기까지 사용되었다. 『충민공계초』 또한 우리식 한문이 구사되어 있는 자료에 해당한다.

우리식 한문은 민간에서 작성한 소장·매매문서 등의 문서로 내려갈수록 강하게 나타난다. 이에 비하면 『충민공계초』에 수록된 장계들은 국왕에게 올리는 문서이기 때문에 우리식 한문의 양상은 비교적 약한 편이다.

『충민공계초』를 통해 살펴본 장계의 문체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문서 작성자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우리말을 표현하는 한자들을 활용하였다. 장계는 관리로서 수행하는 업무과정 중에 작성해야 하는 일종의 보고서이므로 보고하는 사건의 정황이나 사실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했다. 따라서 단어와 단어, 구절과 구절 사이에 문법적 기능을 나타내는 이두를 사용하여 문장이 이중적으로 해석될 소지를 피하였다. 또한 정격한문의 정제된 어휘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말 어휘들을 활용함으로써 구체성과 현장성을 확보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내용 전달에 있어서도 왕에게 올리는 상행문자인 소차와 비교해볼 때, 수사적 표현이 최소화되고 전달하려는 내용만을 간명하게 언급하였다.

## “『忠愍公啓草』의 문체적 특징에 관한 일고찰”에 대한 토론문

김성갑  
토지주택박물관

### I. 들어가며

논문의 필자는 국립해양박물관 소장본 『忠愍公啓草』에 전재된 장계(狀啓) 등의 문서에 사용된 기술(記述)상의 문체적 특징에 대하여 관찬(官撰) 연대기 사료와 여러 문집 등 다양한 사료를 활용하여 심도있게 고찰하고 있다.

본 토론자는 『충민공계초』를 촬영 사진을 통해 근자에서야 내용의 대강을 파악하였을 뿐이며, 아울러 국문학이나 한문학에 관련한 심도 깊은 연구를 진행하지 못하였던 까닭에 논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몇 가지 의문을 제기하는 수준에서 토론문에 갈음하고자 한다.

### II. 발표문의 “I. 머리말” 부분에서

#### 1. 우리식 한문은 조선 후기까지가 아닌 대한제국기와 일제강점기에도 있었다.

논문에 따르면 “우리식 한문으로 쓰여진 자료는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 후기까지의 자료가 전하는데, 주로 실용문에 사용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우리식 한문으로 사용된 자료 시기의 하한은 조선후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토론자가 본인의 줄고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1913년 다이쇼(大正) 연간에까지 발표자가 말하는 소위 ‘실용문’이라고 할 수 있는 매매명문(賣買明文)이 작성되어 사용되고 있었으며 해당 자료들에는 우리식 한문이나 이두(吏讀)가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관공서에서 사용했던 공식문서에서도 갑오개혁기의 「公文類別及式樣」(1895)에 따라 대한제국기와 통감부 시기에도 국한문 혼용에 대한 세칙 규정으로 인해 연결어미류 등의 이두가 국문(國文) 즉, 한글로 바뀌었을 뿐 우리식 한문문체가 지속되었으므로 통시적 자료 파악의 과정에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III. 발표문의 “II. 『忠愍公啓草』 수록 문서의 내용 구성” 부분에서

#### 2. 『충민공계초』 1593년(만력 21, 선조26) 12월 29일자 계본의 탈초석문에 대한 의문과 중요성(각주 11번 부분, 장계 42<sup>1)</sup>)

1) 이 책 p.206

논문의 본 장에서 1593년(선조26) 12월 29일 계본의 판독문을 예로 들어 『壬辰狀草』와 『忠愍公啓草』의 기사를 대조하며 설명하는 부분에서 필자의 석문(釋文)에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 이두 ‘삽(白)’의 결락, 품(稟)이나 동궁(東宮) 등 앞의 격자(隔字) 부재, 묘(旒)와 소(尔)의 혼동, 원(遠)과 원(元) 등 이체자(異體字) 오기, 한(한)(限)의 수정 등등 원문 탈초 및 정서화 과정에 있어 『충민공계초』의 해당 기사와 비교하였을 때 많은 오류가 나타난다.

소위 특정 고문헌 자료에 대한 원문 탈초, 정서화를 부정확하게 할 경우 이는 대단히 치명적이다. 특히, 형태적·맥락적 탈초 과정을 마치고 작성된 정서문에만 근거하여 해당 자료에 대한 한국식 한문 문체 혹은 이두 표현과 중국식 한문 문장과의 비교 방법론적 논증을 진행해야 하는 본 논문의 경우, 정서화되어 발표문에 들어가는 고유 한자어나 차자표기, 이두의 한 글자 한 글자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는 사안이어서 더욱 그러하다. 이렇게 될 경우 발표자가 각주에서 밝혔듯, ‘참조’하였다고 하는 문화재청 국가기록유산 상에 탑재되었을 『임진장초』의 정서문도 재차 회의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충민공계초』 교감본과의 확인 및 교감본 자체·원문 자체와 재차 확인하는 작업도 미량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3. 『임진장초』 VS. 『충민공계초』, 『충민공계초』는 과연 ‘비교적 별로’인 자료인가?

또한 발표문에서는 “『임진장초』를 살펴보면, 문서 발급자의 직함 성명, 행의 구분, 대두(擡頭), 격자 등이 엄격하게 지켜져 있으며” 라고 표현하였는데, 이는 자칫 『충민공계초』는 그렇지 못한 자료인 것 같은 낙양스를 주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충민공계초』의 원문을 살펴보면 첫 장에서 이순신 장군의 직함 성명이 나와 이것이 전체 내용을 지배하고 있고, 내용 표기에 있어서도 대두(擡頭), 격자(隔字)(隔一字, 隔二字 포함), 별행(別行) 등 역시 원

문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謹 啓... 云云’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며, 간혹 문서 발송 시간까지 ‘未時’라고 적힌 부분도 있다.

그런데 『충민공계초』상의 이같은 실제적 현상은 전혀 분석·기술하지 아니하고, 『임진장초』에 대한 평가만으로 해당 ‘내용 구성 형식 비교’에 관한 서술을 마쳐 버린 것은, 『충민공계초』의 동초(謄抄) 및 필사(筆寫)의 과정에서는 ‘대두, 격자 등의 기본적인 문서예식(文書禮式)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오인될 여지가 많다.

토론자 역시 『충민공계초』는 필자의 언급대로 등록류의 성격을 띤 자료로 본다. 본래 문서행이(文書行移)의 기능이 종료된 혹은 종료되는 즈음에 있는 원문서(여기서는 장계들)들을 그대로, 혹은 요점 정리하여 베껴 두었던 책자인 것이다. 이러한 문서정리 및 보존관리 행정의 흔적은 『忠勳府謄錄』과 같은 중앙관아의 등록류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간혹 작업 가운데는 1~3명의 녹사(錄事)가 많은 양을 돌아가면서 쓰고 때로는 창준(唱准)작업에 의거하여 필사하기 때문에, 즉 사람들이 베껴 적는 것이기 때문에, 동음이의어, 대두나 별항의 오기는 물론, 외양적으로는 필체에서도 차이가 나기도 하는 것이 다반사이다. 실제 행이문서상의 ‘右 牒呈, 須至牒呈, 照驗施行須至關者’ 등의 『洪武禮制』에 나타나는 행정투식어들은 그저 ‘云云’ 등으로 축약해 버린다. 참고로 이는 토지주택박물관 소장의 경복궁 중건 관련 등록인 『營建日鑿』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는 차후 “營建都監儀軌” 제작을 위한 등록의 성격을 띤 것으로 관인도 없고, 실제 행이된 문서의 투식도 빠져있다.

결론적으로 『임진장초』와 비교하여, 『충민공계초』는 관인(官印)의 부재 등으로 인해 실제 현장성이 부족한 자료이기는 하나, 대부분의 장계를 수록 정리하였다는 점, 기본적인 대두·격자·별항 등을 지켜서 필사한, 기초적인 문서예식(文書禮式)을 갖춘 문서라는 점 등에 근거하여 매우 중요한 입란사료로 보아야 할 것이다.

#### IV. 발표문의 “III. 『忠愍公啓草』의 문체적 특징” 부분에서

4. 고문서 범주의 문제: 賣買·明文·證憑類, 證憑類는 대부분 私文書가 아니다.

2) 이 책 p.215

발표문에 따르면 “(… 문서에 쓰는 문장은 … 내용을 전달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이는 …) 개인의 권리나 의무를 주장하기 위해 작성된 매매·명문·증빙류 등의 사문서도 마찬가지였다”고 한다. 그러나 ‘증빙류’ 고문서들을 ‘사문서’라고 단언하기에는 쉽지 않은 측면이 많다. 특히 각종 입만(立案)이나 준호구(準戶口) 등의 증빙류는 사문서의 범주에서 더욱 포함되기 어렵다고 보인다.

5. 『충민공계초』 1594년(만력22, 선조27) 2월 25일자 계본의 탈초석문에 대한 의문(각주 18번 부분, 장계 57<sup>2)</sup> 이하)

이 또한 탈초상의 오자가 다수 발견되고 있으며, 그리고 맨 마지막 두 줄은 동년 2월 25일자 계본 2건 중 앞의 기사를 탈초한 것으로 잘못 수록한 것이다. 원문에 대한 정확하고 세밀한 검토없이 탈초석문이 되어 있다. 1차 사료에 대한 정확한 탈초가 부재한 상황에서 연결어미 등 이두에 대한 검토는 불가할 것이다.

아울러 발표문에서 예로 든 계본의 기사는 ‘이순신이 忠淸水使가 陣營에 도착하지 않았으니 그를 재촉해 주실 것을 …’의 내용이 아니라, 전라도 각포(各浦)의 전선(戰船)에 대한 복정(卜定)(이것도 卜定[지정] 유서필지 이두 휘편, 밑줄이 없음)이 추가되어야 하는 필요성과 신속한 정송에 대한 내용으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6. 장계는 보고서 : 보고 내용의 구체성과 현장성, 간명성은 당연한 것. 간명하고, 우리식 한문으로 썼다고 하여 문서의 위상과 품격을 떨어뜨리는 것은 아니다.

보고서의 생명은 ‘신속’, ‘정확’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장을 다듬을 여유가 없는 것, 정제하여 쓰기 어렵다는 사실, 이는 곧 해당 문서의 원형이며, 본질일 수 있다.

이 논문에 따르면 '정격한문의 정제된 문장이 아닌 우리말식 문장어순으로 배치하였다'는 식의 표현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일방적인 표현은 자칫 '우리말'식은 정제가 될 수 없는 것이고 중국한문 즉 소위 '정격한문'은 정제된 것 혹은 질서정연한 것이라는, 단순한 학술적 견해를 넘어서는 미미한 오해가 생길 수 있다.

한편 논문에서 예로 든 '우리말식 문장어순'에서 '整送不冬叱分不喻：非但不整送의 변용'이라고 기재한 것은 이 점에서 잘못된 표현으로 보인다. 오히려 거꾸로 '非但不整送：整送不冬叱分不喻의 변용'이라고 해야 정확하다. 즉 장계상의 한국식 한문과 이두가 먼저이고, 이것이 차후 편집, 필사시에 정격한문으로 '변용(혹은 변개)'되어갔던 것이다. 사람이 문서를 작성할 때는 자신의 머리 속에 떠오르거나 정리된 "말"을 "글"로 써 내려가는 것이다. 즉 "말"이 먼저고, "글"은 그 다음이다. 머리 속에 정리된 장계의 보고 내용 곧 "말"을 만들어내는 우리나라의 비교적 독자적인 표현들과 그 기술이 먼저이고, 이것이 차후 중국식의 '정격한문'의 형태로 정제·편집·재조합되어 문집이나 2차 사료에 전제되는 것이다.

정제된 정격한문 VS. 우리말식 한문표현, 이 점은 언어학에 있어서 대단히 큰 논점일 수 있다. 재고해 본다면, 해당 장계들은 곧 보고서 원본들은 우리나라에서 임란이라는 전쟁시기에 작성되었고, 그렇게 생성, 발송, 소멸해 갔다. 우리나라에서 작성된 문서에 대하여 우리식의 표현으로 기록하고, 또한 그 기능과 역할이 사실과 현상의 '보고'라면 이에 충실하여 정확성(precision)과 간명성(economics)을 지키는 것이 당연지사이다.

결론적으로 각각의 지역에서 사용하는 언어의 본질과 문서 생성의 과정에 있어서나 문서와 관련한 문화적인 독자성에 있어서나 중국식과 한국식의 어느 한쪽이 "(더) 정제된"(혹은 세련된) 문체라고는 판단할 수 없으며, 각각의 자료는 그 자체로서 우수한 가치와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라 사료된다. 즉 『충민공계초』상의 장계들이 가지는 "보고서"로서의 문체적 특징의 독자성은 결코 정제된 정격한문에 뒤지지 않는다.

## 7. "節該", 우리식 한자어인가?

"節該"는 우리식 한자어인가? 토론자의 과문함일 수도 있지만, 일단은 '節該'는 장세경 『이두자료 읽기 사전』의 저술 정도에만 기재되어 있고, 게다가 '節該'에 대해서는, 『吏讀便覽』 등 원 자료상의 독법의 전거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홍기문의 『리두연구』(1957)나 남광우의 『고어사전』 등에서도 보이지 않는다. 즉 편집된 1건의 사전에는 수록돼 있지만, 1차 자료에서는 '節該'가 우리식 한자어라고 하지는 않은 것이다. 오히려 우리나라의 관찬 사료 및 고문서(立案이나 關文 등 관문서 및 공문서 등)상에서만 아니라, 중국의 관찬사료나 문헌 등에도 황제의 수서성지(手書聖旨)나 조서(詔書), 차부(劄付) 등의 내용을 요약하는 내용의 문두에 '節該'는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이를 논문에서와 같이 "우리식 한자어"라고 단언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 8. 실용문에서 우리식 한문이 '문예미'를 추구하지 않았다?

발표문에 따르면 "실용문에서 주로 구사되었던 우리식 한문은... 문예미를 추구하지 않았다"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발표문에서는 소위 "실용문"은 '賣買明文, 訴狀, 證憑類' 등이라고 일컫고 있다.

현대사회의 訴狀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시대의 상서(上書), 단자(單子) 등의 청원서나 통문(通文) 등을 살펴보자. 여타의 것을 차치하고, 청원 내용이 충효열(忠孝烈)의 포양(褒揚)과 정려(旌闈)와 관련된 거의 대부분의 상서나 단자에서는 정확한 사실 위주의 간명함만으로 내용을 채우거나, 정격한문의 '문예미'를 도외시하지는 않는다. 상서나 단자의 작성 주체인 지역 유생들은 자신들의 학문적 수준은 물론, 추존(推尊)하려는 충신, 효자, 열녀의 성품과 행적을 국가적 스탠다드 수준으로까지 미학적으로 끌어올려야 하는 임무를 띠고 있었기에, (필수불가결한 연결어미류의 이두 표현을 제외하고) 유려한 한문문체를 구사하며, 내용에서도 수많은 전고(典故)를 인용하여 자못 난해하고 전아한 문서를 생산해 내고 있었다. 조선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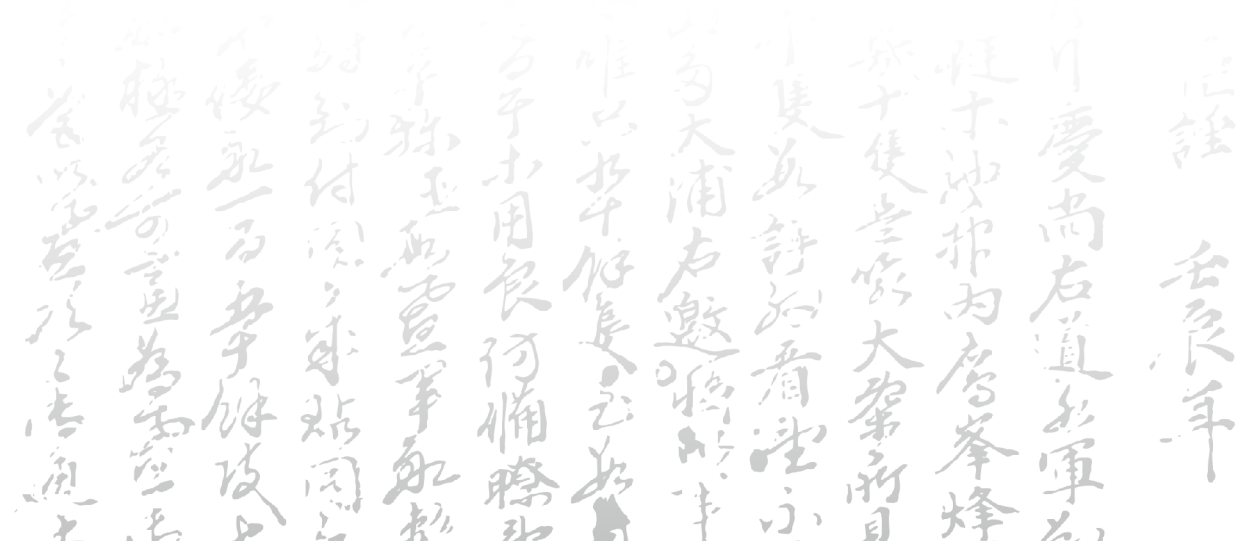


“실용문”, 즉 실용 고문서가 “문예미를 추구하지 않았다”라고 단언하는 것은 여타 유생들이 작성하는 문서들에 대한 검토가 부재한 데서 온 것으로 보인다.

## VI. <임진왜란1592> 대본집필기

김한솔

토론문 김병륜



## <임진왜란1592> 대본집필기

- 『충민공계초』의 발굴은 중요한 사건이며 창작자에게 큰 자극 -

김한솔  
KBS 한국방송

〈임진왜란1592〉는 한국에서 처음 시도되는 Factual Drama를 표방했습니다. 아무도 하지 않은 일을 한다는 것은 무모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형식이라서 알맞은 작가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대본을 제가 직접 써야 하는 상황에 고통 받았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다행이었습니다. 방송에 대해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으니까요. 그리고 2017년 4월 25일, 뉴욕TV&Film Festival에서 금상을 받는 영광을 안기도 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닌 임진왜란을 소재로 전 세계 55개국 방송사의 경연에서 금상을 받은 사실이 더욱 감동스럽기만 합니다.

사실 〈임진왜란1592〉의 특이점은 촬영과 연출보다 극본이었습니다. 〈임진왜란1592〉의 극본은 다큐멘터리와 드라마를 섞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다큐적인 Fact와 드라마적인 Fiction을 용광로에 집어넣어 완전히 녹여내 전혀 다른 새로운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작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다른 드라마 극본과 무엇이 다를까.

제가 임진왜란에 대해 방송을 기획한다고 하니 많은 분들이 걱정부터 해주었습니다. ‘임진왜란을 또 해? 더 할 것이 있어? 뭘 더 해?’ 저 역시 같은 생각이었고 걱정이 앞섰습니다. 고심 끝에 나온 대안은 바로 Factual Drama였습니다. 형식을 달리하자는 것이었지요. 서양에서는 이미 인기가 많은 (대표적인 예로는 HBO에서 만든 팩츄얼 드라마 〈Band of Brothers〉) 팩츄얼 드라마의 형식을 도입해 새로운 임진왜란을 만들어보자는 것이 제 연출의 시작이었습니다. Factual Drama 즉 사실에 입각한 혹은 사실에 가까운 드라마를 새롭게 만들어보는 것이 이번 〈임진왜란1592〉의 숙제였던 것이었지요.

새로운 형식의 프로그램 대본을 쓰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준이 필요했습니다. 고민 끝에 제 나름의 기준을 정했습니다. 1) 모든 내용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다. 2) 역사적 사실이 기록하고 있지 않은 역사의 블랭크(Blank)를 전문가의 합리적 추론과 드라마적 상상력으로 채워나간다. 이 두 가지 기준을 세운 끝에 〈임진왜란1592〉의 대본은 조금씩 완성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이 두 가지 기준에 부합한 극본을 쓰기 위해서는 작가의 노력과 전문가들의 조력 두 가지 전제조건이 동시에 발동해야 한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 첫 번째 기준. ‘모든 내용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다.’

우스갯소리로 〈임진왜란1592〉의 작가는 김한솔이자 동시에 이순신 장군님이라는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임금께 보낸 장계인 『임진장초(壬辰狀草)』 그리고 장군의 일기인 『난중일기(亂中日記)』에는 이미 훌륭한 플롯과 지문이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극적이고 흥미로운 Fact들을 찾아내는 것. 이것이 작가로서 제가 해야 되는 첫 번째 노력이었습니다.

사실 『당포파왜병장(唐浦波倭兵狀)』의 기록은 어떤 영화의 시나리오 지문이라고 해도 될 만큼 흥미진진한 것이었습니다. “먼저 거북선으로 하여금 층루선(層樓船) 밑을 들이받으면서 용의 입으로는 현자 철환을 치쏘게 하고 그 배를 깨뜨리자 중위장 권준이 돌진하여 왜장이라는 놈을 쏘아 맞추자 쿵하는 소리를 내며 떨어지므로 사도 첨사 김완이 그 왜장의 머리를 베었습니다.” 더 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이 흥미진진한 지문과 촬영 콘티를 이미 이순신 작가님이 400년 전에 써놓으신 것이지요. 이런 기록 자체를 발굴하는 것, 이것이 우선 대본을 쓰기 전에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발굴된 기록들은 그대로 〈임진왜란1592〉의 지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드라마를 만들기 힘듭니다. 이렇게 되면 기록을 단순히 영상화하는 작업, 즉 재연 작업일 뿐이지 극적 구성을 가질 수 없다는 한계에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그때 두 번째 기준이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기준이 〈임진왜란1592〉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 두 번째 기준. ‘역사적 사실이 기록하고 있지 않은 역사의 블랭크를 전문가의 합리적 추론과 드라마적 상상력으로 채워나간다.’

역사적으로 이순신 장군은 7년 전쟁 동안 총을 두 번 맞습니다. 한번은 노량해전(露梁海戰)에서 총을 맞고 전사하시고 그 전에 다른 한번은 사천해전(泗川海戰)에서였지요. 사천해전의 총상은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사천해전은 다름 아닌 임진왜란 최종 병기인 거북선이 첫 출격해 해전인데 왜 이순신 장군이 총상을 당했을까. 왜 하필 거북선이 첫 출격한 그날 이순신 장군은 심각한 총상을 당한 것일까. 그 어떤 역사적 기록도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말한 ‘역사적 블랭크’가 발생한 것입니다. 또한 이 블랭크는 역사적 미스터리를 낳습니다. 조총의 유효 사거리는 60미터. 결국 이순신 장군은 적들 바로 앞인 60m까지 근접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순신 장군의 전법이라고 알려진 ‘총통(조선식 대포, 사정거리 약 1km)을 이용해 먼 거리에서 적을 타격하는 전투’와는 전면적으로 반대되는 것입니다.

이때 전문가의 조력이 절실하게 필요해집니다. 이 블랭크 혹은 역사적 미스터리를 채워나가고 해결하기 위해 거북선 관련 다양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았습시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추천해준 일본 측 자료인 『고려선전기(高麗船戰記)』와 여타 논문들을 토대로 하나의 추론을 만들어 갑니다. 거북선은 돌격선이고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가장 먼저 전투에 임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가까운 거리에서 화포를 쏩니다. 『고려선전기』에는 약 30cm까지 접근해서 포를 쏜 기록이 등장합니다. 또한 조선 수군의 야전 교본인 『수조규식(水操規式)』에서는 판옥선 화포의 방포거리를 240m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순신 장군은 원거리에서 적을 타격한 것이 아니라 직사포를 쏘야만 할 정도의 근거리에서 적을 타격했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추론에서 나온 지문과 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왼쪽 어깨의 총상을 부여잡으며 전군에게 명령한다) 전 함대 화포 발사. 눈으로

직접보고 직사포로 타격하라.” 이렇게 <임진왜란1592>의 대사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결국 저 나름대로 정해놓은 두 가지 기준에 따라 이야기가 버무려지면서 다큐멘터리도 아닌 드라마도 아닌 제3의 대본, 팩츄얼드라마 대본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 『충민공계초』의 발굴은 중요한 사건이며 자극

우선 <임진왜란1592>를 시청해주신 모든 시청자들에게 감사합니다. 그 관심의 근원은 바로 팩츄얼 드라마가 주는 진실성과 진정성에 있다는 추측을 해봅니다. 진실이 주는 울림. 그것은 작가의 상상력과 Fact 발굴 능력이라는 기본 토대에 전문가들의 조언과 검증이 더해져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상상과 고증, 드라마와 다큐, Fiction과 Fact, 작가와 학자. 어쩌면 어울리지 않는 이 두 가지 요소를 적절히 녹여내는 것. 이것이 제2의 <임진왜란1592>, 아니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작품을 탄생시키는 원동력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립해양박물관의 『충민공계초』 발굴은 저에게 중요한 사건이며 창작의 욕에 큰 자극입니다. 이번 발굴이 『충민공계초』를 바탕으로 하는 재미있는 드라마가 탄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임진왜란1592 집필기>의 마지막은 <임진왜란1592>의 프롤로그 문구로 마무리하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였다. 때론 역사적 사실이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하다.”

## 『충민공계초』의 미디어콘텐츠 활용방안 - 공공영역 국역 자료의 활용방안과 관련하여 -

김병륜  
한국국방안보포럼

### I. 역사콘텐츠 기초 자료로서의 『충민공계초』

사극(史劇)이란 역사의 내용을 드라마의 형식으로 재현하는 장르다. 역사가 사실인 반면, 드라마는 허구다.<sup>1)</sup> 역사소설 또한 역사적 사실을 소재로 소설가가 자신의 문학적 상상력을 가미해서 만든 것이다.<sup>2)</sup>

즉 어디까지나 역사소설과 사극은 픽션에 기반한 허구의 영역에 속하는 콘텐츠라고 할 수 있다. 이른바 ‘팩션사극’의 경우에도 픽션의 영역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뿐이지, 영상화의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든 허구의 영역이 개입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역사소설 혹은 사극을 대하는 많은 사람들은 역사소설이나 사극 속의 이야기를 ‘역사’와 혼동하여, 그것을 모두 진정한 역사적 사실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다.<sup>3)</sup> TV 같은 방송 매체가 대중들에게 미치는 거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감안한다면, 사극을 ‘역사와 대중화라는 관점에서 다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미 오래 전에 제기된 바 있다.<sup>4)</sup>

이 때문에 사극도 역사를 다루는 이상 사건이나 인물에 대한 고증이 필요하며, 동시에 고증이 철저할수록 작품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sup>5)</sup> 반대로 방송계에서는 사극의 경우 고증이 필요하지만, 문학적 상상력이 적극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6)</sup>

토론자의 입장에서 사극이나 역사소설에서 고증에 좀 더 신경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상업콘텐츠의 특성상 창작영역에서의 ‘작가적 결단’은 불가피해 보이며, 이 과정에서 허구의 영역이 일정한 역할을 하는 것은 피하기 어렵다.

현실적으로 연구자들이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은 사극이나 역사소설의 집필자, 제작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양질의 자료를 생산하는 것과, 콘텐츠에 대해 비평을 가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콘텐츠 원천 자료이자 참고자료로서 ‘한글로 번역된 사료’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는 점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전근대 전쟁을 다룬 드라마, 소설, 만화 등 다양한 콘텐츠 제작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토론자의 경험으로 볼 때, 관련 콘텐츠 생산자들의 대부분은 한문(漢文) 원문은 물론이고 국·한문 혼용 자료에 대한 이해력도 거의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물론 수치화하여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기는 힘들지만, 지난 20여 년의 작업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한자(漢字)가 병기되어도 병기된 한문의 뜻을 통해 그 의미를 간접적으로 유추하는 정도의 문해력도 없는 경우도 매우 많았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면 『충민공계초(忠愍公啟草)』 같은 사료를 번역하여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다만 콘텐츠 제작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도 한문은커녕 한자 자체에 대한 문해력이 크게 떨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번역의 구체적 방식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

연구자들에게는 직역에 가까운 번역이 이상적이며, 1차적인 번역작업은 또한 그러해야 한다. 하지만 연구자들에게 적합한 형태의 번역본만으로는 그 자체를 콘텐츠 제작자, 혹은 일반대중들이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어야 한다. 다시 말해 좀 더 쉽게 풀어 쓰는 2차적인 번역작업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순신의 『난중일기(亂中日記)』는 1960년대 이래 다양한 번역본이 출간된 바 있다. 교감에 중점을 둔 번역본과 전투상황 분석에 중점을 둔 번역본, 일반 대중의 독서에 적합한 번역본, 군내 장병교육용에 중점을 둔 번역본, 어린이 독서용으로 완전히 재구성한 판본 등 일일이 거론하기 힘들 정도이다.

이에 비해 개별 전투 및 특정 상황에 관한 한 『난중일기』보다는 서사구조가 좀 더 정연하게 갖춰진 『임진장초(壬辰壯抄)』의 번역본은 보급 실적이 매

- 1) 김기봉, 「사극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인문콘텐츠』 43, 인문콘텐츠학회, 2016, pp.9-12
- 2) 권덕영, 「역사와 역사소설 그리고 사극」, 『역사와 현실』 60, 한국역사연구회, 2006, p.142
- 3) 권덕영, 위의 글, p.142
- 4) 정두희, 「TV 드라마와 역사의 대중화 문제」, 『중앙사론』 10·11, 중앙사학연구소, 1998, p.742
- 5) 정두희, 위의 글, p.748
- 6) 최상식, 「사극에 있어서의 현실과 허구」, 『방송시대』 19, 2000, pp.19-20

- 7) 조성도, 『임진장초』, 동원사, 1976
- 8) 이은상, 『국역주해 이충무공전서』, 충무공 기념사업회, 1960; 이은상, 『완역 이충무 공전서』, 성문각, 1989
- 9) 최두환, 『충무공이순신전집』, 권3, 완역·원문 임진장초, 우석출판사, 1999
- 10) 정광수, 『삼가 적을 무찌른 일로 아뢰나이다』, 정신세계사, 1989가 그나마 대중적 번역의 성격이 있으나 내용에 대한 자의적 해석과 해설이 많아 번역의 영역을 넘어서고 있다.
- 11) 박익순, 『2015년 출판시장 현황』, 『출판문화』, 2016년 6월호, 2016
- 12) <http://www.history.go.kr>
- 13) <http://kostma.net>
- 14) <http://db.itkc.or.kr>
- 15) <http://www.memorykorea.go.kr>

우 빈약하다. 조성도의 1970년대 역주본이<sup>7)</sup> 지금도 주로 활용되는 실정이며, 이를 두드러지게 능가할 만한 번역본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에 전서본 장계가 실린 『이충무공전서(李忠武公全書)』의 번역본이<sup>8)</sup> 보충적으로 활용될 정도다. 이 밖에 최두환의 번역본<sup>9)</sup> 등이 있으나 널리 활용되지는 않고 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면 『임진장초』는 물론이고, 『이충무공전서』 수록 장계, 『충민공계초』, 『충무공계초(忠武公啓草)』, 『충무공임진장계(忠武公壬辰狀啓)』를 교감·번역하는 작업은 그 자체로 적지 않은 학술적 의미가 있다.

다만 『난중일기』와 달리 『임진장초』에 대해서는 일반 대중들을 위한 번역본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sup>10)</sup> 상기한 번역본은 기본적으로 연구자들을 위한 것이며, 대중들이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문체로 번역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번역을 하고, 한글로 완전히 옮겼다고 해서 대중들이 완벽하게 그 문장을 이해하리라는 기대는 과도한 것일 수도 있다. 기본적으로 한자어(漢字語)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대중들을 위한 좀 더 쉬운 문체의 2차적 번역서가 별도로 필요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순신 장계를 대상으로 한 2차적 번역서는 콘텐츠 제작자는 물론이고 대중들에게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II. 공공 번역 자료의 공개 형식

현재 출판시장은 전반적으로 불황이다. 단행본 출판사의 70%가 매출액 저하를 경험하고 있다.<sup>11)</sup> 이런 상황에서 『충민공계초』 등의 상업적 출판은 기대하기 힘들며, 상업적 출판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주 독자층은 연구자들이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번역한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직접 제공하는 것은 독자층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재 국사편찬위원회<sup>12)</sup>, 한국학중앙연구원 자료포털<sup>13)</sup>,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 DB<sup>14)</sup>, 문화재청 국가기록유산<sup>15)</sup> 등이 번역한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국회도서관, 동북아역사재단 등 상당수 기

관·단체가 다양한 방식으로 번역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국립해양박물관에서 용역으로 번역한 『충민공계초』의 경우도 어떤 형식으로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는 것이 좀 더 다양한 활용에 도움을 줄 것이다.

다만 공개형식에서 웹표준을 준수하는 방식, 자체 제작한 전용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전자책 방식, PDF 제공 방식 중에서 자체 전용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방식은 활용도 측면에서 부정적 측면이 많다는 점을 숙고할 필요가 있다.

전용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프로그램 자체의 부하로 속도 저하, 브라우저별 지원 불가 문제 등이 흔하게 불거지고 있으며 출력에도 제한이 많다. 고문헌 원문 이미지를 제공하는 상당수 기관이 호환성 측면에서 약점이 많은 전용프로그램 방식을 고집하여, MS사의 PC 운영체제가 업그레이드될 때마다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불완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실은 좀 더 냉정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가 재정이 투입되어 번역한 자료라면 연구자 및 일반 대중들의 활용도에 최우선 초점을 두어 별도의 전용 프로그램 없이 웹표준을 준수하는 방식이나 PDF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여건이 허락하는 한 웹표준을 준수하는 형식의 온라인 제공과 PDF 제공 등 두 가지 방식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PDF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PDF 자체의 보안기능을 활용하지 않고, 원문 열람에 방해가 되는 수준의 과도한 워터마크를 삽입하는 상당수 기관의 관행도 과연 최선인지 고민이 필요하다.

상업적 2차 활용을 예방하려는 취지는 이해되나, 그것이 독자의 열람을 방해할 정도로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인지는 의문이다. 연구자의 편의는 물론이고, 다양한 콘텐츠로의 재활용 가능성 제고, 나아가 ‘역사의 대중화’라는 측면에서도 이 같은 관행이 적절한지에 대해 좀 더 깊은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VII. 忠愍公啓草

- 壬辰年兵事 -

臣謹 壬辰年

臣慶尚右道水軍使  
 任才沙排丙詹峯烽  
 燧十隻豈能大驚所目  
 亦隻為討賊看望小  
 亦多大浦右邀賊所  
 唯以抄平好長云如  
 方于亦用良河備勝也  
 年殊玉無為軍無於  
 討到付送之求結同  
 不後永一石抄解攻  
 如勝名可宜為示宜  
 亦當以忠義為志通

### 1.

全羅左道水軍節度使 臣 李舜臣謹(壬辰年)啓爲待變事 今四月十五日 戌時 到付 同月十四日施行 慶尙右道水軍節度使元均關內 當日巳時 到付 加德鎮僉使田應麟 天城堡萬戶黃斑等馳報內 鷹峯烽燧望軍李登 煙臺監考徐巾等進告內 今四月十三日申時倭船不知其幾十隻是喻 大槩所見九十餘隻亦 本土始出左道紐伊島過 釜山浦了以 指向次 遠暗乙仍于 隻數詳細看望不得爲在果 連續出來是如 進告是乎等用良 僉使段置 依方略 釜山多大浦右邀擊將以軍船整齊下海待變爲卧乎所 馳報是白有亦 必是歲遣船是在果 唯只九十餘隻 至數多出來 莫測其由叱分不喻 連續出來是如爲白有去等 似非尋常是白乎等用良 防備瞭望等事 盡心檢飭 晝夜待變亦 所屬各官浦良中 發馬行移申勅爲白乎於 臣段置 軍船整齊 江口待變爲白卧乎事所 當日馳啓爲白乎所 關是白齊 一時到付 同日戌時 同水軍節度使元均關內 當日申時 到付 左水使關據 加德僉使馳報內 倭船一百五十餘隻 海雲臺釜山浦了以歧如 指向是如爲白有在如中 必非歲遣船 極爲可慮爲置傳通內辭緣一一枚口 則動經時刻乙仍于 舉大槩 爲先傳通爲去乎 營以置 次次傳通待變口事口…口是白有亦 倭船一百五十餘隻至歧等如 指向是如爲卧乎所 此非尋常歲遣之類是白口…口 臣段置軍兵船整齊 江口待變爲白乎於 兼觀察使兵馬節度使 右道水軍節度使處 并以發馬移文爲白遣 沿海各官浦段置 一時發馬 行移檢飭待變口白卧乎事是良尔云云 萬曆二十年 四月十五日 戌時 節度使 臣李

#### 범주

○ 성명, 지명 등을 모르거나 생략할 때 사용한 표시로 판단됨.

§ 원문에 있는 표시. 수정의 의도를 가지고 표시해 둔 기호로 판단됨.

[謹] 훼손되거나 판독이 어려워 추정할 부분

□ 원문이 훼손되어 결락된 부분

## 2.

云云 謹啓爲待變事 今四月十六日 辰時 到付 同月十五日辰時施行兼慶尙道觀察使金粹關內 今月十三日 倭船四百餘隻 釜山浦越邊來泊 賊勢已至於此極爲可慮 次次傳通待變向事關是白有亦 賊勢熾張 至於此極 不無分犯之理爲白乎等用良 臣段置軍船整齊 江口待變爲白乎旃 兼觀察使兵馬節度使右道水軍節度使處 并以發馬移文爲白遣 所屬各官浦良中置 凡干瞭望等事 各別檢勅 他餘戰具諸備 并以倍嚴措置待變亦 一時發馬行移爲白卧乎事 云云 萬曆二十年 四月十六日 辰時 節度使 臣李

## 3.

謹啓爲待變事 今四月十六日 亥時 到付 同月十五日酉時施行 慶尙右道水軍節度使元均關內 當日酉時到付 今四月十四日戌時 成貼 右兵使關內 當日申時到付 今四月十四日戌時 左水使馳報內 今四月十四日卯時 荒嶺山烽燧軍裝 至伊進告內 倭賊等亦 釜山浦牛巖 分三運結陣爲有有可 日出時 同浦圍城接戰 放砲之聲 震天是如 進告爲白有去等 同鎮以乎爲白在果 西平多大浦段 已塞其路 援兵乙良置 時未馳赴 極爲悶慮 臣段 依方略 堅壁固守制敵等事 各別措置爲白卧乎所 馳啓爲卧乎味 馳報是齊 追于到付十四日巳時成貼 同道水使傳通內 賊倭當日釜山浦圍城接戰緣由馳啓爲白有在乎 同鎮亦不能制敵 已被陷城後 賊倭等亦 釜山浦北距五里許唐川良中結陣 先鋒倭人段東萊了以上來是如爲有卧乎所 當刻馳啓爲去乎 右水營以置 次次直發移文事爲等如 傳通馳報是置有亦 道段 金海府待變次以 當日到彼 同府沿海各官衛將及內地各官并以 發馬行移 軍馬整齊待變令是在果 營以置 軍兵船整齊 日新待變 登時剿捕爲乎矣 全羅道 并以 次次傳通向事關是置有亦 營以置次次傳通向事關是白有亦賊勢熾張 至於此極 釜山巨鎮 已爲陷沒是如爲白卧乎所極爲痛憤 臣段置軍船整齊 江口待變爲白乎旃兼觀察使 兵馬節度使 右道水軍節度使處及道屬沿海各官浦 并以 發馬傳通爲白在果 臣所管左道段 慶尙道一海相接之地以

賊路要害 道內尤最爲白去等 犯境之後 添防雜色乙 勢未及調發是白乎等用良 所屬各官奔赴一二運軍士 爲先催促 添防守城 水戰歧等如 整齊待變爲白卧乎事 云云

萬曆二十年 四月十六日 亥時 節度使 臣李

## 4.

謹啓爲馳援事 今四月二十日到付 兼慶尙道觀察使金粹關內節該 賊勢大熾 釜山東萊梁山 已爲陷沒 分向內地 本道右水使盡率舟師 欲截賊船之計 已令下海 同道列鎮 皆無船隻 如有右道生變 則登時來救事狀啓爲去乎 待朝廷命令爲乎矣 將此意監 兵使處通議施行向事關是白有亦賊勢熾張 至於此極 連陷巨鎮 又犯內地是如爲白卧乎所極爲痛惋 憤膽如裂 罔有所言 爲臣子者 莫不欲殫竭心力 擬雪國家之恥 伏埃朝廷往借之命爲白乎旃所屬舟師 各官浦良中整理舟楫 以待主將之令亦星火行移 本道監兵使處并以通議爲白有在乎今四月二十六日 在鎮祇受 同月二十日成貼左副承旨書狀內從水路邀襲賊船 使賊有顧後之慮 此甚良策 故慶尙道巡邊使李鎰下去時 已爲言送矣 但兵家進退之際 必因機會 可無誤事 唯當先察賊船多寡 所經島嶼間無伏兵與否 然後可以爲之 然此甚良策若事勢可行而不行 則甚失事機 朝廷不可遙制 在道內主將號令而已 本道既已通諭云 與慶尙道傳通相議相機制置事 有旨是白乎味 書狀是白置 同有旨內若事勢可行而不幸 則甚失事機 朝廷不可遙制 在道內主將號令是如爲白有在如中以臣之一主將 獨擅爲難 兼觀察使李洸 防禦使郭嶸 兵馬節度使崔遠等處 有旨內辭緣 枚舉通諭爲白乎旃一邊慶尙道巡邊使李鎰 兼觀察使金粹 右道水軍節度使元均等處 同道水路形勢 兩道舟師某處聚會 約束緣由是沙餘良賊船多寡 時方留泊之處 他餘策應諸機并以急急回答亦發馬移文 各官浦段置戰具諸備更良勵精待令亦 行移嚴勅爲白如乎 今四月二十七日 寅時 在鎮祇受 同月二十三日成貼 宣傳官趙銘齋來左副承旨書狀內 倭寇既陷釜山東萊 又入密陽 今見慶尙道右水使元均啓本 則率各浦舟師下海 以爲耀兵掩擊之計 此一大機會 不可不繼其後 爾與元均合勢 攻破賊船 則賊不足平矣 故遣宣傳



官馳諭 爾其督率各浦兵船急赴 毋失機會 然千里之外 如或有意外之事 則不必拘此事 有旨是白乎味 書狀是白有亦 上項倭寇等 作賊日久 想必勢力疲困 所持戰備 亦似匱竭 因其勢而制之 正在此時是白在果 唯只賊船前後之數 多至五百餘隻是如為白去等在我威武乙不可不嚴備 揚示掩擊之狀 使賊震怖是白乎矣所屬防踏 蛇渡 呂島 鉢浦 鹿島等五鎮浦戰船叱分以勢甚孤弱乙仍于舟師分軍為白有在 順天 光陽 樂安 興陽 寶城等五官并以依方略領率次以 初亦慶尙道馳援時 海路所經是白在本營前洋以一齊准到亦星火行移為白置馳援之期 事在急急是白乎矣舟師諸將內 如寶城 鹿島等處 則遠在數三日程 文移招集之際 其勢未易 必未及期絃如他餘諸將并以 本月二十九日營前洋聚到 申明約束後直赴同道計料為白在果 風勢順逆乙逆料為難 隨勢馳進為白卧乎所慶尙道巡邊使兼觀察使右道水軍節度使處 移文約束為白卧乎事 萬曆二十年 四月二十七日

## 5.

謹 啓為待變事 今四月二十七日 在鎮祇受同月二十三日成貼 宣傳官趙銘齋來左副承旨書狀內節該 今見慶尙右水使元均啓本 則率各浦舟師下海 以為輝兵掩襲之計 不可不繼其後 爾其督率各浦兵船毋失事機 然千里之外 如或有意外之事 則不必拘此事 有旨是白乎味 書狀是白乎等用良臣矣所屬船師各官浦諸將等乙馳援時 所經海路是白在本營前洋以一齊准到亦星火行移為白乎詎同道右水使元均處 水路形勢 兩道會約之處及賊船多寡 時方留泊之地 他餘策應諸機并以急急回答亦移文為白遣緣由馳啓為白有如今四月二十九日午時到付同水使回答關內 賊倭五百餘艘 釜山 金海 梁山江 鳴旨島等處屯泊 登陸自恣 沿邊各官浦兵水營 幾盡陷城 烽火夔絕 極為痛憤乙仍于本道舟師抄發 追擊賊船 十隻焚滅為良置日漸引兵 賊勢益熾 彼衆我寡 未能相適 本營亦已被陷城 為有去等兩道合擊賊船 則登陸倭寇 庶有顧後之慮是昆貴道軍船 無遺抄發 唐浦前洋 馳進向事關是白乎等用良所屬舟師中衛將防踏僉使李純信左部將樂安郡守申浩 前部將興陽縣監裴興立 中部將光陽縣監魚泳潭 遊軍將鉢浦假將營

軍官羅大用 右部將寶城郡守金得光 後部將鹿島萬戶鄭運 左斥候將呂島萬戶權管金仁英 右斥候將蛇渡僉使金浣 捍後將營軍官崔大成 斬退將營軍官裴應錄 突擊將營軍官李彥良為等如分部 申明約束為白乎詎先鋒將 與右水使約束時 同道邊將以 差定計料 本營段臣矣虞候李夢龜乙留鎮將差定 防踏 蛇渡 呂島 鹿島 鉢浦等五浦段臣矣軍官中 有膽略人以 假將差定 嚴飭起送為白遣臣段舟師諸將領率 今四月三十日寅時發船次以 慶尙右道所屬本營隣鎮是白在南海縣良中詎助項 尙州浦 曲浦 平山浦等四鎮 已為疊入為有卧乎等用良同縣令 僉使 萬戶等 當為軍船整齊 中路出待亦今四月二十九日曉頭 封關齋持專人馳送為白有如今同日未時量臣矣所送營鎮撫順天水軍李彥浩 奔還進告內同南海縣城中 公廨閭舍 舉皆一空 煙火蕭然 倉門已開 穀物頽散 武庫兵器 亦盡虛竭 軍器外廊 只有一人 問其所由 則賊勢已迫 一城士卒 聞聲逃潰 縣令僉使 又從以奔出 莫知所向是如答說為去乙回還次 又有一人 負米石持長箭 由南門走出為如可同箭一部乙矣身許給為如乎所進告是白去乙 臣取見其箭 則曲浦之刻分明 空城移避之言 略似近理為白乎矣 下人所告乙 難保其必信 臣軍官宋漢連乙用良 實如此 則反為藉寇兵糧 侵漸本道 留連不退絃如 同倉庫武庫等乙良 焚燒掃蕩亦 給傳令馳送為白有置 大槩黠賊鴟張 分運作賊 一向內地席卷長驅 一向沿路 攻陷無遺 陸海諸將 一無拒戰 已成賊藪 海鎮所餘者 只此右水營南海平山浦等四鎮是白如乎 令聞同營亦被陷沒 南海一島 已作無人之境為白有卧乎所 所謂右水營段 臣所守之鎮果 一海相接 南海段鼓角相聞 坐立人形 歷歷可數是白去等 本道移犯之患 迫在朝夕 極為寒心為白沙餘良 本道內地沿海各官及邊城入防 如新選助防軍等 精強士卒 咸赴陸戰 邊鎮殘堡 持兵者鮮少 只率水軍徒手之輩 其勢甚弱 他無捍禦之策叱分不喻 舟師中衛將順天府使權俊段置 下海待變為如乎 因觀察使傳令 馳赴全州 加之以久任 恒居者 一聞風聲 挈家荷擔 道途相繼 或乘夜逃遁 或窺覘移徙 本營戍卒及土著之人 亦或有如此之類為去乙 臣要路處 捕亡將定送 摘其逃躲者二人 為先斬頭 梟示軍中 以鎮軍情為白在果 慶尙馳援之命 如是其丁寧叱分不喻 臣自聞聲息以來 怒膽輪困 痛入骨髓 一犯賊窟 忘身效力之衷 寤寐益切 率舟師與右水使合力攻破 期殲賊徒為白如乎 南海疊入平山等四鎮將入縣令等 未見賊面

先自移避爲白有去等以 臣之孤單客兵 未諳同道水路險夷 既無引路之船 又無策應之將 輕易啓行 亦不無千里意外之慮叱分不喻 臣所屬戰艦都集之數 未滿三十隻之外 勢甚孤弱乙仍于 兼觀察使李洸 亦已料此意 令本道右水使所屬舟師 亦爲繼臣之後 並力馳援亦爲白卧乎等用良 事雖急急 必待其援船畢至 然後約速發船 直赴同道計料爲白齊 兇醜之徒已犯鳥嶺 將迫畿甸 本道兼觀察使獨能奮義 倡率三軍 直向京師 已爲勤王之計是如爲白卧乎所 臣及聞此言 不堪垂淚 撫劍咄嗟 亦欲統率諸將 直赴王城 先摧腹內之敵爲白乎矣 閩外封疆之臣 以身不能自擅 徒自鬱抑 含憤自銷 伏竢朝廷指揮爲白齊 臣之妄意 今之賊勢憑凌 皆出於不與水戰 使賊恣意登陸 而慶尙沿海郡縣 必多深溝高壘之險 爲白乎矣 守城恟卒 聞聲慄膽 咸懷奔潰之心乙仍于 圍則必陷 一無得全之城 向使釜山東萊沿海諸將 盛理舟楫 蔽海列鎮 揚示掩擊之威 想勢度力 進退有方 使不得攀緣陸路 則辱國之患 必不至於此極 言念及此 感慨激切 願以一死爲期 直擣虎穴 掃盡妖氛 欲雪國恥之萬一 而至如成敗利鈍 非臣之所能逆料 是白乎事是良尔

○萬曆二十年 四月三十日 未時

## 6.

謹 啓爲馳援事 前矣祇受有旨書狀內乙用良 與慶尙右道水使元均 合力攻破賊船次以 所屬舟師諸將等乙 去四月二十九日 本營前洋 已爲招集 三十日 發船次 兼觀察使李洸亦 慮其兵勢孤弱 令本道右水使 率其舟師 繼臣之後亦爲白有沙餘良 同右水使李億祺移文內 同月三十日發船是如爲白有卧乎等用良以待其至 盛齊兵威 一時發船爲白乎所 已爲馳啓爲白有如其乎 向內之賊 將迫畿甸是如爲白去等 自臣以下諸將 莫不憤發 冒鋒刃決死生叱分不喻 要截其歸路 撞破其船 則庶有顧忌直還之慮爲白乎去 今五月初四日鷄初鳴發船 直向同道爲白乎旅 一邊同右水使李億祺處 斯速馳到亦 星火移文爲白卧乎事 萬曆二十年 五月初四日

## 7.

謹 啓爲剿滅事 前矣祇受有旨書狀內乙用良 與慶尙右水使合力攻破賊船次以 今五月初四日丑時 發船爲白乎旅 本道右水使李億祺處 率舟師繼臣之後 亦 移文緣由馳啓爲白遣 同日同時 舟師諸將 板屋船二十四隻 挾船十五隻 鮑作船四十六隻 領率發船行 至慶尙右道所非浦前洋 日暮 結陣經夜 初五日曉頭發船 兩道曾與約會處是白在 唐浦前洋馳到 則同道右水使元均 不在約處 臣所領輕快船乙用良 同唐浦以馳來亦 移文爲白有如其乎 初六日辰時 同元均亦自同營境內閑山島 只乘一隻戰船來到爲白良在乙 賊船多寡 時方留泊處 接戰節次詳問次 同道諸將南海縣令奇孝謹 彌助項僉使金勝龍 平山浦權管金軸等段 同騎板屋一船 蛇梁萬戶李汝恬 所非浦權管李英男等段 各騎俠船 永登浦萬戶禹致績 知世浦萬戶韓百祿 玉浦萬戶李雲龍等段 同騎板屋二船初五日六日 續續追到爲白良在乙 兩道諸將招集一處 再三申明約束後 至巨濟島松未浦前洋 日沒經夜 初七日曉頭 一時發船 賊船留泊是如爲白在天城 加德了以指向次 午時量至玉浦前洋 斥候將蛇渡僉使金浣 呂島權管金仁英等段 放神機報變爲白去乙 知有賊船 更勅諸將勿令妄動 靜重如山亦 傳令後 同浦洋中 整列齊進 則倭船五十餘艘 分泊玉浦船滄 大船段 四面圍帳 畫綵雜文 帳邊列插竹竿 亂懸紅泉旗 旗形如幡如幢 皆用文綃 隨風飄轉 望眼眩擾 賊徒段 入同浦焚蕩 煙氣遍山 顧我軍船 顛卜蒼皇 各奔乘船 呼噪促櫓 不由中央 緣岸行舟 六隻段 先鋒以遁出次 臣矣所率諸將等 一心憤發 咸盡死力 舟中吏士 亦效其意 奮勵激切 以死爲期 東西衝抱 放砲射矢 急如風雷爲白乎亦中 賊亦放丸射矢 及其力盡 以其舟中所載之物 投水不暇 逢箭者不知其數 游泳者亦不知其幾 一時潰散 攀上巖崖 猶恐 居後爲白去乙 左部將樂安郡守申浩段 撞破倭大船一隻 斬頭一級 船中所載劔甲冠服等物 皆如倭將之物 右部將寶城郡守金得光段 撞破倭大船一隻 我國被擄人一名生擒 前部將興陽縣監裴興立段 倭大船二隻 中部將光陽縣監魚泳潭段 倭中船二隻小船二隻 中衛將防踏僉使李純信段 倭大船一隻 斥候將蛇渡僉使金浣段 倭大船一隻 右部騎戰統將同鎮軍官保人李春段 倭中船一隻 遊軍將鉢浦假將 臣矣軍官訓練奉事羅大用段 倭大船二隻 後部將鹿島萬戶鄭運段 倭中船二隻 左斥候將呂島權管金仁英段 倭中船一

隻 左部騎戰統將順天代將俞燾段 倭大船一隻 我國被擄兒女一名生擒 捍後將 臣矣軍官崔大晟段 倭大船一隻 斬退將臣矣軍官裴應祿段 倭大船一隻 突擊將 臣矣軍官李彥良段 倭大船一隻 臣矣帶率軍官訓鍊奉事卞存緒 前奉事金孝謹等段 同力 倭大船一隻 慶尙諸將 倭船五隻 我國被擄人一名生擒 并倭船二十六隻爲等如 銃筒放中 撞破焚滅 一海大洋煙焰漲天 登山賊徒 竄伏林藪 無不摧心 臣欲抄諸船射夫勇銳者 追捕登山之賊是白乎矣 同巨濟一島 山形嶮巖 樹木鬱茂 人不能容足叱分不喻 當在賊窟 船無射夫 亦恐有繞後之患 日亦向暮 未遂其志 退駐永登浦前洋 令軍卒樵汲 以爲經夜之計爲白如乎 申時量 不遠海中 又倭大船五隻過去是如 斥候將報變爲白去乙 領諸船將追逐 至熊川地合浦前洋 倭賊等 棄船登陸爲白去乙 蛇渡僉使金浣 倭大船一隻 同部統屬防踏謫居前僉使李應華 倭小船一隻 臣矣軍官奉事卞存緒 宋希立 金孝誠 李滌等 同力射矢 倭大船一隻爲等如 無遺撞破焚滅 乘夜促櫓 至昌原地籃浦前洋 結陣經夜 初八日早朝 聞鎮海地古里梁 倭船留之奇 卽令發船 內外島嶼 挾攻搜討 過猪島 至固城境赤珍浦 倭大中船并十三隻 海口列泊 倭人段 浦串閭閻 焚蕩之後 望我兵威 畏恟登山爲白去乙 樂安郡守段 其部統屬順天代將果同力 倭大船一隻 同部統將郡居朴永男段置 同力倭大船一隻 寶城郡守倭大船一隻 防踏僉使 倭大船一隻 蛇渡僉使 一隻 鹿島萬戶 一隻 其部統將謫居前奉事朱夢龍 中船一隻 臣矣帶率軍官宋希立等同力 二隻 軍官李鳳壽 一隻 宋漢連 一隻爲等如 銃筒放中 撞破焚滅爲白遣 令士卒朝食休憩次 同赤珍浦近處居向化李信同稱號者 望見臣等舟師 自山頂負其兒子 呼泣以進爲白去乙 令小船載來 臣親問賊徒所爲 則同倭賊等昨日到此浦口 閭閻所掠財物 牛馬馱去 分載其船 夜初更 泛舟中流 屠牛飲酒 唱歌吹簫 達曙不止 暗聽其曲調 則皆是我國之音 今日早朝 爲半守船 半餘下陸 固城了以指向矣 老母妻子見賊相失 罔知所向 悶迫亦哀怨泣訴爲白去乙 臣憐其情狀 慮其被擄 誘之以率往之意 則同人亦以其母妻尋見之故 不肯從之爲白在果 一行將士 及聞此言 尤極痛惋 相顧勵氣 同心戮力 直向天城 加德 釜山等處 殲滅其船計料爲白乎矣 同賊船留泊等地 形勢狹淺 板屋大船 容戰甚難是如爲白沙餘良 本道右水使李億祺未及馳來 獨赴賊中 勢甚孤危 與元均相對畫計 別得奇策 擬雪國家

之恥爲白如乎 本道都事崔鐵堅牒呈 慮外忽到 始知車駕移蹕關西之奇 驚痛罔極 相携終日 五內焚裂 聲淚俱發 勢不得已 各自回棹 初九日午時 率諸船 無事還營 仍勅諸將 益勵舟楫 海口待變亦 開諭罷陣爲白在有亦 順天代將俞燾所擒我國兒女段 年甫四五 其根脚居住 莫知如何 寶城郡守金得光所擒兒女一人段 其年稍壯斷髮 爲倭推問次 壬辰五月初七日 東萊東面鷹巖里接百姓尹百連 年十四 白等 矣身亦 某月某日某處逢倭某某人 一時被擄 幾日次 當日接戰時被擒緣由及倭賊等凡百所行是沙餘良 根脚役名 并以現告亦推考教是卧乎在亦 父段多大浦水軍昆節 倭變時生死知不得 母良女毛論 今故 內外祖父母 並只不知 故機張居新選金晉明率丁以使內如乎 日不記去四月分 倭賊等釜山浦到泊是如 戶首晉明亦因軍令 矣身軍裝負持 率赴同鎮次 至馬飛乙耳峴 聞倭已陷釜山 還率矣身 直走機張縣 城內結陣 軍卒奔潰爲去乙 晉明亦率往其家 經一夜後 矣父及親戚等 避亂來此爲白有去乙 偶然路逢 同縣境雲峯山中隱伏 第八九日間 倭賊等無數闌入 矣身及兄卜龍等乙 爲先被擄 日暮時 到釜山城中 經夜後 兄卜龍段 不知去處 矣身乙 船粧下入置 使不得任行 日不記一日 賊船三十餘隻 發向金海府 半餘下陸 同府作賊 留連五六日後 今月初六日 已時量 一時發船 來泊於栗浦經夜 初七日曉頭 自同處至玉浦前洋留泊爲有如乎 當日接戰時 倭人船中 我國鐵丸長片箭 交下如雨 則中之者卽仆 流血淋漓 倭人急噪顛倒 罔知所措 并只投水登山 矣身段 言語相知是如 生擒爲白有在果 迷劣人以 長在粧下 他餘節次 知不得爲卧乎味 招辭是置有亦 上項尹卜連及兒女等段 順川寶城等官 各別護恤亦 還授爲白有在果 兇醜之毒 至於此極 旣多殺戮 又多擄掠 一方蒼生 靡有孑遺叱分不喻 臣今者歷行沿海 則所經山谷 避亂者無處無之 一望臣等之船 垂髻戴白 荷擔相牽 掩泣悲呼 如得再生之路 或有指示賊蹤者爲白去乙 所見慘惻 卽欲載去 而非但其類甚多 第以赴戰之船 滿載人物 慮有運舟難便之患仍于 回程時 率去次以 各令幽隱 慎勿露形 毋致被擄之患亦 開諭後 追賊遠去爲有如可 忽聞西幸之奇 罔知所爲 促櫓以還爲白良置 哀憐之情 猶且未忘 此等之輩 分遷日久 贏糧必罄 餓斃丁寧乙仍于 同道兼觀察使處 終當探訪 刷還賑恤亦移牒爲白置 大抵臣矣所率諸將吏士 莫不憤激 爭首赴敵 共期大捷爲白如乎 凡前後四十餘隻 焚滅之際 所斬倭頭

只此二級而已 而臣未遂殲滅之心 憤惋益甚爲白乎矣 揆其交戰之時 則勢所然矣 是白置 賊船其疾如飛 及見我船 如有未及避遁之勢 則例由岸下 魚貫行船 勢窮則登陸爲白卧乎等以用良 今行未得盡殲怒膽如裂 撫劍咄嗟爲白齊 倭船所載倭物段 並只搜得 五間之庫盈入而有餘 其餘細鎖雜物 不可盡記 擇其中戰用之物 別聚其類爲白乎旆 金海府人吏官案 分軍成冊 各色弓箭等 並以秩秩開坐爲白在果 倭船所載我國可食米三百餘石量段 諸船飢餓格軍射夫等 亦中 糧米以惠伊分給爲白遣 衣服木綿等物段置 亦爲分給戰士 以激其破敵得利之心條以 先可留上 待朝廷處置爲白置 凡倭紅黑鐵甲 各色鐵頭口 角鬚縱橫 至如鐵廣 大金冠 金羽 金錘 羽衣 羽箭 螺角等 奇形異狀 極侈窮奢 如鬼如獸 見之者 莫不驚神 毀城諸機 如大鐵釘 沙撻等物亦 甚兇怪爲白乎等用良 軍物中最關一物式 抽出監封爲白乎旆 其中鐵甲 銃筒等物 樂安郡守所斬一級段 割左耳入櫛 亦爲監封 初亦接戰時有功 臣矣軍官宋漢連鎮撫金太守等 准授上送 他餘上送物件 元數下懸錄爲白齊 接戰時順川代將船射夫 同府接正兵李先枝段 左臂一庫 逢箭暫傷外 他無被傷之卒爲白在果 惟只右水元均 只率三隻舟師 臣矣諸將所捕倭船乙 至於射矢奪取 射格二人至中傷 最只主將以不戰群下爲白有卧乎所 無謂莫甚叱分不喻 同道所屬巨濟縣令金俊民段 不遠海洋 其矣掌內 連日交戰爲白乎矣 主將元均 傳檄促赴 迄不現形 情甚駭愕 朝廷以處置教是白齊 臣之妄意 禦敵之策 不以舟師作宗進退 而全務陸戰守城之備 使國家數百年基業 一朝變成賊藪 言念及此 哽塞無語 賊若乘船 移犯本道 則臣願以水戰決死當之 而陸路移犯 則本道將士 一無戰馬 策應未由 臣意順天突山島白也申興陽道陽場牧馬中 多有戰用可合馬 優數驅捉 分給將士 肥養馴馳 用於戰場 則可致勝捷 此非臣之所可擅啓事是白乎矣 事在急急乙仍于 兼觀察使李洸處 監捉官定送 驅馬軍乙良 各鎮浦奔赴軍以 限一二日捉出調習爲只爲移牒爲白卧乎事

萬曆二十年 五月初十日 節度使 臣李

## 8.

謹 啓爲剿捕事 前日慶尙道玉浦等處 倭船四十餘隻焚滅緣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釜山之賊 相繼作綜 稍稍移犯 巨濟以西 沿海邑戶 焚蕩得利 有若轉燭 不勝憤鬱 一邊徵聚道屬舟師 一邊本道右水使李億祺處 合力攻破次以 馳進亦 移文時 水路遙遠 風之順逆 亦難預度是昆 六月初三日以 營前洋齊會馳援亦爲白有在乎 五月廿七日到付慶尙右水使元均關內 賊船十餘艘 已迫泗川 昆陽等地 水使段 移舟南海露梁是如爲白有去乙 若待初三日約會之日而發行 則慮有其間引類鳴張之患 臣矣軍官萬戶尹思恭 留鎮將差定 舟師助防將丁傑乙良 左道各鎮浦節制無人 留防興陽縣 策應待變亦 申勅爲白遣 五月廿九日 臣獨領戰船二十三隻 虞候李夢龜 并以率領 先期發行爲白乎旆 李億處 俱由移文後 直到露梁洋中 則元均亦只率三隻戰船 移在河東船滄 見臣之舟 促檣來會 詳問賊蹤次 不遠洋中 倭船一隻 出自昆陽 遁向泗川 緣岸行舟爲白去乙 先鋒諸將 促檣窮蹙 前部將防踏僉使李純信 南海縣令奇孝謹等 追捕其船 倭人段下陸 撞破焚船後 望見泗川船滄 則一山逶迤七八里許 形勢峻嶮處 賊倭無慮四百餘名 長蛇結陣 亂插紅白旗麾 駭眩人目 陣內最高山巔別設帳幕 往來紛然 似聽指揮 倭船狀如樓閣者十二隻 列泊岸下 結陣之倭 俯視揮劍 揚示陵轢 諸船齊進其下 欲爲發射 則矢力未及 欲焚其船 則潮水已退 板屋大船 容易直衝不得 加之以彼高我低 地勢不利 日又向暮 臣約與諸將曰 彼敵極有侵侮之態 我若佯退而去 則彼必乘船 與我相戰 我當引出中流合擊 此甚良策是如 申約後回船 未一里賊倭二百餘名 自陣下來 爲半守船 半餘屯聚岸下 放砲踊躍爲白去乙 若不與戰則反爲示弱分叱不喻 汐水將至 漸可容船乙仍于 臣嘗慮島夷之變 別制龜船 前設龍頭 口放大砲 背植鐵鎖 內能窺外 外不能窺內 雖賊船數百之中 可以突入放砲是白乎等用良 今行以爲突擊將所騎 而先令龜船突進其賊船 先放天地玄黃 各樣銃筒 則山上岸下 守船三屯之倭 亦放鐵丸 亂發如雨 間或我國人相雜發射爲白去乙 臣益增憤勵 促檣先登 直擣其船 則諸將一時雲集 鐵丸 長片箭 皮翎箭 火箭 天地字銃筒等 發如風雨 各盡其力 聲振天地 重傷顛仆者 扶曳奔走者 不知其數 仍以退屯高陵 無敢進戰之意 而中衛將順川府使權俊 中部將光陽縣監魚泳潭 前部將防踏僉使李純信 後部將興

陽縣監裴興立 左斥候將鹿島萬戶鄭運 右斥候將蛇渡僉使金浣 左別都將虞候李夢龜 右別都將呂島權管金仁英 捍後將臣矣軍官賈安策 及第宋晟 斬退將李應華等 迭相出入倭船全數撞破焚滅 金浣段搜得我國兒女一名 李應華段 斬倭一級 倭人等遠立觀望 叫呼頓足 大聲痛哭爲白去乙 臣欲抄諸船勇士 進斬計料 而林藪鬱密 日且奄暮 反恐被害 勿令搜斬 故留小船數隻 以爲引出殲捕之計 乘夜回棹 移至泗川地毛白郎浦 結陣經夜 接戰 賊之鐵丸 中臣之左肩 貫于背而不至重傷 臣矣軍官奉事羅大用 亦中鐵丸 前奉事李滌逢箭 并不爲致死 六月初一日曉頭 慶尙右水使元均謂臣曰 昨日相戰時 故留賊船二隻 遁騎與否 探審後 兼爲搜斬逢箭致死之倭是如爲白去乙 初亦 元均亦敗軍之後 無軍將以措制不得乙仍于 交戰各處 逢中箭丸倭人 次知搜覓斬頭亦爲白有知乎 同日辰時 同處徑還言內 賊倭段 由陸遠遁 只焚所留之船 搜斬死倭三頭 其餘段 林莽鬱密 窮探不得是如爲白良在乙 午時發船 固城地蛇梁洋中止到 休兵勞軍 結陣經夜 初二日辰時 聞賊船駐泊唐浦船滄 巳時量 直到同處 則倭賊無慮三百餘名 爲半入城焚蕩 又多城外據險 俱放鐵丸 倭船大如板屋者九隻 中小船并十二隻 分泊船滄 其中一大船上 斗起層樓 高可三四丈 外垂紅羅帳 帳之四面大書黃字 中有倭將 前立紅蓋 略無畏怖爲白去乙 先使龜船 直衝層樓船下 以龍口仰放玄字鐵丸 又放天地字大將軍箭 撞破其船 在後諸船 交發丸箭 中衛將權俊突入 射中倭將者 應絃倒落爲白去乙 蛇渡僉使金浣 軍官興陽保人陳武晟斬頭賊徒畏遁中丸逢箭者 浪藉顛仆 賊首六級 盡焚其船後 諸船勇士 將欲下陸 窮追搜斬之際 又倭大船二十餘隻 多率小船 自巨濟來泊是如 探望船進告爲白去乙 同浦段 地形似窄 不合交鋒 邀擊外洋次以 促櫓出海 則同賊船相距五里許 望見臣等舟師 遁避無暇次 諸船追逐外海 日已昏暮 接戰不得 晉州境昌善島 駐注經夜 同日唐浦接戰時 虞候李夢龜亦 倭將船 搜得金團扇一柄 送于臣處 而同扇一面中央 書曰 六月八日 秀吉着名 右邊 羽柴筑前守五字 左邊書 龜井流求守殿六字 莊于漆匣爲白有在如中 必是平秀吉之於筑前守處 以爲符信之物是白齊 所非浦權管李英男 同倭將船 生擒蔚山私婢億代 巨濟兒女毛里等 而臣親問其億代招內 日不記十五餘日前 爲賊被擄 嫁從倭將 恒在一處 同倭將身長過人 氣力強壯 年可三十 晝則高坐船上層樓 着黃錦衣 頂金

冠 夜則入房就宿 衾帳枕席 皆極奢侈 各船群倭 朝暮來謁 俛首聽如有違令 斬戮不饒 時或持酒來供 或笑或語 而馱舌之言乙 莫能解聽 唯但蔚山東萊全羅道等言 則一如我國之音 當日接戰時 倭將所坐層樓 箭丸交集 初中額上 顏色自若 及其箭貫胷膈 失聲墜落是如 納招爲白卧乎所 今之所斬倭將 必是筑前守是白齊 初三日曉頭 發向楸島 傍近島嶼挾攻搜討 並無賊蹤 仍而日暮 固城地古屯浦經夜 初四日早朝 進屯唐浦前洋 令小船候望賊船 而巳時量 同浦居士兵姜卓稱名人 避亂登山 遠望臣等 欣然來告曰 初二日唐浦接戰之後 倭人等多斬死倭之頭 同聚焚燒 仍向陸路 路逢我人 無意殺害 痛哭以歸爲白有在果 同日唐浦前洋 被逐倭船段 今向巨濟云爲白去乙 更與諸將 申明約束 將欲發船次 本道右水使李億祺率戰船二十五隻 來會于臣所駐之諸處 船將士 常慮孤弱 而連戰方困之餘 得見援師 莫不踴躍 臣乃與李億祺 討論破賊之策 仍以日暮 與之偕行 巨濟固城兩境 鑿梁洋中 結陣經夜 初五日 朝霧四塞 至晚乃捲 欲討巨濟遁泊之賊 縣帆出海 同巨濟居向化金毛等七八人 同騎小艇 欣迎來說曰 唐浦被逐倭船 由巨濟移泊固城地唐項是如爲白去乙 促到同浦前洋 南望鎮海 城外數里許野中 甲兵千有餘騎 立幟結陣爲白有去乙 遣人探問 則咸安郡守柳崇仁 率兵一千一百騎 追賊到此是如爲白置 仍問唐項浦海口形勢 則遠可十餘里 廣可容舟是如爲白去乙 先使數三戰船 往審地理 而賊若追逐 伴退引出亦 嚴勅以送爲白遣 臣等舟師段 潛形隱迹 以爲狙擊之計 而所送戰船 旋出海口 放神機報變促赴爲白良在乙 留戰船四隻於浦口 使之伏兵後 促櫓以入 則兩邊山麓 挾江二十餘里 其間地形 不甚狹窄 可與容戰之地 而諸船魚貫齊進 首尾連接 至召所江而岸 則黑質倭船 大如板屋者九隻 中船四隻 小船十三隻 依岸到泊 其中最大一船段 船頭別設三層板閣 舟青粉壁 有若佛殿 前立青蓋 閣下垂黑染綃帳 帳面大畫白花紋帳內倭人無數列立 又倭大船四隻 出自內浦 聚于一處 皆插黑幡 而各幡白書南無妙法蓮花經七字 及見臣等兵威 亂放鐵丸 如霰如雹 諸船圍立 先使龜船突入 放天地字銃筒 貫徹大船 諸船迭相出入 銃筒箭丸 發如風雷 良久接戰 益振威武爲白如乎 臣之妄意以爲彼若勢窮 棄船登陸 恐未盡殲 而我當伴示退兵 解圍却陣 則彼必乘隙移舟 而左右尾擊 庶可盡殲事 傳令後退 開一面 則層閣之船果由開路而出 黑染布帆乙 兩竹

俱懸 他船段 翼挾層閣 中流促櫓次 諸船四面圍匝 挾擊猶亟 突擊將所騎龜船 又衝層閣之下 仰放銃筒 撞破其閣 諸船又以火箭射中 其紗帳與布帆 則烈焰 遽熾 閣上所坐倭將 中箭墜落他倭船四隻段 乘此蒼皇之際 懸帆北走次 臣與 李億祺等所率諸船 分運接戰 又盡圍抱爲白乎亦中 許多舟中賊徒 或投水不暇 或攀緣岸下 或登山北走爲白去乙 戰士等持槍劍挾弓矢 各盡死力追捕 暫頭 四十三級 倭船專數焚滅後 故留一船 以開歸路 日已曠黑 登陸之倭 未盡殲捕 乃與李億祺 乘昏還出 同海口 結陣經夜 初六日曉頭 防踏僉使李純信亦 唐項 浦登山之賊 必乘所留之船 乘曉潛出是如 率其統船 移進海口 伺其出而全船 捕獲 飛報內 當日曉頭 移到唐項浦外口 俄有一倭船 果自海口而出爲白去乙 僉使不意突擊則 一船所騎 幾至百有餘名 而我船先放地玄字銃筒 一邊長片箭 鐵丸 蒺藜砲 大發火等 連續射投爲白乎亦中 賊倭等 奔遑罔措退遁設計次 要 鉤金以牽出中洋 半餘投水沈死 其中倭將 約年二十四五歲 容兒健偉 服飾華 袞 杖劍獨立 與其餘儻八名 指揮拒戰終不畏忌爲白去乙 僉使亦同杖劍者乙 極力射中 逢箭十餘度後沙 失聲墜落水 卽令斬頭 他倭八名段 軍官金成玉等 同力射斬 當日辰時焚船時 慶尙右水使元均 南海縣令奇孝謹等 追到同處 沈 死之倭 巡覓拯出斬頭 多至五十餘級是在果 倭船之頭 別作涼房 房內帳幕 皆 極侈麗 傍有小櫳 內盛文書 取見則倭人三千四十餘名分軍記 而各其列名之下 着名塗血 必是敵血同盟之書 同伴記六軸及甲冑 槍劍 弓弦 銃筒 豹皮鞍甲等 物 上使事牒呈是白乎等用良 臣親審其分軍件記 則着名血染之迹 如所報之辭 其爲兇狀 不可形言 倭頭九級內 倭將頭段同李純信別標上使爲白有齊 倭人旗 幟 染色相殊 前日玉浦則赤旗 今日泗川則白旗 唐浦則黃旗 唐項浦則黑旗 原 其所自 必分其衛部而然矣是白沙餘良 敵血盟章 又致如是爲白去等 曾懷叛侮 之心 備設軍兵之狀 益加想焉是白齊 同日段 雨下雲暝 海程莫辨 移屯唐項浦 前洋 休撫戰士 夕向固城地丁乙于場洋中經夜 初七日早朝發 船至熊川地甌島 洋中結陣 而天城 加德賊蹤探望 船將鎮撫李荃士兵吳水等 斬倭二級 已時量 奔還言內 加德了洋中 三倭人 同騎一船 見我奔北次 極力追射 盡斬三級 內一 級段 慶尙右水使軍官名不知人 騎小船威力強奪是如爲白去乙 各別饋酒 卽令 還送于天城等處爲白遣 午時量 到永登浦前洋 則倭大船五隻 中船二隻 出自

栗浦 遁向釜山 而諸船從逆風促櫓 相望五里許 追至栗浦外洋 則賊倭等 船中 卜物 盡投水中爲白去乙 虞候李夢龜 倭大船一隻 洋中全捕 斬頭七級 又一隻 下陸焚滅蛇渡僉使金浣 倭大船一隻 洋中全捕 斬首二十級 鹿島萬戶鄭運 倭 大船一隻 洋中全捕 斬首九級 光陽縣監魚泳潭 加里浦僉使具思稷同力 倭大 船一隻 下陸時 追捕焚滅 具思稷段 二級 呂島權管金仁英段 斬首一級 所非浦 權管李英男 追擊斬首二級 其餘空船一隻 并以海中焚滅乙仍于 倭人段 或斬 惑溺 殲盡無餘 諸船將士 心膽快然 因向加德 天城 左道沒雲臺至 分兩邊 挾 攻搜討爲白良置 賊徙移舟遠遁 並無形影 初更量 到巨濟 溫川梁 松津浦經夜 初八日 昌原地馬山浦 安骨浦 薺浦 熊川等處 賊蹤探見船定送爲白遣 出陣昌 原地甌島 藍浦洋中爲白有如乎 日夕 同望船還來言內 並無賊蹤是如爲白去 乙 還到松珍浦 經夜 初九日早朝發船 到熊川前洋結陣 分遣小船加德 天城 安 骨 薺浦等處 更審賊蹤 具無形影 到唐浦經夜 初十日 到彌助項前洋 與右水使 李億祺 元均等 罷陣各還爲白乎在亦 加德搜討之日 仍向釜山等處 欲殲厥種 而連遇大賊 轉鬪海上 兵糧已盡 士卒困憊 戰傷者亦多爲白去等 以我之勞 敵 彼之逸 實非兵家之良算 況又梁山一江 地勢隘狹 葦容一舟 而賊船連泊 已得 據險之勢爲白有去等 我欲與戰 則彼不出戰 我欲退還 則反爲示弱 設欲指向 釜山 而梁山之賊 相應繞後 則他道客兵 以懸軍深入 腹背受敵 固非萬全之計 是白沙餘良 本道兵使關內 犯京兇醜 奪騎漕船 由西江下來是如爲白去等 漕 船乘騎 萬無其理爲白在果 意外之變 亦不可不慮是白乎等以用良 臣與李億祺 相議 更探加德等島 迄無賊蹤 然後旋師還營爲白有齊 加德以西縱橫之賊 既 多焚船又多死傷 而登山漏捕之徒 必走釜山等地 備說兵威 則自是以後 庶有 顧忌之念是白齊 凡前後討賊時 南海以東熊川等七八邑父老士女避亂之輩 竄 伏山谷 觀望臣等擊賊 如得再生之路 莫不欣欣 來說 賊之去留 窮極指示爲白 卧乎所 極爲慘側 倭船所得米布等物 惠伊分給 使之安居爲白乎於 其中如向 化鮑作等輩段 携親挈家 率其隣族 自投營城者 連續不絕 前後來托之數 幾至 百餘名 而各勤其業 鎮長安居亦 營近長生浦等草土豐衍 人戶阜盛處 分接安 陣爲白齊 倭船被擄我國人 搜得生還 無異斬倭是白乎等用良 焚船時 各別搜 覓 慎勿妄殺亦 申勅約束爲白有如乎 節諸將等 同被擄人生擒男女并六名內

他餘人段 年或迷弱 被擄日淺 故賊中之所爲 莫知如何 其中唐項浦外洋 鹿島萬戶鄭運所擒東萊接私奴億萬段 年今十三 斷髮爲倭 推問招內 東萊東門外蓮池洞居人以 生變即時 隨父母入城 日不記四月分 賊倭無數來集 圍城五匝 餘賊遍野 先鋒之賊 被甲各持大知乙介 着廣大頭口者百餘人 突入衝城 一邊橫立竹梯 處處踰越 城既見蹈 殺伐斯極 矣身段 蒼皇間 相失親兄 莫知所向 仰天呼泣次 有一倭扶手劫率 直到釜山 留五六日後 移載其船 船有七八倭 見我喧呼 揮劍欲打次 同率往之賊 翼以掩之 潛置粧下 而同處所泊倭船元數 不知其幾許是白在果 載船過五六日後 大船三十餘艘 同時發船 指向右道 其中層閣船段 將帥所居是喻 諸船雲集其下 似聽其令 有時數三船式 分運作賊 焚蕩閭閻 劍害牛馬 布穀雜物 馱載其船 如是者日或再三 而所經島號材名 則莫知何坊 而今六月初五日 一運四船 偕往鎮海船滄 半餘入城爲有如乎 未久 鎮海城外 數千兵甲 突入同縣 兵勢滔天 則同入城之賊 大叫奔還 乘船促櫓 至中洋 又見風檣戰舸 蔽自西海 賊徒等 自知蹤跡莫遁 唇樵口燥 心膽俱摧 棄其大船 合乘小艇 不遠浦口 促櫓奔入 矣身及昨日被擄鎮海居寺奴羅斤乃等乙良 同大船并以棄置 仍以被擒爲乎在亦 倭人段 各持槍劍鐵丸 朝夕之飯 半雜沙土 他餘事段 語音相殊 未能解聽爲如乎所 招辭是白齊 栗浦前洋接戰時 鹿島萬戶鄭運所擒天城水軍鄭達亡 年今十四 推問招內 生變後 隨父母入山 迫於飢困 日不記今六月初生間 天城近野 牟田收穗 連命條以下來 爲倭被擄 當日永登近處依岸泊船 倭人所得物貨 曝陽學風次 我國舟師不意突進 倭人等顛倒失措 卽斷碇索 呼噪乘船 遠遁外洋 力盡被捕爲白乎所爲等如 招辭是白齊 同人等具是弱岭 爲倭被擄 難棄親鄉 所見矜惻 各令所擒之官 賑恤安居爲有如可 事定後 還送舊土亦 各別開諭爲白有齊 倭船焚滅元數七十二隻 倭頭八十八級 割左耳沈鹽 入櫓上送爲白在果 臣段當初約束時 諸將軍卒 要功貪利爭先斬頭 爲如可 反被其害 死傷者例多爲白乎等用良 射殺後 雖未斬頭 力戰者爲首論 功亦申令乙仍于 凡四度接戰時 逢箭死倭極多爲白乎矣 斬首不多爲白如乎 慶尙沿海鮑作等 逢箭死倭 多數斬來爲白良置 臣段他道大將以捧上未穩 元均處入納亦 開說以送爲白乎等用良 元均 李億祺等 諸將所斬 幾至二百級 或漂溺海中 或斬首沈失 其數亦多 倭物內 不關倭服 米布等物段 或分給戰士 或饋餉

軍卒爲白遣 軍物中抽出最關之物 開坐于後爲白乎旡 虞候李夢龜 所得倭將信是白在 金團扇 藏漆甲及防踏僉使李純信所納倭將分軍件記六軸 并以監封上送爲白齊 接戰時 士卒逢箭中丸人中 臣所騎船正兵金末叱山 虞候船放砲鎮撫張彥己 順天一船射夫私奴裒貴失 二船格軍私奴莫大 鮑作內隱石 寶城一船射夫官奴己伊 興陽一船箭匠官奴難成 蛇渡一船射夫鎮撫張希達 呂島沙工正兵朴古山 格軍朴宮山等段 中鐵丸致死 興陽一船射夫牧子孫長水段 下陸倭賊追斬時 逢刃致死 順天一船射夫保人朴訓 蛇渡一船射夫鎮撫金從海等段 逢箭致死 順天一船射夫柳貴希 光陽船格鮑作南山水 興陽船將水軍朴白世 格軍鮑作文世 訓道正兵陳春日 射夫正兵金福水 內奴高明世 樂安統船射夫趙千君 土兵張業同 放砲水軍禹成福等段 中丸不至重傷 防踏僉使率奴彥龍 光陽放砲匠徐千龍 射夫白內隱孫 興陽一船射夫正兵裒大檢 格軍鮑作未叱孫 樂安統船長興助防高希星 綾城助防崔亂世等段 逢箭不至重傷爲白有在果 同人等亦 冒犯矢石 決死進戰爲白有如可 或死或傷乙仍于 致死人屍身乙良 各令其將 別載小船 歸葬本土爲白去乎 其徒等妻子乙良 依他恤典施行教是白齊 不至重傷人等段 藥物上下 十分救療亦 各別嚴飭爲白乎旡 諸將段置 毋犯一捷 慰撫戰士 更勵舟楫爲白有如可 聞變卽赴 終始如一亦 嚴勅 罷陣爲白有置 中衛將權俊 前部將李純信 中部將魚泳潭 後部將裒興立 左部將申浩 右部將金得光 左斥候將鄭運 右斥候金浣 龜船突擊將及第李奇男 臣軍官李彥良 左別都將李夢龜 右別都將金仁英 捍後將臣矣軍官前權管賈安策 及帶率軍官奉事卞存緒 羅大用 前奉事宋希立 李濩 申榮海 及第金孝誠 裒應祿 定虜衛李鳳壽等 奮不顧身 終始力戰叱分不喻 群下吏士爭首赴敵人等 論功褒獎事乙 若待朝廷命令後 磨鍊 則往復之間 時月遲延 加之以行在所隔遠 道路阻塞 人不能通行爲白沙餘良 劇賊未退 賞不可逾時 慰激軍情 以勤當前之事條以 爲先參酌功勞 分秩一二三等 別狀開坐爲白在果 當初約束時 雖不斬頭 以死力戰者 爲首論功爲白有卧乎等用良 力戰各等段 臣親執磨鍊一等參錄爲白卧乎事 萬曆二十年 六月十四日

## 9.

全羅左道 水軍節度使 李 爲謹 啓爲捕斬事 去六月初十日到付同月初三日 在水原施行都巡察使李光關內 五月二十二日成貼 左副承旨書狀內 賊船撞破 最是兵家善策 但未知所留船隻幾何 更令全南左水使 與慶尙右水使 相議合力 盡數擊破 只留五六隻 以爲窮寇歸路 兩水使近處駐泊隱形 觀勢追擊 全南右水使整齊兵船 繼援事急急付事 有旨是白乎味 書狀是去等以 書狀內辭緣相考 慶尙右水使及本道右水使并以約束 依前揮指 施行向事 開是白置有亦 同書狀未到前 慶尙海道之賊 同道右道沿海之地 稍蠶焚掠 已犯泗川 昆陽 南海等境爲白有去乙 本道右水使李億祺 慶尙右水使元均等處 文移約束 去五月二十九日發船 泗川船滄 固城唐浦船滄 及唐項浦 巨濟栗浦前洋 等處 留泊倭船 或全船捕斬 或左右道諸將 合力剿滅後 六月初十日 還營緣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同有旨書狀 據巡察使關又到叱分不喻 作綜出沒之賊 剿滅爲白良結 互相文移約束 整理舟楫爲白乎旆 慶尙道賊勢深問爲白如乎 加德巨濟等處 倭船 或十餘隻 或三十餘隻 作綜出沒是如爲白沙餘良 本道錦山之境 賊勢鳴張 爲白卧乎所 水陸分犯 處處熾發 一無拒戰 以致長驅之勢爲白乎等用良 初亦本道水使亦約會爲白有在 今七月初四日夕時 約處准到爲白良在乙 初五日 相與約束 初六日 率舟師 一時發船 到昆陽 南海境露梁 則慶尙右水使 修緝破類戰船七隻 領率同處留泊爲白有去乙 洋中齊會 再三約束 至晋州地昌善島 日暮經夜 初七日 東風大吹 不能行船 到固城地唐浦 日暮樵汲之際 避亂登山 同島牧子金千孫 望見臣等舟師 奔遑進告內 賊船大中小并七十餘隻 當日未時量自永登浦前洋 巨濟固城地見乃梁到泊是如爲去乙 更勅諸將 初八日早朝 指向賊船留泊之處 至中洋望見 則倭大船一隻中船一隻 先鋒出來 探見我師後還入 其結陣處爲白去乙 追至則大船三十六隻 中舟二十四隻 小船十三隻列陣留泊 而同見乃梁 地形狹隘 又多隱嶼 板屋戰船 自相觸搏 固難容戰叱分不喻 賊若勢窮則依岸登陸絃如 閑山島洋中引出 以爲全捕之計 同島在於巨濟 固城之間 四無游泳之路 雖或登陸 餓斃丁寧乙仍于 先使板屋船五六隻 追逐其先鋒之賊 揚示掩擊之狀 則諸船之倭 一時懸帆追逐次 我船佯退而還彼賊逐之不已 及出洋中 更令諸船將 鶴翼列陣 一時齊進 各放地玄字勝字 各樣筒銃 先破其一二

隻 則諸船之倭 挫氣退遁 而諸將軍吏 乘勝踴躍 爭先突進 箭丸交發 勢若風雷 焚船殺賊 一時殆盡 順天府使權俊 忘身突入 先破層閣倭大船一隻 洋中全捕 倭將并斬首十級 我國男女人一名生擒 光陽縣監魚泳潭 亦爲先突 撞破層閣倭大船一隻 洋中全捕 射夫倭將 縛致臣船 未及問罪 逢箭甚重 語音不通乙 仍于 卽時斬首 他倭并斬首十二級 興陽縣監裴興立 倭大船一隻 洋中全捕 斬首八級 又多溺死 防踏僉使李純信 倭大船一隻 洋中全捕 斬首四級 而只力射殺 不務斬頭叱分不喻 又二隻追逐撞破 一時焚滅 左突擊將及第李奇男 倭大船一隻 洋中全捕 斬首七級 左別都將營軍官前萬戶尹思恭 賈安策等 層閣船二隻 洋中全捕斬首六級 樂安申浩 倭大船一隻 洋中全捕 斬首七級 鹿島萬戶鄭運 層閣大船二隻 銃筒貫穿 諸船挾攻焚破 斬首三級 我國人二名生擒 呂島權管金仁英 倭大船一隻 洋中全捕 斬首三級 鉢浦萬戶黃廷祿 層閣船一隻撞破 諸船挾攻 合力焚滅 斬首二級 右別都將前萬戶宋應珉 斬首二級 興陽統將前縣監崔天寶 斬首三級 軒退將前僉使李應華 斬首一級 右突擊將及第朴以良 斬首一級 臣矣所騎船 斬首五級 遊軍一領將孫允文 倭小船二隻放砲 追逐登山 五領將前奉事崔道傳 我國人小男三名生擒 其餘倭大船三十隻 中船十七隻 小船五隻等段 左右道諸將 同力焚破 逢箭投水溺死者 不可數是白乎旆 倭人四百餘名量 勢窮力盡 自知難逃 閑山島良中 棄船登陸 其餘大船一隻 中船七隻 小船六隻等段 接戰時 落後爲白有如可 遙望焚船斬殺之狀 促櫓逃遁爲白乎矣 終日接戰時 將士困勞 日且曠黑 窮進不得 同見乃梁內洋 結陣經夜 初九日 加德了指向次 安骨浦 倭船四十餘隻留泊是如 探望軍進告導良 與本道右水使及慶尙右水使 相議討賊之策 同日段 日已向暮 逆風大起 不可進戰 巨濟溫川島經夜 初十日 曉船 本道右水使乙良 同浦外洋加德邊結陣爲白有如可 我若接戰 則留伏馳來亦約束爲白遣 臣段率舟師 鶴翼先進 慶尙右水使 繼臣之後 到安骨浦 望見船滄 倭大船二十一隻 中船十五隻 小船六隻來泊 其中三層有屋大船一隻 二層大船二隻 浦口向外浮泊 其餘船段 鱗次列泊爲白有乎矣 同浦地勢狹淺 潮退則成陸 板屋大船 容易出入不得 再三誘引爲白良置 其矣先運船五十九隻乙 閑山島海中引出 無遺焚船斬殺乙仍于 勢窮則欲爲下陸之計 據險結船 畏懼不出爲白去乙 勢不得已 令諸將等 迭相出入 天地玄字銃



筒是沙餘良 入長片箭等 如雨放中之際 本道右水使定將伏兵後 馳來合攻 聲勢益倍 有屋大船及二層大船所載之倭 幾盡死傷之倭乙 這這曳出 出用小船載出 他船之倭乙 移載於小船 合入層閣大船 如是者終日 同船亦為幾盡撞破 餘生倭賊等 盡為下陸 而下陸之賊 未及盡捕為白在如中 同境居民 竄伏山谷者甚多 盡焚其船 致成窮寇 則竄伏之民 未免魚肉之禍為白乎去 姑退一里許 經夜 翌日是白在 十一日曉頭 還為圍抱為白乎矣 同賊倭等 蒼皇絕碇 乘夜逃遁 為白有去乙 探見昨日戰處 則同戰死之倭乙 十二庫 聚積焚燒 尚有餘燼之骨 手足狼藉 同浦城內外 流血滿地 處處赤色是白去等 賊人死傷乙 不能勝計是白齊 同日巳時量 梁山江 金海浦口 甘同浦口 並只搜探 俱無賊形為白去乙 自加德外面 東萊沒雲臺至 列船結陣 嚴視軍威為白乎旃 探望賊船 多寡來告加德鷹峯 金海金丹串烟臺等處 候望軍歧等如 定送為白有如乎 同日戌時量 金丹串定送望軍 慶尙右水營水軍許水光進告內 同烟臺探望次以上送時 峯下小庵 有一僧 率往烟臺 同梁山 金海兩江深處及以至兩邊看望 則賊船分泊之數 兩處合計 猶有百餘隻許 所見如是 而同僧處 賊船去留問云言內 近間每一日 五十餘隻 或作綜連 十一日 自本土同江入來為有如可 昨日安骨浦接戰時 聞放砲之聲 去夜幾盡遁還 只餘百餘隻是如 傳說是乎味 進告是白在如中 知畏怖逃遁之狀是白齊 同十一日暮 投天城堡暫留 使賊疑我久駐之慮 而乘夜回軍 十二日巳時量 到閑山島 則同下陸之倭 連日飢死饑 不能運步 困睡江邊為白去乙 巨濟民軍等 已斬三級為白有去等 其餘城四百餘名段置 脫遁無路 有若籠中之鳥 而臣及本道右水使段 他道客兵以 兵糧已乏叱分不喻 錦山賊勢鴟張 已到全州是如 傳通繼至乙仍于 同島下陸之賊乙良 巨濟軍民 同力斬獲 級數移文亦 同道右水使處約束 十三日 還營為白乎旃 諸將所斬倭頭九十級段 沈塩入 檣上送為白在果 臣當初約束時 諸將軍卒等 要功設計 爭相斬頭 反被其害 死傷例多 既為殺賊 則雖未斬頭 當以力戰者 為首功亦 再三申令乙仍于 級數不多叱分不喻 慶尙道立功諸將等 乘小船 在後看望者 幾至三十餘隻 既為撞破 則雲集斬首為白有齊 大槩臣矣諸將所斬 及慶尙右水使元均 本道右水使李億祺等所率諸船所斬 幾至二百五十級 而其間溺死洋中 或斬頭沈失者亦不知其幾許是白齊倭物不關衣服米布等段 分給戰卒 以慰其心為白遣 軍物內抽

出最關者 開坐于後為白在果 中衛將順天府使權俊 中衛將光陽縣監魚泳潭 前部將防踏僉使李純信 後部將興陽縣監裴興立 右部將蛇渡僉使金浣 左斥候鹿島萬戶鄭運 左別都將前萬戶尹思恭 賈安策 左斥候將呂島權管金仁英 左突擊龜船將及第李奇男 保人李彥良 左部將樂安郡守申浩 遊軍將鉢浦萬戶黃廷祿 捍後將營軍官前奉事金大福 及第裴應祿等亦 每欲接戰 忘身先赴 以致勝捷 極為可嘉為白齊 倭物段 一路阻絕 上送不得 并以營上為白有置 接戰時士卒中 營二船鎮撫順天水軍金鳳壽 防踏一船別軍光陽金斗山 呂島船格軍興陽新選朴應龜 康津水軍姜莫同 同浦二船格軍長興水軍崔加應孫 樂安船射夫私奴夫叱同 營龜船士兵私奴金末孫 丁春 興陽二船格軍私奴上左為貴世 寺奴恠連 營傳令船順天水軍朴無連 鉢浦一船長興水軍李加叱同 興陽水軍金軒 興陽三船私奴孟水等段 中丸致死 臣矣所騎船格軍士兵金國 朴凡 金延斤 鮑作張 同 高風孫 防踏一船格軍士兵姜玆每 水軍鄭貴連 金水億 金士化 鄭德成 孫元希 同鎮二船格軍正兵蔡洽 水軍梁世卜 河丁 射夫金烈 同鎮龜船格軍水金允方 徐丁同 金仁山 金加應赤 李水背 宋雙乞 呂島船破陣金漢京 水趙泥乙孫崔有守 李匡海 林世 尹希同 孟彥浩 田銀石 鄭大春 徐億世 朴春文 春金 金伊斤 營二船水鄭元身 鮑作李甫仁 士兵朴玆同 蛇渡水軍崔衣食 金今同 沙工朴斤 世 崔白 水軍欣卜等重傷為白在果 同人等亦 冒死矢石 決死進戰為白如可 或死或傷乙仍于 致死人屍身乙良各令其將 別載小船 歸葬本土為白去乎 其等妻子乙良 依他恤典施行教是乎矣 不至重傷等段 藥物上下 十分救療亦 各別嚴勅為白齊 鹿島萬戶鄭運所擒巨濟烏壤浦崔必招內 被擄未久 語音相殊 他餘所言 不能知聽 唯全羅之兵 前日焚船斬殺是如 時或發說 拔劍視勇 觀其辭色 察其所為 則全為直向全羅之計 來泊巨濟見乃梁 見敗是如為白齊 順天府使權俊所擒京中接保人金德宗招內 日不記去六月分 賊倭不知其數 分四運 矣身并以携率 自京下來 二運段釜山江邊結陣 一運段梁山江結陣 又一運段全羅道了赴戰次以 指向為乎矣 倭人言語 解聽不得 一運段 京城時方結陣 避匿人等乙 掛榜知委 無遺入接 如奴使喚為旃 矣身率來倭將段 節接戰時被殺是如是白齊 五領將崔道傳所擒接京中私奴仲男 私奴龍伊 慶尙道比安私奴永樂等招內 賊人等下來時 到龍仁 我國兵馬相逢接戰我國人退兵 及到金海江 倭將以書通諭

諸倭有若我國將帥約束之狀 則諸倭等舉手指西 每稱全羅道 至或拔劍擊物 一如斬殺之狀是如爲白齊 光陽縣監魚泳潭所擒慶尙道仁同縣居小男兪謹身招內 矣身及同生妹 一時避亂入山 並爲被擄上京 矣妹段 倭將相奸 月日不記來下 時 我國兵馬相逢 初日段 倭賊得勝 第二日 不勝退兵 第三日段 我國軍士全數 退兵爲去乙 直下金海江 所騎船隻 不知自何來 他處以領來 某處指向之語 不能解聽 但指手向西 必是全羅道指向之語 而倭將段當日接戰時 射斬爲白有在 果 我國兵馬 接戰時 我不與抗戰 則揮劍踴躍 乘勝追逐 彎弓突擊 則逡巡却 步 倭將雖嚴杖督戰 畏不敢出是如爲白齊 熊川縣監許鎰所率同縣記官朱貴生 言內 金海府內居生內需司奴李水亦 今七月初二日 縣居其父母相見事來到言 內 本府佛巖滄到泊倭人等 全羅道接戰云云 各船防牌之外 以槐木數三板 添造 堅緻 自中相約 分三運 屯泊爲有乎旆 金海城內外 留屯之賊 一夜望見漁火 恐 或全羅之兵來蹙 大驚喧噪罔措所爲 東西奔走 良久乃定是如 傳言是乎味 招 辭爲白有亦 各人所供雖不可一一取信 而分三運粧船 指向全羅道之言 則似爲 可據之路爲白置 一運之倭七十三隻段 巨濟島 見乃梁來泊爲有有如可 已爲臣等 所滅之倭 二運四十二隻段 安骨浦船滄到陣 而亦爲臣等所敗 無數死傷 乘夜逃 遁爲白有去等 更引其類 連兵合勢 長驅來犯 終至於腹背受敵爲白在如中 兵 分勢弱 極爲可慮 治兵整旅 杭戈待變 更通卽時 率舟師馳進亦 與本道右水使 李億祺 約束罷陣爲白乎旆 被擄生擒人段 各令所擒之官 賑恤安居 事定後 還 送舊土亦開諭爲白有乎旆 諸將軍吏等 奮不顧身 終始力戰 累度勝捷爲白有去 等 行朝隔遠 道途阻塞 軍功亦第若待朝廷命令後磨鍊爲白在如中 無以感動軍 情是白乎等用良 爲先參酌功勞 一二三等別狀開坐爲白乎旆 當初約束兒如 雖 未斬頭爲白良置 以死力戰人等乙 臣矣親見以分秩磨鍊 一搯參錄爲白卧乎事 萬曆二十年 七月初十日 節度使 李

## 10.

全羅左道水軍節度使 李 謹

啓爲移上事 營及道所屬各鎮浦軍糧 元數不敷爲白如乎 三度討賊 曠日在海 許多戰船軍卒飢餓 軍糧已盡分給爲白有去等 賊未退去 連續下海他無辦餉之 路 極爲悶慮 勢不得已 在鎮順天府軍糧五百餘名乙良 本營及疊入爲白有在 防踏鎮興陽軍糧四百石乙良 呂島 蛇渡 鉢浦 鹿島等四浦良中 各一百石式 先 可移上 以備不虞之爲卧乎所 移牒都巡察使爲白卧乎事 萬曆二十年 七月初十日

## 11.

全羅左道 水軍節度使 李 謹啓爲焚滅事 慶尙沿海之賊 三度往討後 加德以 西段 頓絕形影爲白有在果 各道彌滿之賊 日漸流下是如爲白去乙 乘其退遁 水陸合攻次以 本道左右道戰船合七十四隻 狹船九十二隻 倍嚴整理 去八月初 一日 本營前洋准到結陣 申明約束爲白有如乎 同月初八日 祗受宣傳官安弘國 齋來有旨書狀內是白沙餘良 慶尙右道巡察使金晬關內 上犯賊徒 晝伏夜門 梁 山金海江等處 連續下來 卜物滿載 顯有逃遁之跡是如爲白有去乙 同月廿四日 與右水使李億祺等發船 舟師助防將丁傑并以 率領 南海境觀音浦經夜 二十五 日 到蛇梁洋中約會處 同道右水使元均相逢 備問賊奇後 偕行到唐浦經夜 廿 六日 風雨交作 未能發船 日暮到巨濟島資乙于赤 乘夜潛渡 廿七日 熊川地薺 浦後洋院浦經夜 廿八日 慶尙道陸賊體探人進告內 固城 鎮海 昌原兵營等地 留屯之倭 今月廿五日夜間 盡數逃遁是如爲白去乙 必是登山探望之賊 望我舟 師 畏威遁走于船泊處是白乎去 同日早朝發船 直向梁山金海兩江前洋次 昌原 地仇谷浦鮑作丁磊石稱名人被擄第三日次 同日金海江邊逃還言內 同江留泊 賊船 數三日間 多數作綜沒雲臺外洋 以促櫓出去爲卧乎所 逃遁之狀 顯然乙 仍于 矣身段乘夜逃還是如爲白去乙 加德島邊北西岸 藏船隱泊爲白遣 防踏僉 使李純信 光陽縣監魚泳潭乙良 同加德外面良中 潛形隱伏 梁山了賊船 探望 來者亦定送爲白有如乎 申時未還來言內 終日看望 只有倭小船四隻 出自兩

江前洋 直過沒雲臺是如爲白去乙 仍向天城船滄經夜 廿九日 鷄鳴發船 平明到兩江前洋是白在果 東萊地長林浦洋中 則零賊三十餘名 分騎大船四隻 小船二隻 自梁山出來爲白去乙 望見我師 棄船登陸爲白良在乙 慶尙右水使所率舟師 專爲撞破焚滅 而右別都將 臣李夢龜虞侯段置 撞破大船一隻 斬首一級後 分兵左右 欲入兩江 而同江口形勢隘狹 板屋大船 容戰不得乙仍于 初昏量 還到加德北邊經夜 與元均李億祺等 達夜謀議 九月初一日 鷄鳴發船 辰時 過沒雲臺爲白乎矣 東風遽起 波濤洶湧 艱以制船 到花樽仇未 倭大船五隻相逢 到多大浦前洋倭大船八隻 到西平浦前洋 倭大船九隻 到絕影島 倭大船二隻 爲等如 相逢 並只依岸列泊爲白去乙 三道水使所率諸將 及助防將丁傑等合力 無遺撞破 滿載之船倭物戰具 勿令搜得 並只焚滅倭人段 望風登山 斬頭不得 同絕影島內外面 打盡搜討 無賊蹤爲白去乙 乃令小船 馳送釜山前洋 探賊則船 五百餘隻 船滄以東邊山麓岸下至列泊 而先鋒倭大船四隻 邀出草梁項是如爲白良在乙 卽與元均 李億祺等 約束白日 以我兵威 今若不討 還師 則彼賊必知輕侮之計是如 指旗督赴爲白乎白去 右部將鹿島萬戶鄭運 龜船突擊將臣軍官李彥良 前部將防踏僉使李純信 中衛將順天府使權俊 左部將樂安郡守申浩等 先登直進 同先鋒大船四隻 爲先撞破焚滅 賊徒游泳登陸次 在後諸船 仍此乘勝 揚旗擊鼓 長蛇突進爲白乎亦中 同鎮船東一山五里許岸下 三處屯泊之船 大中小并大槩四百七十餘隻 而望我威武 畏不經出爲白如乎 及其諸船直擣其前 則船中城內山上突處之賊 持銃筒挾弓矢 舉皆登山 分屯六處 俯放丸箭 如雨如雹 則於發射片箭 一如我國人 或放大鐵丸 大如木果者 或放水磨石 大如鉢塊者 多中我船爲白良置 諸將等益增憤惋 冒死爭突 天地字將軍箭 皮翎箭 長片箭 鐵丸一時齊發 終日交戰 賊氣大挫 而賊船百有餘隻量 三道諸將 並力撞破後 逢箭死倭 曳入土窟者 不知其幾數是白乎矣 至於破船斬首不得 抄諸船勇士 下陸盡殲爲白如乎 凡城內亦七處 屯立之賊是白沙餘良 騎馬示勇者亦多爲白去等 無馬孤軍 輕易下陸 亦非萬全之策是白乎旃 日且奄沒 留在賊藪 恐有腹背受敵之患 勢不得已 領諸將回棹 三更量 還到加德經夜爲白乎在亦中 梁山 金海留泊之船 或云漸還本土是如爲白良置 數朔之內 自知其勢日孤 咸聚釜山無不冬爲白齊 釜山城內官舍段 盡數撤去 築土造家 已成巢穴 多至百

有餘戶城外東西山麓 閭閻櫛比 連牆接屋 亦幾三百餘家 皆是倭人自作之家 其中大舍段層階粉壁 有若佛宇爲白卧乎所 原其所爲 極爲痛憤 接戰翌日 又欲還突 蕩焚其巢穴 盡破其船隻爲白乎矣 上去之賊 瀰滿諸處 斷其歸路 則慮有盡成窮寇之患 不得已水陸俱擊爲白良沙 庶可盡殲 而加之而風浪逆截 戰船相觸 多有破碎之處乙仍于 修揖兵船 優備軍糧 又待陸戰大道之日 與慶尙監司等 水陸俱進 殲討無餘次以 初二日 罷陣還營爲白有置 虞候李夢龜所斬倭頭一級段 本無左耳乙仍于 同耳根割取 沈塩上送爲白在果 丁亥年被擄逃還營水軍金介同 李彥世等招內 其矣等徒擄去之倭 本無左耳爲如乎 今見倭頭 眉目宛然是如爲沙餘良 同倭人亦必于 年老爲白良置 自中酋長 以作賊爲事 素嗜殺人是如爲白齊 蛇梁權管李汝恬生擒倭人吳道同招內 日本上國倭段 挈家率妻以來爲有在果 矣所居一境之倭段 皆厭赴戰 避入山谷 而今七月之間 日本之使 挾山搜得 滿載船中仍送于此 而近日高麗之人 多殺我類 勢難久留 欲還本土之餘 如是被捉是如爲白卧乎所 巧詐之言 雖不可信 然其年迷少 其狀若愚爲白在如中 粗有疑似之端爲白齊 凡前後四次 赴敵 十度接戰是白置 前日相戰時段 戰船之數 多不過七十餘隻 而節度 大賊巢穴 列泊四百餘艘之中 盛陣兵威 乘勝突進 畧無畏挫 終日憤擊 撞破賊船百有餘隻 使賊心摧膽落 縮首惶怖爲白卧乎所 雖未折馘 力戰之功 超過於前時乙仍于 依前參酌 功勞分等磨鍊 別狀開坐爲白在果 順天監牧官趙玪段 慷慨發憤 自備船隻 只率其奴子牧子 自願赴敵 倭人多數射殺 倭物又多搜得是如 中衛將權俊再三論報 臣之所見 亦如是爲白齊 鹿島萬戶鄭運段 起變以來 激發忠義 誓欲與戰之賊同死爲期爲白如乎 三度討賊 每次先登 節釜山接戰時 亦爲冒死突進爲白有如可賊之大鐵丸 貫穿頭頂致死爲白卧乎所 慘痛 諸將中別定差使員 各別護喪令是白在果 同本乙良 他有武才 計慮人以 斯速本差 催促下送教矣 先可臣軍官前萬戶尹思恭 假將差送爲白有齊接戰時 中丸致死 重傷士卒段 防踏一船射夫順天水軍金千回 呂島分軍色興陽水軍朴石山 蛇渡三船格軍綾城水軍金開文 營捍後船格軍士兵奴水背 沙工金叔連等段 中丸致死 臣所騎船格軍士兵張開世 水軍金億夫 營捍後船水軍金宗 蛇渡一船軍官金鵬萬 格軍崔汗從 光陽水軍裴植營虞候船射夫仇銀千 防踏一船格軍奴春好順天射夫朴世奉等段 逢箭致死

寶城水軍李韶福 寶城船無上欣孫等段 中丸不至重傷 臣矣所騎船水軍金水見上項各人等亦 釜山之賊 冒犯矢石 決死進戰 或死或傷乙仍于 屍身乙良 載船歸葬 其等妻子等 依他恤典施行教是齊 不至重傷人段 藥物上下 十分救療 各別嚴飭爲白在果 倭物內米布衣服等物段 戰士等賞給爲白遣 倭軍器等物并以開坐于後爲白齊 泰仁居業武校生宋汝棕 樂安郡申浩待變軍官以 四度討賊 並只憤激忠情 挺身突入 效死力戰 曾斬倭頭分叱不喻 前後軍功 並參一等爲白卧乎等用良 啓本陪持上送爲白卧乎事  
萬曆二十年 九月初十日 節度使臣李

## 12.

全羅左道水軍節度使 李 謹啓爲相考事 去七月初八日 慶尙道閑山前洋接戰時 逢箭倭四百餘名 同島下陸爲白去乙 絕島 有若籠中之鳥 當過一句日 餓斃丁寧 同道右水使元均 率其所屬舟師 圍抱四面 無遺捕斬 移文亦 約束爲白遣 臣及右水使等 罷陣還師爲有知乎 同元均亦 厥後誤聞賊船多至解圍而去爲白良在乙 陸倭人等 伐木爲槎 盡渡巨濟是如爲白卧乎所鼎裏之魚 終至脫漏 極爲痛憤爲白置 謹具啓 聞  
萬曆廿年 九月初一日

## 13.

資憲大夫 臣李 鹿島萬戶鄭運亦 恪謹戰事 兼有膽畧 可與論難 而起變以來 激發情氣爲國亡身念不少弛 勤於邊事 猶倍前時 臣之所恃者 只此鄭運等二三人是白知乎 三度戰捷 每次先登 節釜山大戰時段置 輕身忘死 先突賊巢 終日交戰 力射猶極 賊不敢動 寔運之力 而當其回棹 中丸致死爲白卧乎所 凜氣精靈 去白泯滅 未聞於後世爲白乎去 極爲慘痛 初亦 李大源祠堂 尙在其浦 招魂日榻 設奠供饗 一慰義魂 一警他人教是白齊 防踏僉使李純信段置 瘁邊備 變後

逾勤 四度討賊 必先憤擊 至於唐項浦接戰時 射斬倭將 其功超等叱分不喻 只力射殺 不務斬頭緣由 各別褒啓爲白有知乎 節褒賞之文 獨不參純信之名 軍情駭怪 諸將中 權俊 李純信 魚泳潭 裴興立 鄭運等段 別有所恃 期與共死 而每事同論 畫計爲白知乎 權俊以下諸將 皆陞堂上 唯此純信 未蒙天恩乙仍于 伏埃朝廷宣褒之命爲白去乎 詮次善啓  
萬曆二十年 九月初十日

## 14.

行全羅道左道水軍節度使 李 謹爲相考事 嶺南屯賊 謀犯本道 水陸窺覘爲白卧乎所 臣雖曰專委水戰 於陸戰之備 念不少弛 湖南接界求禮石柱 陶灘 光陽 豆恥 江灘等要害處 設伏把守等事 助力檢勅 欲使賊終不得踰越 而上年八九月之間 行移于近處各官 諸寺隱漏僧及括不付閑遊者 無遺摘發 同石柱 陶灘 豆恥等處 分戍亦 申勅爲白乎亦中 僧徒等聞風樂聚 不月之內 多至四百餘名 而其中有勇畧順天居僧三惠乙良 豺虎別都將 興陽居僧義能乙良 遊擊別都將 光陽居僧人性輝乙良 右突擊將 光陽居僧信海乙良 左突擊將 谷城居僧智元乙良 揚兵勇擊將爲等如差定 另 加召集之際 又有求禮居進士房處仁 光陽居閑良姜順悅 順天居保人成應社等 慷慨奮義 糾合鄉徒 亦各起兵乙仍于 房處仁乙良 雲峯八陽峙 爲等如 把守要害 與官軍並力待變亦 傳令爲白遣 成應社乙良 專責本府守城之備 僧三惠乙良 留鎮順天 僧義能乙良 留防本營 當觀賊勢 輕重 陸戰重則赴陸 水戰重則赴水次以約束爲白有知乎 今到有旨書狀內節該 天兵盡剿餘賊遁還 則率舟師 臨機把陌截殺事有 旨及追乎到付有旨書狀內 天將李提督直擣箕城 蕩覆巢穴 將次次進討 期使隻輪不返 卿其整齊舟師 水戰廢殺事 爲等如有旨爲白有亦 截殺大通之賊 兵不可孤弱是白乎等用良 所屬舟師 優數整理爲白乎旴 戰將成應社 僧將三惠 義能等乙良置 分給戰船修飭 分騎 並令下海爲白卧乎事  
萬曆二十一年 正月十六日 全左水使李

## 15.

啓爲相考事 嶺南避亂之民 流接營境者 多至二百餘名 而各令假接 艱以過冬 爲白有在果 當前賑恤之資 百無所計爲白去等 雖曰事定後還歸本道爲白良置 當在目前 不忍餓殍之狀是白沙餘良 前矣到付豐原君柳成龍書狀 據備邊司行 移內節該 諸島可以避亂 又作屯田之地 流民入接便否 參酌施行事行移導良 臣商量其避亂人可接處 則莫如突山島 而同島亦介在本營防踏兩間 重崗回抱 賊提四隔 地勢廣衍 土品肥沃是白乎等用良 曉諭流民 稍稍入接 方使春耕爲 白在果 唯只前矣御史洪宗祿 監司尹斗壽 水使朴宣 李薦 李英等 營屯畚請啓 爲白良置 節該曹有牧場以 防於馬政是如 防啓爲白良置 今則國事艱危 民生 失所爲白去等 雖使無賴之氓入作 別無貽害於牧場之馬 而然則牧馬救民 庶似 兩便爲白乎去 妄料爲白卧乎事

萬曆二十一年 正月廿六日

## 16.

去壬辰十二月廿八日成貼 宣傳官蔡津責來右副承旨書狀內 天朝大將李提督 率數十萬精銳 方圖蕩平 箕城海西京城 將次第收復 大兵進剿 餘賊遁還 則不 可不截殺於歸路 卿其領率舟師 臨機把扼 協力剿殺事 有旨是白乎味 書狀乙 臣今正月廿二日巳時 在鎮祇受爲白乎

萬曆廿一年 正月廿二日

## 17.

宣傳官安世傑齎來左副承旨書狀內 天將提督李汝松 領五十將官 數十萬精銳 直擣箕城 今月初八日 蕩覆巢穴 擒斬倭將 雷勵風飛 勢若破竹 將次次進討 期 使隻輪不返 卿其整齊舟師 勵氣待候 邀路 水戰鏖殺 大雪國恥事 有旨是白乎 味 書狀乙 臣今正月廿五日辰時 在鎮祇受爲白卧乎事

萬曆廿一年 正月廿五日 左道水使 李

## 18.

宣傳官李齎來去正月廿九日成貼右副承旨書狀內節該 天兵既克平壤 乘勝長 驅 假息兇賊 逃遁相繼 京城之賊 亦必遁歸 卿其盡率舟師 合勢剿滅 期使片帆 不返事 有旨是白乎味 書狀乙 臣今二月十七日戌時 在慶尙道巨濟島柴川梁前 洋 祇受爲白乎在亦 前矣祇受宣傳官蔡津 安世傑等齎來有旨書狀據 去正月晦 日 所屬舟師准到約束後 適音風勢不順 發船不得 累日待風 今二月初二日發 行 初七日 到巨濟島見乃梁 慶尙右水使元均相逢 初八日 本道右水使李億祺 追到 同處齊會約束 初十日 到熊川前洋 則同縣留屯之賊 藏船深浦 設險浦口 多作巢穴爲白去乙 三道舟師合勢 設伏潛伺 連日誘引爲白良置 畏我兵威 終 不出戰乙仍于 柴川梁 加德島前洋 往來結陣 多方畫策 期於殲滅爲白在果 不 得已殲此扼項之賊 次截梁山金海之路 俾無繞後之患 然後漸進釜山 截殺遁賊 事是白乎等用良 水陸合攻次以 急令諸將 率兵馬直擣熊川亦 慶尙右道巡察使 處 移文催促爲白卧乎事

萬曆二十一年 二月十七日

## 19.

全羅右道水軍節度使 李 謹 啓爲相考事 兇賊瀰滿諸路 唯此湖南 幸賴天祐粗 似保完 獲成一 國之根本 勤王恢復 皆由此道 而上年六七月之間 六萬軍馬許 多兵糧 盡喪於畿甸 兵使所領四萬之軍 亦盡於凍餒 今巡察使又率精兵北上 五戰兵將相繼興師而遠赴 自是以後 一境騷動 公私蕩盡 雖有老弱之民 而輸 兵運糧之際 鞭扑輒隨 倒顛溝壑者 皆有之加以以招募使下來 叱分內地沿海 軍數卜定 督之甚劇 則各官難於充數 防備之卒 亦多抄去叱分不喻 體察使從 事官九員 分檢列邑 督發餘丁 邊鎮軍器又多移 復讐義將高從厚等 又從而起 內寺奴無遺抄發 招募官今始下來 迭相搜括殆無虛日 民生愁怨之聲 屬耳不絕

國家興復之期 大失所望 一隅孤臣北望長痛 心死形存爲白置 前年分有旨書狀  
內 各官流亡軍士 侵及族隣者 限事定一切蠲餘亦 丁寧聖旨是白去乙 凡爲臣  
子者 莫不揮涕感 是白在果 當此危難之日 戍卒一人 可適平時百名是白去乙  
一聞勿侵之令 咸懷圖免之計 本郡十名赴防之邑 今朔則僅到三四 昨日十名留  
防者今日則未竭四五 不月之內 防戍日虛 鎮將束手無策乘船討賊 何賴以制之  
守城接戰 何賴爲之 若因循責立 則有違聖教 遵奉下書 則守邊無人 此間便宜  
斟酌處置亦 論報體察使回答內 一族之弊 最是病民之甚者 丁寧聖教 所當遵  
行之不暇是在果 所報內辭緣 亦爲有理 於禦敵撫民 兩得其便向事 回送是白  
乎等用良 各官良中 物故全絕戶乙良 姑勿都目亦 行移爲白有置 大抵播屏一  
失 毒流腹心 此實已經之驗 而況此本道分防軍數 非如慶尙道例 每番入防之  
軍 巨鎮則多不過三百二十餘名 殘堡則少不滿一百五十名 而其中久遠逃亡物  
故 未本定者 十居七八 當身現存者 太半老殘是白去等 若令全除一族 則守城  
船格 百無所措 極爲悶迫叱分不喻 節到付備邊司奉承傳行移內 近示討賊 莫  
如水戰 戰船優數加造亦爲有卧乎所 戰船段 司行移未到之前 臣已令營及鎮浦  
多數加造爲白有在果 一船射格并一百三十餘名之軍乙 充立未由 加于悶慮爲  
白良尔 同一族等乙 限事定 仍前施行爲白乎旅 稍稍辨覈 以紓民怨 最是當今  
之急務是白昆 伏願朝廷 更加商量 姑停一族勿侵之令 永全南荒恢復之基教是  
白齊 水軍入防之數 如彼其鮮少爲白去乙 闕防負罪之輩 或投屬招募軍 或爭  
附義兵 歧等如分屬爲白卧乎所 今如春防孔棘之時 防禦軍士 移屬他處 頓無  
實邊之意爲白去乎 他處一切亦 各別宣諭是教白齊 冬三朔 四色除防軍段 在  
平日 專爲變生時補軍之資是白在果 當此大變 元軍不多 又除四色之軍 則尤  
無防戍之路爲白沙餘良 下海餘暇 修改戰船 操鍊兵備等事 專責於水卒乙仍于  
同四色除防軍等乙 陸軍并以勿爲除防 無遺率防亦 各鎮浦并以檢勅爲白乎旅  
巡察使處移文爲白卧乎事

萬曆二十年 十二月初十日

## 20.

謹 啓爲相考事 前矣一族之弊 限事定勿侵事有旨 據觀察使關到付爲白有去  
乙 略學利害 先報觀察使 受回送後 緣由枚舉狀啓爲白有在果 大槩水軍段 非  
如陸軍之比 一戶四丁之內 流亡者過半 欲減弊寬民 則赴戍無人 欲因循固邊  
則凋瘵已極 此間便宜 百思難度 勢不得已 一族以充立 務實防禦者 其來尙矣  
乙仍于各官良中物故全絕戶乙良 一切勿侵 當身及族隣 因緣窺避者乙良 姑循  
前例 都目起送亦 行移爲白有在乎 節督運御史任發英下界之後 一應軍務之事  
及一族之事 專掌申飭乙仍于 各官等 據此論報 入防軍士 無意起送叱分不喻  
各官軍吏 因此蒙蔽 遽生巧避之計 以存爲逃 以生爲死 軍令大壞 收拾無路 軍  
額口縮而無兵從出 竟使沿海重地 一時空虛 轄門大鎮 將絕應門之卒 防禦之  
虛 有甚於經變之地 反覆思惟 罔知所爲 此在平時 決不可如是 況當此大變之  
時 劇賊未除 處處相持爲白有去等 大遁之賊 何賴以要截 守城繼援 又何賴以  
措張 事有輕重 時有緩急 則固不可以一時之弊 啓無窮之悔矣 此經之驗 而湖  
南一方 獲全于今日者 專賴水軍 大勢是白沙餘良 恢復之期 亦在此時則革云  
隣族之弊 尙未晚於事定後爲白乎去 冒死妄達爲白去乎 朝廷以前後啓辭參商  
於禦敵保民 兩得其便爲白只爲

萬曆二十一年 四月 日

## 21.

謹 啓爲討賊事 天兵掃蕩平壤之後 邀截水路遁賊事 宣傳官蔡津 安世傑等 五  
日再至爲白去乙 臣督率舟師 去二月初六日 發船 初八日 與本右水使李億祺  
慶尙右水使元均等 齊會於巨濟境閑山島洋中 申明約束 同縣地漆川梁 熊川境  
加德前洋等處 往來結陣 以待天兵南下 大賊遁還爲白如乎 熊川之賊 扼項釜  
山之路 據險藏船 多作巢穴爲白有去等 不得已先去此賊 乃進釜山乙仍于 二  
月初十日 十二日 十八日 二十日爲等如 或遣伏誘引 或出入挑戰爲白乎亦中  
彼賊曾恟舟威 不出洋中 每以輕疾之船 闖然於浦口 追逐則旋入其深處 只以  
東西山麓 築壘分屯 多張旗幟 放丸如雨 揚示驕橫爲白去乙 我船分衛作綜 左

右齊進 炮箭交發 勢若風雷 如是者日復再三 射殺而顛仆者不知其幾許 賊勢大挫爲白乎矣 疑其設險 未能深入於內浦 亦未能登陸追斬 常懷慷慨 而十八日之戰 左別都將臣矣軍官李滌 左突擊將龜船將李彥良等 窮逐賊船三隻 三隻所騎 百有餘賊 舉皆射殺 其中着金冑紅甲者 大呼促櫓 亦中皮翎箭 即仆舟中 庶幾全捕 而既入深處 勢難窮追 臨淄統船 在傍助戰 獲斬投水倭一級爲白有齊 大概非陸兵 則決難驅出是白乎等用良 乘其氣挫水陸合攻次以 慶尙右巡察使金誠一處 再請陸兵 則天兵支持事煩 又無留軍 欲令僉知郭再祐 先討昌原 次進熊川是如爲白良置 衆寡不適 勢未擊討乙仍于 同月二十二日 與李億祺及諸將等約曰 彼賊畏不出抗 又無陸兵襲後 他無殲滅之路 然而近多戰傷 氣勢已挫 又審其浦口 則似無設險之狀 亦容戰船七八隻是去等 累次相戰 未嘗剿滅 又未斬馘 極爲痛憤 因使三道舟師 各出輕完船五隻 合十五隻以迭相突戰于賊船列泊之處 放地玄字銃筒 爲半撞破 亦多射殺 又令臣募率義僧兵及三道驍勇射夫等所騎船十餘隻 東泊安骨浦 西泊齊浦 下陸結陣 則彼賊恐其水陸交攻 東西奔走 與之應戰 而義僧兵等 提槍揮劍 或弓或砲 終日突進戰鬪 無數射中 雖未斬頭 我卒無傷 蛇渡僉使金浣 臣軍官李奇男 金得龍等段置 奪還我國被擄人熊川水軍李准連 良女每染 鹽干 允生 金海良女金介 巨濟良女永代等 五名 而推問招內 近日接戰倭人 逢箭丸重傷者 不知其數 致死者亦多 這這焚燒 倭都將稱號者 亦爲戰死是如 群倭痛哭爲涕 自正月晦間 許多巢穴 癘疫大熾 死者連綿是如 納招乙仍于 諸將等及聞此言 銳氣益增 水陸勝勢 庶在此日 而左道鉢浦統船將 同浦軍官李應漑 右道加里浦統船將李慶集等 乘勝爭突 撞破賊船 回還之際 兩船相觸 防牌散落 人避賊丸 偏集一邊 遂致傾覆 舟中之人 除除游泳登陸 亦有逃還本家者乙仍于 時方搜出 追于 啓聞事是白在果 屢次勝捷 軍情極矯 爭首突敵 惟恐居後 致有傾覆之患 尤極痛惋 二月廿八日 三月初六日 更進挑戰 炮丸矢石 比前益張 且放震天雷於山岸賊屯 則裂碎死傷 曳屍奔遑者 不可枚數 而彼陸我船 亦未得斬頭爲白齊 唯只同處之賊 俱作巢穴 雄據不出 殲討無期 欲爲從風火攻 三月初十日 退陣于蛇梁前洋 措備火船爲白有在果 更良商量 則天兵久稽 徒焚其船 必貽窮寇之禍 姑停舉事爲白乎於熊川了 伏兵船定送爲白有在乎 三月廿二日 本道及慶尙道伏兵船將等 同力生

擒倭人二名 進告內 同倭船亦探望我船次以 唐浦前洋向來次 追捕是如爲白去乙 倭人等 當爲賊中所爲及探望節次并以 丁亥年被擄刷還能解倭語爲白在 營鎮撫孔大元乙用良 終日詰問 則倭人宋古老段 時年二十七 稍解文學 要沙汝文段 時年四十四 皆曰本居日本國伊助門人以 本月十八日 同騎小船 浮海釣魚 逢風漂泊 仍致被擒 餘他作賊節次段 詳知不得爲在果 本國約束內 二年至久留他國 數多被戮 成不成問 三月內入來亦爲有乎矣 上去之倭 未及下來 以待齊到 入歸計料是如爲白臥乎所 詰詐反覆之言 不可取信 更良詳細直告亦嚴刑窮問爲白良置 更無他言 極爲兇惡 四裂斬頭爲白有齊 大抵當此之時 雖非聖旨丁寧 爲臣子者 自當審其賊遁 邀截歸路 誓使隻櫓不返而 天兵消息 杳莫聞知 諸處留屯之賊 雄據如前爲白有去等 正當農月 雨水周足 沿海各鎮 掃境下海 左右舟師四萬餘名 皆是農民以 專廢耒耜 更無西成之望 我國八方之中 唯此湖南粗完 兵糧皆出此道 而道內丁壯 盡赴水陸之戰 老弱輸糧 境無餘夫 三春已過 南畝寂然 非但生民失業 軍國之資 亦無所賴 極爲悶慮 船格等雖欲相違歸農 他無可代之人 永絕生生之道 加之以癘疫交熾 死亡相繼爲白去等 天兵南下之日 率此病餒之卒 謀截舉遁之賊 勢似難能乙仍于 先可相違歸農 兼護病卒 鍊備兵糧 整架舟楫 審聞天兵消息 乘機馳截次以 今四月初三日 與李億祺約束 還到本道爲白乎在亦 接戰時逢丸被傷人等段 鉢浦統船戰亡人 一時並錄 狀啓 云云

## 22.

承政院開拆 臣以無狀 叨守重寄 日夜憂懼 思報涓埃之效爲白如乎 上年夏秋 兇賊肆毒 水陸移犯之際 幸賴天祐 屢致勝捷 領下之軍 莫不乘勝 驕氣日增 爭首突戰 唯恐居後爲白去乙 臣再三申勅以輕敵必敗之理爲白良置 猶且不戒 至使一隻統船 終至傾覆 多有死亡爲白有臥乎所 此臣用兵不良 指揮乖方之故 極爲惶恐 伏冀待罪

萬曆二十一年 四月初六日

### 23.

云云 謹啓爲相考事 臣所屬舟師 只五各官五鎮浦以 興陽縣監裴興立段 巡察使陸賊帶率 寶城郡守金得光段 曾差豆恥伏兵將 節沙還屬舟師 鹿島萬戶宋汝 惊段 軍糧押領差使員以 上去未還 其餘順天光陽樂安寶城等官守令 及防踏蛇 渡呂島鉢浦等 鎮將以諸將分差 猶以爲不足爲白去乙 道內奉命帥臣等 同舟 師諸將乙 或稱陸戰移差 或稱聽令 發傳令 推捉爲白臥乎所 殊無水陸分定之 意叱分不喻 東西奔走 莫適所從爲白去等 令出多門 號令不行 劇賊未除 指揮 乖方 極爲悶慮爲白良尔 今後舟師所屬守令邊將等 勿移他處 專屬水戰事乙 本道監兵使防禦使助防將處 朝廷以各別申勅爲白只爲

萬曆二十一年 四月初六日

### 24.

謹 啓爲取稟事 節呈光陽接等 一百二十二連名等狀內 本縣邑倅 頻數轉易 迎新送舊 民不堪其苦 將爲棄邑 而縣監到任 卽時 問民疾苦 莅革弊政 繕備兵 機 憂國如家 昔日逃散者 聞風還集 境內晏然爲如乎 上年四月分 變生於嶺南 接境爲白在 河東 昆陽 南海等地人民 皆舉奔竄乙仍于 人心不固 皆懷潰散 荷 擔而立 此時儻非沈機有量之人 難以鎮定 而縣監性度靜重 不疑不惑 守城水 戰 備禦之策 無不詳究 豆恥江灘把守之事 一時並舉 抗賊之理 諄諄開諭 勞來 晏集叱分不喻 舟師諸將以 累度赴難 忘身先突 殲滅海賊 功既最優 至陞堂上 而去正月二十七日下海之後 督運御史巡到列邑 各官倉穀 反庫知數 專爲移運 不賑飢民是如云云爲白去乙 本縣良中 重記置簿 會計數外 米太租并六百餘 石乙 常時儲置 或補用軍糧 或賑救居民 而留衛將 同米太租等乙 專爲種租 都 目內不錄爲乎亦中同督運御史 空官時到縣 反庫時 都目外儲置數外之穀是如 指縣監私用狀啓 卽令求禮縣監 差員封庫爲有臥乎所 種租救食 並失所望 農 時電過 田野荒廢 今年轉運之穀 百無所辦 極爲悶慮爲沙餘良 縣監亦 大駕 西幸教後 悶資廩之難繼 數外白米六十石及他雜物 并以載船上送爲有在如中

縣監之不爲營私 爲國盡誠 益顯於此 而今罹不犯之事 將爲遞去 一境士民 如 失父母爲乎矣 巡察使遠駐畿甸 海防民生 籲悶無處 道良中来呈爲去乎 斯速 轉啓 以解軍民之冤爲只爲 所志是白置有亦 光陽縣段 壤接嶺南 變生之後 人 心恟懼 皆懷奔潰之計爲白去乙 同魚泳潭亦鎮定安集 竟使一境之民 安堵如舊 爲白沙餘良 累伍兩南邊將 水路形勢 無不慣知 計慮過人乙仍于 臣中部將差 定 與之謀議 累次討賊 冒死先登 仍致大捷 湖南一方 尙秩保充者 無非此人一 分之力 而今因督運御史狀啓 當遞本職是如爲臥乎所 倉穀增減 以乎非臣所能 知是白在果 大槩魚泳潭乙 去二月初二日 臣下海時率領 巨濟 熊川等地結陣 乙仍于 督運御史入其縣 各穀反庫時學案等乙 本縣留衛將專掌書呈爲白有在 如中 雖有加減其數 實非泳潭所犯是白齊 必于少有其失爲白良置 當此艱憂之 時 失一奮義之將 有妨於禦敵叱分不喻 水戰非人之所能 而臨機易將 亦非兵 家之良算是白沙餘良 民情如是爲白臥乎所 限事定 姑仍其職 一以防水路之賊 一以答殘民之願爲白乎可 妄料爲白去乎 朝廷以參商處置爲白齊 此非臣之所 當啓稟 而巡察使 都事 各在遠處 遮截大通之賊 急在今日 而殘岷號泣之訴 亦 不可置之是白乎等用良 伏冒越職之罪 昧死敢稟

萬曆二十一年 四月初 日

### 25.

承政院開拆 正憲大夫具銜 臣李

宣傳官李春榮齎來 去四月十七日成貼 右承旨書狀內 今觀接伴使李德馨等狀 啓 慶尙左監司韓孝純 報稱 釜山東萊之間 倭船多數到泊 現兵之勢 極爲可慮 卿其整齊舟師 撞破來船 使不得恣意下陸事有旨書狀乙 臣今五月初二日 在鎮 祇受



## 26.

承政院開拆

宣傳官高世忠齋來 右承旨書狀內 節該 接伴使尹銀壽書狀據 戰船水軍盡數調聚 整齊於釜山海口 勿使輕動 聽候經畧分付 協力滅賊 以雪國家事有旨是白乎味 書狀乙 臣今五月初十日辰時 在慶尙道巨濟境見乃梁洋中 祇受爲白乎在亦 本道左右舟師段 依前數 今五月初八日 見乃梁准到 賊勢探見爲白乎矣 熊川之賊 雄據爲白有去等 往截釜山海口 熊川爲扼項 則深入釜山 賊在腹背 百爾思度 舟師叱分以 萬無引出之路 不得已陸兵以合攻追出 水陸殲滅 先祛扼項爲良結 體察使巡察使處 星火馳報爲白去乎 朝廷以之各別申勅爲白乎矣 慶尙道段蕩敗之餘 又仍天使支持 格軍充立無路叱分不喻 粗如也整齊戰船乙沙射格學皆飢羸 促櫓制船 勢所難能是白去等 當截大通之賊 兵勢極甚孤弱 極爲悶虜爲白沙餘良 賊之遁還遲速 亦難預料是白良尔 忠清舟師 并以不分晝夜繼援 使之協力滅賊 以雪窮天之辱爲白只爲

五月初十日

## 27.

承政院開拆

宣傳官寧山令福胤齋來 右承旨書狀內 節該 今見宋經畧移咨 倭賊雖舉衆出城 王子陪臣 尙未見還 違我號令 已令李提督 李如松 張汝爵 率大兵前進 又速發號令 慶尙全羅等道 整賴水陸軍兵 各船遶出釜山東萊各鎮 各次停泊 其船隻則多多益善 卿其照依咨文事理 整擗船兵 相機剿殺事有旨 書狀乙 臣今五月十四日 在慶尙道巨濟境見乃梁洋中 祇受  
萬曆二十一年 五月十四日

## 28.

宣傳官朴振宗齋來 同副承旨書狀內 節該 宋經畧分付據 兩南水軍戰船一時齊會 先焚釜山等處留泊賊船 且所領水軍戰船戰具幾許與否 先報于天將 使賊片帆不返 萬一因形勢不便 不得焚滅 則亦不得瞞報事有旨 書狀乙 臣今五月十四日 在慶尙道巨濟洋中 祇受爲白乎在亦 臣所率戰船四十二隻 伺候小船五十二隻 右水使李億祺所率戰船五十四隻 伺候小船五十四隻 戰具段隨船數整齊爲白有在果 熊川之賊 如前雄據 藏船深處叱分不喻 兩邊山峽 俯壓海口 地勢狹淺 板屋大船 隨意出入 撞破不得爲白沙餘良 昌原金海梁山之賊 亦不動念 數多藏船出屯于加德前洋 與熊川之賊 分爲南北 把截釜山之路爲白有去等 舍此賊藪未能深入釜山 不得已陸兵以直擣熊川 驅出洋中 可以剿滅 可通釜山是白乎等用良 宣傳官高世忠齋來有旨書狀祇受良中 畧陳此由爲白有置 大槩自聞天將勿殺倭賊之後 諸將吏士 莫不痛惋 切齒腐心爲白如乎 得見經畧命提督追擊之文 勵氣賈勇 咸欲決死報復爲白乎矣 昌原熊川 金海梁山等地 雄據扼項之勢 到今益盛爲白有去等 非陸兵 則舟師叱分以 決難引出 極爲悶慮 陸兵催促下送亦 都元帥 體察使 巡察使等處 已爲馳報爲白有在果 假氣殘孽 劫於皇威 爭相渡海之際 礙此扼項 趁來前進 則窮天極地之辱 無以爲雪 日夜煎悶爲白良尔 朝廷以置 各別星火申勅教矣 當截大賊 兵勢倍前孤弱爲白昆 忠清道舟師 并以不分晝夜繼援爲白只爲

五月十四日

## 29.

承政院開拆 宣傳官柳珩齋來 同副承旨書狀內 節該 今聞宋經畧分付 催督劉副總總 使之率精銳 急剿倭賊 而卿其整槩兵船 一聽副總節制 急急剿滅 毋或遲違事有旨 書狀乙 臣今七月初一日 在巨濟境閑山島洋中 祇受爲白乎在亦 臣五月初七日下午 與本道右水使李億祺 慶尙右水使元均等舟師合勢 巨濟智島洋中結陣 苦待天兵南下 陸兵入討昌原 熊川 使雄據之中 驅出洋中 水陸合擊 先祛扼項 然後前進釜山 剿滅退渡之賊次以 申明約束 將及二朔是白如乎

去六月十六日 昌原之賊 移突咸安之後 十六日 水路賊船 無慮八百餘隻 自釜山 金海 移泊于熊川 齊浦 安骨等處 其他往來船隻 不知其數是白在如中 水陸並舉 顯有西犯之意乙仍于 與李億祺 元均等 百爾籌策 賊路要衝是白在 見乃梁閑山前洋 把截列陣為白有如乎 六月廿三日夜間 同熊川 齊浦分泊之船 盡數移泊於巨濟境永登浦 松珍浦 河清 加耳等處 蔽海瀰滿 東自釜山 西至巨濟 援船連絡不絕為白臥乎所 極為痛憤為白齊 去六月廿六日 先鋒賊船十有餘隻 直向見乃梁為白如可 為臣等伏兵船被逐 更不出来為白去等 必其誘引我師 左右繞後之計是白在果 臣等之意 堅守要路 以逸待勞 先破先鋒為白在如中 雖百萬之衆 氣喪心挫 退遁無暇叱分不喻 同閑山一海段 前歲大賊就殲之地是白乎等用良 屯兵此地 以待其動 同心協攻次以 決死誓約為白齊 劉副摠使塘報 兒王景李堯等 去六月分 自善山再到陣中 舟師知數以去 厥後宜寧晉州等地 塞路不通為白去乎 詮次 萬曆二十一年 七月初一日

### 30.

謹 啓為倭情事 自聞群兇講和南來 臣不勝痛恚之積 雖有經畧禁牌 整飭軍船要截歸路 誓欲與賊同死 而去五月初七日 本道右水使李億祺一時發船 慶尙道巨濟境見乃梁止到 初九日 同道右水使元均相逢 合為一陣 巨濟縣前洋 留駐為白如乎 忠清水使丁傑段置 六月初一日來到乙仍于 亦為合陣 探見賊勢 則非但熊川之賊 雄據如前 八路兇醜 咸集一處 尙未渡海 東自釜山 西至熊川 相望百有餘里 築壘結寨 蜂屯蟻聚 極為痛惋 陸戰諸將處之 先討窟穴之賊 驅出洋中 合攻殲滅 然後前進釜山緣由 互相移文 苦待舉事之日 而去六月十四日 陸地昌原之賊 直突咸安 咸安留駐各道諸將 退陣宜寧等官 十五日 水路賊船大中小并無慮七八百餘隻 自釜山 梁山 金海 移泊于熊浦 齊浦 安骨浦等處 迫于 連日繼至 顯有水陸分犯之狀為白去乙 舟師等 巨濟島內洋結陣 則外洋移犯之賊乙 未及馳截 外洋結陣 則內洋之賊乙 未及邀擊絃如 同巨濟境內外洋兩歧要衝 前歲大捷為白在 見乃梁閑山島等處 合陣把截 兼應內外之變 而同月廿三日夜間 同熊浦等處屯聚賊船 不知其數 移泊於巨濟境永登浦

松珍浦長門浦 河清 加耳等處 魚貫列泊 首尾相接為白良置 舟師段 同閑山島等處 堅守不動為白乎亦中 彼賊曾劫舟威 莫敢來犯 陸路以到見乃梁江邊 結陣楊威為白去乙 舟師等直迫其前 射矢如雨 炮丸如雹 則賊徒奔潰更無現形 為白如乎 節段同長門浦等處 大作巢穴 藏船深浦 東西響應 唇齒相資 只令小船 出窺窺探 誘引我師 欲售其奸計為白臥乎所 加于兇謀叵測 整我舟師 直突焚滅 誓欲一死為白乎矣 三道板屋戰船 僅至百有餘隻 各率小船為白有去乎 衆寡之勢不同 難易之形有異為白沙餘良 幽深內洋 恃勝輕進 幸若不利 見侮於賊 則禍將不測 更無所恃 極為可慮為白乎等用良 扼其要衝 來犯則決死邀擊 逃遁則相勢追擊次以 日夜謀約 至今支吾為白有在果 熊川以東段 望路阻塞 賊之去留形止 詳知不得為白如乎 被擄逃還人言內 諸處之倭 有增無減 巢穴倍前時 無渡海之計是如為白去乙 欲知其虛實 陸地金海熊川了 賊勢哨探次以 順天軍官金仲胤 興陽軍官李珍 右道各浦軍官八人定送 今八月十四日還來言內 八月初九日 熊川古音神堂經夜 初十日看望 則熊川城內南門外屯賊 則為半熊浦以移徙結陣 西門外 北門外 鄉校洞 東門外屯賊 則不知其數 仍在不動 船隻段大中船并二百餘隻 同熊浦左右邊分泊 安骨浦段 城內外瀰滿 時方造家 船隻段 船滄左右邊 大小船并不知其數列泊 院浦段大發峙 至造家屯聚 船隻段 大中船并八十餘隻浮泊 齊浦段夜味山盜直項庶隔乙仍于 結幕有數多寡 看望不得 同浦船滄南洋 大中船并七十餘隻浮泊 同浦沙火郎望幕下西邊中峯良中築城 永登浦段貫革基以 竹田浦至造家 船隻段船滄以加多里 至無數列泊 自金海加德前洋 至熊川巨濟 往來船隻段 連絡不絕為白去乙 看望後 金海地佛毛山止到經夜 翌日 上長山高旨登望 則金海之賊段 遠暗詳知不得 同府七里許竹島造家 船隻段 南邊列泊 佛巖滄屯賊段置 亦為造幕 未定其數 船隻段 同巖下左邊 以五里許至列泊 德津橋屯賊段 伏兵以造幕四十餘庫 船隻段二十餘隻 橋下往來列泊是如進告為白沙餘良 被擄逃還固城水軍陳新貴招內 八月初八日 倭船三隻 矣家前下陸 兄進輝一時被擄 巨濟島永登浦歸到 則同浦貫革基船滄邊北峯下三處造家 多至二百餘 又北峯良中 伐木削平 築土城 周回甚廣 其中時方造家 倭人三分之一 則我國人相雜役事 為白乎旻 自其國軍糧及過冬襦衣等載船 間二三日連續輸來 同浦留泊船隻

段 出入無常 時存五十餘隻 一帶連接 長門浦 西峯 薺浦北山 安骨浦西峯等處 築土城 城內造家 留泊船隻等段 隔岸看望不得爲白良置 薺浦船滄段 大中船無數列泊 其他自本土及加德了指向 熊浦 巨濟之船 連續不絕 矣身段倭人等 只使樵汲之役 而今八月十九日夜間 乘隙逃躲爲乎所 招辭是白在如中 熊川三庫 築城造家之言 與被擄逃還奉事諸萬春之招 庶似刎合爲白沙餘良 自本土軍糧及衣服等連續輸來是如爲白臥乎所 迷劣人所言 雖不可盡信 觀其賊勢 顯有過冬之意 加于痛惋罔極爲白乎矣 賊在窟穴 聲勢相援爲有去等 舟師叱分以 討賊無策 不得已水陸俱舉爲白良沙 可能剿滅 而我國陸兵段 互相移文約束爲白在果 天兵大軍段 請援無路 極爲痛悶爲白乎矣 舟師段風力未高 八九月之間 可能運用制敵 而日漸風高 浪頭如山 制船難便絃如 極爲痛憤爲白齊 大槩舟師等 留屯遠海 已及五朔 軍情已懈 銳氣亦摧 癘疫大熾 一陣軍卒 大半傳染 死亡相繼 加之以糧儲乏匱 飢餓填連 飢餓之極 得病則必死爲白去等 有數軍額 日減月縮 更無充立之人叱分不喻 以臣之所率舟師計之爲白良置 計格并元數六千二百餘名良中 去今年戰亡數及自二三月 至于今日 病斃者 多至六百餘名 而凡此死亡者 俱是壯健能射 慣熟舟楫 土兵鮑作之輩是白乎矣 粗也如餘存之軍段 朝夕之食 不過二三合 飢困交極 控弦櫓役 決不能堪當 對大敵 勢至極 悶慮緣由 再三論報于都元帥 巡察使等處 順天 樂安 寶城 興陽等官軍糧六百八十餘石乙 去六月分輸入 轉盡分饋爲白有置 本道亦名雖保全 變生二年 物力虛竭 虛竭之餘 又仍天兵支持 凋瘵已極有甚於經亂之地 而節段 唐兵南下 出入閭巷 劫掠人財 損傷野穀 所過板蕩爲白乎等以無知之民 望風奔潰 轉移他境爲白沙餘良 去七月初四日 光陽縣監豆恥伏兵將長興府使柳希先等 妄動浮言導良 光陽順天樂安寶城康津等 一帶沿邑之民 其守令等下海空官時 傳相搖動 自相作亂 撞破官庫 輸取穀物 奴婢貢布 一應文案 煨燼無餘 焚蕩之狀 亦甚於兵火之地爲白有卧乎所 自是以來 舟師繼糧百無所賴 天兵所供船運軍糧是乃 推移輸用計料爲白乎矣 嶺南許多天兵支供等事乙 專委於此爲白有卧乎所 天兵段悠泛度日 迄無進討之奇 賊勢段倍前熾盛 畧無遁還之計 軍糧段終無繼用之路叱分不喻 以此水上飢羸之卒 攻彼窟處之賊 百無所計 徒極憤惋 悶迫之情 爲先畧陣爲白去乎 朝廷以各別料理

處置教是白乎去妄料爲白卧乎事  
萬曆二十一年 八月初十日

### 31.

謹啓爲上送事 臣累經大戰 倭人鳥銃 所得優多爲白乎等用良 常伴目前 驗其妙理 則以體長之故 其穴深邃 深邃之炮氣猛烈 觸之者必碎 而我國勝字雙穴等銃筒段 短穴淺 其猛不如倭筒 其聲不雄乙仍于 同鳥銃乙 每欲製造爲白如乎 臣矣軍官訓練主簿鄭思峻亦 思得妙法 冶匠樂安水軍李必從 順天私奴安成避營居金海寺奴同之 巨濟寺奴彥福等率良旆 正鐵以打造爲白乎亦中 體制甚工 炮砲之烈 一如鳥銃 其線穴插火之具 雖似小異爲白良置 數日內畢造 功役亦不甚難 舟師各官浦良中 爲先一樣造作亦爲白乎旆 一柄段 前巡察使權慄處輸送 使各官一樣製造亦爲白有在果 當今禦敵之備 莫過於此乙仍于 同正鐵鳥銃五柄乙 監封上送爲白去乎 朝廷以各道 並令製造爲白乎矣 監造軍官鄭思峻及冶匠李必從乙良 各別論賞 使之感動興起 爭相效制爲白乎可 妄料爲白卧乎事

八月日

### 32.

謹啓爲取稟事 水陸備禦之策 各有難易之勢 而近來人皆有水難陸易之說 舟師諸將 盡出于陸戰 沿海之軍 亦出于陸戰 水軍之將 莫敢措制 戰船射格 無路調整 諸將勇恟 又何從擇焉 臣備數舟師 累經大戰 畧舉水陸難易之勢及今日之急務 妄陳于後爲白卧乎事

謹具啓聞伏候 教旨 我國之人 恟者十居八九 勇者十中一二 而平時不爲分卞 混雜相聚 故風聲之來 輒生逃潰之心 驚動無常 顛倒爭奔 雖有勇者 其獨能冒白刃 殊死突戰乎 若以精選之卒 付諸勇智之將 因其勢而利導之 則今日之變 必不至於此極 至如水戰 則許多之軍 皆在船中 望見賊船 雖欲逃奔 其勢無

由 況督櫓鼓急之際 如有違令者 軍法隨之 豈不盡心力而爲之 龜船先突 板屋次進 連放地玄字銃筒 又從以炮丸矢石 如雨如雹 則賊氣已奪 投水無暇 此水戰之易勢也 然戰船數少 水卒之流亡 近來尤甚 若多備戰船 又開格軍充立之路 則雖大賊無數來犯 足以當之 足可殲滅 今觀賊勢 南通之後 尙未渡海 嶺南邊鎮 盡爲窟穴 跡其所爲 兇計叵測 脫有水陸合勢 一時衝突 則以此孤弱舟師 勢難捍禦 兵食之繼絕亦難 此臣之寤寐悶慮者也 臣之妄意 舟師所屬沿海各官 諸色括壯軍 全屬舟師 糧餉又屬舟師 戰船倍數加造 則全羅左道五官五浦 可整六十隻 右道十五官十二浦 可整九十隻 慶尙右道則經亂之後 措制未由 然而可整四十餘隻 忠清道 亦可得六十隻 合之則二百五十餘隻 而將此兵威 聞賊所向 勿論彼我道 登時應援 相勢追擊 則所向無敵 且賊雖蕩蕩 其船在水 我船倚角 則必生顧忌之念 亦不得恣意下陸矣 伏願朝廷十分商量 限事定沿海各官 括壯軍及軍糧等 勿移他處 全屬舟師 舟師諸將 亦勿遷動事妄料

軍兵之食 最爲先務 而湖南一方 各雖保全 物力殫竭 調濟未由 臣意如本道順天 興陽等地 多有閑曠牧場 諸島可耕處 或官屯 或給民并作 或使順天 興陽入防軍士 專務入作 而聞變出戰 則無害於戰守 有益於軍資 此趙之李牧漢之趙充國曾驗之策也 他道亦如此例 明春爲始耕墾何如事

一, 戰船倍數加造 則地玄字銃筒 卒備最難 內地各官銃筒 急速移送于舟師事  
一, 水使以舟師大將 凡發號施令 各官守令等 稱非所管 專不舉行 至於軍政之事 多有廢閣闕失之事 事事弛緩 當此大變 決難濟事 限事定 依監兵使例 守令并以節制使妄料

萬曆二十一年 九月初 日

### 33.

謹 啓爲倭情事 慶尙道固城居訓練奉事諸萬春亦被擄 日本國入歸逃還 今八月十五日 到陣中爲白在乙 推問招內 慶尙右水使軍官以 前年九月分 受由歸家還來時 熊川賊勢體探來告事以 乘小船到熊川浦前洋爲有知乎 倭大船十六隻 各率小船 自金海江 直向熊川浦爲白去乙 看望還來次 倭中船六隻 熊浦前洋

始出 追至永登前洋被擄 格軍十名 并以結縛載船 熊浦前洋倭將 協坂中書稱號 倭前捉付 矣身乙良項足鎖 倭人多數守直 他格軍乙良 分授各倭爲白有知乎 十一月十三日 矣身與昌原兒童被擄人 以密議逃計 謀事洩漏 同兒童乙斬頭 十二月十九日 又與熊川兒童密約 而同兒童仍倭語之人 反問于倭通事 厥後段 倍嚴守直 無計逃還 仍以過冬 今二月分 我國舟師 累次直擣熊川前洋 倭將官一人 木箭中死 同月二十二日 舟師一邊登陸 一邊突船泊處 則城中之倭 舉皆老病 守城無策 奔逸失措 十二倭將 並只投水自死之計叱分不喻 我國板屋船二隻 相觸鱗覆次 倭副將稱號者 跳登我船 我船之人 長槍刺其胷有死 同月二十六日 倭將亦 矣身乙 同致敗船將帥家丁 八百使喚樣以成文載船 平秀吉所在處入送乙仍于 第十日次 三月初五日 同秀吉留駐爲白在郎古也到泊 則秀吉亦矣身乙初欲燒殺 又聞解文之奇 其書寫倭伴介處保授 而在半介家 過五六日後 斷髮着倭衣 厥後 矣身仍風濕 滿身浮動爲白去乙 半介亦僧醫員請來百藥治療 厥疾得廖爲白良置 身在異域 有若籠禽之懷土之情 鬱抑難禁 期與同志 同望逃還爲白卧乎等以 尋防朝鮮人擄來之處 則大家則二十餘名 中家則八九名 小家則三四名式無處不在 而暗問借逃之意 則或有誠心而應諾者 或成家而無意思還者爲白去乙 殊俗之中 恐泄祕計 心與語口爲白如乎 自四月初生 與金海昌原密陽蔚山等官被擄人 及昌原校生許泳溟等 或折簡通議 或使人潛諷爲白良置 會面相稀 謀事蹉跌 未售其志 七月初生良中沙 東萊居成互屎 寺奴亡連 烽燧軍朴檢孫等十二名 日夜往來謀約 七月二十四日夜半 矣身并十三人 偷騎一船 櫓役以到六歧島 至泊經夜 二十五日 從風懸帆 日本國軍糧載船三百隻相逢 艱難回避 還泊六歧島 糧米乏絕 矣所着倭襦衣一 單衣一等放賣 米二十七斗 中鼎一等捧來 第九日次 八月初三日 慶尙右水營前洋下陸 同成互伊等所居處是白在 東萊地立鍊里至到 各人等段 同里居黃於叱乞家 留接 而同處段 我國人物數多居生 與賊交通 少無忌憚 矣身留二日次 梁山地蛇代島居人等 持船過涉 至蛇伐島 則天城加德入防水軍無慮四百餘名居生 倭賊二十餘名 稱爲酋長 耕農收穫 有如平日 而八月初十日 熊川地赤項驛前過涉下陸 十三日 本家來到爲白有齊 大槩平秀吉乙 常稱曰大閣 其長子段 稱以關白 秀吉所駐郎古也段 以日本連接之地 在日本之西 相距陸路二十一日程

水路十二日程是如爲旆 前年五月分 秀吉率二十萬兵 到郎古也 待變之後 同處良中 三疊築城 六層起閣 六層之閣 在內城之央 而秀吉恒居其上 三疊城頭 俱設層射臺 其放丸之機 設險之備 不可勝言 城中段 只有倉庫官舍 城外段 閭閣櫺此爲白有齊 去五月分 天使二員 到郎古也爲良在乙 初接于城外閭家 留三日後沙 秀吉使裨面前二僧 或書簡 或通問 又過三日後 請天使入中城之內 秀吉段 仍在內城中六層閣上 使其管下之倭 接待天使 時倭人段 高構六間精閣 紅綿圍簷內 設洒金屏風而坐 天使乙良 卑下處 作草屋二間 四面垂簾 中設長床而 其間相距十餘步 其外觀光者如市 一應行酒宴禮段 相見不得 只見倭人滿庭優戲 又聞笛聲而已 禮訖 同天使乙 始爲請入內城之中 西邊官舍下處爲白齊 矣身逢授倭半介段 秀吉書寫之倭以 凡于天使前問答之書 矣身開示爲白去乙 幸若逃還之後 意欲啓達 滿紙傳書爲白有如何乎 偷船逃躲之際 盡數棄失爲白有在果 千生萬死 到于今日 心神黯邈 未詳記憶 蓋將涉獵而論之 則天使遺書于秀吉曰 朝鮮國全羅 慶尙道先開路 倭兵引入 以後遮路 是朝鮮虛誕也 朝廷不以實言大明 朝鮮國王 豈不欲罪之乎 大閣天朝誠心之臣也 二使天使誠心之臣也 以二使之言 不可信聽 請借寶劍 割其心示之死乎無悔也 二國和親之事 千萬年之美哉 大閣所使三成 兩司 吉繼 行長 四今言聞之後 如出一口 則和親之事 大閣私以決斷 天朝及關白等處 馳使告之云云爲白有齊 且天使又以一書遺秀吉 其書曰 日域武將 欲志漢郡連授 寔以蚊足似海 盡爲仁無遠慮 近有百戰百勝 如一忍千萬事 尤計安云云 而天使曰 此書則天子詔朝鮮國王書也云云爲旆 同二天使出來時段 秀吉盛陳軍威 船上相會 劍槍十柄 銀三十斤 贈給以送爲白齊 當初 矣身被擄在熊川時 倭將協坂中書 矣身茂火問曰 前年七月之閑山島接戰時 汝必在舟中 而日本鳥銃劍甲等物所得機許耶 答以不知爲白有如何乎 矣身到半介家留連半載 一應兵糧調發件記相考 則脇坂中書之名 亦載其籍 其下書曰 初率一萬兵 幾盡敗衄 時存一千餘名是如 懸錄爲白有齊 同平秀吉在郎古也 以調兵策應爲事 而晋州及湖南等地 更犯亦 精兵三萬兵抄送爲白有如何乎 晋州陷城後 倭將等 晋州及全羅道長興至焚蕩是如馳報爲旆 晋州牧使 判官首級入送爲白去乙 秀吉以爲今則更無所爲是如 還向日本 以八月十五日二十一日以擇日 其長子關白乙 明年三月爲始 出送于郎吉

也 待變云云爲旆 朝鮮留屯之倭段 機張蔚山釜山東萊左水營 梁山金海 及熊川三庫 巨濟三庫 唐浦 築城造家後 爲半守城 爲半入來爲乎矣 守城之倭乙良 明年三月 交代出送後入來云云爲白齊 矣身所經左水營段 賊數及船數不多 釜山浦段 處處瀰滿 船隻段充滿海洋 不知其數 我國人相雜居生爲白齊 唯只秀吉亦其姓桀驚 日本之人 方有曷喪之嘆叱分不喻 倭人等皆曰 凡人孰無父兄妻子 累歲他國 久未還土 此皆有秀吉之故也 秀吉年今六十三 死日尙迫 若死則何獨朝鮮人喜幸而已 我等亦無所患云云爲白如何乎所 招辭是白有亦 同諸萬春亦出身之人以 受國厚恩叱分不喻 勇力過人 射藝亦妙 非如庸下之輩是白去等所當極力射賊 以死報國 而甘心就擒 反爲倭奴所使 仍往日本 與半介同事掌書之任爲白如何乎所 爲臣子節義掃地爲白沙餘良 能文解事人以秀吉所在處 半歲仍留 巧點情謀 無不詳探 有若委送間諜之人爲白在果 思還本國格軍十二名 率良旆 至於逃還 情似可憐爲白如何乎所 參以所招 則他被擄逃還各人等招辭果 大同小異爲白如何乎等用良 他餘未盡之事乙良 同諸萬春乙啓聞 一時上送事 慶尙右水使元均處通議爲白如何乎事 忠清道水軍節度使 丁 右道水軍節度使 李全羅左道水軍節度使 李萬曆二十一年 八月 日

### 34.

兼三道水軍統制使行全羅左道水軍節度使臣李 謹

啓爲相考事 舟師所屬沿海各官軍兵糧餉 陸戰諸鎮 轉轉徵出緣由段 他狀啓良中 已爲畧陳爲白有在果 今閏十一月十七日到付兼巡察使李廷翰關內節該 摠兵分付據都元帥關內乙用良 麗兵三萬兵 並只卜定於本道 時方督發乙仍于 所屬各官 分作三衛爲旆 防禦使 兵使各五千人 左右水使各二千名式分定爲去乎 所屬各官浦 惠伊分定 督令整齊 以待元帥傳令向事關是白置有亦 沿海射壯軍 續續徵發事段置 猶以爲悶慮爲白去乙 至於左右道 并精軍四千名至卜定督發爲白如何乎所 舟師射軍無遺抄發爲白良置 未滿四千之數爲白在果 大概防禦使 兵使段 陸戰大將以 時在陸地 各整五千之軍 理所當然 而舟師段 把截海路 所

防各異爲白去等 移水就陸 實非得計是白沙餘良 近觀賊勢 則陸地熊川等地之賊 往來巨濟聚散無常 兇謀祕計 固所叵測 舟師所屬精銳一人 可適百名乙仍于 決不可抄整之由 爲先論理回答爲白有置 朝廷以置 同巡察使李廷穉及都元帥處并以 各別申勅爲白齊 唯只舟師軍徵發之事 如彼其紛紜 則臣段所管水卒乙沙 統制無路 海防一事 百無所措 舟師軍勢 日至孤弱 海上憑陸之賊 難可沮遏是白乎去 日夜煎悶爲白臥乎事

萬曆二十一年 閏十一月二十一日 統制使 臣李

### 35.

謹 啓爲相考事 老賊尙據邊場 兇計固所叵測 明春防海 百倍於前 而一歲將盡 久駐洋中 飢餒之卒 轉成疾病 羸瘁已極 僅存形息 死亡幾半 勢將難救 目今 沍寒 變成鬼形 慘不忍見是白去等 幾何其不胥而殞命 將何以控弦制楫 言念及此 痛若割肌 不意今者 兼三道統制之命 遽及於無狀之臣 驚惶震慄 無任殞越之至 以臣庸短之材 決不能堪也明矣 臣之渴悶 愈鬱 去十月初九日 祗受下書內 卿爲統制之任 將三道將官水兵 分爲兩運 使之歸家迭休 兼備衣糧事有旨是白有亦 慶尙道段 蕩敗之餘 船格尤甚齟齬叱分不喻 結陣處初亦 本道境內以 看隙往來 迭休無常 全羅左道段置 不甚遙遠 續續分遶爲白在果 右道段水路隔遠 正當風高之日 冒涉危濤 容易往返不得 動經旬朔絃如 令其道水使李億祺 率戰船三十一隻 已於十一月初一日 先運發送 歲前修改戰備 且休軍兵 加造戰艦 格軍水卒及括壯軍等 一一刷點 預先整齊 正月望前 無遺領來亦爲白乎旆 留陣 戰船五十餘隻以 恒留待變爲白齊 唯只各官之水卒流亡者 十居八九 臨番赴戍者 十無一二 加以閭落空虛 煙火蕭然 族隣之責 亦無所據爲白乎等用良 初到乘船之卒 或未能遞代 長留水上 飢寒轉迫 疫癘之熾 又甚於春夏 無辜軍民相繼顛斃 軍數日縮 兵力日孤 前頭之事 極爲可慮爲白齊 大槩無知軍卒 只思一時之安 怨言屢騰爲白去乙 臣以天兵來戍萬里之外 暴露風霜 尙無愁嘆 盡心討賊 以死爲期 而第以本國之人 被賊患害 當在朝夕 無意雪憤 便生自安之計 汝等意向 極爲無謂 自上軫念舟師之苦 別賞布十二月下送爲有

去等 罔極天恩 萬死難報是如 以理論諭爲白遣 尺尺裁端 均一分給爲白在果 臣所屬全羅左道沿海五官五浦 戰船加造 括軍搜點 兵糧照閱惠伊 改分軍預措之事 最爲關急爲白沙餘良 初亦近日段寒凍倍嚴 屈處之賊 難易衝突乙仍于 慶尙右水使元均及全羅左道中衛將順川府使權俊 右道中衛將加里浦僉使李應彪等乙用良 檢勅部屬諸將 把守待變亦 嚴明申約爲白乎旆 軍卒中 尤甚久留羸病者 交遞率領 姑還本道 檢勅 還鎮計料爲白卧乎事

閏十一月十七日

### 36.

謹啓爲相考事 兇醜餘孽 退據沿海 有久淹之狀 無退遁之跡視所以 兇計莫測 爲白沙餘良 巨濟之賊段 有增無減 巢穴益煩 泊船深浦 出入無常乘機穴衝之患 不可不慮 見乃梁要衝之路良中 定將埋伏爲白有如乎 今閏十一月初三日 伏兵將臣軍官主簿羅大用亦 生擒探倭一名 縛致臣所推問招內段亡古叱之 年歲段二十五 所居處段 日本國東距十三日程 地名施巨近是在果 前年十二月分 朝鮮國出來 倭將鳥乘監所率軍三千餘名喪敗是如 加軍六百名抄送時 矣身段 射軍以被抄 領將溫老叱起率領 今年二月初二日 施臣口乘船 八隻作綜 同月廿八日 熊川前洋下陸 到梁山 鳥乘監相逢 留連數三朔 日不記六月分 梁山馬山密陽等船隻五百餘艘 巨濟境永登浦場門浦院浦等處移泊 倭將六人 以右丹屯 大隱屯等段 各率軍千餘名 永登浦峰頭築城屯據 沈我損屯段 率軍一千三百餘名 永登浦城中屯據 鳥乘監段 率軍九百餘名 阿老監未 率軍三千餘名 場門浦 築城屯據 加思然屯段 率軍一千二百餘名 院浦築城屯據 中船百餘隻段 十一月初四日 病倭載持 本土入歸時 倭將阿老監未段 眼疾以視事不明 大隱屯段 國王姪子以 亦爲同舟入歸 又百餘隻段 軍糧載來事以 同月二十七日 釜山浦歸進爲白有齊 軍糧段 本土以連續載來 三十餘間庫家 盈入而有餘 不爲貴用 卒倭段 庫外之穀以 隨便供饋 朝鮮被擄人中 女人乙良 這這入送 男人乙良 或令乘船捉魚 或出入釜山等處 興販資生 船格充立爲在果 矣身亦率下之倭以 他餘事段 未能詳知爲白齊 矣身段 本以奴倭 稍解弓才 當初

本土抄發時 朝鮮國戰鬪立功 則可免奴役 又賞金銀寶物是如爲如乎 及其到此 食少役煩 不堪其苦 同類倭也三火老果 相與密約曰 以其在此飢役 不如投入 朝鮮是如云云爲遣 今閏十一月十一日 一時逃亡 草伏林投次 同陣之倭 尋蹤 追到 也三火老段被捉 矣身段 仍以逃躲 直向江邊 適見採蛤女人三名 則同女 人等 矣身扶執唱呼之際 朝鮮戰船 不意穴至 結縛載來爲白有齊 釜山等各陣 倭將名號 一日記知不得爲白良置 釜山浦段都甚萬屯 熊浦段卽墨甘屯 金海梁 山段甚安屯 爲等如 留在爲有卧乎所 招辭是白齊 巨濟接正兵金銀金良女世金 金代 德只等 當爲逢倭執捉節次推問招內 避亂人等以 今閏十一月初三日 良 島近處江邊採蛤次 同倭奴亦烏楊驛了以走来 或立或坐 啁啁不去爲去乙 矣 徒等 同力扶執 唱說伏兵船 則伏兵人等 促櫓馳來結縛載船爲乎所爲等如 招 辭是白有亦 點詐倭奴 敢生祕計 出沒林藪 窺探虛實爲白如乎 情跡判然爲白 乎矣 矣身既被擒 自知難保 托以投附我 國爲言 加于兇惡 不可頃刻延留是白 在果 真僞間 賊中形勢 大槩納招爲白臥乎所 似有反覆窮問之端爲白乎等用 良 同倭奴亡古之乙 都元帥權慄處以 押領繫頸而送爲白齊 巨濟良女世今等三 名段 避亂飢困之女以 見賊不避 協力扶執 招呼伏兵將 使之結縛爲白臥乎所 其與聞聲逃竄之人 相去萬萬爲白乎等用良 各別論諭 並給糧物爲白去乎 勸勵 他人次以 食物題給事 本道監司處啓下爲白只爲

萬曆二十一年 閏十一月十七日 統制使 臣李 始統制使

### 37.

正憲大夫具銜 臣李

今閏十一月初五日 到付光陽假官金克惺牒呈內 左議政都元帥同議差帖內 節 光陽縣監啓罷 本假官差定爲去乎 印信兵符 交付行公爲跡 豆恥關防把截等 事不輕 檢舉待變向事 差帖是乎等用良 今閏十一月初二日 本縣到任爲乎亦中 縣監段 已爲下海 印信兵符交付不得爲有良置 公私庫封閉行公爲臥乎味 牒呈 是白置有亦 同前縣監魚泳潭 亦已爲遞罷是如爲白在果 生長海曲 慣熟舟楫 兩南水路迂直 島嶼形勢 歷歷詳知爲白沙餘良 其於討賊之事 極力盡心爲白臥

乎等用良 上年戰討之日 每次先鋒 屢致大功爲白有去等 比諸他人 稍有可論 之材爲白良尔 同魚泳潭已遞其職爲白乎喻良置 先可舟師助防將差定 終始畫 策 以濟大事爲白乎去 妄料敢稟爲白去乎

閏十一月十七日

### 38.

節加造戰船良中 地玄字銃筒出處未由 措備之叱策 條陳狀啓爲白有如乎回啓 內辭緣枚舉 兼巡察使李廷旼處 已爲移文爲白有在果 地字銃筒一柄之重 多 至一百五十餘斤 玄字一柄之重 亦至五十餘斤 則當此物力殫竭之餘 雖以官 家之力 難易卒辦 船役幾畢 器具不齊 極爲悶慮 臣乃令募僧別稱化主 製給勸 文 閭閻處處 轉轉勸求 以補萬一亦爲白良置 民窮財盡 亦未必易成 晝夜思惟 罔知攸措 側聞遠近列邑 或有納鐵而願免身役者爲白乎矣 自下不敢擅便是白 乎等用良 敢稟爲白去乎 如或隨其鐵物之輕重 或令賞職 或許通免役免賤公 文成貼下送 則聚而鑄之 可成兵家之重機爲白乎去 妄料爲白齊 變生以來 焰 焔優數煮取 而所入石硫黃 他無興產之地爲白置 舊庫硫黃二百餘斤量 採取 下來爲白只爲

閏十一月十七日

### 39.

臣既兼統制之任 三道水兵將官 皆在部下 檢勅措制之事 非止一再 而臣在嶺 南 文移遠道 許多兵務 趁未舉行叱分不喻 都元帥 巡察使所駐處就議定奪者 亦多有之 而相距隔遠 或未及期限 事事乖方 極爲可慮 臣之妄意 文官一員 依 巡邊使例 從使官稱號 往來通議 所屬沿海列邑巡檢措置 射格軍糧連續調入 則將來大事 庶濟萬一是白沙餘良 諸島牧場閑曠之地耕墾處 亦有審檢之事爲 白乎去 妄料敢稟爲白去乎 朝廷以 十分商量 若於事體無妨 則初亦長興居前

府使丁景達 時在本家是如爲白昆 特令差下爲白只爲  
閏十一月十七日

#### 40.

謹 啓爲相考事 臣前者請令三道 加造戰艦 沿海括壯軍糧軍器 並屬舟師緣  
由 已爲狀啓 今方督役 歲前畢造 正月之內 合會一處 蔽海成陣 直截釜山之海  
一鼓殲盡 毋失事機 亦已與三道水使 再三申勅爲白有在果 所謂三道沿海括壯  
軍 名雖載籍 雜頃居半 其實鮮少爲白去乙 陸戰諸將不顧水戰 又不念聖教勿  
令遷移之旨 續續傳關 調發無常叱分不喻 或天兵隸習 或伏兵把守 或義兵軍  
迭相徵發 有倍於前日爲白沙餘良 軍糧段置 自變初陸續輪運 又因天兵支持  
餘儲幾竭之餘 陸戰大小諸陣 便亦轉運不絕爲白臥乎所 一帶沿海之民 於水於  
陸 互相奔命 彼此難堪 携妻挈家 轉移他境者 道途相望 極爲可慮爲白齊 全羅  
道沿海各官中 左道五官 右道十四官以 節巡察使李廷旼改分軍內 左道光陽順  
天樂安興陽寶城 右道長興康津海南靈巖珍島 各五官舟師以移屬 其他沿邑 專  
屬陸戰諸將爲臥乎所 移文爲白有矣 同左右道各五官兵糧乙沙 各處如彼其徵  
發爲白去等 左右道戰船加造并一百五十隻 伺候船一百五十隻 射格并無慮二  
萬九千餘名 整齊未由 極爲悶慮爲白齊 慶尙右道段 沿海列邑 幾盡蕩敗 調軍  
運糧 頓無所賴 少似保完者 只南海一縣 而水陸之兵 歧等如徵發 子遺之民 庶  
難支保叱分不喻 固城泗川昆陽河東等段 兵火之後 奔竄餘民 漁採連命爲白乎  
旸 舟師射格以隨隸爲白如乎 節段陸戰以軍數卜定 互相徵發爲白臥乎所 同  
道戰船加造并四十餘隻 伺候船四十隻 射格并無慮六千餘名 整齊未由爲白齊  
忠清道段 右道沿海之邑 賊未犯境爲白乎矣 前水使丁傑 單騎下來 與臣同陣  
戰船罔晝夜回泊亦 同道虞候處所屬各官浦 再三傳令催促爲白良置 竟未回泊  
丁傑遞差後 新水使具思稷處 戰船加造并六十隻 伺候船六十隻 刻期督造 兵  
糧戰備 優數整齊 正月內 一齊馳到亦 再三移文 至於臣軍官部將方應元 已爲  
論關發送爲白有在果 道路遙遠 措備諸事 時未回報爲白有齊 舟楫雖多 格軍  
不齊 則將何以運舟 格軍雖齊 軍糧不繼 則將何以餉士乎 凡此兩款 不可闕一

者也 而軍兵之徵發 糧餉之轉出 並至於此極 則非但邊氓之苦 有倍於內地之  
民 其於運舟餉士 決不能堪 加于悶慮 如許極關且急之務 周旋措置 一日爲急  
爲白乎矣 臣在嶺南 各道巡察使 亦駐遠方 未易就議 只以文牒 往復通問 其間  
所漏者亦多有之 歲律已暮 春防到頭 事與必違 罔知攸爲 大槩水陸討賊 俱是  
急務 而近日之來 論議紛紜 舟師策應凡百措事 十未一施爲白去等 變生數載  
百爾經營 終始如一之願 反歸虛地 女臣驚劣 萬死固甘是白在果 當國家再造  
之日 全務姑息一至於此 他日噬臍 決難追及 寤寐思惟 不知所爲 痛悶無極爲  
白置 今後三道舟師所屬沿海各官括壯軍 糧軍器 并勿令遷動 全屬舟師爲只爲  
都元帥及三道巡察使處 并以更良各別申勅 啓下爲白乎去 妄料爲白臥乎事  
閏十一月十七日

#### 41.

謹啓爲相考事 諸島牧場閑曠之地 明春爲始耕墾 農軍則以順天興陽留防之軍  
出戰入作爲白良結 已爲請啓 允下內緣學 監兵使處移文爲白有如乎 順天府  
留防軍段 巡察使李廷旼狀啓據 光陽境豆恥新設僉使鎮良中 移防計料是如爲  
白去等 突山島耕墾農軍段 調出未由 臣意各道避亂流移之人 既無住着之處  
又無資生之業 所見慘惻 同島招諭入接 使之合力耕作 分其一半 公私兩便爲  
白齊 興陽縣留防軍段 道陽場入作 其餘閑地乙良 給民并作 馬匹乙良 折尔  
島移合爲白在如中 無害於牧馬 有補於軍資爲白齊 右道康津縣古尔島 南海  
境黃原牧場段 土地沃膏 可耕之地 無慮千餘石落只是白去等 耕種得時 其利  
無窮 而農軍出處無路爲白在果 給民并作 官收一半 則可補兵食是白置 兵食  
既給 則前頭大事 庶無乏糧之急 正合時務是白乎矣 留防軍興役事段 非臣任  
擅 監兵使自當及期舉行 而春事不遠 尚無應行消息 極爲悶慮爲白良尔 朝廷  
以本道監兵使處 更良申明判下爲白齊 突山島國屯田 以久遠陳荒處 耕墾補  
軍資爲白良結 狀啓爲白有如乎 前矣同農軍段 各處入防軍士 量宜除出入作  
而節段 處處防戍 除出無人 起耕不得 一樣陳荒爲白有在 營屯田二十石落只  
老殘軍除出 使之耕作 試其田品 則收穫之數 中正租五百石是白乎等用良 以



備種子条 營城順天庫入上爲白臥乎事  
閏十一月十七日

#### 42.

謹啓爲取稟事 今十二月二十三日 到付兼巡察使李廷毓關內 節到付撫軍司關內 東宮駐進全州 下三道武士設場試取計料爲白乎矣 規矩段依常規 初試會試殿試三次試取除良 依平安道例 一次試取後 殿試以仍施行 優數取人 設計爲有尠 吉日段 十二月二十七日以 試取計料亦 未酌定爲有在果 日期甚迫 優數試取之意 星火馳通 俾無遺珠之患向事 關是去有等以 關內辭辭相考施行 事 關是白置有亦 變生二載 武士長在戰陣 無以慰悅之 至今聞東宮駐駕完山 大小臣民 莫不感動爲白如乎 又聞十二月二十七日 全州府設場之命 海陣士卒 咸欲樂赴爲白乎矣 水路遙遠 未及期限爲白沙餘良 與賊相對 不無意外之患 精軍勇士 一時出送不得事是白昆 舟師所屬軍乙良 依慶尙道例 陣中以試取 以解軍情爲白乎矣 規矩中有騎射爲白在如中 遠海絕島 無可馳騁之地爲白昆 騎射本乙良 片箭以試才 似爲便益爲白乎去 妄料敢稟爲白去乎 朝廷以善處爲白只爲  
十二月二十九日

#### 43.

謹啓爲相考事 前年分 順天義僧將三惠 興陽義僧將宜能等亦 沿海各官水軍僧 并以優數募聚爲白去乙 從自願 舟師以移屬 各騎戰船 率領討賊爲白如乎 冬日之來 繼糧爲難 並只放送 開春卽時 期限馳到亦爲白有去乙 節都摠攝僧惟晶亦 佩印南來 兩南各寺僧人乙 勿論水陸義僧 無遺推捉是如 左道摠攝僧處英稱名人亦 順天府松廣寺來到 同義將三惠 宜能等所率軍人乙 並只劫奪叱分不喻 或免役免賊公文 擅自成給 酌定軍糧 督促捧上是如爲臥乎所 誣罔愚

民 至於此極 極爲駭愕爲白沙餘良 都摠攝僧惟晶亦 僧將宜能免賤公文乙 體察使帖文樣以成送爲白乎矣 規式違格 着暑亦異 僞造明白爲白去等 不小免役 免賤重事乙 因緣時勢 任意僞造爲白臥乎所 極爲無狀 此而不徵 必有難防之弊乙仍于 同僞造帖文 監封上送爲白去乎 朝廷以相考慮置爲白只爲  
萬曆二十二年 正月初一日

#### 44.

節呈康津居前僉使裴慶男所志內 變生初 釜山僉使除授下來 卽時本道遊擊將 差定爲良去乙 領兵討賊 斬倭三十六級 牛馬八疋奪還 這這報巡察使 受書目 爲有如乎 巡察使道 以不謹捕倭樣狀啓導良 誤蒙重罪 後斬倭一級 都元帥巡察使亦爲啓聞爲白在果 前年四月分 傷寒得發 日漸深重 兼得痢證 專廢食飲 坐作須人 頓無從征之路 悶慮緣由 都元帥道呈所志 本家退來調理爲白果 受國厚恩 當此艱虞之日 身病少差 不忍退在 更勵弓劍 思赴戰地爲乎矣 大病之餘 氣力困憊 不能運步鞍馬馳騁 決不可堪 極爲悶慮爲良尔 初亦矣身亦 沿海是在康津縣生長人以稍解舟楫爲良尔 身病快差問是乃 願屬舟師 以死討賊爲只爲 所志是白置有亦 上項裴慶男亦 曾在陸戰 屢有斬殺之功 適得身病 退家調理 尙未快差爲白良置 當此大賊 不可久安私處是如 願屬舟師 誓欲效死爲白臥乎所 其情可嘉叱分不喻 生長海曲 慣於舟師爲白乎等用良 姑循其情 加造戰船諸將有關處充差 領率討賊爲白乎去 妄料爲白臥乎事  
萬曆二十二年 正月初日

#### 45.

謹 啓爲取稟事 節到付兼巡察使李廷毓關內 水軍則宜定沿海各官 而目今水軍 多在山郡 文移催督 濫徵價布 流移他境 侵及族隣 職此之由 臣之愚意 商量各 鎮入番水軍之數 與沿海陸軍換定 要不一日程內 則慣於操舟 緩急可用 有 變徵發 必不後時 而陸軍則分防陸路 似爲兩便 急速定奪施行爲白只爲 狀啓

爲白有如其節到付備邊司關內 水陸軍換定事 當初本意 則近海之民 少有變警 各戀鄉井 易於奔竄 故以遠地山郡之人 定爲水軍 意似有在 而山鄉愚氓 不習操舟 一朝驅之於舟楫之地 非徒易務而事敗 齎咨遠 勞苦倍他 頃日大駕駐在海州時 問民疾苦 一道之民 皆以此爲第一巨弊 若以海邊之人 定爲水軍 山郡之民 換定陸軍 則似爲兩便 第推移之際 移役宜得 各循其願而已 姑令監司先試於本道 兼巡便否以 啓何如 答曰 依啓教事是去有等以 啓辭內兒如 相考施行事 關是去有等以 受教內辭緣 備細奉審 海邊人陸軍數果 山郡水軍數乙 抄出 奈商移易便否 道里遠近 并以 兵水使互相通議得宜 移牒向事 關是白置有亦 當初祖宗朝水陸軍分定之意 必有所在爲白沙餘良 啓辭內兒如沿海之民 少有邊警 易於奔竄乙仍于 以山郡之人 定爲水軍 其意有深叱分不喻 水軍段世傳其役 人皆謂賤役 陸軍段雖門閥之裔 例定正軍保率爲白去等 一朝遽定水卒之役 驅之船楫 不無其冤是白乎旡 況旡一荷其役 未免傳子孫無窮之苦是如 在陣愁嘆之聲 不可忍聞是白去等 陸軍中水軍可定之人以乎爲白在果 不卞世族 學定賤役 果爲冤悶爲白沙餘良 當此變亂之極 水陸之軍 各赴戰陣爲白有去等 那移換定之際 亦有搔動之弊爲白置 初亦回啓內 移易得宜 各循其願云 則採訪彼此軍情 從容處置 似爲得中爲白乎去 妄料爲白齊 兵使宣居怡移文內良中置 亦云水軍陸卒 分屬各陣 方對賊壘 加之以各處軍糧與天兵肄習方爲並舉 一道民生 不定厥居 此間那移換防便否乙 十分商量回答亦移文爲白有在如中 不小換防重事乙 水陸對賊 不可輕易處置是白旡 朝廷以更良詳量處置爲白乎去 妄料爲白臥乎事是良尔 謹具啓聞 伏候教旨

萬曆二十二年 正月初一日

#### 46.

謹啓爲推考事 變生以後 營及各鎮浦入防軍士闕防之數 南原一千八百五十六名 南平五百九十一名 玉果三百十三名爲等如 或都目狀并以 全不起送 使窮年把守船楫 終不得遞代乙仍于 行移催促 道途相望爲白良置 南原府使趙誼 玉果縣監安鵠 南平縣監朴之孝等亦 全不致念 頓無督送之意爲白去乙 臣發傳

令 軍官乙用良 推考次以 推捉爲白乎矣 南原府使趙誼段 卽報巡察使李廷毓處 玉果縣監安鵠段 托稱差使員 南平縣監朴之孝段 僞稱身病 並只終不來現 爲白臥乎所 軍令重事 有若兒戲 當臨大賊 號令無術 極爲駭愕爲白置 同南平玉果留衛將 鄉所色吏 南原府都兵房等段 從輕重決棍爲白有在果 平時段置同闕軍以上十名 守令罷黜 事日本意是白去等 況旡大賊相持 闕軍之數 多至一千八百餘名 少不下四五百餘名 則其爲慢忽之罪 自有其律爲白旡 上項三邑守令等罪狀乙良 朝廷以各別處置爲白乎矣 罷黜叱分以乎 不無甘心之理 踵轍滔滔絃如爲白旡 依軍令決罪 姑仍其職 使之勉勵爲白乎旡 其他光州綾城潭陽 昌平等官吏段置 變生後闕防之數 多至二百餘名 亦怠慢成習 亦不捉送 發關促赴 置之不舉 同四官官吏 并以推罪 以警其餘爲白齊 大槩臣本以無狀 濫受重寄 發號施行 致此不嚴 道內守令 如是侮慢 仍冒重任 極爲惶恐爲白臥乎事

萬曆二十二年 正月初一日

#### 47.

謹啓爲還鎮事 前矣加造船射格軍 親按整理次以 姑還本道緣由馳啓後 去十二月十二日 還本道檢勅爲白良置 沿海五官括壯軍段 曾因陸戰徵發 大半流亡 名存實無 水軍段置 各官守令等 狃於怠緩 無意點送叱分不喻 今則族隣勿侵亦 巡察使李廷毓行移是如論理牒報 一不整齊 時存之人 亦不捉送 尤甚官吏 傳令推捉 則稱頃不來爲白臥乎等以 戰船段 已爲加造 格軍充立無路 極爲痛憤 全羅右道段 臣矣從事官丁景達乙用良 巡檢整飭 右水使李億祺期會處 以馳送亦爲白乎旡 臣矣所屬 各官浦戰船 艱難整齊 今正月十七日 還向陣中爲白臥乎事

萬曆二十二年 正月十七日

48.

謹啓爲相考事 順天突山島 興陽道陽場 海南黃原申 康津花尔島等處 屯田耕種 以補兵食緣由 前已請啓 更良論理狀啓爲白有 如乎 節到付備邊司關內狀啓據 司啓目內 自古軍興經年 則最以繼糧爲難 除出老弱之軍 隨其地勢之便宜 而屯田耕種 以有內地饋餉之苦 且以接濟兵食 此乃經遠之策是白置 節兵亂未息 糧餉之乏 在在皆然 屯田得粟 尤不可少緩 今年耕作得粟五百石 足以備明年種子 更爲十分措置 隨人力耕墾無失其時 以濟軍興事行移何如 啓依允教事是去有等以 相考施行向事 關是白有亦 同突山島段 臣軍官訓練主簿宋晟 道陽場段 訓練正李奇男 爲等如 農監官差送爲白乎 旡 農軍乙良 或給民并作 或流民入作 官獲一半 或順天興陽留防軍及老弱軍 除出耕作 犁口鏢子 耒耜等 各其本官備送亦 已爲行移爲白有 沙餘良 右道花尔島 黃原申等處乙良置 臣從事官丁景達乙用良 屯田形止 巡歷檢飭 及時施行亦 已爲發送爲白有 如乎 節到付戶曹關據 巡察使李廷旡關內 同突山島等 監牧官以 已兼屯田官是如爲白在 果 順天監牧官趙玗段 已爲遞改 本差時未下來 興陽監牧官車德岭段 到任已久 泛濫無狀 侵虐牧子 使不得安接 闔境民生莫不嗷嗷是如 臣在不遠之地 已爲所聞爲白去等 節耕農一事 委諸此人 則因緣作弊 益加民冤絃 如爲白昆 同車德岭乙良 斯速改差 他廉幹人以擇定 不多日內下送 使之同力 監農 勿失其時爲白乎去 妄料爲白臥乎事

萬曆二十二年 正月十九日

49.

謹啓爲定奪事 臣矣狀啓據 備邊司回啓行移內 節該 賊兵方在巨濟 前頭之憂 倍甚於往年 舟師所屬沿海各官 不可更爲遷移事 前次已爲下書 而巡察使李廷旡改分軍 只左右道五邑 仍屬舟師 其餘還屬陸戰 又以左右道各五邑 徵發於他處云 此必因慶尙道抄軍甚多 難於充數而然也 但水陸之軍 各有所屬 而遷移彼此之間 軍心不定 號令多門 非徒有妨於舟師 亦必無異於陸戰 而軍器軍

糧 並被徵發 則雖有已辦船隻 難以成事 大抵與賊對陣 成敗呼吸之際 水陸所屬之軍 尙未定一 紛然如此 恐誤機會 今姑一依下諭 勿得遷動事 巡察使李廷旡及李處 並以行移何如 啓依允教味關是白置有亦 同左道五官 五官右道段 仍屬舟師 加定戰船 督令整齊 期限回泊爲白在 果 右道羅州以上九官段置 本屬舟師之邑以 節加造戰船 一樣卜定造作爲白如乎 羅州牧使李用淳牒呈內 巡察使關內 本州以上務安 咸平靈光茂長興陽古阜扶安沃溝等 沿邊九官段 移屬陸戰 加造戰船 並只停役亦爲臥乎等用良 造作不得是如 歧等如 牒報爲白有 臥乎所 近日之來 嶺南左道之賊 移向右道 皆會于巨濟 其勢必欲衝突湖南是 白去等 整率舟師 合勢遮截 在茲急急 一隻戰船 有關於此時是白去乙 同九官 加定船二十餘隻 至一時停役爲白在 如中 防海一事極爲可慮叱分不喻 殊無丁寧 啓下之意爲白昆 同九官已令新造戰船乙良 刻期整齊回泊事 更良李廷旡處 啓下申勅 以嚴舟師之威爲白乎旡 沿海各官軍民 俾免水陸交侵之苦爲白乎去 妄料爲白臥乎事是良尔 謹具啓聞

萬曆二十二年 正月十六日 統制使 臣李

50.

侍講院開拆 正憲大夫兼三道水軍統制使 全羅左道水軍節度使 臣李 今十二月初四日成貼 兼司書書狀內 節該 凡于族隣 一切勿侵以紓民生一分之苦事 東宮有令是白乎味書狀 及同日成貼文學文狀內 節該 濫用刑杖一切痛斷事 東宮有令是白乎味 書狀二道乙 今十二月二十五日 臣在鎮祇受爲白有臥乎事

萬曆二十一年 十二月二十五日

51.

侍講院開拆 正憲大夫 具銜上同 今十二月二十二日 到付兼巡察使李廷旡關內 節到付撫軍司關內 節東宮進駐全州 下三道設場試取計料爲有乎矣 規矩段

時未定奪 依常規初試會試殿試三次試取除良 依平安道例 一次試取 殿試以仍施行 優數取人設計爲有旆 吉日段 十二月二十七日 以試取計料 亦未酌定爲有在果 日期甚迫 優數試取之意 星火馳通 俾無遺珠之患向事 關是去有等以關內辭緣相考施行向事 關是白置有亦 變生二載 南中武士 長在戰陣 無以慰悅之 至今聞東宮駐駕完山 大小臣民 莫不感動爲白如乎 又聞十二月二十七日全州府設場之命 海陣士卒 咸欲樂赴爲白乎矣 水路遙遠 未及期限爲白沙餘良與賊相對 不無意外之患 精軍勇士 一時出送不得事是昆 舟師所屬軍乙良 依慶尙道例 陣中試取 以解軍情爲白乎矣 規矩中 有騎射爲白在如中 遠海絕島無可馳騁之地爲白昆 騎射本乙良 片箭以試才 似爲便益爲白乎去 妄料敢稟爲白去乎 朝廷以善處云云

萬曆二十一年 十二月二十九日

## 52.

具銜上同 謹啓爲相考事 上年幸賴宗社威靈 累捷舟師之戰爲白有如乎 今年段兇賊據險 處處作窟 畏不出抗 窮年把截 尙未死效 憤痛無極 每與諸將論謀採議爲白乎旆 戰船倍數加造 沿海括壯軍 無遺抄發 射格軍整齊 正月爲始 合勢分部 直截釜山之海 誓死一決爲白良結 枚舉論啓爲白有如乎 近日之來 論議不一 舟師所屬諸色軍及軍糧軍器陸戰諸處 稍稍移去 沿海之民 水陸交侵 東西奔命 莫適所從 流移道路 十家九空叱分不喻 全羅右道舟師所屬沿海十四官內 長興海南康津珍島靈巖等五官段 還屬舟師 其餘九官 移屬陸戰 加造戰船 至亦停役爲白臥乎所 國家危虞比極水戰一事 策應無路 上違聖明大作舟艦之命 下失微臣終歲經營之志 水軍段置 變生以後 巧避戎役之計 互相移居 守令之無良者 則托以逃亡 終不刷出爲白沙餘良 變生以後 如南原等水軍 則關防之數多至千有餘名 玉果南平昌平綾城光州等官 則或七八百餘名 或三四百餘名是白去等 加造戰船射格以乎新反 元戰船射格死亡本 亦無充立之人 雖有數百戰船 終無討賊之理 極爲悶慮 今後沿海軍及軍糧軍器 依啓下 全屬舟師 勿令遷移 右道沿海官乙良置 并還舟師 關防之軍乙良 令守令無遺漏捉付事 並

只忠清全羅慶尙三道巡察使處 各別申勅事 妄料爲白臥乎事

萬曆二十一年 十二月二十九日

## 53.

云云 謹達爲倭情事 節到付慶尙右水使元均牒呈內 巨濟境屯德沙登 邑內等處倭賊 或尙百餘名作綜叱分不喻 各處山行之賊 不知其數爲去乙 巨濟射士諸得浩等 乘夜潛行 去十二月十三日 主山峯巒止到看望爲乎矣 知世浦玉浦城內外 倭賊百餘名 結幕雄據 場門浦以邑內至 自栗浦知世浦至 路邊要害處及各坪結幕之數 或四五幕式相連 晝則分散橫行 夜則明火相應爲沙餘良 秀峙三歧里等處 五十餘名式 舉數往來是如爲旆 十六日 到明珍浦看望 則倭賊百餘名 終日結陣是如 進告是乎等用良 多抄射士 更探賊勢次以 入送爲有臥乎所 馳報是白齊 追于到付同水使牒呈內 固城縣令馳報內 十二月廿三日 倭船三隻 段 春元浦先嚴 六隻段召叱所非浦 唐項浦到泊 山幕隱伏人等乙 搜探是如 馳報是齊 巨濟縣哨探將營軍官 及埋伏將諸得浩等進告內 永登所珍長門三處之賊段 遍滿山野 西面明珍 山村召羅浦 知世浦 三巨里等處 倭賊段 無慮百餘名 作黨恣行爲旆 邑內三大門外 結幕之數百餘幕 泊船六隻 玉浦城內外 鵝州官田等處 森列結幕 不知其數 山野斫木 時方造作爲沙餘良 自邑內至長門浦 路邊及山腰各處 鱗次結幕 遍滿山役 明火砲聲 自左道釜山浦 東萊等處 昌原 鎮海 至沿邊海曲 火光羅列是如 進告及馳報是白置有亦 兇彼之賊 雄據絕島 恣行山野 極爲痛憤 春月之間 大學舟師 圍立一島 無遺殲滅計料爲白乎矣 三道舟師 僅滿百隻 兵勢孤弱乙仍于 已令三道水使 督令加造戰艦 冬前畢役爲白有在果 臣矣所屬各官浦戰船設置 亦已畢造爲白有乎矣 沿海括壯軍射格調整之事 所令多門 騷擾不齊 期會已迫 整齊無路 極爲悶慮 臣姑還本道 親檢整率一齊回泊次以 論理狀啓後 去十二月十二日還營 時檢飭 督令整齊爲白乎旆 全羅右水使李億祺 忠清水使具思稷 并以率所屬舟師 期限內馳進亦傳令爲白臥乎事 云云

萬曆二十二年 正月初五日 統制使 臣李

## 54.

云云 謹啓爲相考事 去十二月二十五日 祇受兼司書書狀內 族隣之弊 最爲民害 大駕在平壤時 前年正月以前一族 一皆蠲免事 已有朝廷命令 而名爲蠲免 實皆徵督 子遺之民 載胥及亡 聞之極爲矜惻 自今凡干族隣 一切勿侵 以紓民生 一分苦事 東宮有令是白乎味 書狀是白有亦 近年以來 流亡尤甚 水軍一戶 四丁內俱存者 百無一二 或四丁俱逃 或二三丁逃亡 闕額無數 在平時尚且不齊 況生變兩年 調兵運糧之侵 殆無虛日 奔赴戎役之苦 亦無暇日 前日有實者 又從流移 姑避隣境 觀望待時 邊禦一空 守成出戰 百無所賴 當此無冬夏對賊 爲陣 射格軍充立未由 前矣凡軍士一族 限事定蠲除亦 聖旨叱分不喻 族隣之弊 最爲病民之疾苦 若減弊寬民 則守禦無策 因循責立 則民不聊生 此間便宜 節中處置事 再度論啓爲白乎亦中 當此危難之日 水軍等謀避其役 以存爲逃 以生爲死 統督之責 不可弛緩 使之任便措處亦 回啓行移是白乎等用良 一族中 尤甚不干人 及物故老除本定者 各其守令親問 可考文案相考 稍稍辨覈 以紓軍民一分之惠 論理行移爲白有在果 節有水軍各官守令牒呈內 東宮有令 據巡察使關內 凡干族隣 一切勿侵亦爲白有臥乎等用良 水軍流亡人族隣都日事 乙 一切蠲除 以副下書之意爲臥乎所 牒報爲去 若如所報 則昨日十名入防之軍 今日未滿二三 當大賊犄角之時 百爾思惟 調兵一事 萬無措整之路 極爲悶慮爲白置 先可因循從便處置 則於恤民禦敵 庶似兩便爲白乎去 妄料爲白臥乎事 云云 謹具 啓聞

## 55.

云云 謹達爲還陣事 本道加造戰船 親按調整次以 狀啓後 去十二月十二日 還本道檢勅爲白乎矣 所屬舟師五官以 順天元加并戰船十隻 興陽十隻 寶城八隻 光陽四隻 樂安三隻 爲等如 已爲畢造 許多射格軍 一時充立不得 以此一齊回泊勢難乙仍于 順天五隻 光陽二隻 興陽五隻 寶城四隻 樂安二隻 爲先檢督率領 今正月十七日 巨濟境閑山島陣中發向爲白乎旆 未整齊戰船乙良 隨後不分

晝夜 回泊亦傳令爲白在果 右道段 戰船之數 倍於左道 許多射格 必未能及期 整齊絃如 臣矣從事官丁景達乙用良 巡檢措置 右水使李億祺期會處督送亦 申飭爲白有去乎 巡察使李廷旼處并以各別督令入送亦令該司申飭行移爲白只爲 謹具達聞

萬曆二十二年 正月初十日

## 56.

具銜 云云 今正月初七日 成貼兼司書書狀內 節該今見慶尙監司書狀 左道之賊 皆會巨濟云 其勢必欲先噬湖南館穀而上 本道之勢 比嶺南倍萬危急 卿其率舟師 遮遏進剿事 東宮有令是白乎味書狀乙 臣今正月十五日 在鎮祇受爲白乎事 云云

萬曆二十二年 正月十五日

## 57.

云云 謹啓爲推考事 全羅右水使李億祺乙良 正月二十五日 忠清水使具思稷乙良 二月初五日 爲等如 所管諸將 一齊領來亦 定限傳令後 李億祺牒呈內 羅州務安靈光等官亦 入防水軍都日狀 并以全不起送 許多戰船 充格無路 期限已迫 極爲悶慮 如是再三論報爲白有去乙 臣段置 同各官以行移爲白如乎 今二月十七日 率戰船二十二隻 陣中來到爲白有臥乎所 並與先來戰船合計 則四十六隻是白齊 同右道卜定戰船 元加并九十隻內 羅州以上九官卜定戰船 二十七隻段 全不整齊 事甚駭愕 緣由已曾狀啓 節更良別啓爲白在果 其餘二十一隻段 戰船并皆新造 而無格趨未領來乙仍于 同水軍不捉送 各官良中 更爲發傳令催促爲白齊 大槩同右水使李億祺亦 當此兇賊發謀之時 未及期限 難免失期之罪是白乎矣 唯只無格軍 未及期限 告悶之報連續爲白有去等 各官水軍 全不捉送 近日尤甚 各鎮浦戰船 未易調整 道內同然爲白乎等用良 先可

行首軍官及都訓道段 依軍令決罪爲白齊 忠清水使具思稷段 期限已過一朔 尚未到陣 期會重事 弛緩 至於此極是白置 朝廷以各別催促爲白乎去 忘料爲白臥乎事 云云

萬曆二十二年 二月二十五日

## 58.

云云謹啓爲推考事 節到付全羅右水使李億祺牒呈內 節該道屬各官浦元加戰船等乙 正月二十日內 上道則營前洋 下道則加里浦前洋聚到亦 軍官竝送催督爲如乎 各官亦入防水軍乙 全不整送 格軍整齊不得 趨未聚到 期限已過 極爲悶慮乙仍于 率先到舟師二十二隻 今月十七日到津爲有在果 羅州務安咸平靈光茂長興德古阜扶安沃溝等官段 加卜定戰船 整送以乎新反 元戰船至亦 整送不冬叱分不喻 各鎮浦當奔赴水軍都目狀 并以起送不冬 船格不齊 悶慮如是 各浦所報絡繹爲沙餘良 羣山浦萬戶李世環 法聖浦萬戶曹大智 多慶浦萬戶李軾等段 最只所管邊將以 托以無格軍 至今不來 加于駭愕 上項各官浦守令邊將 依軍令重治 以徵基餘爲只爲 牒呈是白置有亦 七路瀰滿之賊 咸聚一方 兇謀巧計 無所不至 移犯之患 迫在呼吸之間爲白去乙 舟師所屬 羅州以上九官守令等 加定戰船以乎新反 元會計付戰船至亦 無意整送爲白沙餘良 各鎮浦入防當奔赴水軍 無一名起送 使各鎮浦戰船 亦未能整齊爲白臥乎所 軍令重事 弛緩至此 萬無進攻退守之路 極爲駭愕爲白齊 大槩當壬辰賊勢新銳之日 嶺南諸城 望風瓦解 一帶沿海 人烟頓絕 固城泗川河東南海段 湖南連接之地 而賊船無慮二百餘隻 連續入來爲白去乙 以我舟師未滿三十之船 冒突剿殲 一無漏還 挫基鋒銳 其後戰稍稍加備 全羅左右道并八十餘隻 每與三道水使及諸將畫計殲討 誓死爲約 遮截海路 使不得移犯 將及三載 湖南保完 似賴舟師 而近日之來 論議紛紜 舟師所屬左右道并十九官內九官至亦 移屬陸戰叱分不喻 元定防水軍至亦 專不起送 舟師孤弱 有甚於前日 極爲悶慮爲白置 羅州以上九官內尤甚爲白在 羅州務安等 卜定戰船 過期不送 入防水軍 全不起送爲白臥乎 罪狀及羣山浦萬戶李世環 法聖浦萬戶曹大智 多慶浦萬戶李軾等段置 最

只舟師邊將以 再再督促 終不進來 大犯軍律爲白有置 并以 朝廷以處置 以警其餘爲白乎矣 同戰船等乙良 罔晝夜馳送事 巡察使李廷穉處 各別申飭爲白乎去 妄料爲白臥乎事 云云

萬曆二十二年 二月二十五日

## 59.

云云 謹啓爲相考事 舟師自募義兵將順天校生成應社僧將守仁宜能等亦 乘此亂離 不思偷安 激發義氣 募聚軍兵 各率三百餘名 擬雪 國恥 極爲可嘉爲白沙餘良 海陣兩載 自備軍糧 轉分供 艱以繼絕 其勤苦之狀 有倍軍官爲白乎矣 猶未憚勞 到今益勤 曾經戰討 亦多顯效 其爲 國奮義之心 始終不怠 加于可嘉爲白置 上項成應社僧將守仁宜能等乙良 朝廷以各別褒獎 以勵後人爲白乎矣 順天居前萬戶李元男段 節募率義軍段 乘騎戰船 願屬舟師乙仍于 時方定將討賊爲白臥乎事 云云

萬曆二十二年 三月初十日 統制使 臣 李

## 60.

云云 謹啓爲相考事 全羅左右道沿海十九官內十官段 全屬舟師爲白有在果 自變生之後 陸陣諸處 輪運軍糧 殆無虛日 已盡蕩竭爲白沙餘良 左道四官右道一官段 又經自焚之患 加于板蕩爲白有去等 左右道元加戰船先集者 一百十隻 伺候船一百十隻 射格并無慮一萬七千餘名以 每一名朝夕各五合式分給爲白良置 一日所食 少不下百餘石 一朔所供三千四百餘石是白乎於 慶尙右道段蕩敗之餘 尤無辦餉之路 亦賴全羅十官 而以十官餘儲軍糧 除救民之穀 而計舟師之糧 則僅繼五月望時是白去等 其前若未能蕩滅兇徒 則此後軍糧乙 百無所措 極爲悶慮爲白置 朝廷以商量處置爲白只爲 云云

萬曆二十二年 三月初十日

## 61.

云云 謹啓爲倭情事 今三月初六日 巨濟邑前曾島洋中到付 南海縣令奇考謹馳報內 倭小船一集 固城越邊下陸 招呼我船爲去乙 觀其形狀 則或着紅衣或青衣 唐人二名 倭人八名是乎所馳報是白沙餘良 唐人所持牌文 并以輸送爲白良在乙 看審則 天朝宣諭都司府譚禁討倭賊事牌文 而唐兵招致 問其所由 則前年十一月分 都司府譚老爺等到熊川 至今仍留 以待天朝許和之命爲如乎 近日倭人等 恐劫舟師之威 喪心膽落 都司老爺前 百般哀乞 牌文成送是如爲白臥乎所點詐倭奴 百生奸計 與同處 天兵 自作牌文 乞寄 唐人判然爲白沙餘良實爲 禁斬倭奴 則經畧提督總兵府尙無分付之令爲白乎所萬無爲白在果 同牌文 唐兵二人 業已齎來 南海縣令奇考謹成公事 一時輸送爲白有去等 拒以不受 亦似未穩叱分不喻 初亦舟師未及畢至 兵勢似爲孤弱乙仍于 牌文回答成給 詳示停止之意爲白遺 更稱賊情 乘機進討計科爲白齊 同牌文監封上送爲白乎旃 其回答曰 朝鮮國陪臣等 謹答呈干 天朝宣諭都司大人前 倭人自開聲 連兵渡海 殺我無辜生靈 又犯京都 行兇作惡 無所紀極 一國臣民 痛入骨髓 誓不與此賊共戴一天 各道舟艦 無數整理 處處屯駐 東西策應 謀與陸地神將等 水陸合攻 使殘兇餘孽 隻櫓不返 擬雪國家讐怨 本月初三日 領先鋒二百餘隻 將欲直入巨濟蕩滅巢穴 次次殲剿 俾無遺種 而倭船三十餘隻 闖入于固城鎮海之境 焚蕩閭家 殺戮遺民 又多擄去 輸瓦斫竹 滿載其船 原其情狀 極爲痛憤 撞破其船隻 追逐其兇徒 馳報于舟師都帥府 領大軍合勢直擣之際 都司大人宣諭牌文 不意到陣 奉讀再三 諄諄懇懇 極矣盡矣 但牌文曰 日本諸將 莫不傾心歸化 俱欲捲甲息兵 盡歸本國 爾各兵船 速回本處地方 毋得近駐日本營寨 以起釁端云 倭人屯據巨濟熊川金海東萊等地 是皆我土 而謂我近日本之營寨云者何也 謂我速回本處地方云 地方亦未知在何所耶 惹起釁端者 非我也倭也 日本之人 變詐萬端 自古未聞守信之義也 兇彼之徒 尚不稔惡 退據沿海 經年不退 豕突諸處 劫掠人物 有倍前日 捲甲渡海之意 果安在哉 今之講和 實涉詐僞 然大人之教 不敢違越 姑寬程限 馳達 國王 伏惟大人 遍諭此意 俾知逆順之道 千萬幸甚事 臣及元均李億祺 同狀着名成送爲白有在果 同譚都司稱號之人 某月日間 熊川不來與否 都元帥權慄處 探問回答亦 移牒爲白有齊 上項唐兵 一時出來爲白有

在 我國被擄人尙州接私奴希順亦 能解倭語 兼通事以出來爲白有去乙 唐兵茂火 同希順乙不可還率去事 學理開諭爲白乎矣 持疑不快 又爲開說曰 乞降來此 則我國人乙 其可還率去乎云云 唐兵辭塞不答 因以棄歸爲白良在乙 賊中形勢及 唐兵出來根因 并以推問 招內尙州居人以 前年四月分 京城下來 賊倭處被擄 到釜山之後 倭奴等 晉州陷城 還釜山 同年七月分 唐兵十五名 一時移到熊川 同處賊將即墨甘屯陣中 至今留在爲有在果 又於 唐兵三十餘名 去十一月分 追到爲有齊節 唐兵持牌文出來事段 我國舟師 蔽海齊進 撞焚倭船乙仍于賊將即墨甘 恐其直擣 懇乞于 唐將前成文出送時 倭將亦矣身茂火 汝往朝鮮陣中說導曰 日本之人 不欲與戰而 朝鮮何以出戰乎云云事 言送爲去乙 出來爲有齊 熊川之賊三陣以 每陣或千餘名 或八九百名而病斃者 數多叱分不喻 困於土木之役 還逃本土者 不知其幾許 船隻段三陣 中小船并所見三百餘隻 大船段只有二隻 將帥段一陣則即墨甘屯 一陣則沙古汝文屯 一陣則阿里萬屯是齊 前年十一月分 老唐將一員到陣川仍留 率倭三名持書契 發向中原乙仍于 同倭人回還 則賊倭出數還本土云云爲齊 我國男女段 或入送日本 或因在使喚 本土女人乙 又多率來使喚爲齊 賊倭日役段 或鐵丸打造 或築城造家 軍糧段今月初生 中船六隻良中 滿載出來 新倭或二十名 或三十名載來 他餘事段 迷劣人以的知不得爲臥乎所招辭是置有亦 上項奴希順亦 爲賊被擄 久留賊中 巧點往謀乙 無不詳知爲白乎矣 反覆窮問 略無直告 思還賊中 露於言色 嚴刑機物 備設其前 則大畧納招 多有修飾之狀爲白卧乎所 必于下賤之徒是白乎喻良置 既還本土 少無仍留之計 叛國之罪 不可傾刻待時事是白乎矣 慮有更問之端爲白乎等用 良 興陽縣移囚 以待 朝廷命令爲白卧乎事 云云

萬曆二十二年 三月初十日

## 62.

云云 謹啓爲焚滅事 巨濟熊川之賊 數多作綜 鎮海固城等處 恣意出入 焚蕩閭家 殺掠人物是如爲白在乙 乘其往來 相勢剿捕次以 勅令三道諸將 整勵舟楫 嚴鍊器具 一邊各處通望峯頭 望將定送 瞭察賊船 登時馳告亦爲白有如乎 今

三月初三日未時到付 固城境碧方望將 諸漢國等馳報內 當日平明 倭大船十隻 中船十四隻 小船七隻 永登浦始出 二十一隻段固城境唐項浦 七隻段鎮海境吾里梁 三隻段豬島 爲等如 指向是如 馳報是白乎等用良 臣即發傳令于慶尙右水使元均 全羅右水使李億祺等處 更嚴申約 一邊巡察使李蕢處 依前約束 領軍馬馳進 剿捕下陸之賊 亦移文後 同日戌時 三道諸將 無遺率領 閑山洋中發船 乘暗潛行 二更量 巨濟內面紙島洋中經夜 初四日曉頭 留戰船二十隻於見乃梁 以備不虞 又抄三道輕銳船 全羅右道 左斥候將蛇渡僉使金澆 一領將盧天紀 二領將曹將宇 左別都將前僉使裴慶男 判官李濬 左衛左部將鹿島萬戶宋汝悰 步駐統將崔道傳 右斥候將呂島萬戶金仁英 一領將尹鵬 龜船突擊將主簿李彥良 全羅右道 鷹揚別都將虞候李廷忠 左鷹揚將於蘭萬戶鄭聘壽 右鷹揚將南桃萬戶姜應彪 助戰統將裴胤 前部將海南縣監魏大器 中部將珍島郡守金萬壽 左部將金甲萬戶李廷彪 統將郭好信 右衛中部將康津縣監柳濯 左部將木浦萬戶田希光 右部將主簿金南俊 慶尙右道 旆助項僉使金勝龍 左遊擊將南海縣監奇孝謹 右突擊都將蛇梁萬戶李汝恬 左斥候將固城縣令趙疑道 先鋒將泗川縣監奇直男 右斥候將熊川縣監李雲龍 左突擊將平山浦萬戶金軸 遊擊將河東縣監成天裕 左先鋒將所非浦權管李英男 中衛右部將唐浦萬戶河宗海等 三十一將抄擇 舟師助防將魚泳潭定將 同唐項浦吾里梁等賊船住泊處 潛師馳送爲白遣 臣與李億祺元均等 統率大軍 永登場門賊陣前洋是白在甑島洋中 鶴翼列陣 橫截一海 前示兵威 後遏賊路次 倭船十隻 出自鎮海船滄 緣岸行舟爲白去乙 助防將魚泳潭所率諸將等 一時突進 左右挾攻 六隻段鎮海境邑前浦 二隻段固城境於善浦 二隻段 鎮海境柴仇叱浦爲等如 棄船登陸 並只無遺撞破焚船 鹿島萬戶宋汝悰段 倭船被擄人固城正兵沈巨元 鎮海官婢孔今 咸安良女南月等奪還 又被擄二名段 賊倭斬頭棄去爲白有齊 唐項浦入泊倭船 大中小并二十一隻 望見煙焰 莫不摧心 自知勢窮 下陸結陣是如爲白去乙 巡邊使李蕢處 更良催促移文爲白遣 又令魚泳潭領其所率諸將 直向同處次 適音汐水已退日且奄暮 進擊不得 同唐項浦浦口把截經夜 翌日是白在 初五日曉頭 臣及李億祺段 結陣大洋 以應外變 魚泳潭領諸將 直入同浦爲白有在乎 同日未時到付魚泳潭等馳報內 賊倭盡爲逃遁 倭船二十一隻良中 蓋瓦及王竹滿載列泊爲

有去乙 並只撞破焚滅爲乎所馳報 及全羅右水使李億祺段置 其諸將所報據 亦爲一樣馳報是白置有亦 假氣殘擊 莫敢抗戰 棄船宵遁爲白有臥乎所 當此之時 水陸相應 一時合攻 則庶可殲滅 而水陸駐兵 相距隔遠 未易馳通 使籠中之賊 未得全捕 極爲痛憤爲白在果 固城鎮海橫行之賊 自是以後 庶有顧忌之慮 未能恣意出入是白齊 同日舟師一軍 全數合勢 充滿大洋 炮聲振天 東西變陣 楊示掩擊之狀 則永登場門齊浦熊川安骨加德天城等地雄據之賊 恐其直擣 伏兵假幕 盡數自焚 畏縮窟穴 頓絕形影爲白如乎 初六日固城境阿自音浦發船 從風懸帆 首尾相接 巨濟邑前胥島前洋指向次 南海縣令奇孝謹亦 倭船一隻 自永登始出 越邊下陸是如 唐兵二人及倭奴八名是白沙餘良 唐兵所持牌文 并以輸送爲白有去乙 同牌文回答緣由段 別狀良中 俱由論 啓爲白置 大槩一陣將士 乘勝踴躍 皆欲決死生直突叱分不喻 飢羸奄奄之卒 亦皆樂赴 倭船三十餘隻 盡數焚滅 無一隻網漏爲白有齊 仍討場門永登之賊 次次剿滅計料爲白乎矣 舟師所屬羅州以上九官段 加造戰船以乎新反 元戰船 并以至今回泊不冬 同道各鎮浦 亦因各官水軍不齊捉送 爲半整齊不得 忠清水使具思稷段置 尙未到陳兵勢似爲孤弱爲白乎等用良 更良相勢進剿次以 今三月初七日 還到閑山陣中爲白有置 三道諸將 敵船焚滅數段 李億祺魚泳潭所報兒如 詳細磨鍊 開坐于後爲白在果 倭物段 以搶掠之賊 別無有關之物 只有衣糧釜鼎木器等雜物乙仍于 搜得軍卒等亦中 惠伊分給爲白有齊 唯慶尙右水使元均段 賊船三十一隻乙 其道諸將 並只獨當焚滅樣以 成公事輸送爲白有臥乎所 一陣將士 莫不駭恠爲白置 朝廷以參商施行爲白只爲 云云 萬曆二十二年 三月初十日

### 63.

云云 謹啓爲倭情事 今四月十八日到付 全羅右道中衛將水軍虞候李廷忠牒呈內 十七日酉時到付 見乃梁伏兵將珍島代將李世熙牒呈內 節該所屬統船率領伏兵處待變爲如乎 當日午時量 荒唐小船一隻 自巨濟境場門浦始出 伏兵處向來爲去乙 茂長俠船一隻 兵營挾船一隻 追浦次以發送爲有如乎 巨濟居兼司



僕金應之等 男女并十六名 我國魚採船偷 騎出來爲有去乙 並只執捉起送爲 臥乎所牒呈是置有亦 同金應之等十六名乙 上道爲去乎推問施行爲只爲 牒呈 是白乎等用良 同被擄逃還爲白有在 巨濟縣接兼司僕金應之同縣正兵許能連 等 當爲被擄逃還節次 及賊中所爲推問 招內前年七月十九日 賊倭七名處 被 擄結縛 場門浦以捉歸 同處留屯賊將 頓丹屯稱名倭處 捉付留五日 後傳送于 倭將鳥乘監右丹屯陣 各留五日 又傳永登浦倭將 沈我損屯陣 亦留五日 熊川 笠巖平義智陣載送留五日 釜山浦名不知倭陣 次次移送爲良在乙 留連同處爲 如乎 乘隙逃躲 熊川往來興利倭船乘騎 還到熊浦 即到場門浦爲乎矣 我國被 擄人 多數留在爲有去乙 留連同處 漁採連命爲旆 每欲出來計料爲乎矣 倭奴 等 不離守直 逃來不得爲有如可 適音守直倭奴二名出他之際 金應上等四名及 巨濟居女人十一名矣身并十六名 今四月十六日夜間良中 乘船出來 舟師伏兵 出來爲有在果 賊倭形止段 場門浦留屯賊將三陣以 損丹屯陣段 倭所見三百餘 名 而我國人三分之一相雜 中小船并五十餘隻 軍糧段三十間式造作 二庫盈入 爲有齊 鳥乘監陣倭段四百餘名 而我國人五六名是旆 中小船并三十七隻 軍 糧段三十間造作 二庫盈入叱分不喻 浦口長大木以 多數作筏 以拒行舟爲旆 浦口兩岸築牆 多設我國天地字銃筒爲有齊 右舟屯陣倭段置四百餘名 而我國 男女三十餘名 中小船并三十餘隻留泊爲有旆 軍糧段三間家 二庫盈入爲有齊 沈我損屯陣倭段 三百餘名 我國男女則三十餘名是旆 其陣軍糧與各陣軍器數 段 知不得爲齊 常時出入之倭環刀銃筒是齊 熊川笠巖賊將平義智 外他陣賊將 名字段 知不得爲在果 熊川笠巖一陣 熊浦二陣 安骨浦三陣 加德一陣 金海一 陣 竹島一陣 豆毛浦東萊釜山等處五陣 永登場門并以十八陣時留是如 云云 爲齊 去三月初生間 鳥乘監陳中船十七隻 頓舟屯陣中船五隻 右舟屯陣中船六 隻 并二十八隻及永登屯陣倭所送船 并三十餘隻 鎮海固城閭家蓋瓦中竹取來 爲旆 我國人擄掠次以爲有如乎 舟師三百餘隻 鎮海固城了指向 同賊船等撞焚 爲去乙 畏其兵威 場門浦屯賊等 蒼遑顛仆 軍器負物及本國戰馬等乙 滿載其 船或入山谷爲齊 第五日前矣出送 見敗賊倭等 還來言內 朝鮮兵船三百餘艘 盛陣兵威圍抱乙仍于 不能當敵下陸爲乎亦中 矣徒船隻乙 或焚滅或曳去 艱以 乘夜逃來 到熊浦乘船入來爲乎所 說導爲齊 其等徒常時所役段 造家材木 斫

伐鍊正 載其大船 入送本土爲齊 新倭交逆次以出來是如 自中相喜爲乎矣 到 泊形止段 目觀不得爲有齊 大槩各陣賊倭 雄據如前 他餘事段 知不得爲齊 矣 身夫妻及七歲女子段 傳賣於釜山屯倭處留連爲如乎 適音逢授倭等 沽酒事以 出他次 乘隙偷船 到熊浦爲乎矣 金應之亦爲賊被擄 同處留在爲有去乙 同心 密議 場門浦移渡 漁採資生爲如可 節金應之等 謀約出來爲有在果 賊中所爲 段 金應之招辭一樣是白味爲等如 招辭是白置有亦 同金應之等亦 被擄女人 十一名招集 偷船出來爲白有臥乎所 極爲可嘉爲白置 依金海出來人例 畧給 粮物事 本道觀察使處 啓下以勸他人爲白只爲 云云

萬曆二十二年 四月二十日

## 64.

謹啓爲推考事 忠清水使具思稷乙 所管諸將 一齊率領 去二月初五日內 陣中 回泊亦定限爲白有如乎 率戰船十隻 去三月十六日到陣爲白有在果 同水使牒 呈內 道屬戰船四十隻乙 軍糧軍器優整齊 左道各官浦則元山 右道各官浦則開 也召島 爲等如 去正月二十七日及良 一齊准到亦 四五度行移檢飭 水使段二 月初二日朝水 本鎮舟師率領下海 元山島到泊 累日留待 結城代將徐福千叱分 戰兵船率來 他餘各官浦段 不在約會處爲白去乙 右道期會開也召島下來爲乎 矣 無一船來到 群山浦前洋 留泊待風爲如乎 所斤僉使朴潤 馬梁僉使姜應虎 舒川浦萬戶蘇希益 庇仁代將南訓 安興代將崔大寬 舒川代將金弘等 戰兵船一 隻追到爲有去乙 並只率領 今三月十六日到陣爲有在果 各官亦入防水軍 無一 名捉送 以此射格整齊不得 未及期限 極爲駭愕爲昆 軍士無意捉送 各官及本 邑舟師 趁不整齊 尤甚爲在韓山林川洪州瑞山藍浦泰安保寧海美兵營波智島 等官吏 依軍律痛治 未到舟師 急急催促 罔晝一夜下送爲只爲 牒呈是白置有 亦 七路旆滿之賊 咸聚一方 兇謀巧計 無所不至 移犯之患 迫在呼吸之間爲白 去乙 韓山等八官守令亦 各浦入防水軍 無一名起送 使各浦戰船 亦未能整齊 叱分不喻 各其本邑舟師至亦 整送不冬爲白有臥乎所 軍令重事 弛緩至此 極 爲痛愕爲白昆 向前韓山等官守令 戰船過期不送 入防水軍 專不起送爲有卧乎

罪狀 及波智島兵營舟師段置 再再督促 終不進來 大犯軍律爲白有昆 并以 朝廷以處置 以警其他爲白乎矣 同戰船等乙良 罔晝夜馳進事 本道巡察使尹承勳處 各別申飭爲白齊 大槩同水使具○亦當此兇賊發謀之時 未及期會 難免後期之罪是白乎矣 唯只各官水軍 全不捉送 近日尤甚 各浦戰船 未易整調 各道同然爲白乎等用良 爲先行首軍官及都訓導段 依軍令決罪爲白卧乎事 云云  
萬曆二十二年 四月初二日

## 65.

謹啓爲待變事 今四月十八日到付 巨濟縣令安衛馳報內 賊勢哨探次以 射士率領 境內國祀堂峯頭看望爲乎矣 玉浦前洋楊州巖良中 倭船六隻內三隻段 依泊海採 二隻段加德 一隻段永登浦指向爲旆 縣境內東西各處陸行之賊 處處放砲爲齊 同日遠望爲乎矣 倭船百餘隻 各竹懸帆 本土始出 一運釜山前洋 一運金海江 熊浦了指向爲齊 安骨浦項北良中 前無所見甚盛 巨陣一庫 昭然通望 永登場門浦屯賊段 無加減爲乎所馳報是白置有亦 新接多數出來是如爲白卧乎所 兇謀叵測爲白乎等用良 都元帥 巡察使 兵使各陣移文爲白乎旆 檢飭諸將 日新待變爲白卧乎事 云云  
萬曆二十二年 四月十九日 東宮一樣達本

## 66.

謹啓爲試取事 去十二月二十三日到付 撫軍司關據 巡察使李廷範關內乙用良 東宮駐駕全州府設場之命 海陣士卒 咸欲樂赴爲白乎矣 十二月二十七日以 擇日爲白有去等 水路遙遠 未及期限爲白沙餘良 與賊相對 不無意外之患 精軍勇士 一時出送不得事是白昆 舟師所屬軍乙良 依慶尙道例陣中以試取 以解軍情爲白乎矣 規矩中有騎射爲白在如中 遠海絕島 無可馳騁之地爲白昆 騎射本乙良 片箭以試才 似爲便益爲白乎去 妄科敢稟爲白有在乎 節到付兵曹關內節

啓下教左水使 啓稟內辭緣 以曹啓目粘連啓下是白有亦 全州文武之科 業已唱榜爲白有去等 續續設科 似爲未安爲白在果 舟師之軍 累年勤苦 而獨爲停學 情甚曖昧叱分不喻 嶺南元帥陳設取之科 未及一時唱榜於全州 則分試取人 彼此無異爲白昆 依狀啓 騎射除良 片箭鐵箭以試取爲白乎矣 任意多取 慮有不精之患 一百人定額試取何如 萬曆二十二年二月初七日 右副承旨 臣李光庭次知 啓依允教事是去有等 以相考施行向事 關是白乎等用良 同武科別試試取次 以 有名文官 參試官差定起送亦 都元帥權慄處移牒爲白有在乎 三嘉縣監高尙顏乙 參試官差定乙仍于 試官 臣及全羅右水使李億祺 忠清水使具思稷 參試官長興府使黃世得 固城縣令趙凝道 三嘉縣監高尙顏 熊川縣監李雲龍等以 今四月初六日開場 鐵箭五矢二巡二中以上 片箭五矢一巡一中以上 並只依運官射例 給分試取 入格人一百名 一二三等 居鄉職姓名父名年歲 并以別狀開錄 上送爲白卧乎事  
萬曆二十二年 四月十一日

## 67.

謹達爲相考事 今四月初二日祇受司書狀內 南邊舟師 長在海上 所屬守令 各率所部 以舟爲邑 絕無還官之期 方春已晚 農事政急 種子口食賑飢等事 專廢不學 至於城池甲兵修繕之事一委之品官 本邑之事 日就虛疎云 極爲可慮 今後舟師所屬守令 使之各自代將 時或番休 相遞還官 兼察本任事有令是白乎味 書狀是白有亦 舟師所屬左道光陽 順天興陽寶城 及右道康津海南珍島長興等官守令段 下海待變 左道樂安右道靈巖守令遄罷後 不爲到陣爲白有在乎 耕農賑救事在急急爲白乎等用良 去三月初五日 固城境唐項浦等處 賊船三十一隻 合勢撞焚後 即時順天光陽興陽寶城康津海南珍島等官守令等乙 他人以代將 定體 勸農賑飢等事 盡心檢舉 更待傳令馳來亦 已爲出送爲白有卧乎事  
萬曆二十二年 四月二十日

## 68.

謹啓爲相考事 自上年二月爲始 全羅左右道 及慶尙右道射格整齊 合會一處 終年把守 病死不多爲白如乎 今年正月 始叱陣中癘疫大熾 卧病者相枕 多備藥物 百爾治療爲白良置 差效者鮮少 死亡極多 其中久病人 則載船出送 自正月二三四月至 三道物故數 全羅左道六百六名 時方卧痛一千三百七十三名 右道物故六百三名 卧痛一千八百七十八名 慶尙右道物故三百四十四名 卧痛二百二十二名 忠清道物故三百五十一名 卧痛二百八十六名 合三道物故數一千三百四名 卧痛三千七百五十九名是白去等 無辜軍民 如是死亡 舟師射格日漸減縮 許多諸船 勇疾運用爲難爲白沙餘良 近日新倭多數出來 移犯之患當在呼吸之間 極爲悶慮爲白齊 大槩有水軍各官守令等 不念危急之勢 赴戰水卒 專不起送 行移督促 連絡道路 略不動念 遺軍官持傳令推捉 則囑于使命 使之捉囚 傳令軍官 不得接跡 空往空來 勢不得已 流難乞丐之輩 雜聚充格 久飢之人 不至重病 旋即自斃 加于痛憤 前矣尤甚不捉送守令 請罪爲白有在 全羅左道南原府使趙誼 玉果縣監安鵠 右道羅州牧使李用淳 務安縣監高鳳祥等 爲先繼律 以警其餘 闕防水軍 刻期督發 守令親領交付 一以盛兵威 一以適久留病卒事 各別申明 啓下爲白只爲

萬曆二十二年 四月二十日

## 李統制碑銘

鰲城府院君 李恒福

在昔壬辰 南寇匪茹 連艦泛海 由嶺而湖者 其蔽曰閑山 其界曰露梁 其扼曰鳴梁 若失閑山 露梁不守 直蹙鳴梁 畿輔搖心矣 疇克有庸 式遏三儉越乃元侯統制李公 日君乏使 命余視師 臨發有教曰 故統制使李舜臣 其勤王家 捍衛我南邊無祿 大命隕墜 予惟寵嘉之 廟宇不立 無以勸忠 汝往欽哉 臣受命而退 稽諸祀典 以死之能捍大患則祀之 茲惟貞哉 載在故府 追惟亂初 公職在湖南 官守有限 以國害爲深羞 隣災爲己憂 踰南海蹈寇地 玉浦之戰 露梁之戰 唐浦之戰 栗浦之戰 閑山之戰 安骨之戰 焚燒賊船二百二十餘艘 斬首五百九十餘級 溺水死者 又不記其數 賊死昨不敢近公寨下 因陣閑山 以遏賊衝 至於丙申 代斷血指 閑山敗沒 於是舟師敗將奔卒及南土之民 舉咨嗟一口齊聲曰 李統制若在 豈使此賊窺湖南一步地 朝廷急而求公 再莅前職 公單騎召收 進陣鳴梁 猝遇夜襲 用少致死 以十三新集之艦 當大萬蔽海之寇 破船三十 賈勇以前 賊遂退遁 戊戌 天朝大發兵來援 水軍提督陳璘 與公合陣 奇公之爲 必稱李翁而不名 其年冬 賊合勢大來 進至露梁 公自領銳師 先嘗其鋒 天兵夾進 與公犄角 是日鷄鳴 馮夷啓道 飛廉戢威 四維塞舉 軫乃曉中 兩軍齊作 千帆飛舞 公先躍入 乘銳崩之 賊乃蟻潰 救死不暇 鼓音未衰 將星沈彩 公於黎明 中丸而顛 猶戒衆諱言死曰 恐我師燬也 提督聞之 以身投於船者三曰 無可與有爲矣 天兵亦却肉不食 南民奔走巷哭 操文以祭之 老幼遮道而哭者 所在如一 嗚呼 若公者 可謂以死勤事能捍大患者非耶 宜其勳爲元臣 爵爲上相 賜之茅土 形圖麟閣 食報無窮 又使英雄永拉危涕 丈夫生世 良足千里 況余受命 職當南事 敢不良圖 時李統制時言 聞言感激 實主張是 凡軍中將校卒伍飲公之德者 蹈舞上恩 慷慨公死 千群雀躍 萬斧電翻 不十日而工告訖功 後十五年甲午 海西柳節度珩走書來 願以露梁之事載烈垂永 余曰 公之德 在南民者口碑不朽 公之功 在社稷者太史有錄 何事於碑 唯其處家 愛恤孤姪 恩若己出 內行之淳也 在軍數年 大開魚鹽 廣設屯田軍無乏絕 所得戰賞 施下無餘 外行之備也 至於和易

之德 果辦之才 刑賞必當之勇 作人如斯 足爲百世聞人 而在公則爲踈節也 可  
畧矣已 銘曰 在壬辰歲狂寇不臣 虐始於隣 列郡瓦裂 迎敵津津 若蹈無人 時維  
李公 其氣益振 扼拊海澗 皇耆其武 出師牲牲 命虎臣璘 列缺掉幟 玄冥司辰  
賊窘而囂 師于陌巷 大戰其垠 矢集脩鱗 斃蛇掉尾 毒于公身 不佑于神 露梁殷  
維水淵淪 樹此貞珉 後天不墜 公名嶙峋 維永宗禋

## 忠愍祠記

觀察使 朴承宗

嗚呼 天降多難于邦家也 必生忠臣烈士 或提兵敵愾 或死事顯節 立人紀於當  
時 樹風聲於後世 流涕緇素 斑斑可指 壬辰之亂 海酋秀吉 乃以滔天之勢 敢  
懷射日之計 傾國而來 兵勢甚銳 時昇平日久 民不知兵 自嶺南至于畿甸 土崩  
瓦解 竟至三京失守 大駕西幸 時事艱危 尙忍言哉 國家恩養武士垂二百年 無  
一人橫身血鬪爭 以賊遺君父 獨統制使李公舜臣 糾合舟師 敢抗大難 奮烏合  
之衆 當鷓張之賊 戰于唐浦 戰于閑山 又戰于釜山 皆能以義鼓衆 身倡諸軍  
賊不敢由海而西 逮丁酉也 公方罷廢 閑山之敗 再膺闔命 師徒喪敗 部曲離散  
雖智者 無如之何 公乃匹馬徑進 尋舟聚兵 激發衰氣 鳴梁之捷 曳橋之勝 以  
少擊衆 再樹奇功 雖岳飛南薰之戰 劉琦順昌之捷 其何以加此 天兵提督陳公  
璘 與賊戰于南海前洋 勢將不測 公抽船獨進 鏖戰摧鋒 而中天星隕 大樹風  
摧 三軍墜膽 學國同傷 陳公璘奏凱還朝也 上出迎于漢之濱 語及忠烈之狀 流  
涕滿面 棄城喪師之輩 頭領無恙 老死牖下 而公之忠烈 竟主殞身 何天之報施  
不同也 嗚呼 使公不死當日 則不過一功臣焉耳 今乃顯忠表節 輝煌宇宙 雖死  
猶生 顧視苟全之徒 無異葉上棲塵 以此較彼 天之報施 亦可謂豐矣 李相國鰲  
城公體察南方也 始倡建廟于左水營 配之以李公億祺 左營乃公發軔之地 億  
祺與公同事之人故也 馳聞于朝 賜額忠愍 歲月侵尋 事多廢墜 己酉孟秋 余叨  
按節 巡于左營 仍拜祀于茲 行路傷嗟 父老掩泣 非公忠烈入人之深 能如是乎  
公之忠烈 在天爲星斗 在地爲河岳 炳炳烺烺 不待祠宇而始明也 然而崇尚節  
義 綱常所賴 完護祠宇 治道所先 余說與順天府 給奴婢復田結 俾不廢香火  
至于永永年無窮 後來繼今者 亦以此爲心也 嗟呼 海風颯颯 海日茫茫 展拜而  
出 髣髴英靈

## 故統制使李公遺事

### 李恒福

上之三十四年正月 命臣恒福視師南服 召至便殿 教曰 故統制使臣李舜臣 乃心王室 卒死王事 予惟寵愍之 迄未有廟 是以命汝以昭厥績 維時臣恒福承命 感懼 乘傳至海上 與諸將謀所以表忠紀德永示無已者 則咸曰諾 於是統制使李時言 實將其事 忠清水軍節度使臣吳應台 全羅右道水軍節度使臣金億秋 相與贊成之 木浦萬戶臣田希光 金甲萬戶臣宋希立 鉢浦萬戶臣蘇季男 加里浦僉使臣卞弘達 奔走會事 後數月 全羅道兵馬節度使臣安衛 使以幣若干來助工 凡公之平日郡校將吏士 咸盡情力 權呼趨事 群能盡巧 萬斧齊作 迺以是年某月 工告斷手 臣恒福遂以訖事 告成于朝 仍請廟額 以榮其事 仍以公之世系履歷事始終而叙曰 謹按 故贈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右議政 行正憲大夫全羅左道水軍節度使兼三道統制使李公諱舜臣 其先德水人也 事高麗 歷職閤門祇候文林郎賜紫金魚袋知三司事諱邵 五世而至貞靖公諱邊 官至領中樞府使 生諱琚 兵曹參議 生百祿 平市奉事 生諱貞 是實生公 九世簪纓 代有人至大著 母曰草溪卞氏 將仕郎守琳之女也 公以乙巳三月初八日生 卜云 行年五十 杖鉞北方 及長業 尤長於書字 弱冠 盡棄其學 專學武事 丙子 中武科 爲鉢浦萬戶 罷官家居 甲申丁內憂 丙戌服闋 以司僕寺主簿 爲造山萬戶 丁亥朝廷設屯田于鹿島 以公掌其事 公以地絕兵少 累請添兵 其年八月 賊襲圍田寨 有賊數人紅氈 最著在前 公連射殺退 開寨追擊 奪還被擄男婦六千餘名口 方戰 公中流矢 潛自拔矢 顏色不動 一動軍無有知者 時主將拿公至營門 將入就勘 友人宣居怡懼不免 執手流涕 勸酒壓驚 公正色曰 死生有命 飲酒何爲 及對勘 公不服曰 我以兵少 累報請益 事聞 上曰 某非敗軍之類 可白衣從軍 其年冬 從時錢之役 立功放還 己丑 爲井邑縣監 辛卯 以珍島郡守 旋陞加里浦僉使 擢爲全羅左道水軍節度使 越明年壬辰夏 日本關白平秀吉 傾國入寇 連陷釜山東萊等城 分道西上 聲言直犯中原 公會諸將計事 鹿島萬戶鄭運及公軍官宋希立 奮願以死自效 辭語慨慷 公大悅 以

五月初四日 領水軍下海 慶尙右水使元均馳書 與公約會于閑山島 時公有戰船八十餘艘 與均至玉浦前洋 有賊船三十餘艘 四面圍帳 豎紅白旗 碇住洋中 分餘兵登岸 燒閭舍 烟焰遍山 賊見我師猝至 一時登船 促櫓出陣 公過於洋中 督諸軍焚賊船二十六艘 約以明日決戰 人有從西來者傳言 主上西巡 京城不守 諸將各還本鎮 時上在義州 南路阻遏 聲聞不通 捷上 行在百官 引領相賀 遂進秩爲嘉善大夫 居無何 公夢見白頭老翁 蹴公起曰 賊來矣 公蹶然驚起 促領戰艦二十三艘 會元均于露梁 則賊果來矣 初一交戰 焚破一船 追至泗川洋中 遙見海上一山 有賊百餘 長蛇而陣 其下有賊船十二艘 緣岸列泊 早潮已退 港口水淺 海舟不得進 公曰 我若佯退 賊必乘船追我 今以計引出洋中 我以巨艦合擊 蔑不勝矣 遂鳴螺回船 行未一里 賊果乘船逐之 公嘗在本營 日以倭寇爲憂 創智造船 另出新制 上設板蓋 形如伏龜 至是 公令龜船突進 先嘗賊陣 焚其船十二艘 餘賊遠望 頓足叫呼 方戰 賊丸中公左肩 貫徹至背 公猶執弓注矢 督戰不已 及戰罷 公令人用刀尖挑出 一軍始知中公中丸 莫不愕然 進至唐浦 又有賊船十二艘 分泊江岸 中有一大船 上設層樓 外垂紅羅帳 有賊酋一人 金冠錦衣 指揮諸賊 公令諸將促櫓直衝 順天府使權俊 自下仰射 正中其酋 賊應弦而倒 一軍稱慶 日暮 回陣於蛇梁前洋 軍中夜驚 擾亂不止 公堅卧不起 良久 使人搖鈴 一軍乃定 後六月四日 進至唐項浦前洋 全羅右水使李億祺領戰船二十五艘來會 先是 諸將常以孤軍深入爲憂 至是 億祺來 無不增氣 翌日 諸軍出外洋 諸賊陣於唐項浦前 公先進哨船 往探形勢 哨船纔出海口 卽放砲報變 諸軍一時促櫓 首尾連亘 魚貫而進 至召所江 賊船二十六艘 擺列港口中 有一大船 上設三層板閣 外垂黑綃帳 前立青蓋 遙見帳內 隱隱有侍立之狀 知其爲頭酋 戰未數合 公佯敗而退 層閣大船 見公敗退 舉帆直出 諸將挾擊乘銳崩之 賊酋中箭而死 焚船一百餘隻 斬賊二百一十餘級 溺水死者甚衆 事聞 進階資憲大夫 後七月六日 公與元均 李億祺等 會于露梁 聞賊船七十餘艘移泊於見乃梁 我師至中洋 賊見兵盛 回船入港江中 元有老營七十餘艘 作綜列陣 港口淺狹 且多隱嶼 難以行船 公少出兵以誘之 賊果悉衆追之 公且戰且退 引至閑山洋中 回船却逐 揮旗鼓譟 箭砲俱發 賊氣挫少却 諸將軍吏 權呼踴躍 焚賊船六十三艘 餘賊四百餘人 棄船登陸而走 諸軍進至安骨浦前洋 又有賊

船四十餘艘 中有三船 上建層樓 諸船以次列泊 賊既累敗 懼我直衝 前據淺港 負固不敢出 公督諸軍 休番迭進 日暮 海霧四塞 餘賊二十餘艘 乘夜絕碇而遁 是役也 斬五百五十餘級 溺水者又不紀其數 軍聲大振 進階正憲大夫 公每戰勝 輒戒諸將曰 狃勝必驕 諸將慎之 時賊屢窺湖南 愴然未已 公以爲國家軍儲 皆靠湖南 若無湖南 是無國家也 癸巳七月十五日 進陣于閑山島 遮遏海路 是年八月 朝廷以公兼三道水軍統制使 領本職如初 使得總制舟師 公在軍六年 見本道糧儲凋耗 無以供給 遂大開魚鹽 廣設屯田 凡所以利國補軍者 勇往不顧 若嗜慾然 無絲毫遺 故軍餉有裕 未嘗乏絕 丁酉正月 賊酋清正再渡海 朝廷以公不能逆擊詔獄 用元均代爲上將 公在道 男女[老幼 皆遮]道號哭 及對獄 上原之 以白衣送元帥陣中 使之戴罪自效 其年七月 [均]□[敗] 都元帥權慄 使公往晉州收散卒 未幾 朝廷復用公爲統制使 時新敗□□單騎馳到會寧浦 道[遇]□□楔 時楔□□船一艘 公咨楔以進取之計 楔□□不如□□陸 自托於湖南陣下 助戰自效 公不聽 楔果棄船而去 公召全□□水使金億秋 使召集管下諸將五負 收拾兵船 分付諸將 粧船戰艦 以助軍[勢] □曰 吾等共受王命 義當與同死生 國事至此 何惜一死 唯死於忠義 歿亦有榮 諸將無不感畏 公起板蕩之餘 再膺藩命 兩南諸郡 盡爲賊藪 行長在陸路 義智在水路 飛謀蓄銳 以伺我隙 獨以瘡殘餘卒 領十三戰船 棲依無所 逡巡於碧波洋中 見者危之 一日 忽下令軍中曰 今夜賊必襲我 諸將各宜整軍戒嚴 是夜 賊果潛師以來 公自起大喝 令諸軍無動 各下碇以待 責戰益力 賊解圍 公回軍在右水營鳴梁洋中 天明 望見賊船五六百艘蔽海而上 先是 湖南士庶乘船避亂者 皆聚陣下 倚公爲命 至是 公以衆寡不敵 先令避亂船 次第而退 排列布陣 爲疑兵 自令戰艦當前 賊見公整船而出 各促櫓直進 旌旗樓櫓 瀰漫海中 時早潮方退 港口湍悍 巨濟縣令安衛 順潮而下 風便迅駛 船行如箭 直衝陣前 賊四面圍抱衛 冒死突戰 公督諸軍繼之 先破賊船三十一艘 賊少却 公擊楫誓衆 乘勝而進 賊死咋不敢抵 敵學軍以遁 公亦移陣於寶花島 時閑山諸將 各自投竄 與本道避亂民人等 奔入諸島 公日遣徧裨 通諭諸島 招收散兵 治戰艦備器械 煮鹽販質 二朔之內 得穀數萬餘石 將士雲集 軍聲復振 以戊戌二月十七日 進陣于古今島 時行長斂衆據險 陣於順天之倭橋 公距倭橋百里而陣 其年

七月 天將陳都督璘 以水兵五千餘 與公合陣 劉提督縉 以苗兵萬五千 陣於順天之東 將水陸齊舉 天兵侵擾我軍 公令軍中撤其閭舍 都督恠問之 對曰 天兵時加侵擾 故小邦新集之民 將盡遠徙 都督大驚 使公便宜行事 日後再有侵擾者 許令罪之 自後天兵秋毫不犯 一陣賴以相安 行長憚公威名 遣其亞將 齎鳥銃長劍遺公 公却之曰 我自壬辰 殺賊無算 所得銃劍 自足爲用 賊又因都督欲遣以銀兩酒肉 公曰 此賊於天朝 亦有難赦□□□賂[耶] 其後賊使再來 都督辭之曰 我於統制公 既已見愧 □□□八日 南海 □□□公言於都督□□□貓島 更約 □□□更 公於船上 □□□四更 賊圍都督甚急 公直前救之 親冒矢石 手□□諱言我師 勿令驚軍 都督聞公死 顛倒□□□無可與有爲者 南民間公喪 奔走巷哭 市者爲之罷[酒] [及家人以喪歸] 南中士子 操文以祭 老幼遮道而哭 至界上不絕 公娶郡守方震女 生二男一女 長□蒼 累功爲訓練院僉正 次曰僊 女嫁士人洪棐 公嘗應舉就講 張良傳 官曰 良從赤松子遊 真不死耶 對曰 綱目 書留侯張良卒 則良之志 豈真欲仙也 一座大奇之 及爲鉢浦 棘棘不阿 主將遣人 欲取堡庭桐木爲琴 公不許曰 此官家木也 植者既有意 斫者又何意耶 主將噎喟 思有以中公者 終公之在官拾掇 不得毫毛罪 其在北邊 有人遭喪 貧不得奔 公聞而憐之 卽解所騎與之 嘗言丈夫生世 用則效死 不用則耕於野足矣 若取媚權貴 以竊一時之榮 吾甚恥之 及爲大將 持是道無所變 接人和易 諄諄無畦畛 遇事果辦 不少撓 刑人賞人 一不以貴勢親疎 輕重其意 故群下畏以愛之 在所稱治 倭橋之役 公妻兄黃世得戰死 諸將吊之 公曰 世得死於王事 匪哀伊榮 在軍七年 苦身困心 未嘗近女色 戰勝得賞 必散施諸將 無所遺儲 嘗與元均 因軍事兩有違言 積不相能 公常戒其子弟曰 若有人問之者 爾等當言彼有功 勿言所短 有一卒當刑 子弟在傍曰 罪重不可貸也 公徐曰 子弟之道 當以生道救人 二兄先公亡 公撫其遺孤 恩若己出 凡家中物 必先姪而後子 君子於是乎知公之行 又篤於家也 終也

康熙元年 壬寅 三月念日 書終 (署押)

**총괄** 손재학  
**기획** 김주식, 백승옥, 서영남  
**진행** 제아름  
**편집** 제아름, 전경호, 김소형, 김승신  
**지원** 현충사관리소 윤인수  
해군사관학교 고경석  
**디자인** 디자인공감 권보미, 이가람  
**제작** 디자인공감 070-4407-625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71 2차 1308호  
**발행일** 2017.12.22.  
**발행처** 국립해양박물관 [www.knmm.or.kr](http://www.knmm.or.kr)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45  
대표전화 051-309-1900  
**I S B N** 979-11-88805-06-8